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COUR EUROPÉENNE DES DROITS DE L'HOMME

유럽인권재판소

유럽인권협약 제10조에 대한 해설서

표현의 자유

2020년 12월 31일 개정

이 해설서는 재판소 사무국이 작성했으며 유럽인권재판소에 대해 구속력을 지니지 않습니다.

이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쇄물 또는 전자 출판물의 형태로 번역 또는 복제하고자 하는 출판사나 단체는 publishing@echr.coe.int 에 연락해 승인 절차에 관한 정보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판례 해설서가 어느 언어로 번역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경우 홈페이지에서 '진행 중인 번역(Pending translations)'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해설서는 원래 프랑스어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해설서는 정기적으로 개정되며 가장 최근에는 2020년 12월 31일에 개정되었습니다. 이 해설서는 편집을 위해 수정될 수 있습니다.

판례 해설서는 www.echr.coe.int에서 ([Case-law] - [Case-law analysis] - [Case-law guides])로 들어가시면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해설서 개정 관련 정보는 유럽인권재판소의 트위터 계정 https://twitter.com/ECHR_CEDH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번역물은 유럽평의회·유럽인권재판소의 동의를 받아 발간되었으며 이 번역물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번역본 발행처(한국 헌법재판소)에 있습니다.

목차

일러두기.....	9
I. 서론	11
A. 이 해설서에서 사용된 방법론	11
B. 제10조에 관한 재판소 판례의 일반적 고려사항.....	12
II. 협약 제10조의 심리적격	14
A. 협약 제10조의 적용가능성	14
B. 심리적격의 기타 쟁점.....	16
1. 국내 구제절차 완료(제35조제1항).....	16
2. 피해자 지위(제35조제3항제(a)호).....	17
3. 상당한 불이익의 결여(제35조제3항제(b)호).....	19
III. 재판소의 제10조 사건 심사: 단계별 분석.....	20
A. 표현의 자유 행사에 대한 제한 여부 및 제한의 형태	20
B. 세 가지 "심사기준": 제한의 합법성, 정당성, 민주사회에서의 필요성.....	22
1. "제한의 합법성" 심사.....	22
2. "제한이 추구하는 목적의 정당성" 심사.....	25
3. "민주사회에서 제한의 필요성" 심사.....	25
a. "강력한 사회적 필요"의 존재.....	26
b. 제재의 성격과 심각성 심사.....	26
i. 가장 덜 제한적인 조치.....	27
ii. 일반적 조치	28
c. 적절하고 충분한 이유	28
C. 협약이 보호하는 두 권리의 충돌: 비교형량 심사.....	28
1. 협약 제6조제2항	29
2. 협약 제9조	29
3. 협약 제11조.....	30
4. 제1의정서 제1조	30

IV. 타인의 명예나 권리의 보호.....	31
A. 방법론.....	31
B. (개인의 사생활의 내밀한 측면과 명예) 보도에서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존중권 사이의 적절한 균형	32
1. 개인의 사생활 또는 가족생활의 내밀한 측면에 관한 보도(사진, 이미지, 기사)...	33
a. 심사기준 및 적용	33
i. 공익에 관한 토론에 기여	34
ii. 관련 당사자의 지명도.....	35
iii. 관련 당사자의 과거 행동	36
iv. 정보 입수 방법 및 진실성.....	37
v. 기사의 내용, 형식, 영향력	38
2.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재판소 논증의 구성요소와 기준	40
a. 정의 및 구성 요소: 몇 가지 고려사항.....	40
i. 문제된 발언과 협약 제 10 조제 2 항의 보호를 주장하는 개인 사이의 객관적 관련성의 존재.....	40
ii. 명예에 대한 공격의 심각성.....	41
b. 제한이 명예의 보호라는 정당한 목적에 비례하는지 평가할 때 심사기준 및 요소	43
i. 내용 관련 요소	44
ii. 맥락 관련 요소	49
iii. 명예훼손에 대응하는 조치와 제재의 성격.....	54
V. "공공 감시자" 역할: 강화된 보호, 의무 및 책임.....	60
A. 공공 감시자 역할.....	60
B. 언론인의 역할과 관련된 권리, 의무 및 책임.....	61
1. 정보수집	61
a. 탐구 및 조사 활동.....	61
b. 정보 수집을 위해 특정 현장이나 장소에 접근하고 머무는 것.....	62
c. 취재 활동의 합법성	63
2. 편집 결정과 관련된 의무와 책임	64
a. 신뢰성 있는 정확한 정보: 검증 및 전달에 대한 책임	65
b. 기타 책임: 신문의 편집자와 발행인, 독자, 기고자.....	68

VI. 취재원 보호	69
A. 일반원칙.....	69
B. 정의, 적용 분야.....	69
C. 제한의 형식과 비례성.....	70
1. 취재원 공개 명령.....	70
2. 수색.....	71
3. 취재원 신원확인을 위한 언론인 표적 감시.....	71
4. 형사소송과 관련한 증거제출명령.....	72
D. 절차보장.....	72
VII. 비밀리에 얻은 정보의 공개 방지	74
A. 일반원칙.....	74
B. 심사기준.....	75
1. 공익 사안에 관한 공적 토론에 대한 기여.....	75
2. 공개에 대한 책임이 있는 당사자의 행동.....	76
3. 국내 법원의 심사.....	76
4. 부과된 조치의 비례성.....	77
VIII. 내부고발자와 공무원비리신고에 대한 특별한 보호	78
A. 내부고발자 보호.....	78
B. 공무원 비리 신고에 대한 보호.....	81
IX. 표현의 자유와 국가기관이 가진 정보에 접근할 권리	83
A. 일반원칙.....	83
B. 제10조의 적용가능성과 제한의 존재에 대한 판단 기준.....	83
1. 정보 요청의 목적.....	84
2. 요청된 정보의 성격.....	84
3. 정보 요청자의 역할.....	86
4. 정보의 즉시 이용가능성.....	86
C. 제한의 필요성에 대한 심사기준(제한이 추구된 정당한 목적에 비례하는지 또는 다른 권리 및 이익과 적절한 균형을 이루었는지 여부).....	87

X. 사법제도의 권위와 공정성 및 표현의 자유 보호: 사법절차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법관의 공적 토론 참여	88
A. 사법제도 관계자들의 특수한 지위와 사법절차에서의 표현의 자유	88
1. 사법부 구성원	88
2. 변호사	89
B. 사법절차에 관한 언론 보도	90
1. 방법론	90
2. 일반원칙	91
3. 적용기준	92
a. 공익적 사안에 관한 공적 토론에 대한 기여	92
b. 문제된 발언의 성격이나 내용	93
c. 문제된 정보의 입수 방법	93
d. 공표금지 또는 제재가 비례적인지 여부	93
4. 공표로 인해 침해될 수 있는 이익들과 관련한 상황별 고려사항	95
a. 사법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표 및 진술	95
b. 공표로 인한 수사의 밀행성 및 무죄추정원칙 위반 가능성	95
c. 소송 당사자의 사생활 관련 정보의 공표	97
d. 법정모욕죄	97
C. 판사의 공적 토론 참여	99
XI. 표현의 자유와 국가안보, 영토보전 또는 공공의 안전, 무질서나 범죄 방지의 정당한 목적	101
A. 일반원칙	101
B. 제한의 정당성에 관한 심사 기준	102
1. 공익에 관한 토론에 대한 기여	102
2. 발언의 성격과 내용 및 잠재적 영향력: 맥락에 따른 텍스트 분석	103
a. 분리주의 담론과 불법 단체의 간행물	105
b. 범죄나 테러행위의 미화 및 묵인	107
c. 무질서 및 범죄 방지를 근거로 제한되는 기타 유형의 발언	108
3. 제재의 심각성	109

XII. 표현의 자유와 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110
A. 일반원칙	110
1. 보건의 보호	110
2. 도덕의 보호	111
B. 제한의 정당성에 관한 심사 기준	113
1. 발언의 성격, 내용 및 잠재적 영향력	113
a. 발언의 성격과 내용	113
b. 발언의 영향력: 전파 수단과 대상	114
2. 양형 또는 조치의 심각성	115
XIII.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118
A.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인터넷의 특성	118
1. 인터넷의 혁신적 성격	118
2. 인터넷과 다른 매체	119
B. 인터넷과 관련한 타인의 권리 보호	120
1. 총론	120
2. 취약계층 보호	122
3. 인터넷 뉴스 포털의 "의무와 책임"	122
4. 하이퍼링크의 게시에 따른 책임	123
5. "의무, 책임" 및 인터넷에서의 언론	124
C. 인터넷 접속 차단	125
D. 인터넷 접속과 재소자	127
XIV. 다원주의와 표현의 자유	128
A. 시청각 매체의 다원주의에 관한 일반원칙	128
B. 언론 다원주의와 선거	129
C. 유료 광고 규제	130
D. 시청각 자료의 배포	132
E. 매체 소유에 관한 투명성	133
F. 다원주의와 소수집단의 표현의 자유	133

XV. 제10조 및 협약의 다른 조항과의 관계: 상호의존성, 중첩성	135
1. 협약 제6조제1항	135
2. 협약 제8조	135
3. 협약 제9조	135
4. 협약 제11조.....	136
5. 제1의정서 제2조	136
6. 제1의정서 제3조	136
인용 판례 목록.....	138

일러두기

이 해설서는 유럽인권재판소(이하 "재판소", "유럽재판소" 또는 "스트라스부르 재판소")가 선고한 주요 판결과 결정에 관한 정보를 법실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재판소가 발간하고 있는 유럽인권협약해설서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그 시리즈 중 이 해설서는 유럽인권협약(이하 "협약" 또는 "유럽협약") 제10조에 관한 판례(재판소가 내린 판결이나 결정 또는 유럽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결정이나 보고서)를 분석하고 요약한 것입니다. 판례는 1957년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을 다룹니다.

독자들은 이 해설서에서 이 분야의 주요 원칙과 관련 판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용된 판례는 리딩케이스거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그리고 최근의 판결과 결정들 중에서 선별한 것입니다. * 다만, 이 해설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 제17조(권리남용 금지)를 적용하여 협약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어 제10조에 따른 심사대상성에 관한 결정이 내려진 사건(물적 관할의 흠결) 및 재판소가 협약 제17조에 비추어 권리남용 문제를 검토한 경우 제10조에 관하여 그 청구가 근거없음이 명백하다고 결정하거나 협약 위반이 없다고 판결한 사건**
- 판례법의 분명하고 명확한 변경에 따라 관련성이 없어진 사건(예를 들어, *Magyar Helsinki Bizottság v. Hungary* [GC], No. 18030/11, 2016년 11월 8일 판결 이전의 정보에 대한 접근에 관한 사건).

재판소는 판결과 결정을 통해 제소된 개별사건에 대해 판단할 뿐만 아니라, 보다 일반적으로 협약상의 원칙을 명확히 밝히고 보장하며 발전시킴으로써, 각국이 협약 당사국으로서의 이행사항을 준수하도록 합니다(*Ireland v. the United Kingdom*, § 154, 1978년 1월 18일, Series A no. 25, 더 최근의 사건으로는, *Jerónovičs v. Latvia* [GC], no. 44898/10, § 109, ECHR 2016) 및 *Nagmetov v. Russia* [GC], no. 35589/08, § 64, 2017년 3월 30일).

유럽인권협약 체제를 설립한 목적은 이처럼 공동의 이익에 관련된 공공정책의 문제들을 판단함으로써, 협약당사국들 전체의 인권보호 수준을 높이고 인권법제를 확충하는 것입니다(*Konstantin Markin v. Russia* [GC], § 89, no. 30078/06, ECHR 2012). 실제로, 재판소는 유럽인권협약이 "유럽의 공공질서에 대한 헌법적 협약"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해 왔습니다(*Bosphorus Hava Yolları Turizm ve Ticaret Anonim Şirketi v. Ireland* [GC], no. 45036/98, § 156, ECHR 2005VI).

* 인용된 판례는 재판소 및 유럽인권위원회(European Commission of Human Rights)의 공식 언어(영어 및 프랑스어) 중 하나 또는 두 언어 모두로 작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표시가 없는 한, 모든 인용문은 소재판부(Chamber)가 선고한 본안판결(judgment on the merits)에 대한 것입니다. 약칭 "(dec.)"은 재판소의 결정(decision)에서 인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GC]"는 해당 사건이 대재판부(Grand Chamber)에서 심리된 것임을 나타냅니다. 재판부의 판단이 있었지만 이 개정판 발간 당시 최종적인 것이 아닌 때에는 별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 이러한 사건은 [협약 제17조\(권리남용 금지\)에 대한 해설서](#)에서 다룹니다.

이 해설서는 협약의 해당 조항과 그에 관한 추가 의정서 조항들에 대해 주제어들을 표시해 두고 있습니다. 각 사건에서 다루진 법적 쟁점은 유럽인권협약과 그 의정서 본문에서 (대부분의 경우) 그대로 추출한 색인으로부터 선별한 주제어목록(*List of keywords*)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재판소 판례가 수록된 HUDOC 데이터베이스(*HUDOC database*)는 주제어를 통한 검색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주제어검색을 이용하면 유사한 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 판례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해당 사건에서의 논증과 결론이 주제어를 통해 요약되어 있음). 개별 사건의 주제어는 HUDOC에서 사건세부정보(*Case Details*) 태그를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UDOC 데이터베이스 및 주제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UDOC 사용자 설명서(*HUDOC user manual*)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협약 제10조 - 표현의 자유

"1.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의견을 가질 자유와 공권력의 제한을 받지 않고 국경에 관계없이 정보와 사상을 주고받을 자유를 포함한다. 이 조항은 방송, 텔레비전 또는 영화사업에 대한 국가의 허가 제도를 금지하지 아니한다.

2. 이러한 자유의 행사에는 의무와 책임이 따르므로 국가안보, 영토보전 또는 공공의 안전을 위해, 무질서나 범죄의 방지를 위해, 보건이나 도덕의 보호를 위해, 타인의 명예나 권리의 보호를 위해, 비밀리에 얻은 정보의 공개를 방지하기 위해 또는 사법부의 권위와 중립성의 유지를 위해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경우 법이 정하는 형식과 조건에 따라야 하고, 제한과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HUDOC 키워드

적극적 의무(10)

1. 표현의 자유(10-1) - 의견의 자유(10-1) - 정보를 받을 자유(10-1) - 정보를 전달할 자유(10-1) - 사상을 받아들일 자유(10-1) - 사상을 전파할 자유(10-1) - 공권력의 제한(10-1) - 국경에 관계없이(10-1) - 방송의 허가(10-1)

2. 의무와 책임(10-2) - 공권력의 제한(10-2)

법이 정하는(10-2): 접근가능성(10-2) - 예측가능성(10-2) - 남용에 대한 보호조치(10-2)
 민주사회에서 필요한(10-2) - 국가안보(10-2) - 영토보전(10-2) -공공의 안전(10-2) - 무질서 방지(10-2) -범죄 방지(10-2) -보건 보호(10-2) -도덕 보호(10-2) -타인의 권리 보호(10-2) -타인의 명예 보호(10-2) -비밀리에 얻은 정보의 공개 방지(10-2) -사법부의 권위와 중립성 유지(10-2)

I. 서론

A. 이 해설서에서 사용된 방법론

1. 위원회와 재판소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관련해 지금까지 발전시켜온 광범위한 판례를 고려할 때, 이 주제는 명확히 정의된 방법론을 통해 접근해야 한다.
2. 이 해설서는 제10조가 보호하는 권리의 내용을 다양한 주제에 따라 검토하기에 앞서 먼저 협약 제10조의 적용가능성 및 이 조항과 관련된 사건에서 가장 자주 전개된 심리적격 심사기준을 개괄한다.
3. 다음으로 재판소 심사의 여러 단계별로 특히 강조할 필요가 있는 일정한 사항들을 살펴본 후, 각 장에서 협약 제10조를 주제별로 자세히 분석한다.

4. 주제에 따라 각 장을 설명하는 나머지 부분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또는 표현의 자유 행사에 대한 제한을 정당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당한 목적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제10조제2항). 각각의 정당한 목적에 대한 분석은 관련 판례의 양과 함축하고 있는 내용들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구성된다.
5. 제10조를 다른 사건에서는 정당한 목적을 둘 이상 언급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한 주제의 장에서 언급된 사건이 다른 장과도 관련될 수 있다.
6. 정당한 목적을 살펴보는 각 절은 해당 목적과 특히 관련이 있는 일반원칙과 위원회와 재판소의 판례에서 형성된 구체적인 적용기준을 제시한다. 다만, 이러한 원칙과 적용기준은 이 해설서를 구성하는 중심 구조이기 때문에 해당 주제에만 국한하여 논의하지는 않는다. 이 해설서에서 검토한 판례들 전체에 걸쳐 서로 관련되고 중첩되는 분야들은 흔히 볼 수 있다.
7. 이 해설서에는 또한 협약의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재판소가 다원주의, 정보접근권, 내부고발자 보호,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 등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협약 체계에 통합한 특정 주제를 다른 장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여러 장으로 구성된 해설서의 구조는 재판소 판례에 해석되어 있는 이들 주제의 내재적 논리를 따른다.

마지막으로, 이 해설서는 재판소가 협약과 그 의정서에 따라 보장된 다른 권리와 관련하여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검토할 때 이용하는 방법론, 즉 이들 관계가 보완적인지 아니면 상충하는 관계인지를 살펴본다.

B. 제10조에 관한 재판소 판례의 일반적 고려사항

8. 민주주의와 불가분의 관계인 표현의 자유는 수많은 국가와 유럽의, 국제적 및 지역적 법률 문서에 수록되어, 인권보호를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정치체제로 인정되는 민주주의를 촉진하고 있다. 재판소는 협약 제10조에 대한 해석에서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필수적인 토대 중 하나이며, 민주사회의 진보와 모든 사람의 발전을 위한 기본 조건 중 하나"라고 밝혔다(*Handyside v. the United Kingdom*, § 49).
9. 재판소는 여러 차례에 걸쳐 제10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제10조는 좋은 뜻으로 받아들였거나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한 "정보"나 "사상"뿐만 아니라 불쾌감이나 충격 또는 혼란을 주는 정보나 사상에도 적용될 수 있다. 다원주의, 관용, 포용력에 대한 요구는 "민주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요소들이다(*Handyside v. the United Kingdom*, § 49; *Observer and Guardian v. the United Kingdom*, § 59).
10. 제10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표현의 자유에는 예외가 있다. 단, 표현의 자유에 대한 예외는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며, 모든 제약의 필요성은 설득력 있는 근거를 통해 확인되어야 한다(*Stoll v. Switzerland* ([GC], § 101, 또한 *Morice v. France* ([GC], § 124) 및 *Pentikäinen v. Finland* ([GC], § 87에서 거듭 강조됨).

11. 이러한 일반적 고려사항 외에도, 재판소는 판례에서 이 권리의 행사를 보호할 국가의 적극적 의무에 대해 검토했다.

이러한 적극적 의무는 무엇보다도 국가가, 국가기관이나 다수의 여론이 지지하는 내용에 반하더라도, 심지어는 국가기관이나 다수의 여론을 불쾌하게 하거나 충격을 주는 것이라 하더라도, 관련된 모든 사람이 두려움 없이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들이 공적 토론(public debate)에 참여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저술가와 언론인의 보호를 위한 실효적인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Dink v. Turkey*, § 137; *Khadija Ismayilova v. Azerbaijan*, § 158).

따라서 협약 제10조는 표현된 사상과 정보의 내용이나 그 전달 형태와 관계없이 매우 넓은 범위를 포괄한다.

II. 협약 제10조의 심리적격

A. 협약 제10조의 적용가능성

12. 제10조는 특히 정치적 성격을 갖는 것을 비롯한 특정 유형의 정보, 사상 또는 표현 형식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Markt Intern Verlag GmbH and Klaus Beermann v. Germany*, § 26). 제10조는 또한 회화와 같은 예술적 표현(*Müller and Others v. Switzerland*, § 27), 연극 제작(*Ulusoy and Others v. Turkey*) 및 상업적 성격의 정보에도 적용된다(*Markt Intern Verlag GmbH and Klaus Beermann v. Germany*, § 26; *Casado Coca v. Spain*, §§ 35-36; *Mouvement raëlien suisse v. Switzerland* [GC], § 61; *Sekmadienis Ltd. v. Lithuania*).
13. 뿐만 아니라, 재판소는 표현의 자유가 사진의 출판(*Axel Springer AG v. Germany* [GC]; *Verlagsgruppe News GmbH v. Austria (no. 2)*), 심지어 합성 사진(*Société de conception de presse et d'édition and Ponson v. France*)까지 확장된다고 거듭 언급했다.
14. 마찬가지로, 재판소는 제10조가 행위의 형태(*Ibrahimov and Mammadov v. Azerbaijan*, §§ 166-167; *Semir Güzel v. Turkey*; *Murat Vural v. Turkey*; *Mătășaru v. the Republic of Moldova*, § 29; *Shvydika v. Ukraine*, §§ 37-38), 의복에 관한 규칙(*Stevens v. the United Kingdom*, 위원회 결정) 또는 의복과 관련된 상징(*Vajnai v. Hungary*, § 47)에도 적용된다고 보았으며, 여기에는 교도소 수감 중의 표현도 포함된다(*Donaldson v. the United Kingdom*).
15. 마찬가지로, 재판소는 성당에서의 향의 공연이 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이 혼합된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협약 제10조의 범위에 속하는 예술적 표현과 정치적 표현의 한 형태에 해당한다고 확인했다(*Mariya Alekhina and Others v. Russia*, § 206). *Tatár and Fáber v. Hungary* 사건에서 재판소는 국회의사당 난간에 더러운 빨래를 걸어 둔 두 사람의 짧은 불법 집회가 제10조에 따라 보호되는 표현의 한 형태라고 판결했다.
16. 재판소는 또한 보이콧을 시위 표현의 수단으로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시위에 나설 것을 요구하면서 자신들의 반대의견을 전달하고자 했던 보이콧 촉구 행동이 원칙적으로 협약 제10조에 명시된 보호범위에 속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재판소는 "이 사건의 보이콧 촉구는 향의표현과 차등 대우(differential treatment)의 선동이 결합되었으며,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에 대한 차별(discrimination)을 선동하는 촉구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재판소는 차별에 대한 선동이 폭력과 증오의 선동과 마찬가지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때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선 가운데 하나라고 거듭 강조하면서도 차등 대우를 선동하는 것이 차별을 선동하는 것과 항상 똑같지는 않다고 언급했다(*Baldassi and Others v. France*, §§ 63-64).
17. 또한 재판소는 제10조가 모든 환경에 적용된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재판소는 표현의 자유가 군대 막사(*Grigoriades v. Greece*, § 45) 또는 교도소의 입구에서 멈춰 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적용된다고 판결했다(*Schweizerische Radio- und Fernsehgesellschaft SRG v. Switzerland*, § 22; *Bamber v. the United Kingdom*, 위원회 결정).

18. 이와 관련하여, *Nilsen v. the United Kingdom* (dec.) 사건에서 교도소 당국은 연쇄살인범이 자서전을 출판하지 못하도록 여러 조치를 취했다. 이 사건에서 재판소는 제10조가 적용되며, 출판할 목적으로 교정할 수 있도록 청구인에게 원고를 돌려주지 않은 것은 표현의 자유 행사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의 제한이 정당한 목적에 비례했다고 판결했다(§ 44).
19. 법률정보를 게시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재소자가 접근할 기회를 제한했던 조치와 관련된 *Kalda v. Estonia* 사건에서, 재판소는 제10조가 재소자의 인터넷 접속 또는 특정 인터넷 사이트의 접속을 허용해야 하는 일반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재판소는 국가가 재소자의 인터넷 접속을 허용하면서도 특정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금지할 경우 협약 제10조에 대한 제한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45).
20. 정치적 이유로 공무원을 해임하는 경우 또한 협약 제10조에 따른 심사가 보장된다 (*Vogt v. Germany*; *Volkmer v. Germany* (dec.); 또한 정반대의 판결이 내려진 사건에 관해서는 *Glaser v. Germany*, § 53 참조). 청구인들이 교직에서 해임된 사건들에서는 일상적으로 사상과 정보를 전달하는 교직의 특성이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21. 반대로, 재판소는 공무원에 대한 신원조회절차를 명시한 특별법의 적용에 따라 청구인들이 과거 KGB에서 근무한 사실로 인해 각각 세무조사관과 검사 직위에서 해임된 사건에서 이러한 조치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으며, 당해 사건에서 협약 제1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Sidabras and Džiautas v. Lithuania*, §§ 71-72).
22. 그 밖에도, 재판소는 협약 제10조가 사법(私法)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노사관계와 관련된 상황에도 적용된다고 판결했다(*Herbai v. Hungary*, § 37; *Fuentes Bobo v. Spain*, § 38).
23. 개인적인 서신에 포함된 의견(*Zakharov v. Russia*, § 23; *Sofranschi v. Moldova*, § 29; *Marin Kostov v. Bulgaria*, § 42) 또는 비공개 회의에서 나온 의견(*Raichinov v. Bulgaria*, § 45) 또한 공적인 성격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0조의 적용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24. 재판소는 또한 자신이 해당 발언을 실제로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이 제10조 따른 보호를 주장할 수 있으며, 청구인이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발언에 근거하여 손해배상명령을 내린 국내 법원의 결정이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 행사를 간접적으로 제약했다고 판결했다. 청구인의 주장이 옳은 것으로 가정할 경우, 이러한 손해배상명령은 청구인이 앞으로 비슷한 비판을 하지 못하도록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었다 (*Stojanović v. Croatia*, § 39).
25. 이른바 의견을 밝히지 않을 "소극적 권리"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이러한 권리가 협약 제10조에 따라 보호된다는 점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이 문제는 개별 사건별로 다루어야 한다고 판결했다(*Gillberg v. Sweden* [GC], § 86). 이 문제는 이전에 범죄를 저질러 유죄를 선고받은 자가 거짓 증언에 대해 또다른 유죄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된 *Wanner v. Germany* (dec.) 사건의 쟁점이었다. 그는 공범들의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하면서 계속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재판소는 제10조를 적용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진실하게 증언해야 하는 시민의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한 유죄판결은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이었다고 판결했다(§§ 38 및 44).

26. 재판소는 제10조가 선거나 국민투표에서 투표할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Moochan and Gillon v. the United Kingdom* (dec.), § 48).
27. 국가기관이 시민권을 신청한 외국인에게 국가에 대한 충성심에 대한 재량적 평가에 따라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기로 한 사건에서, 재판소는 제1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Boudelal v. France* (dec.), § 30). 특히 재판소는 귀화결정의 목적상 충성심 평가는 정권을 잡은 정부에 대한 충성심이 아니라 국가와 헌법에 대한 충성심을 의미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소는 민주주의 국가가 시민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국가에 대한 충성, 특히 해당 국가의 근본적인 가치인 헌법 원칙에 대한 충성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입장이다(*Petropavlovskis v. Latvia*, § 85).
28. 재판소는 여러 사건에서 제17조(권리남용 금지)에 규정된 협약에 의한 보호의 철회를 근거로 협약 제1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사건은 제17조 해설서에서 자세히 검토한다.

B. 심리적격의 기타 쟁점

29. 협약 제10조와 관련하여 심리적격에 대한 세 가지 반대 사유가 언급될 수 있다.

1. 국내 구제절차 경로(제35조제1항)

30. 재판소는 *Fressoz and Roire v. France* [GC] 사건에서 이 규칙의 목적이 회원국에 의한 권리침해의 주장이 재판소에 제기되기에 앞서, 회원국이 보통은 국내 법원의 절차를 통해 협약 위반을 방지하거나 시정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재판소는 이 원칙이 형식에 지나치게 엄매이지 않고 어느 정도 유연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청구인이 나중에 스트라스부르 재판소에 제기하고자 하는 청구를 적어도 국내법에 규정된 형식적 요건과 기한에 따라 실질적인 방식으로 국가기관에 제기하였다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37-39).
31. 청구인이 자신의 사건을 심사하는 국내 법원의 어떤 절차에서도 협약 제10조에 근거하여, 또는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효력을 갖는 국내법에 근거하여 주장한 적이 없는 경우, 재판소는 협약 제3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국내 구제절차 미완료를 이유로 청구를 각하한다(여러 판례 중에서도, *Aydar v. Turkey* (dec.) 참조).
32. 또한, 재판소는 이 규칙이 지켜졌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개별 사건의 사정을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때 해당 국가의 법 체계에 공식적인 구제절차가 존재하는지 여부뿐 아니라, 구제절차가 운영되는 전반적인 법적, 정치적 상황과 청구인의 개인적 상황을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이는 사건의 모든 사정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국내 구제절차를 경로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Yılmaz and Kiliç v. Turkey*, § 38).

33. 또한 재판소는 국내 법원이 직권으로 표현의 자유의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 언급할 경우 이러한 언급이 제10조 사건의 국내 구제절차 경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했다(*Yılmaz and Kiliç v. Turkey*, § 42).
34. *Karácsony and Others v. Hungary* [GC] 사건에서 피청구국은 의회 청문회에서 의원으로서 벌인 행동으로 징계절차에 회부되어 벌금 납부명령을 받은 청구인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하지 않았으므로 국내 구제절차를 경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소는 헝가리 법에는 징계결정의 시정과 관련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청구인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라도 징계결정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시정도 요청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피청구국의 이의제기를 기각했다(§§ 81-82); 또한 *Szanyi v. Hungary* (§ 18) 참조).

2. 피해자 지위(제35조제3항제(a)호)

35. 일반적으로, 협약은 협약에 명시된 권리를 해석하기 위한 민중소송의 제기를 상정하고 있지 않으며, 자신이 직접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이 단순히 국내법 조항이 협약에 위반될 수 있다며 청구를 제기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는다. 모든 시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령이지만 청구인에게 부과되는 의무나 미치는 영향과 그 법령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재판소는 청구인이 피해자 지위를 가진다고 보지 않는다(*Dimitras and Others v. Greece* (dec.), § 31). 다만, 청구인들이 그 법령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위험이 있는 집단에 속하거나 법령에 맞춰 자신의 행동을 바꾸지 않으면 기소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법령의 개별적인 집행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청구인들은 그 법령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Burden v. the United Kingdom* [GC], §§ 33-34 및 이 사건에서 언급된 참조 판례: *Open Door and Dublin Well Woman v. Ireland*, § 44).
36. *Margulev v. Russia* 사건에서는 신문사를 상대로, 특히 청구인이 한 말에 대해 민사상 명예훼손 소송이 제기되었다. 재판소는 러시아 법원이 해당 명예훼손 소송에서 청구인의 제3자 소송참여를 허용함으로써 청구인의 권리가 소송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암묵적으로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재판소는 청구인의 권리의무가 해당 명예훼손 소송의 결과에 따라 좌우되고,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내렸다(§ 36-37).
37. 특정 유형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을 매우 광범위하게 억압하여 저자들이 저술활동을 할 때 일종의 자기검열을 하도록 만드는 법령의 존재 자체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해당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 사건의 저자들은 피해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Vajnai v. Hungary*, § 54; *Altuğ Taner Akçam v. Turkey*, §§ 68-83).
38. 하지만, 재판소는 피해자 지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위반의 결과로 청구인에게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와 청구인 사이에 충분히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리스 공영방송사 폐쇄에 관한 사건에서, 재판소는 방송사 폐쇄의 결과로 정보를 전달할 권리에 대한 위반의 피해자가 되었다고 주장한 전직 직원이 실제로 수행한 활동을 살펴보았다. 재판소는 청구인이 재무관리자로서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제10조 위반을 주장할 피해자 지위가 없다고 결정했다(*Kalfagiannis and Prospert v. Greece* (dec.), § 45). 정보를 받을 권리에 대한 위반의 피해자임을 주장하기 위해 청구인이 제시했던 그리스 국민이라는 자격에 대해서도 같은 결론이 내려졌다(§§ 46-48).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언론종사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연맹 또한 피해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는데, 해당 방송사 폐쇄가 제10조에 의해 보호되는 그 노동조합연맹의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50).

39. *Rotaru v. Romania* [GC] 사건에서 재판소는 국가기관이 명시적으로나 실질적으로 협약 위반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는 한 청구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내려진 결정이나 조치는 원칙적으로 "피해자" 지위를 박탈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35; 또한 *Amuur v. France*, § 36 참조).
40. 예를 들어, 재판소는 청구인의 권리가 침해된 사실을 인정한 내용이 없으며 청구인이 문제의 징계로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수익 손실을 보상받을 가능성을 제공하지 않은 사면 조치가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Albayrak v. Turkey*, § 33).
41. 대통령의 사면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형사 유죄판결의 억제적 효과를 제거하지 못한다. 사면은 루마니아 대통령의 재량권에 속하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온정적 조치는 수형자가 형기를 모두 채우지 않고도 출소할 수 있도록 해주지만, 유죄판결 자체를 없었던 일로 하지는 않는다(*Cumpănă and Mazăre v. Romania* [GC], § 116).
42. 청구인들이 쿠르드어 교육을 보장받기 위한 청원을 제출한 것에 징벌적 성격의 처벌을 받은 사건에서 터키 법원이 청구인들의 권리가 제한되었다고 인정한 바도 없었고 이에 대해 보상도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들이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사실 자체로 피해자 지위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Döner and Others v. Turkey*, § 89; 7건의 형사소송 결과 무죄를 선고받은 신문사주와 관련된 사건으로는, *Ali Gürbüz v. Turkey*, §§ 63-68 참조).
43. 청구인이 제기하고 있는 협약 위반의 피해자 지위를 여전히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청구인의 사정을 사후적으로 검토해서 재판소가 판단할 문제이다(*Centro Europa 7 S.r.l. and Di Stefano v. Italy* [GC], § 82). 따라서, 재판소는 텔레비전 방송부문에 종사하는 유한책임회사인 청구인 기업이 제기했던 문제 상황을 종식시키는 주파수 배정과 이어서 행해진 보상이 협약 위반을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이거나 청구인 기업의 방송이 금지되었던 기간에 대한 보상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ibid.*, § 88).
44. 재판소의 견해에 따르면, 절차상의 이유로 특정 형사법에 근거한 형사소추는 중단되었으나 당사자가 유죄판결을 받아 처벌받을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경우, 해당 당사자가

협약 위반의 피해자 지위를 주장하는 것은 유효하다(여러 판례 가운데 *Bowman v. the United Kingdom*, § 29 참조).

45. 따라서, 기자들을 상대로 형사고발이 접수되어 형사소추가 시작되었으나 3년 동안 형사소송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던 사건의 경우, 해당 형사소추는 비록 3년 후 유죄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형사절차는 종료하였더라도 기자들에 대한 위축효과(chilling effect)를 유발했으므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었다(*Yaşar Kaplan v. Turkey*, § 35; 또한, 같은 취지의 사건에 관해서는 *Aslı Güneş v. Turkey* (dec.) 참조). 집행유예기간 동안의 제한 역시 재판소가 몇몇 사건에서 제10조 위반으로 판단하게 된 요인이었다(*Şener v. Turkey*, § 46; *Krasulya v. Russia*, § 44).
46. 마찬가지로, 한 변호사가 형사소송에서 검사가 채택한 소송전략을 비판한 것에 대해 단순 과실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Nikula v. Finland*의 사건에서, 재판소는 해당 유죄판결이 결국 대법원에서 파기되고 부과된 벌금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의뢰인의 이익을 열심히 변호해야 할 변호사의 의무에 위축효과를 미칠 수 있다고 판결했다(§ 54).

3. 상당한 불이익의 결여(제35조제3항제(b)호)

47. 재판소가 표현의 자유가 문제된 사건에서 "상당한 불이익의 결여"라는 심리적격심사기준을 적용할 수 있었던 것은 아주 가끔뿐이었다.
 - *Eon v. France* 사건에서, 재판소는 국가원수모독죄를 형사상 범죄로 존속시켜야 할 것인지와 국가원수모독죄가 협약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프랑스의 전국적인 논란을 고려한 후, 상당한 불이익 기준을 주장한 선결적 항변을 기각했다 (§§ 34-36).
 - *Margulev v. Russia* 사건에서, 재판소는 청구인이 그 안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밝혔던 신문사 편집국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이 제기된 결과 청구인이 위축효과를 경험한 사실과 민주사회의 적절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언론의 본질적 역할 등을 고려한 후, 마찬가지로 선결적 항변을 기각했다(§ 42; *Gafiuc v. Romania*, § 39; *Panioglu v. Romania*, § 75 참조).
 - 이와 대조적으로, *Sylka v. Poland* (dec.) 사건에서, 재판소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사건에서 상당한 불이익 심사기준을 적용할 때는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재판소의 철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상당한 불이익 심사기준에 따라 제기된 선결적 항변을 받아들였다. 그 심사는 공익에 관한 토론에 기여하는지 여부와 문제된 사건이 언론이나 다른 뉴스 매체와 관련되는지 등과 같은 요소들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또한, *Anthony France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위원회 결정 참조).

III. 재판소의 제10조 사건 심사: 단계별 분석

A. 표현의 자유 행사에 대한 제한 여부 및 제한의 형태

48. 재판소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보통 "형식, 조건, 제한 또는 처벌"과 같은 매우 다양한 조치를 수반할 수 있다고 본다(*Wille v. Liechtenstein* [GC], § 43).
49. 또한, 재판소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여부를 규명함에 있어 각국의 법원이 제시한 설명에 얼마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몇몇 사건에서 재판소는 청구인에 대한 유죄판단의 증거가 표현의 형식에 관한 것으로만 이루어졌다는 사실로부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인정했다(*Yılmaz and Kılıç v. Turkey*, § 58; *Bahçeci and Turan v. Turkey*, § 26).
50. 터키 형사법원이 청구인에게 유죄판결을 내렸으나 청구인은 그 판결의 근거가 된 내용들에 대해 자신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며 부인한 사건에서, 재판소는 터키 형사법원의 유죄판결이 표현의 자유 행사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재판소는 이렇게 판결하지 않을 경우 청구인이 해당 기소 혐의를 인정하도록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는 협약 제6조에서 보호하는 공정한 재판의 핵심 개념인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에 반하는 것과 다름없을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관련 당사자가 문제의 행위에 관여한 사실을 부인했으므로, 유죄판결이 이러한 제한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해당 당사자가 협약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악순환에 빠질 것으로 보았다(*Müdür Duman v. Turkey*, § 30).
51. 피해자 지위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제한되었는지에 대한 문제는 이 권리의 행사를 위축시킬 가능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이 석방 명령이나 무죄판결이 내려지며 상당히 신속하게 종결된 사건에서, 재판소는 다른 관련 소송절차가 없다면 형사소송절차가 청구인의 출판활동을 억제하는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Metis Yayıncılık Limited Şirketi and Sökmen v. Turkey* (dec.), §§ 35-36).
52. 재판소는 표현의 자유의 향유를 제한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해 개별 사안별로(case-by-case) 심사한다. 어느 경우에도, 재판소는 문제된 조치가 "위축효과"를 갖는다는 주장만을 제기할 뿐, 그러한 효과가 발생한 구체적인 상황을 분명히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약 제10조에서 의미하는 제한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스위스 방송협회 외 대 스위스(*Schweizerische Radio- und Fernsehgesellschaft and Others v. Switzerland*, § 72)).
53. 예를 들어, 재판소 판례에 따라 다음의 상황들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해당할 수 있다.
- 유죄판결(*Lindon, Otchakovsky-Laurens and July v. France* [GC], § 59)에 따른 벌금형(*Kasabova v. Bulgaria*) 또는 징역형(*Cumpănă and Mazăre v. Romania* [GC])

- 손해배상명령(*Tolstoy Miloslavsky v. the United Kingdom*, § 51), 상징적인 수준(적은 금액)의 경우에도(*Paturel v. France*, § 49)
- 집행유예를 선고한 경우를 포함한 유죄판결(*Otegi Mondragon v. Spain*, § 60)
- 단순히 형사소송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 또는 불명확한 문언으로 작성되었고 법원의 해석도 불명확한 법령에 근거하여 조사를 받을 실질적인 위험(*Altuğ Taner Akçam v. Turkey*)
- 출판 금지(*Cumhuriyet Vakfı and Others v. Turkey*)
- 출판물 압수(*Handyside v. the United Kingdom*)
- 수감 중인 청구인에게 친척이 보낸 신문과 잡지 및 청구인이 갖고 있던 라디오를 교정당국이 압수한 것(*Rodionov v. Russia*)
- 방송 주파수를 허가하지 않기로 한 결정(*Centro Europa 7 S.r.l. and Di Stefano v. Italy*)
- 통신위성 신호 수신을 금지한 사법기관의 결정(*Khurshid Mustafa and Tarzibachi v. Sweden*, § 32)
- 광고 금지(*Barthold v. Germany*)
- 환자 진료를 비판한 의사에 대해 직업윤리를 위반했다며 내려진 징계(*Frankowicz v. Poland*) 또는 법률 개혁을 비판한 검사에 대한 징계(*Kövesi v. Romania*, § 190).
- 취재원 공개 명령(*Goodwin v. the United Kingdom*), 집행되지 않은 취재원 공개 명령(*Financial Times Ltd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 56) 또는 이미 취재원이 밝혀진 상태에서 기자에게 취재원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시하도록 강제하는 행위(*Becker v. Norway*)
- 판사인 청구인이 헌법적 사안에 대해 국가원수의 의견과 상반되는 의견을 표명했다는 이유로 국가원수가 청구인을 다른 공직에 임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Wille v. Liechtenstein* [GC], § 50)
-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교도소 내부 촬영 및 피구금자와의 인터뷰 허가를 거부한 것(*Schweizerische Radio- und Fernsehgesellschaft SRG v. Switzerland*) 및 망명 신청자에게 수용소 생활 여건에 대한 진술을 얻기 위한 수용소 출입 허가를 거부한 것(*Szurovecz v. Hungary*)
- 시위자의 체포 및 구금(*Steel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 92; *Açık and Others v. Turkey*, § 40)

- 법률에 반대하는 시위를 조직한 비정부기구 간부들에게 검찰이 보낸 경고장(*Karastelev and Others v. Russia*, §§ 70-76)
- 기자가 언론기사 작성을 위해 이용한 기록물 보관소의 자료조사 허가를 취소한 것(*Gafiu v. Romania*, § 55)

54. 법관에 대한 임용, 해임 또는 징계절차와 관련된 사건에서, 문제된 조치가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 행사에 대한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때, 재판소는 먼저 사건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고려하여 그 범위를 결정했다(*Baka v. Hungary* [GC], § 140; 또한 *Wille v. Liechtenstein* [GC], §§ 42-43; *Kayasu v. Turkey*, §§ 77-79; *Kudeshkina v. Russia*, § 79; *Poyraz v. Turkey*, §§ 55-57; *Harabin v. Slovakia*, § 149; *Kövesi v. Romania*, § 190 참조; 또한, 관련 시험에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의 블로그 게시물과 국가기관을 비판한 발언을 이유로 후보자에게 전문위원(court expert) 직위를 수여하지 않은 결정에 관해서는 *Cimperšek v. Slovenia*, § 57 참조).

B. 세 가지 "심사기준": 제한의 합법성, 정당성, 민주사회에서의 필요성

55. 재판소는 해당 제한이 "법이 정하는" 것이었는지, 제10조제2항의 의미 내에서 "정당한 목적 중 하나를 추구"했는지, 마지막으로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이었는지 심사하며,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소의 결론은 대부분 이 심사 결과에 따라 좌우된다.

1. "제한의 합법성" 심사

56.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제10조제2항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협약 위반이 발생한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법이 정하는" 것인지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국내법을 해석하는 일은 국가기관, 특히 법원에 우선적인 권한과 책임이 있다. 국가기관이나 법원의 해석이 자의적이거나 명백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재판소의 역할은 그 해석의 효과가 협약과 양립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데 국한된다(*Cangi v. Turkey*, § 42).

57. 재판소는 국민이 자신의 행위를 규율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언을 통해 특정 행동에 따른 결과를 해당 상황에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정확성을 갖추지 않은 규범은 "법"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소는 결과를 절대적으로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그와 같은 절대적인 예측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Perinçek v. Switzerland* [GC], § 131). 확실성은 바람직하지만, 결과적으로 과도한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으며, 법은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많은 법령이 어느 정도 모호한 문언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법령의 해석과 적용은 실무에서 다뤄야 할 문제이다(*Lindon, Otchakovsky-Laurens and July v. France* [GC], § 41).

58. 재판소는 또한 단순히 법률조항이 자신의 사건에서 처음으로 적용된다고 해서 예측가능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Satakunnan Markkinapörssi Oy*

and Satamedia Oy v. Finland [GC], § 150; *Tête v. France*, § 52).

59. 그 밖에도, 재판소는 예측가능성과 접근가능성이라는 개념의 범위는 문제된 법령의 내용, 적용되는 분야, 규율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지위와 숫자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고 강조했다. 특정 행동에 따른 결과를 해당 상황에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련 당사자가 적절한 법률 자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도 법령은 여전히 예측가능성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직업 활동을 수행할 때 높은 수준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특히 이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험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직업 활동에 따른 위험을 평가할 때 특히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는 기대를 받게 된다(*Chauvy and Others v. France*, §§ 43-45).
60. 또한, 재판소는 문제의 제한 조치가 시행되는 상황에 따라 예측가능성 개념의 범위가 달라진다고 본다. 따라서 민주제도에서 유권자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투표 과정의 온전성이 중요하므로 선거관련 사항에 대한 제한 조치는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Magyar Kétfarkú Kutya Párt v. Hungary* [GC], § 99).
61. 재판소는 협약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와 관련하여 법령 조항에 대해 두 가지 이상의 해석가능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예측가능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요컨대, 제10조와 관련하여 *Perinçek v. Switzerland* [GC], § 135; *Vogt v. Germany*, § 48 참조). 이러한 맥락에서 법령이 새로운 범죄를 규정하는 경우, 형사법원에서 이를 해석하고 적용하기 전까지는 이 법령의 의미에 대한 불확실성의 요소가 항상 존재할 것이다(*Jobe v. the United Kingdom* (dec.)).
62. 재판소는 법령의 예측가능성을 판단할 때 명확성과 정확성의 측면에서 법령의 질적인 면(quality of law)을 검증하기도 한다. 재판소는 이와 관련하여 “법이 정하는”이란 표현은 문제된 조치가 국내법에 일정한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해당 법령이 접근가능성과 일정한 질을 갖출 것을 의미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재판소는 국가 관보에 게재된 법령은 접근가능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63. 재판소는 정당의 회의에서 사회자인 청구인이 경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의 참석자가 쿠르드어로 발언하는 것을 중단시키고 금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한 청구인에 대한 유죄판결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판결했다. 재판소는 정당을 규율하는 국내법 조항이 명확하지 않아 청구인이 형사고발을 당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없었다고 판결했다(*Semir Güzel v. Turkey*, §§ 35 및 39-41).
64. *Pinto Pinheiro Marques v. Portugal* 사건에서, 재판소는 다른 유형의 발언을 처벌하는 법령 조항이 청구인의 발언에 적용되었다고 언급하면서 청구인의 진술을 제한할 충분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37-39).
65. 마찬가지로, 재판소는 두 법률조항의 문언 사이의 모순과 그 모순을 해결할 명확한 방법이 없다는 점(*Goussev and Marenk v. Finland*, § 54) 또는 판례 간 불일치(*RTBF v. Belgium*, § 115)를 언급하면서 제한의 합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66. 다른 사건에서, 재판소는 범죄를 기소할 수 있는 국가의 재량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경우 선택적 집행을 통해 법을 악용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형벌조항은 (이 사건에서는 혐오표현과 관련) 관련 범죄의 범위를 명확하고 정확하게 정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Savva Terentyev v. Russia*, § 85; 또한 *Altuğ Taner Akçam v. Turkey*, §§ 93-94).
67. 몇몇 사건에서 재판소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합리적인 의혹에 근거하지 않은 공판전구금은 협약 제5조제1항제(c)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결하였고, 그 판결을 인용하여, 청구인에 대한 공판전구금이 협약 제10조제2항이 요건인 법에 근거하지 않은 제한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렸다(*Ragıp Zarakolu v. Turkey*, § 79; *Sabuncu and Others v. Turkey*, § 230).
68. *Editorial Board of Pravoye Delo and Shtekel v. Ukraine* 사건에서, 재판소는 기자가 인터넷에서 입수한 정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국내법에 적절한 보호조치가 수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인들이 문제의 기사를 게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적절히 예상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보았다. 재판소는 이를 근거로 협약 제10조제2항에 포함된 합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66).
69. 문제된 법률에는 국민투표가 진행되는 중간에 투표용지의 사진을 촬영하여 모바일 앱에 익명으로 사진을 올리고 공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었던 사건에서, 재판소는 국가기관이 적용한 법률조항들은 그 잠재적 영향력이 매우 불확실했다며 그 조항들이 예측가능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Magyar Kétfarkú Kutya Párt v. Hungary* [GC]).
70. "반극단주의" 법률에서 경고, 주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무제한적인 재량을 검찰에 부여한 것과 관련한 사건에서 재판소는 예측가능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결론내렸다. 재판소는 이와 관련하여 관련 국내법 절차에 규정된 사후적인 배상절차로는 비사법기관의 자의적인 권한행사나 재량권의 남용을 방지하는 보호수단이 될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Karastelev and Others v. Russia*, §§ 78-97).
71. 또한 재판소는, 이전에 모호하고 예측할 수 없다고 선언된 바 있는 법률조항에 대한 심사를 반드시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에 관한 심사에만 국한할 필요는 없고, 민주사회에 본질적인 평등, 다원주의, 관용의 관념들과 양립할 수 없는 경우 그 법률의 필요성을 심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결했다(*Bayev and Others v. Russia*, § 83).
72. *ATV Zrt v. Hungary* 사건에서는 뉴스방송 진행자가 뉴스에 대한 어떠한 의견도 표명할 수 없도록 한 법률이 문제되었다. 재판소는 이 사건의 쟁점이 추상적인 관점에서 관련 조항이 충분히 명확하게 규정되었는지가 아니라, 문제의 발언(정당을 "극우" 정당이라고 표현)이 공표될 당시, "극우" 정당이라는 표현이 사건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의견"에 해당한다는 것을 청구인 텔레비전 방송사가 알고 있었거나 (필요하다면 적절한 법률 자문을 통해) 알아야 했는지라고 보았다. 재판소는 민주사회에서 뉴스 프로그램 중 "극우"라는 용어를 금지할 필요가 있었는지는, 그 제한이 추구하는 정당한 목적과 그 사건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았을 때 법원이 그 법률조항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는지와 밀접하게 관련되었다고 보았다(*ATV Zrt v. Hungary*, §§ 35 및 37).

73. (일정한 경우 면책특권을 배제할 수 있게 하고 그것을 소급적용할 수 있게 하는) 개정된 헌법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과거 정치적 발언을 문제삼아 테러혐의로 기소하는 것은, 재판소가 볼 때, 일회적인 인신공격적 헌법개정의 결과로서, 예측할 수 없는 제한에 해당했다(*Selahattin Demirtaş v. Turkey (no. 2)* [GC], §§ 269-270).
74. 재판소는 또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형벌조항을 광범위하게 해석하여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행사를 무장테러조직에 가입하거나, 조직 또는 지휘하는 것과 동일하게 보는 것은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Selahattin Demirtaş v. Turkey (no. 2)* [GC], § 280).

2. "제한이 추구하는 목적의 정당성" 심사

75.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당한 제한의 목적은 협약 제10조제2항에 망라되어 있다. 재판소는 이 심사단계에서 제한이 그 근거가 되는 정당한 목적의 증진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거나(*Bayev and Others v. Russia*, §§ 64 및 83, 이 사건에서 재판소의 심사는 문제된 법률이 일반적인 조치로 필요한 것인지 여부에 초점을 맞춤), 또는 국가가 근거로 제시한 정당한 목적 중 하나만 인정하고 다른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Morice v. France* [GC], § 170; *Perinçek v. Switzerland* [GC], §§ 146-154; *Stoll v. Switzerland* [GC], § 54; *Open Door and Dublin Well Woman v. Ireland*, § 63).
76. 재판소는 제한의 정당한 목적이 없으면 그 자체로 협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그 제한이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이었는지는 검토하지 않기로 할 수 있다(*Khuzhin and Others v. Russia*, § 117, 협약 제8조에 따라 청구한 사건). 재판소는 사건의 사정에 따라 심사를 계속하여 그 제한이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이었는지 규명할 수도 있다(*Kövesi v. Romania*, § 199).

3. "민주사회에서 제한의 필요성" 심사

77. 재판소는 *Handyside v. the United Kingdom* 판결 이후 여러 사건들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일반적인 원칙을 거듭 제시했다. 재판소가 이 원칙을 요약한 내용은 스톨 대 스위스 [GC] 사건(§ 101)에 정리되어 있으며, *Morice v. France* [GC] (§ 124) 및 *Pentikäinen v. Finland* [GC] (§ 87)에서 반복해서 제시되었다.
78. 재판소는 이와 같이 판례를 통해 제한이 "추구된 정당한 목적에 비례하는지" 여부에 대한 독자적인 개념을 발전시켰다. 재판소는 목적의 비례성 여부를 판단할 때 사건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며, 재판소 판례에서 확립된 기준을 바탕으로 심사하되 다양한 원칙과 해석 도구를 보충적으로 활용한다.

이러한 심사기준은 다양한 범주의 사건들에서 제10조의 실제 적용에 관해 다루는 장에서 자세히 검토하기로 한다.

79. 재판소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필요성을 판단하면서 제시한 논증에서 정의하고 사용하면서 명시한 원칙과 해석방법들은 아래에 설명되어 있다.

a. "강력한 사회적 필요"의 존재

80. 강력한 사회적 필요는 "없어서는 안 될(indispensable)"이라는 표현과 동의어는 아니지만, "허용되는(admissible)", "통상적인(ordinary)", "유용한(useful)", "합리적인(reasonable)" 또는 "바람직한(desirable)"과 같은 표현이 가진 유연성 또한 지니고 있지 않다(*Gorzelik and Others v. Poland* [GC], § 95; *Barthold v. Germany*, § 55; *The Sunday Times v. the United Kingdom (no. 1)*, § 59).

81. 회원국은 강력한 사회적 필요가 존재하는지 판단함에 있어 일정한 판단재량을 누리지만, 언론의 자유가 쟁점이 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회원국이 행사할 수 있는 판단재량은 제한적이다(*Dammann v. Switzerland*, § 51). 따라서, 재판소는 그러한 필요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국가의 판단재량을 인정하면서도, 국가가 이와 관련하여 제시한 주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예를 들어, *Eerikäinen and Others v. Finland*, § 71; *Fáber v. Hungary*, § 45 참조).

82. 재판소가 강력한 사회적 필요의 존재에 관해 항상 그 결론에서 명시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재판소는 암묵적으로 그러한 필요의 존재 여부에 대해 판단하면서, 국가기관이 제시한 이유들이 적절하고 충분한지, 그리고 국가의 판단재량에 속하는지를 언급한다(예를 들어, *Janowski v. Poland* [GC], §§ 31 및 35; *Bladet Tromsø and Stensaas v. Norway* [GC], §§ 58 및 73).

83. 마지막으로, 재판소는 강력한 사회적 필요 이외의 다른 요소들을 더 중요하게 고려하여 그 요소들에 심사의 초점을 맞출 수도 있을 뿐 아니라, 서로 충돌하는 이익들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국가기관이 제시한 이유가 적절하고 충분한 것이었는지를 중심으로 심사할 수도 있다(*Pentikäinen v. Finland* [GC], § 114). 따라서, 공공장소에서의 시위를 보도하는 언론인에게 제10조가 제공하는 보호의 한계와 그 조항에 따른 언론인의 의무가 문제된 *Pentikäinen v. Finland* [GC] 사건에서, 대재판부는 먼저, 문제된 행동이 청구인의 언론활동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경찰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이었다는 점을 언급했다. 나아가 재판소는 제10조가 언론인에게 확실한 보호를 제공한다고 해서 언론인들이 형벌법규를 준수할 의무가 원칙적으로 면제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강력한 사회적 필요"에 관하여 재판소가 이 사건의 논증에서 부여한 비중과 소재판부에서 부여한 비중의 비교는 § 64 참조).

b. 제재의 성격과 심각성 심사

84. 재판소는 제한이 "검열"의 역할을 하는지에 관해 특히 주의를 기울이며, 형벌이 언론의 비판을 억제하기 위한 일종의 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Bédat v. Switzerland* [GC], § 79). 따라서, 재판소는 기사의 공표 이전에

기자에 대해 내려진 유죄판결은 시사문제에 대해 충분한 정보에 입각한 기사작성을 위한 탐사, 즉 언론인의 업무에서 본질적인 부분에 손상을 가하는 일종의 검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Dammann v. Switzerland*, § 57). 재판소는 신문의 발행 및 배포의 중지명령을 "검열"이라고 표현했으며, 이러한 명령은 그 기간이 짧다고 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으로 보았다(*Ürper and Others v. Turkey*, § 44; *Gözel and Özer v. Turkey*, § 63 참조).

85. 마찬가지로, 재판소는 그림의 전시 및 그 그림을 찍은 사진의 출판을 기간과 장소를 한정하지 않고 전면 금지한 가처분명령이 추구된 목적에 비례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Vereinigung Bildender Künstler v. Austria*, § 37; 비례성 심사에서의 시간의 경과와 관련한 사안으로는 *Éditions Plon v. France*, § 53 참조).

i. 가장 덜 제한적인 조치

86. 재판소는 제한이 민주사회에서 필요하고 비례적인 것이 되려면, 관련 기본권을 보다 덜 심하게 제한하고도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없어야 한다고 본다(*Glor v. Switzerland*, § 94).

87. 따라서 재판소는 비례성심사에서 법원의 판사가 몇 가지 가능한 조치들 중 가장 덜 제한적인 제한 조치를 택한 사실(*Axel Springer SE and RTL Television GmbH v. Germany*, § 56; *Perinçek v. Switzerland* [GC], § 273; *Tagiyev and Huseynov v. Azerbaijan*, § 49) 또는 청구인 단체의 권리에 대한 최소한의 제약이 되도록 보장한 사실을 중요하게 고려했다(*Mouvement raëlien suisse v. Switzerland* [GC], § 75).

88. 낙태 처벌을 반대하는 운동을 배를 타고 해상에서 벌였던 청구인 단체는 포르투갈 영해에 진입하고자 했으나 장관의 명령으로 금지되었다. 재판소는 국가기관이 기본권을 제한하기로 한 경우 그 권리에 대한 침해를 가급적 최소화하는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가능한 몇 가지 조치의 예를 제시했다(*Women On Waves and Others v. Portugal*, § 41).

89. *Amorim Giestas and Jesus Costa Bordalo v. Portugal* 사건에서 재판소는 청구인들에 대해 벌금형 및 배상명령과 함께 내려진 유죄판결은 명백히 과도하다고 판결했다. 재판소는 명예와 평판에 대한 보호에 관해서는 민법이 구체적인 구제수단을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Mătășaru v. the Republic of Moldova*, § 36 참조).

90. 마찬가지로, *Fáber v. Hungary* 사건의 청구인은 다른 시위에 대한 항의를 표시하기 위해 들고 있던 깃발을 내리는 것을 거부하여 경찰 유치장에 구금된 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소는 청구인이 누리는 표현의 자유 및 평화적인 집회에 대한 권리를, 집회의 방해로부터 보호받을 다른 시위대의 권리와 비교형량하면서, 원칙적으로 국가는 양쪽의 권리를 모두 보호하여야 하고, 두 시위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제한 수단을 찾아야 할 적극적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43).

ii. 일반적 조치

91. 재판소는 방송 매체의 정치광고를 금지한 것이 협약과 양립할 수 있는지 검토한 사건에서 일반적 조치의 비례성 판단의 기준을 명확히 밝혔다. 재판소는 우선 그 기초가 되는 입법부의 선택을 심사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관련된 판단재량의 행사를 포함하여, 그 조치의 필요성에 대해 입법부와 사법부가 수행한 심사의 질이 특히 중요하다. 따라서 일반적 조치에 대한 일반적인 정당성의 설득력이 클수록 재판소는 그 조치가 개별 사건에서 미치는 영향은 그만큼 적게 고려하게 될 것이다(*Animal Defenders International v. the United Kingdom* [GC], §§ 108-109).
92. 동일한 원칙에 따라 심사한 다른 사건에서, 재판소는 문제된 여러 일반적 조치를 채택하고 청구인들의 사건에서 그 조치들을 집행한 국가기관이 협약 제10조에서 제공하는 판단재량을 벗어났다고 판결했다(*Bayev and Others v. Russia*, § 83).
93. 마지막으로, 재판소는 일반적 조치에 대한 정당성과 관련하여 국가의 판단재량을 검토할 때 유럽 차원의 합의가 형성되었는지 여부를 고려했다(*Animal Defenders International v. the United Kingdom* [GC], § 123; *Bayev and Others v. Russia*, § 66).

c. 적절하고 충분한 이유

94. 여러 판례들에서, 재판소는 법원이 적절하고 충분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거나 문제된 제한을 검토할 때 적용될 기준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제1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을 강조해 왔다(여러 판례 중 *Uj v. Hungary*, §§ 25-26; *Sapan v. Turkey*, §§ 35-41; *Gözel and Özer v. Turkey*, § 58; *Scharsach and News Verlagsgesellschaft v. Austria*, § 46; *Cheltsova v. Russia*, § 100; *Mariya Alekhina and Others v. Russia*, § 264).

C. 협약이 보호하는 두 권리의 충돌: 비교형량 심사

95.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행사가 협약과 그 의정서에 따라 보호되는 다른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재판소는 이러한 사건에서 국가기관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보호와 협약에 따라 보장된 다른 권리나 가치의 보호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했는지 여부를 심사한다(*Perinçek v. Switzerland* [GC], § 274).
96. 적절한 균형을 이루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등한 지위를 갖는 두 권리에 대해 비교형량 심사를 하게 될 수 있는데, 이를 위해 재판소는 비교형량 심사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수립했는데, 그 방법론은 협약 제10조가 보장하는 권리와 협약이 보호하는 다른 권리, 특히 문제된 발언의 대상자가 가진 권리가 명백히 상충하는 사건들에 적용된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일반적으로 협약 제6조제2항에서 보호하는 권리에 관한 쟁점이 제기되며(*Bladet Tromsø and Stensaas v. Norway* [GC], § 65; *Axel Springer SE and RTL Television GmbH v. Germany*, §§ 40-42; *Eerikäinen and Others v. Finland*, § 60), 협약 제8조가 보호하는 권리에 대한 쟁점도 제기된다(*Axel Springer AG v. Germany* [GC], §§ 83-84; *Von Hannover v. Germany (no. 2)* [GC], §§ 104-107).

97. 이러한 사건에 적용되는 방법론에 관한 일반원칙은 특히 대재판부의 판결을 포함한 여러 판결에 요약되어 있다(*Perinçek v. Switzerland* [GC], § 198; *Axel Springer AG v. Germany* [GC], §§ 83-84; *Von Hannover v. Germany (no. 2)* [GC], §§ 104-107).
98. 사생활의 한 요소로서 명예를 보호받을 권리를 포함한 사생활 존중권(협약 제8조)과의 충돌은 단연코 재판소에 가장 자주 제기되는 사안이다. 아래 제5장(V)은 이 분야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99. 그 밖에도, 아래에서는 협약의 다른 조항들이 제10조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들의 예를 살펴본다.

1. 협약 제6조제2항

100. 협약 제10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정보를 주고받을 자유를 포함한다. 따라서 제6조제2항은 국가기관이 진행 중인 범죄수사에 관해 공표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지만,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무죄추정원칙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재량을 행사하고 주의를 기울이도록 요구하고 있다(*Allenet de Ribemont v. France*, § 38; *Fatullayev v. Azerbaijan*, § 159; *Garycki v. Poland*, § 69). 재판소는 특정한 범죄의 혐의자가 재판에 회부되어 유죄판결을 받기 전까지 공무원이 이에 대해 언급할 때 단어를 신중히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Daktaras v. Lithuania*, § 41; *Arrigo and Vella v. Malta (dec.)*; *Khuzhin and Others v. Russia*, § 94).
101. 언론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특정 여론을 조성하는 보도나 혐의를 제기하는 내용을 공표하는 것과 관련하여 재판소는 이러한 보도나 공표가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배심원들에게 피고인의 유죄판결을 내리도록 요구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Khuzhin and Others v. Russia*, § 93).

2. 협약 제9조

102. 재판소는 도덕과 종교의 보호에 관한 사건에서, 한 쪽에 있는, 종교적 교리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대중에게 전달할 청구인의 권리와 다른 한 쪽에 있는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존중받을 신도들의 권리를 비교형량한다(*Aydın Tatlav v. Turkey*, § 26).
103. 재판소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제9조가 보호하는 권리의 평화적 향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요건을 거듭 강조해 왔는데, 여기에는 숭배의 대상에 관하여 신성을 모독하거나 불필요하게 다른 사람을 기분나쁘게 하는 표현은 가능하면 피해야 할 의무도 포함된다. 따라서, 재판소는 종교적 편협성을 포함한 적대감에 기초하여 증오를 선동하거나 정당화하는 표현은 협약 제10조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E.S. v. Austria*, § 43; 이와 대조적으로, 증오의 선동이 있었는지 검토하지 않은 채, 특정 발언이 종교를 모욕하는 공격에 해당한다고 유죄판결한 사건에 대해 제10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한 *Tagiyev and Huseynov v. Azerbaijan*, §§ 48-50).

104. 종교단체에 고용된 개인의 표현의 자유, 즉 협약 제10조에 의해 보호되는 자유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낙태 문제에 대해 가톨릭교회의 입장과 상반된 의견을 언론에 게재한 공개서한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독일 가톨릭병원에서 해고된 의사의 청구를 각하했다(*Rommelfanger v. Germany*, 위원회 결정).
105. 반면, 재판소는 밀라노 사크로쿠오레가톨릭대학교(Milan Catholic University of the Sacred Heart) 법철학 교수의 고용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한 결정과 관련하여 제10조 위반 판결을 내렸다. 교황청 산하 가톨릭교육성(Congregation for Catholic Education)은 이 법철학 교수의 일부 견해가 "가톨릭 교리와 분명히 양립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고용계약 갱신을 승인하지 않았는데, 양립할 수 없다는 견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재판소는 국가기관이 가톨릭교육성 결정의 내용을 심사할 의무는 없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소는 대학이 가톨릭 교리에 기초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이익의 중요성은 협약 제10조에 의해 청구인에게 보장된 절차적 보장의 본질을 훼손할 만큼 크지는 않다고 보았다(*Lombardi Vallauri v. Italy*).

3. 협약 제11조

106. *Fáber v. Hungary* 사건에서 청구인은 다른 시위에 대한 항의를 표시하기 위해 들고 있던 깃발을 내리는 것을 거부하여 경찰 유치장에 구금된 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소는 청구인이 누리는 표현의 자유 및 평화적인 집회에 대한 권리를, 집회의 방해로부터 보호받을 다른 시위대의 권리와 비교형량하면서, 원칙적으로 국가는 양쪽의 권리를 모두 보호하여야 하고, 두 시위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제한 수단을 찾아야 할 적극적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43).

4. 제1의정서 제1조

107. 패션쇼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한 사진작가가 저작권침해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에서 재판소는 국가기관이 제한의 목적, 즉 타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폭넓은 판단재량을 행사한다고 판결했다. 재판소는 제1의정서 제1조가 지적재산에 적용됨을 고려할 때 이 사건에서 발생한 제한은 협약이나 그 의정서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보호하려는 목적도 있었다고 언급했다(*Ashby Donald and Others v. France*, § 40).
108. *Neij and Sunde Kolmisoppi v. Sweden* (dec.)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음악·영화·게임 등의) 토렌트 파일(torrent file)을 공유하는 최대 인터넷사이트인 "더 파이어트 베이(The Pirate Bay)" 운영에 관여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로 집행유예 없는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손해에 대한 배상명령도 받게 되었다. 재판소는 이러한 종류의 파일을 인터넷에서 공유하거나 공유하도록 촉진한 행위가 불법적이고 영리를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제10조제1항에서 의미하는 "정보를 주고받을 권리"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인정했다. 재판소는 협약에 따라 대등한 보호를 누리는 두 가지 권리, 즉 국가가 폭넓은 판단재량을 행사하는 분야인 지적재산권과 표현의 자유를 비교형량했다. 스웨덴 국가기관은 저작권법과 협약에 따라 원고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재판소는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야 할 중대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소는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자료들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받았음을 거듭 강조했다.

IV. 타인의 명예나 권리의 보호

109. 타인의 명예나 권리의 보호는 재판소에 제기된 제10조에 관한 사건에서 정당한 목적으로 가장 자주 원용된다.

A. 방법론

110. 타인의 명예나 권리의 보호와 관련된 사건에서는 두 가지 논증 방식이 적용된다.

111. 재판소는 제기된 분쟁의 상황에서 비례성을 분석하는 "고전적" 방법을 사용하여 제8조가 타인의 명예나 권리의 보호에 적용될 수 없음을 판단한다.

112. 두 번째 방법인 이른바 "권리의 비교형량" 접근법은 재판소가 정당한 목적을 보호하는데 제8조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범주의 사건들과 관련된다. 이러한 사건들은 주로 개인의 사생활이나 가족생활의 내밀한 측면에 관한 사진, 이미지 또는 기사의 공표와 관련된 경우가 많다(*Couderc and Hachette Filipacchi Associés v. France* [GC], § 79; *Von Hannover v. Germany (no. 2)* [GC], § 103; *MGN Limited v. the United Kingdom*, § 142).

113. 대재판부 판결(*Axel Springer AG v. Germany* [GC], § 83)에서 확립된 판례법이 발전하면서, 협약 제8조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생활의 한 요소인 명예의 보호에 대해 하나의 조건이 적용될 수 있다. 즉, 협약 제8조에 따라 보장된 권리가 침해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심각성 최소기준(threshold of seriousness)"을 넘어서야 한다는 조건이다. 명예훼손 사건에 제8조가 적용되려면 개인의 명예에 대한 공격이 일정 수준의 심각성을 충족해야 하며 개인의 사생활 존중권 향유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114. 재판소는 또한, 예컨대 범죄의 실행 등 자신의 행동에 따른 예측가능한 결과인 명예훼손의 경우 이에 대해 제소하기 위해 제8조를 근거로 제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Axel Springer AG v. Germany* [GC], §§ 83-84; *Hachette Filipacchi Associés v. France*, § 43; *MGN Limited v. the United Kingdom*, § 142; *Sidabras and Džiautas v. Lithuania*, § 49).

115. 재판소는 첫째, 두 권리의 비교 평가(또는 형량)를 위한 방법론을 규율하는 일반원칙과 둘째, 적용가능한 기준들의 예시적 목록을 제시한다.

116. "권리의 비교형량"을 위한 방법론에 적용되는 일반원칙은 재판소가 *Von Hannover v. Germany (no. 2)* [GC] 사건(§§ 104-107) 및 *Axel Springer AG v. Germany* [GC] 사건(§§ 85-88)에서 내린 대재판부 판결에 설명되어 있으며, *Perinçek v. Switzerland* judgment [GC] 판결(§ 198)에 요약되어 있다.

- i. 이러한 사건에서, 제8조와 제10조의 권리는 원칙적으로 동등한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으므로, 발언의 대상자가 제8조에 따라 청구했는지 아니면 발언을 한 사람이 제10조에 따라 청구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Delfi AS v. Estonia* [GC], § 110; *Satakunnan Markkinapörssi Oy and Satamedia Oy v. Finland* [GC], § 163

참조).

- ii. 개인 간의 관계에서 제8조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을 선택하는 문제는 그것이 적극적 의무이든 소극적 의무이든 원칙적으로 회원국의 판단재량에 속하는 문제이다. 사생활에 대한 존중을 보장하는 방법에는 여러 방법이 있으며, 회원국이 진 의무의 성격은 문제된 사생활의 구체적인 측면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 iii. 마찬가지로, 협약 제10조에 의할 때, 회원국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지 여부 및 어느 정도까지 필요한지에 대해 일정 수준의 판단재량을 행사한다.
- iv. 그러나 이러한 판단재량은 유럽 차원의 통제를 받는데, 그 통제의 대상에는 입법과 그것을 적용한 결정을 모두 포함하며 독립된 법원이 선고한 판단도 마찬가지다. 감독적 기능을 행사하는 데 있어 재판소의 임무는 각국의 법원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전체 사정을 고려할 때 법원의 판단이 협약 규정과 양립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 v. 국가기관이 재판소 판례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형량을 수행한 경우, 재판소가 자신의 견해로 국가기관의 견해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이유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Delfi AS v. Estonia* [GC], § 139; *MGN Limited v. the United Kingdom*, § 150).

117. 따라서 재판소는 스스로의 형량심사가 필요한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재판소 자신의 형량심사를 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Perinçek v. Switzerland* [GC], §§ 274-279)

118. 만약 국가기관이 형량을 통해 이론 균형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특히 문제된 여러 권리 중 한 권리의 중요성이나 범위가 적절히 고려되지 않은 경우, 국가에게 부여된 판단재량은 제한될 것이다(*Aksu v. Turkey* [GC], § 67).

119. 협약에 따라 동등한 보호를 누리는 두 권리에 대해 국가기관이 수행한 형량심사가 미흡한 경우, 재판소가 앞서 설명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제10조에 대한 절차적 위반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거나(*Ibragim Ibragimov and Others v. Russia*, §§ 106-111), 아니면 자체적인 형량심사가 필요한 중요한 이유를 언급하면서 형량심사를 하기로 결정하거나(*Perinçek v. Switzerland* [GC], §§ 274-279; *Tête v. France*, §§ 57-70), 또는 형량심사는 생략한 채, 문제된 제한이 민주사회에서 필요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Ergüdoğan v. Turkey*, §§ 32-35).

B. (개인의 사생활의 내밀한 측면과 명예) 보도에서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존중권 사이의 적절한 균형

120. 언론보도에서의 사생활 보호와 관련하여 재판소 판례에서 도출된 일반적인 원칙은 *Couderc and Hachette Filipacchi Associés v. France* [GC] 판결의 83~87 단락에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일반원칙은 이 판결 88~93 단락에 다시 언급되어 있다.

121. 이에 따라, 재판소는 특히 타인의 명예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과 관련하여 언론이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도 언론의 임무는 자신의 의무 및 책임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모든 공익 사안에 대해 정보와 사상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122. 언론은 이와 같이 정보와 사상을 전달할 임무가 있으며, 대중 또한 정보와 사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 언론은 "공공 감시자(public watchdog)"라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이다(*Bladet Tromsø and Stensaa v. Norway* [GC], §§ 59 and 62; *Pedersen and Baadsgaard v. Denmark* [GC], § 71; *Von Hannover v. Germany (no. 2)* [GC], § 102).
123. 따라서 정보를 전달하는 임무에는 필연적으로 의무와 책임이 포함되며, 언론이 자발적으로 자신에게 적용해야 하는 한계도 포함된다(*Mater v. Turkey*, § 55). 어느 경우이나 어떠한 보도 방식을 취할 것인지에 대한 언론의 선택을 재판소나 법원이 자신들의 견해로 대체할 수 없다(*Jersild v. Denmark*, § 31; *Stoll v. Switzerland* [GC], § 146).

1. 개인의 사생활 또는 가족생활의 내밀한 측면에 관한 보도(사진, 이미지, 기사)

124. 표현의 자유는 사진 보도를 포함한다. 그러나 사진에는 개인 또는 가족에 관한 매우 사적인 정보나 내밀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타인의 권리와 명예의 보호가 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Von Hannover v. Germany (no. 2)* [GC], § 103).
125. 재판소는 모든 사람이 이미지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며, 한 사람의 이미지가 그 사람의 독특한 특성을 나타내고 주위의 다른 사람들로부터 구별해준다는 점에서 그 사람이 가진 개성의 주요 속성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한다. 따라서 자신의 이미지를 보호받을 권리는 개인적 발달의 필수 요소 중 하나이며, 이미지 공개를 거부할 권리를 비롯해 개인이 자신의 이미지 사용을 통제할 권리가 있음을 주요 전제로 한다(*Von Hannover v. Germany (no. 2)* [GC], § 96).

a. 심사기준 및 적용

126. 재판소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재판소가 기준으로 삼아야 할 원칙들을 정했는데, 이는 각국의 법원이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에서 특히 더 중요하다. 재판소는 이 원칙에서 서로 충돌하는 권리들의 형량에 관한 여러 기준들을 밝혔다(*Axel Springer AG v. Germany* [GC], §§ 90-95).
127. 이에 관한 5가지 기준은, 공익과 관련한 토론에 기여, 악평의 정도, 뉴스 보도의 주제, 관련자의 과거 행동, 공표의 내용·형식·결과, 그리고 사진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진이 촬영된 상황 등이다(*Von Hannover v. Germany (no. 2)* [GC], §§ 109- 113; *Von Hannover v. Germany (no. 3)*, § 46; *Axel Springer AG v. Germany* [GC], §§ 89-95; *Tănăsoaica v. Romania*, § 41). 재판소는 제10조에 따라 제기된 청구를 심사할 때 정보의 입수방법과 진실성, 언론인이나 발행인에 부과되는 처벌의 경중 또한 심사한다(*Couderc and Hachette Filipacchi Associés v. France* [GC], § 93; *Axel Springer AG v. Germany* [GC], §§ 90-95).

128. 재판소는 위와 같이 정의된 기준이 개별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단, 이러한 기준 가운데 일부는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관련성이 더 크거나 작을 수 있다(*Satakunnan Markkinapörssi Oy and Satamedia Oy v. Finland* [GC], § 166).
129. 실제로는 다른 기준들도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고려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재판소는 살인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피고인의 신원이 밝혀질 수 있는 이미지 공표를 금지한 것과 관련된 *Axel Springer SE and RTL Television GmbH v. Germany* 판결에서 "형사소송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추가했다(§ 42).

i. 공익에 관한 토론에 기여

130. 재판소는 언론에서 정보, 문서 또는 사진의 공표가 공익을 증진하고 공익적 사안의 토론에 기여한다는 사실에 항상 특별한 중요성을 부여했다. 공익의 성격은 각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만 판단할 수 있다(*Von Hannover v. Germany (no. 2)* [GC], § 109; *Leempoel & S.A. ED. Ciné Revue v. Belgium*, § 68; *Standard Verlags GmbH v. Austria*, § 46; *Von Hannover v. Germany*, § 60).
131. 이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정치적 발언이나 공익 문제에 대한 토론의 경우 협약 제10조제2항에 따른 제한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일관되게 판결해 왔다(*Castells v. Spain*, § 43; *Wingrove v. the United Kingdom*, § 58).
132. 재판소의 관점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공익은 대중이 당연히 관심을 가질 정도로 공공에 영향을 미치는 이익이며, 대중의 관심과 흥미가 상당히 큰 문제, 특히 시민의 안녕이나 공동체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 상당한 논란이 일고 있거나, 중요한 사회적 문제에 관한 것이거나, 대중이 관련 정보에 관해 관심이 큰 문제 또한 공익에 해당한다(*Satakunnan Markkinapörssi Oy and Satamedia Oy v. Finland* [GC], § 171).
133. 재판소는 예컨대 국가 최고위직 후보자의 건강 상태(*Éditions Plon v. France*, § 44), 스포츠 문제(*Nikowitz and Verlagsgruppe News GmbH v. Austria*, § 25; *Colaço Mestre and SIC – Sociedade Independente de Comunicação, S.A. v. Portugal*, § 28) 또는 공연예술가(*Sapan v. Turkey*, § 34), 일반 형사소송(*Dupuis and Others v. France*, § 42; *July and SARL Libération v. France*, § 66), 범죄(*White v. Sweden*, § 29; *Egeland and Hanseid v. Norway*, § 58; *Leempoel & S.A. ED. Ciné Revue v. Belgium*, § 72; *Eerikäinen and Others v. Finland*, § 59) 또는 정부 구성원과 관련된 정당 내부의 "성 추문"(*Kaçcki v. Poland*, § 55) 등에 관한 정보가 공익 문제임을 인정했다.
134. 재판소 판례에서 공익 문제로 확인된 것에는 사법행정(*Morice v. France* [GC], § 128), 양육권 소송제도의 기능(*N.Š. v. Croatia*, § 103) 또는 환경 및 공중보건의 보호 문제(*Mamère v. France*, § 20; *OOO Regnum v. Russia*, §§ 68-69) 및 역사적 사건에 관한 문제가 포함된다(*Dink v. Turkey*, § 135). 재판소는 또한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심각한 행위를 초래하는 원인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민주사회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Giniewski v. France*, § 51).

135. 다른 조합원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기사를 게재하였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해고한 사건에서 재판소는 해당 기사의 내용이 공익 문제와 무관하다는 스페인 정부 입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재판소는 이러한 기사가 청구인들이 특정 요구를 제시했던 회사 내 노사분규 상황과 관련하여 게재된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이 토론은 순수하게 사적인 것이 아니었으며, 적어도 회사 근로자의 입장에서 이 기사는 공익 문제였다 (*Palomo Sánchez and Others v. Spain* [GC], § 72).
136. 대중은 정보를 받을 권리가 있지만, 개인의 자세한 사생활을 궁극해하는 특정한 청중의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한 기사나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사회 전체의 공익에 관한 토론에 기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Von Hannover v. Germany (no. 2)* [GC], § 59; *Hachette Filipacchi Associés v. France*, § 42; *Rubio Dosamantes v. Spain*, § 34; *MGN Limited v. the United Kingdom*, § 143), 이는 관련 당사자가 유명인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Von Hannover v. Germany (no. 2)* [GC], § 95). 재판소는 이와 관련하여 공익이 타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중의 갈증이나 독자의 선정주의적 욕구 또는 관음증까지 의미할 정도로 격하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Couderc and Hachette Filipacchi Associés v. France* [GC], § 101).
137. 이라크 출신 청구인이 모국이나 인근 지역에서 송출되는 아랍어와 페르시아어 텔레비전 방송 시청을 원했던 *Khurshid Mustafa and Tarzibachi v. Sweden* 사건에서 재판소는 정보를 받을 자유가 대중의 관심사에 대한 보도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문화적 표현과 순수한 오락물까지 포괄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재판소는 특히 세 자녀를 둔 이민자 가정의 경우 출신국의 문화와 언어를 계속 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44).

ii. 관련 당사자의 지명도

138. 재판소는 대중적 인지도나 유명한 정도가 사생활에 대한 보호에 영향을 미친다고 반복해서 실시해 왔다. 관련 당사자의 역할이나 기능 및 기사나 사진의 대상이 된 활동의 성격은 또 다른 중요한 기준이며, 앞서 설명한 기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Von Hannover v. Germany (no. 2)* [GC], § 110; *Verlagsgruppe News GmbH v. Austria (no. 2)*, § 34; *Alpha Doryforiki Tileorasi Anonymi Etairia v. Greece*, § 53).
139. 대중은 정보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권리는 일부 특수한 상황에서 공인의 사생활 측면까지 확대될 수 있는 민주사회의 필수적인 권리이며, 이러한 공인의 사생활에는 특히 정치인의 사생활이 포함된다(*Von Hannover v. Germany (no. 2)* [GC], § 64; *Karhuvaara and Iltalehti v. Finland*, § 45). 공인의 사생활에 대한 뉴스는 일반적으로 교육 목적이 아닌 오락 목적으로 게재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뉴스는 대중에 제공되는 정보의 다양성에 기여하며, 협약 제10조가 제공하는 보호의 혜택을 분명히 누린다. 하지만, 공개된 정보가 사적이고 내밀한 성격의 정보이며 이를 공개하는 것이 공익에 기여하지 않을 경우 협약 제10조에 따른 보호보다 제8조의 요건이 우선할 수 있다(*Mosley v. the United Kingdom*, § 131; *Von Hannover v. Germany (no. 2)* [GC], § 110).
140. *Couderc and Hachette Filipacchi Associés v. France* [GC] 사건에서, 재판소는 공인이

자신의 사생활을 공개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이러한 권리는 원칙적으로 공적 역할과 무관한 경우 더 넓게 적용되고, 공적 역할과 관련된 상황에서는 보다 제한될 수 있다고 하였다. 공적 역할을 맡거나 공직에 출마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민의 관심을 피할 수 없을 것이고 여기에는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대한 관심도 포함된다. 따라서, 정치적, 사회적 역할을 맡은 공인의 영향력과 이러한 공인의 역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을 고려할 때, 공인의 특정한 사적 행동은 사적인 것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다(§§ 119-120).

141. 따라서 재판소는 공인이자 유럽의회 의원이 공직을 수행 중인 상황에서 자신의 비서로 채용하는 대가로 성적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발언이 그 사람의 역할 및 기능과 관련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Kaçki v. Poland*, §§ 54-55).
142. 이러한 논리는 정치인 외에도 공인으로 볼 수 있는 모든 사람, 즉 공적 영역에서 활동하고 공적 지위를 가진 사람에게까지 확대 적용된다(*Kapsis and Danikas v. Greece*, § 35; 공공기관이 특정 사안을 심의하기 위해 임명한 전문가 지위와 유사한 자문위원회(Consultative Council) 위원의 지위와 관련해서는 *Kaboğlu and Oran v. Turkey*, § 74 참조).
143. 이에 따라, 재판소는 사업가가 공인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Verlagsgruppe News GmbH v. Austria (no. 2)*, § 36).
144. 이와는 대조적으로, 범죄수사에서 비공개 대상인 정보, 구체적으로는 피의자가 예심판사에게 보낸 편지와 의료 관련 정보를 공개한 언론인에 대한 유죄판결에 관한 사건에서, 재판소는 국가기관이 제8조에 따라 보호받는 정보를 고의로 공개하지 않을 소극적 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통신을 존중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호하는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Bédat v. Switzerland* [GC], § 76; 또한 *Craxi v. Italy (no. 2)*, § 73 참조).

재판소가 볼 때, 이러한 유형의 정보는 제8조에 의해 더욱 강력한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피의자가 대중에게 알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중요하다. 피의자가 매우 심각한 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자신을 자발적으로 대중들에게 드러낸 공인과 똑같이 취급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보았다(또한 유사한 맥락에서, *Fressoz and Roire v. France* [GC], § 50; *Egeland and Hanseid v. Norway*, § 62 참조; 피해자의 신원을 보호해야 할 의무에 관해서는 *Kurier Zeitungsverlag und Druckerei GmbH v. Austria* 참조).

iii. 관련 당사자의 과거 행동

145. *Von Hannover v. Germany (no. 2)* [GC] 사건에서, 재판소는 문제된 기사 이전에 있었던 당사자의 과거 행동 그리고 문제의 사진 및 관련 정보가 과거의 간행물에서 이미 공개되었던 사실도 고려해야 할 요소라고 언급했다(§ 111).

146. 따라서 *Hachette Filipacchi Associés (ICI PARIS) v. France* 사건에서, 재판소는 한 가수가 자신에 관한 사실을 대중에 공개하여 이미 널리 알려진 상황에서는 사생활의 보호범위가 더 제한된다고 판결했다. 재판소는 그 가수가 이미 자서전에서 자신의 재산에 관해 언급했고 돈을 어떻게 썼는지 밝힌 상황에서 청구인 기자가 사실을 왜곡하지 않은 채 이러한 정보의 일부를 다시 기사로 내보낸 경우, 그 가수는 자신의 사생활이 효과적으로 보호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더 이상 갖지 않는다고 보았다(§§ 52-53; 또한 *Minelli v. Switzerland* (dec.) 참조).
147. 반면, 재판소는 이전에도 언론에 협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관련 당사자가 언론의 보도로부터 어떤 보호도 받을 수 없다는 주장의 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관련 당사자가 자신의 사생활 공개를 용인했거나 받아들였다는 주장이 있거나, 또는 그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로써 그 당사자가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Couderc and Hachette Filipacchi Associés v. France* [GC], § 130).
148. 제8조뿐만 아니라 협약 제6조제2항도 관련된 상황에서 재판소는 피고인이 범죄를 자백했다 하더라도 평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자신이 동의하지 않은 사진의 공개를 통해 죄인으로 비춰지는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Axel Springer SE and RTL Television GmbH v. Germany*, § 51).
149. 재판소는 또한 기업이 예상되는 비판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용인해야 하는지를 판단할 때 기업의 과거 행동을 고려한다. 청구인들이 원고 식품제조업체가 만든 과자를 "가축 분뇨(muck)"로 묘사한 풍자만화를 출판했던 *Kuliś and Różycki v. Polan* 사건에서, 재판소는 청구인들이 사용한 문구가 과장된 것임은 인정하지만, 이 문구는 원고의 광고에 사용된 구호가 상품의 주요 소비자, 즉 어린이의 취약성과 연령에 대한 이해와 세심함이 결여되었던 것에 대한 대응이었다고 판결했다. 재판소는 따라서 청구인들이 광고에 사용된 구호에 대응하여 의견을 표명했을 뿐이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자유로운 언론에 대해 허용되는 한도를 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39).

iv. 정보의 입수 방법 및 진실성

150. 재판소는 출판물이 청구인의 사생활 존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정보나 사진을 입수하는 방식을 고려한다. 특히 재판소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과 사진에 의한 침해가 다소 강력하다는 점을 강조한다(*Von Hannover v. Germany*, § 59; *Gurgenidze v. Georgia*, §§ 55-60; *Hachette Filipacchi Associés v. France*, § 48).
151. 이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대개 순전히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자질구레한 것들에 대한 대중의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한 "선정주의(sensationalist)" 언론이나 "연애(romance)" 잡지에 게재된 사진은 당사자가 사생활의 침해, 더 나아가 고통으로도 매우 강하게 느끼게 할 수 있는 지속적인 괴롭힘의 환경에서 입수되는 경우가 많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Von Hannover v. Germany*, § 59; *Société Prisma Presse v. France (no. 1)* (dec.); *Société Prisma Presse v. France (no. 2)* (dec.); *Hachette Filipacchi Associés (ICI PARIS) v. France*, § 40).

152. 재판소는 몰래 카메라를 이용해 녹화한 영상 유포의 경우, 무엇보다도 그 영상이 공공장소에서 촬영된 것인지 아니면 사적인 공간에서 촬영된 것인지를 검토했다. 재판소는 공공장소인 경우 공인은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이 주목받을 것이며 심지어 녹화될 것이라는 점까지도 예상할 수 있겠지만, 사적인 공간에서는 자신의 사생활이 보호받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질 수 있다고 판결했다(*Alpha Doryforiki Tileorasi Anonymi Etairia v. Greece*, §§ 64-65; *Von Hannover v. Germany*, § 52 참조).
152. 방송사가 타인이 불법으로 입수한 정보를 방송했다는 사실을 주된 이유로 손해배상 등의 제재를 받은 사건에서, 재판소는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청구인 방송사가 협약 제10조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결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다. 청구인 방송사가 방송에 내보낸 정부 관계자 간의 전화통화 내용과 관련하여, 재판소는 정보의 입수방법과 진실성에 관해 몇 가지 논점을 강조했는데, 재판소는 이 사건의 어떤 단계에서도 해당 전화통화의 녹음에 청구인 방송사나 그 직원 또는 대리인의 책임이 있다거나 그 방송사 기자들이 형벌조항을 위반하여 전화통화 내용을 입수하거나 방송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적이 없다고 하였다. 재판소는 또한 해당 전화통화를 녹음했던 상황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의 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재판소는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정보가 녹취록에 포함되었다거나 청구인 방송사의 기자가 녹취록과 관련하여 표명한 정보와 사상이 원고의 인격적 온전성과 명예를 특별히 훼손했다는 것이 법원을 통해 확인된 적이 없었다고 언급했다(*Radio Twist a.s. v. Slovakia*, §§ 59-62).
154. 또한 문제된 정보의 진실성과 그 정보를 입수하고 공개하는 수단의 공정성을 판단할 때 관련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다(*Couderc and Hachette Filipacchi Associés v. France* [GC], § 134; 또한 *Reklos and Davourlis v. Greece*, § 41 및 *Gurgenidze v. Georgia*, § 56 대조). *Peck v. the United Kingdom* 사건에서, 재판소는 과거 위원회 시절의 관련 판례를 언급하며, 공공장소에서 있었던 자살 시도의 녹화 및 공개가 청구인의 사생활 존중권을 심각히 제한했다고 판결했다(§§ 61-62).
155. 마지막으로, 공인의 이른바 "나치(Nazi)" 성행위 의혹이 비밀리에 녹화된 후, 해당 동영상의 사진이 기사와 함께 공개된 사건에서, 재판소는 제10조에서 보호하는 권리와 제8조에서 보호하는 권리 사이에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졌는지 검토한 후, 협약 제8조가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기에 앞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사전 통지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Mosley v. the United Kingdom*, § 132).

v. 기사의 내용, 형식 및 영향력

156. 재판소의 일관된 판례에 따르면, 협약 제10조는 표현된 사상과 정보의 실질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전달되는 형식까지도 보호한다(*De Haes and Gijssels v. Belgium*, § 48; *Jersild v. Denmark*, § 31; *Oberschlick v. Austria (no. 1)*, § 57).
157. 문제된 기사의 내용 및 형식과 관련하여, 기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주제를 취재할 자유가 있으며, 이 원칙은 기자라는 직업의 고유한 특성이

반영된 원칙이다. 예를 들어, 재판소는 언론이 제시한 견해를 자신의 견해로 대체하는 것은 재판소나 법원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을 거듭 강조했다 (*Couderc and Hachette Filipacchi Associés v. France* [GC], § 139; *Jersild v. Denmark*, § 31). 또한, 재판소는 기사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사항을 공개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는 협약 제10조가 언론인들의 결정에 맡기기도 있다고 밝혔다(*Fressoz and Roire v. France* [GC], § 54).

158. 재판소는 언론이 타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다루는 경우에는 언제나 그 정보를 배포하기 전에 그 정보와 사진이 미칠 영향력을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Couderc and Hachette Filipacchi Associés v. France* [GC], § 140).
159. *Haldimann and Others v. Switzerland* 사건은 공익 목적으로 보험중개인의 인터뷰를 녹화하고 방송한 기자들에 대한 유죄판결에 관한 사건이었다. 인터뷰를 녹화하는 것은 일부 사람들만 참여하므로 보험중개인의 이익이 부분적으로 제한되었지만, 그 영상을 보험중개인을 비난하는 보도의 일부로 방송하는 것은 많은 시청자들이 그 영상을 시청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보험중개인의 권리에 더 큰 제한을 초래했을 수 있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보험중개인의 머리 색깔과 피부색만 알아볼 수 있도록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했고 목소리도 변조했다. 재판소는 위와 같은 조치를 포함해 보험중개인의 신원이 밝혀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취했던 예방조치를 결정적인 요소로 고려했다. 결국 재판소는 보험중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제한이 보험중개업 분야의 잘못된 관행을 알리는 공익을 압도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66; 공공장소에서 자살을 시도한 사람의 CCTV 영상을 언론에 배포한 것에 대해 재판소가 협약 제8조 위반 판결을 내린 *Peck v. the United Kingdom* 사건과 대조).
160. 재판소는 일반적으로 당사자로부터 특정한 용도를 위해 허가받은 사진을 변경하거나 남용하는 행위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적절한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Hachette Filipacchi Associés (ICI PARIS) v. France*, § 46). 기타 고려해야 할 요소에는 사진이나 보도가 공개되는 방식과 해당 사진이나 보도에서 당사자를 묘사하는 방식도 포함될 수 있다(*Wirtschafts-Trend Zeitschriften-Verlagsgesellschaft mbH v. Austria (no. 3)*, § 47; *Jokitaipale and Others v. Finland*, § 68).
161. 고려해야 할 다른 요소에는 사진의 용도와 이후 해당 사진을 이용하는 방식도 있다 (*Reklos and Davourlis v. Greece*, § 42; *Hachette Filipacchi Associés (ICI PARIS) v. France*, § 52). *Reklos and Davourlis v. Greece* 사건에서, 재판소는 사진작가가 신원 확인이 가능한 아기의 사진을 보관하고 이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관련 당사자나 그의 부모가 원하는 바와 배치되며, 협약 제8조를 위반한다고 판결했다(§ 42).
162. 마지막으로, 재판소는 보도와 사진이 어느 정도로 유포되었는지 판단할 때 신문의 발행부수, 신문이 전국적으로 발행되는지 아니면 특정 지역에서만 발행되는지를 중요한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Karhuvaara and Iltalehti v. Finland*, § 47; *Gurgenidze v. Georgia*, § 55; *Klein v. Slovakia*, § 48).

163. 관련 매체의 잠재적 영향력과 관련하여, 재판소는 일반적으로 시청각 매체가 인쇄 매체보다 훨씬 즉각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여러 사건에서 일관되게 강조했다(*Purcell and Others v. Ireland*, 위원회 결정; *Jersild v. Denmark*, § 31).
164. 재판소는 특히 방송 매체의 경우 사람들이 가정이라는 친밀한 환경 속에서 방송을 시청하며 즐거움을 얻는 사실을 고려할 때 그 영향력이 한층 더 크다는 점을 인정했다(*Animal Defenders International v. the United Kingdom* [GC], § 119, 이 사건에서 언급된 추가 판례 참조).
165. 재판소는 또한 인터넷 사이트가 정보를 저장하고 전송할 수 있는 용량 면에서 인쇄 매체와 확연히 구별되는 정보통신 도구이며, 특히 검색엔진의 중요한 역할을 고려할 때 인권과 자유, 특히 사생활 존중권의 행사 및 향유에 대한 해악의 위험은 인터넷에서의 내용과 전파의 위험이 신문에 의해 제기되는 위험보다 분명히 크다고 언급했다(*M.L. and W.W. v. Germany*, § 91, 이 사건에서 언급된 추가 판례 참조).
166. 특히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발언의 인터넷 유포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인권과 자유, 특히 사생활 존중권의 행사 및 향유에 대한 해악의 위험이 인터넷에서의 내용과 전파가 신문에 의해 제기되는 위험보다 분명히 크다고 언급했다(*Delfi AS v. Estonia* [GC], § 133).
167. 그 밖에도, *Nilsen and Johnsen v. Norway* [GC] 판결에서 재판소는 말로 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될 경우 그 보도 이전에 청구인들이 해당 발언을 다르게 표현하거나, 보충하거나 철회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48). 기자회견이나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생방송에서 진술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한 사람이 그 진술을 다르게 표현하거나 가다듬거나 철회할 가능성은 낮아진다(*Otegi Mondragon v. Spain*, § 54; *Fuentes Bobo v. Spain*, § 46; *Reznik v. Russia*, § 44).

2.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재판소 논증의 구성요소와 기준

a. 정의 및 구성 요소: 몇 가지 고려사항

168. 협약에는 명예훼손에 대한 정의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재판소는 명예훼손 사건에서 각국의 국내법을 참고하여 명예훼손 개념에 접근한다.

i. 문제된 발언과 협약 제10조제2항의 보호를 주장하는 개인 사이의 객관적 관련성의 존재

169. 재판소는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을 확립함에 있어, 문제된 발언과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 사이의 객관적 관련성의 존재를 입증할 것을 요구한다. 모스크바 변호사 협회장에 대해 명예훼손 소송이 제기된 사건이었던 *Reznik v. Russia* 판결에서 재판소는 출판물이 명예를 훼손했다는 단순한 개인적인 추측이나 주관적 인식만으로는 그 사람이 출판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사건의 상황에서 일반적인 독자가 해당 발언이 청구인을 직접 떠올리도록 하거나

해당 청구인을 직접 비판한다고 생각하도록 하는 특별한 내용이 있어야 한다. 이 사건의 청구인은 원고의 이름이나 고용주를 언급하지 않은 채 "남성"이라고 표현했으며, 이 발언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다. 재판소는 러시아의 관할 기관이 문제의 발언과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 사이의 객관적 관련성의 존재를 입증할만한 충분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45; 또한 *Margulev v. Russia*, § 53 참조).

170. 단체를 상대로 명예훼손 발언이 있었지만, 이름의 언급은 없었더라도 그들을 아는 사람 또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합리적인 사람"이 그 구성원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기업이나 단체의 이사회와 같은 소규모 집단도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지역 농구팀의 파티 도중 발생한 강간 의혹에 관한 *Ruokanen and Others v. Finland* 사건이 바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45; 또한, *Bladet Tromsø and Stensaas v. Norway* [GC], § 67 참조).

171. 특정 집단에 정체성을 두고 있는 개인의 명예 보호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Aksu v. Turkey* [GC] 사건에서 특히 어떤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일정 수준에 도달할 경우 집단의 정체성과 구성원의 자부심 및 자신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소는 이러한 이유로 한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은 협약 제8조제1항이 의미하는 "사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다. 재판소는 이러한 견해를 바탕으로 터키에서 출판된 서적과 사전에 포함된 집시 관련 내용에 불쾌감을 느낀 집시 출신 청구인이 구제를 신청했던 소송절차에 제8조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58-61 및 81).

172. 재판소는 명예에 대한 보호가 원칙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의 명예에만 한정되어야 하고, 사자(死者)의 명예를 위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지만, 예외적으로 일정하게 제한되고 명확히 정의된 상황에서는 고인의 명예도 보호될 수 있다고 본다. 고인의 가족이 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재판소는 특히 고인이 사망한 직후 고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유족의 슬픔이 더 커질 수 있음을 인정했다(*Éditions Plon v. France*). 마찬가지로, 특정 상황에서는 고인의 명예에 대한 공격이 유족의 사생활 존중권을 침해할 정도의 성격과 강도를 지니거나 실제로 유족의 사생활 존중권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Hachette Filipacchi Associés v. France*; 또한 *Dzhughashvili v. Russia* (dec.) 및 *Genner v. Austria* 참조).

173. 재판소는 또한 몇몇 판결과 결정을 통해 특정한 상황에서는 조상의 명예가 개인의 "사생활"과 정체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따라서 협약 제8조제1항의 적용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을 인정했다(예를 들어, *Putistin v. Ukraine*, §§ 33 및 36-41 참조; 소설 작품에 관해서는 *Jelševar and Others v. Slovenia* (dec.), § 37 참조; 유명한 역사적 인물에 관한 언론 기사에 관해서는 *Dzhughashvili v. Russia* (dec.), §§ 26-35 참조).

ii. 명예에 대한 공격의 심각성

174. 명예훼손의 핵심 요소는 명예에 대한 공격이다. 그러나 제8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명예에 대한 공격이 일정 수준의 심각성을 충족해야 하고 사생활 존중권의 개인적인

향유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Bédat v. Switzerland* [GC], § 72; *Axel Springer AG v. Germany* [GC], § 83; *A. v. Norway*, § 64).

175. 구체적으로 말해, 재판소는 사실에 관한 주장이 매우 모욕적인 성격이어서 그 주장의 공개가 원고의 삶에 직접적이고 불가피한 영향이 발생한 사건들에서 주로, 명예를 독립된 권리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Toranzo Gomez v. Spain*, § 51; *Karakó v. Hungary*, § 23; *Polanco Torres and Movilla Polanco v. Spain*, § 40; *Yarushkevych v. Ukraine* (dec.), § 24).
176. *Karakó v. Hungary* 사건에서, 명예의 보호와 관련하여 협약 제8조를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심각성의 정도는 인격적 온전성이 훼손될 정도로 사생활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경우로 설명된다(§ 23).
177. 재판소는 명예훼손을 다룬 여러 사건들에서 이 기준을 적용한 후 심각성의 정도가 충족되었으므로 협약 제8조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결론을 명시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제시했다.
- 인터넷 포털에 익명으로 게시된 모욕적인 댓글에 대해 청구인이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 판결의 경우 제8조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Pihl v. Sweden*, §§ 23-25; 또한 *Fuchsmann v. Germany*, § 30 참조).
 -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공개적으로 밝힌 유명 인사인 청구인은 텔레비전 코미디 쇼에서 자신을 여성으로 표현한 농담에 대해 정부가 기소를 거부한 것에 대해 협약 제8조에 따라 청구를 제기했다. 재판소는 제8조 위반이 없었다고 판결하기에 앞서 먼저, 제8조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재판소에 따르면, 성적 지향은 개인의 정체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성별과 성적 지향은 서로 구별되는 내밀한 두 특성이므로, 재판소는 성별과 성적 지향을 혼동한 것은 명예에 대한 공격으로서 제8조가 적용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심각성을 갖는다고 하였다(*Sousa Goucha v. Portugal*, § 27).
 - 재판소는 한 여성이 다른 민족과 종교 집단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된 사건에서 그 고발이 여성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직업적, 사회적 측면에서 이 여성에게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제8조에 따른 권리를 저해할 수 있는 심각성의 정도에 도달했다고 판결했다(*Medžlis Islamske Zajednice Brčko and Others v. Bosnia and Herzegovina* [GC], § 79).
 - 재판소는 개인의 직업적 명예에 대한 공격이 협약 제8조의 보호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예컨대 *Kanellou v. Greece* 사건의 의사, *Tănăsoaica v. Romania* 사건의 국영기업 이사, *Belpietro v. Italy* 사건의 판사 등이 있는데, 국가공무원에 대한 비위 의혹 제기와 고발에 관한 *Shahanov and Palfreman v. Bulgaria* 사건(§§ 63-64)과는 비교된다. 재판소는 *Bergens Tidende and Others v. Norway* 사건(§ 60)에서, 자신의 직업적 명예를 보호하려는 의사의 의심할 여지없는 이익이 대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언론의 자유라는 중요한 공익보다 크지 않다고 보았다.

- *Mikolajová v. Slovakia* 사건에서 청구인은 자신에 대해 형사소송이 제기되지 않았음에도 경찰 측에서 자신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결론을 공개한 것에 대해 청구를 제기했다. 재판소는 경찰의 결정에 포함된 결론의 중대성, 즉 청구인이 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과 그러한 사실을 보험회사에 공개한 것을 고려하여, 협약 제6조제2항과 제8조의 적용가능성을 차례로 검토했다. 재판소는 제8조에 따른 청구인의 권리가 제한되었다고 판단했으며,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의 권리는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그럼에도 재판소는 제6조제2항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에 대해 비교형량 심사를 수행했다(§ 44; 또한 *Bladet Tromsø and Stensaas v. Norway* [GC], § 65; *A. v. Norway*, § 47 참조).
- 청구인이 경찰의 수사 방법을 "고문"이라고 표현하였는데, 고문의 법적 정의와는 맞지 않게 사용함으로써 비방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Toranzo Gomez v. Spain* 사건에서, 재판소는 제8조가 적용된다고 판단한 후 스페인 법원이 적용한 기준이 상충하는 당해 권리와 이익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보장했는지 확인했다(§§ 56 및 59-60).
- 대학교수가 의원선거 후보자에 대해 상업적 분쟁에 연루되었다고 한 발언으로 명예훼손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지급명령을 받은 사건에서, 재판소는 특히 관련 정보가 사적인 성격의 문제이므로 협약 제8조를 적용하기 위해 요구되는 심각성 수준에 도달했다고 보았다(*Prunea v. Romania*, § 36).

178. 명예훼손과 관련된 일부 사건들에서, 재판소는 제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한 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비례적이었는지를 심사했다(*Falzon v. Malta*, § 56; *Fedchenko v. Russia (no. 3)*, §§ 48-49).

179. 이들 사건과 암묵적으로 제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의 경우, 재판소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제10조제2항에 바탕을 둔 비례성 심사를 수행한다(다음 절 참조).

b. 제한이 명예의 보호라는 정당한 목적에 비례하는지 평가할 때 심사기준 및 요소

180. 재판소가 명예의 보호에 관한 판례에서 발전시킨 비례성심사를 위한 자세한 심사기준과 요소는 다음과 같다.

181.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비례성 심사에서는 가장 먼저 문제의 진술이 공익에 관한 토론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판단하며, 이는 추구하는 정당한 목적이나 재판소가 적용하는 논증 방법과는 무관하다. 일반적으로, 해당 진술이 공익에 관한 토론에 기여할 경우 국가의 판단재량이 줄어들 것이다.

182. 이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정치적 발언이나 공익적 문제에 대한 토론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협약 제10조제2항이 적용될 여지가 거의 없다는 견해를 일관되게 확인해 왔다(*Stoll v. Switzerland* [GC], § 106; *Castells v. Spain*, § 43; *Wingrove v. the United Kingdom*, § 58).

i. 내용 관련 요소

α. 표현의 형식 및 수단

183. 제10조에는 예술적 자유도 포함되어 있어, 문화, 정치, 사회에 관한 정보와 모든 종류의 사상의 공개적인 교환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그 결과, 예술 작품을 창작, 공연, 배포, 전시하는 사람들은 민주사회에 필수적인 사상과 의견 교환에 기여한다(*Müller and Others v. Switzerland*, §§ 27 이하; *Lindon, Otchakovsky-Laurens and July v. France* [GC], § 47).
184. 재판소는 풍자가 예술적 표현과 사회적 논평의 한 형태로, 현실의 과장과 왜곡이라는 본질적인 특징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자극과 선동을 목적으로 한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따라서 이러한 표현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예술가 또는 다른 누구라도 그 권리에 대한 제한을 검토할 때는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Welsh and Silva Canha v. Portugal*, § 29; *Eon v. France*, § 60; *Alves da Silva v. Portugal*, § 27; *Vereinigung Bildender Künstler v. Austria*, § 33; *Tuşalp v. Turkey*, § 48; *Ziemiński v. Poland (no. 2)*, § 45). 이와 관련하여, 재판소의 판례에서 언급된 몇 가지 변형된 풍자적 표현으로는 그림(*Vereinigung Bildender Künstler v. Austria*, § 33), 정치적 메시지가 담긴 상징(*Eon v. France*, § 53), 가상 인터뷰(*Nikowitz and Verlagsgruppe News GmbH v. Austria*, § 18), 광고(*Bohlen v. Germany*, § 50), 캐리커처(*Leroy v. France*, § 44), 지역 신문의 뉴스 기사(*Ziemiński v. Poland (no. 2)*, § 45) 등이 있다.

β. 사실적시와 가치판단의 구별

185. *Lingens v. Austria* 및 *Oberschlick v. Austria (no. 1)* 판결 이후, 재판소는 사실적시와 가치판단을 신중하게 구별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사실 여부는 입증할 수 있지만 가치판단의 진실은 입증할 수 없다(*McVicar v. the United Kingdom*, § 83; *Lingens v. Austria*, § 46).
186. 가치판단의 진실을 입증하도록 하는 요건은 제10조에서 보장하는 권리의 기본 요소인 의견의 자유 자체를 충족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의견의 자유를 침해한다(*Morice v. France* [GC], § 126; *Dalban v. Romania* [GC], § 49; *Lingens v. Austria*, § 46; *Oberschlick v. Austria (no. 1)*, § 63).
187. 재판소는 국내법이나 국내 법원이 가치판단과 사실적시를 구별하지 않는 경우, 이는 가치판단의 진실에 대해 증거를 요구하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이는 또한 발언을 심사하는 데 있어 무분별한 접근법이며, 재판소는 이러한 접근법이 협약 제10조의 기본 요소인 의견의 자유와 그 자체로 양립할 수 없다고 본다(*Gorelishvili v. Georgia*, § 38; *Grinberg v. Russia*, §§ 29-30; *Fedchenko v. Russia*, § 37).

따라서 재판소는 여러 사건에서 사실과 가치판단을 구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OOO Izdatelskiy Tsentri Kvaritirnyy Ryad v. Russia*, § 44; *Reichman v. France*, § 72; *Patuel v. France*, § 35; *Lindon, Otchakovsky-Laurens and July v. France* [GC], § 55; *De Carolis and France Télévisions v. France*, § 54).

188. 재판소는 신문이 사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에 관한 진술을 검증해야 할 일반적인 의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특별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에 걸쳐 언급했다. 이러한 근거가 있었는지 여부는 특히 문제된 명예훼손 진술의 성격과 정도, 그리고 합리적으로 보았을 때 신문사가 해당 진술의 출처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정도에 달려 있다(*McVicar v. the United Kingdom*, § 84; *Bladet Tromsø and Stensaas v. Norway* [GC], § 66).
189. 진술을 사실이나 가치판단으로 분류하는 문제는 무엇보다도 국가기관, 특히 법원의 판단재량에 속하는 문제이다(*Peruzzi v. Italy*, § 48).
190. 재판소는 이와 관련하여, 문제된 진술이 진실을 입증할 수 없었던 가치판단에 해당한다거나(예를 들어, *Feldek v. Slovakia*, §§ 35 및 86 참조), 또는 반대로 사실에 관한 진술로 보았어야 한다고 판단함으로써(*Egill Einarsson v. Iceland*, § 52) 사건의 심사에서 국가기관이 분류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191. 정치인을 "비밀 나치(closet Nazi)"라는 용어로 표현한 것과 관련된 사건인 *Scharsach and News Verlagsgesellschaft v. Austria* 사건에서, 법원은 이 용어를 사실적시로 간주했으며 가치판단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는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 40). 재판소는 도덕성의 측면에서 개인의 정치활동을 평가할 때 적용되는 기준은 형법상 범죄성립에 필요한 기준과는 다르다는 견해이다(§ 43; 또한 *Unabhängige Initiative Informationsvielfalt v. Austria*, § 46; *Brosa v. Germany*, § 48 참조).
192. 사실적 주장과 가치판단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사건의 상황과 발언의 전반적인 어조를 고려해야 하며(*Brasilier v. France*, § 37; *Balaskas v. Greece*, § 58), 이러한 논리에서 공익에 관한 문제의 주장은 사실의 진술이라기보다는 가치판단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Paturol v. France*, § 37; 또한 지방자치단체 선거 후보자의 정치적 사상과 이념에 대한 언론인의 논평에 관해서는 *Lopes Gomes da Silva v. Portugal* 사건, 대법관에 대한 비판에 관해서는 *Hrico v. Slovakia* 참조).
193. 그러나 진술이 가치판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사실적 근거가 없는 가치판단은 터무니없는 주장이 될 것이다(*Pedersen and Baadsgaard v. Denmark* [GC], § 76; *De Haes and Gijssels v. Belgium*, § 42; *Oberschlick v. Austria (no. 2)*, § 33; *Lindon, Otchakovsky-Laurens and July v. France* [GC], § 55).
194. *Thorgeir Thorgeirson v. Iceland* 사건에서 재판소는 (경찰의) 만행을 주제로 작성된 문제의 기사에 포함된 특정 사실적 요소가 기본적으로 청구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말한 "이야기" 또는 "소문"에 대한 언급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소는 이 기사가 진지한 대중의 관심사에 관한 기사였고, 이 이야기가 전혀 사실이 아니라 단지 꾸며낸 것이라는 점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재판소는 그 기자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경찰의 만행에 대해 말한 것을 보도한 것이므로 주장의 사실적 근거에 관한 증거를 제시하도록 요구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재판소가 볼 때, 청구인에게 진술의 진실성을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불합리한 요구였다(§ 65; 또한 *Dyuldin and Kislov v. Russia*, § 35 참조).

195. 가치판단과 이를 뒷받침하는 사실과의 관련성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사건마다 다를 수 있다(*Feldek v. Slovakia*, § 86).
196. 재판소는 이러한 사실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고 청구인이 원고의 범죄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사건에서 제10조가 위반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Barata Monteiro da Costa Nogueira and Patrício Pereira v. Portugal*, § 38; *De Lesquen du Plessis-Casso v. France*, § 45).
197. (충분한) 사실적 근거의 요건은 표현의 자유 제한에서 비례성과 관련한 한계를 대상으로 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지역차원의 활발한 정치토론 과정에서 문제된 진술이 이루어지고, 선출직 공무원과 언론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조치들을 비판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자유를 누려야 하는 상황에서는, 실제로 그 진술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더라도 사실과 가치판단의 구별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Lombardo and Others v. Malta*, § 60; *Dyuldin and Kislov v. Russia*, § 49).
198. 신문에 실린 사실과 관련된 사건인 *Lopes Gomes da Silva v. Portugal* 사건에서, 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후보의 정치적 사상과 이념에 관해 비교적 신랄한 용어로 작성된 사실이 어느 정도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다고 보았으며, 이 사건의 상황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좁게 해석해야 하는 분야인 공익 문제에 대한 정치적 논쟁과 명백히 관련되어 있다고 판결했다(§ 33).
199. 마찬가지로, 재판소는 *Hrico v. Slovakia* 사건에서 대법관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문제의 기사가 가치판단을 표명한 것이며 충분한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했다고 판결했다. 사실에 근거를 두지 않은 경우 이러한 의견은 터무니없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재판소는 이 사건의 기사가 그러한 경우는 아니라고 언급했다(또한 *Fleury v. France*, *Cârlan v. Romania*, *Laranjeira Marques da Silva v. Portugal* 참조).
200. 일반적으로 소설 발췌문의 경우에는 사실적시와 가치판단을 구별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재판소는 문제의 작품이 순수한 허구가 아니라 실제 인물이나 사실을 이야기하는 경우 그 구별은 충분히 타당하다고 본다(*Lindon, Otchakovsky-Laurens and July v. France* [GC], § 55).
201. 재판소는 또한 풍자에 관한 사건에서 사실적시와 가치판단을 구별한다. 경쟁 선수 한 명이 부상을 당한 것에 만족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진 오스트리아 스키 선수에 대한 풍자 기사의 경우, 재판소는 문제의 발언이 농담 형식으로 표현된 가치판단에 해당하며 민주사회에서 용인할 수 있는 풍자 논평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결론지었다(*Nikowitz and Verlagsgruppe News GmbH v. Austria*).

χ. 절차적 문제: 증명의 정도, 입증책임, 무기대응

202. 위에서 자세히 살펴본, 사실과 가치판단의 구별은 명예훼손 사건의 입증책임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책임있는 저널리즘"과 관련된 문제들은 각 사건의 상황을 평가함에 있어 이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203. 표현의 자유 행사에 내재하는 "의무와 책임"은 신문사가 명예훼손적인 사실적시에 대해 검증할 일반적 의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특별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예를 들어, *Bladet Tromsø and Stensaas v. Norway* [GC], § 66 참조).
204. *Bozhkov v. Bulgaria* 사건에서, 재판소는 법원이 언론인의 직무상 행위를 평가할 때 지나치게 엄격한 접근법을 적용할 경우 언론이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과도하게 억제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따라서 법원은 판결의 결과가 당해 사건뿐 아니라 언론 전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51).
205. 따라서, 재판소는 민사상 명예훼손 소송에서 신문 기사에 실린 주장이 "개연성의 균형에 비추어 대체로 사실(substantially true on the balance of probability)"임을 입증하도록 한 요건은 협약 제10조제2항에 따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당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McVicar v. the United Kingdom*, §§ 84 및 87).
206. *Kasabova v. Bulgaria* 사건에서 재판소는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을 형사소송에서의 혐의와 똑같이 취급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또한 명예훼손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은 명예훼손 사건의 피고가 (소송에서) 검사처럼 행동하거나, 자신이 의혹을 제기했던 사람에 대해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고 유죄판결을 확보하는지 여부에 피고 자신의 운명을 맡길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된다(§ 62; 또한 *Bozhkov v. Bulgaria*, § 51; *Rumyana Ivanova v. Bulgaria*, § 39 참조).
207. 재판소는 또한 *Kasabova v. Bulgaria* 사건에서 "허위의 추정" 개념은, 증거능력있는 증거의 부족이나 관련 비용 등의 이유로 법정에서 진실로 입증되기 어려울 수 있는 자료의 공개를 지나치게 억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재판소는 허위의 추정 개념에 따라 입증책임이 전환될 경우 법원은 피고가 제시한 증거를 매우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는데, 이는 피고가 그 추정을 깨뜨리고 진실이라고 항변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다(*Kasabova v. Bulgaria*, §§ 59-62). 재판소는 기자들이 공정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한 사실만 입증할 수 있다면 출판물에서 제기한 의혹의 진실 여부를 입증해야 할 의무를 면제받고 유죄판결을 피할 수 있다고 보았다(§ 61; 또한 *Wall Street Journal Europe Sprl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dec.); *Radio France and Others v. France*, § 24; *Standard Verlags GmbH and Krawagna-Pfeifer v. Austria*, §§ 16, 30 및 57 참조).
208. 마찬가지로, 자신의 사생활을 존중받을 경찰관의 권리와 경찰에 의해 체포된 자의 표현의 자유를 비교형량하면서, 재판소는 고문의 법적 정의를 법률이 명시한 그대로 따를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개인이 공권력의 행위를 비판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개인에게 무거운 부담을 주는 것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Toranzo Gomez v. Spain*, § 65).
209. *Rumyana Ivanova v. Bulgaria* 사건에서, 재판소는 청구인이 한 정치인에 대한 사실적 주장을 출판하기에 앞서 이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았고, 언론계의 모범 사례와는 다르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입수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재판소는 청구인이 (다른 사람의 발언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의혹을 제기한 것이었고

따라서 진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소는 이 사건의 상황을 단순히 다른 사람의 발언을 보도하면서 발언의 출처를 생략하는 상황과는 구별했다(*Rumyana Ivanova v. Bulgaria*, § 62; *Radio France and Others v. France*, § 38; *Thoma v. Luxembourg*, §§ 63-64; *Pedersen and Baadsgaard v. Denmark* [GC], § 77).

210. 명예훼손 사건에서 피고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가능성과 관련하여, 지방의회 의원이 특정 종교 교파에 대한 공격적 발언을 반복하지 못하도록 한 가처분 명령에 관한 사건에서, 재판소는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를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면서도 법원은 그 증거가 이용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던 사실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였다(*Jerusalem v. Austria*, § 45; 또한 *Boldea v. Romania*, §§ 60-61; *Flux v. Moldova* (no. 4), §§ 37-38; *Busuioc v. Moldova*, § 88; *Savitchi v. Moldova*, § 59; *Folea v. Romania*, §§ 41-43 참조).
211. 그 밖에도, 재판소는 입증책임으로 인해 언론인이 정보의 출처를 공개해야 하는 상황을 중요하게 고려한다. 따라서 취재원 보호원칙에 대한 제한은 그 원칙보다 우월한 공익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만 협약 제10조와 양립할 수 있다(*Sanoma Uitgevers B.V. v. the Netherlands* [GC], § 90; *Kasabova v. Bulgaria*, § 65; *Cumpănă and Mazăre v. Romania* [GC], § 106).
212. *Steel and Morris v. the United Kingdom* 사건에서, 재판소는 청구인들과 다국적 대기업인 맥도날드사 사이의 분쟁에서 청구인들에게 부과된 입증책임에 대해 검토했다. 청구인들은 비정부기구인 런던 그린피스(London Greenpeace)가 맥도날드사를 상대로 벌이기 시작한 캠페인에 참여하여 자료를 배포했으며, 이후 청구인들은 이러한 자료를 발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판소는 첫째, 원칙적으로 이 사건의 원고가 다국적 대기업이라고 해서 명예훼손적 주장에 대해 자신을 방어할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서 안 되고, 또한 청구인들에게 그 진술의 진실성을 입증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는 의미도 아니라고 하였다(§ 94). 둘째, 재판소는 표현의 자유와 공개 토론에서 상충하는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절차적 공정성과 무기대등을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재판소는 법률적 도움의 부족으로 명예훼손 소송이 불공정하게 되었고, 이는 제6조제1항 위반이라고 언급했다. 따라서 절차의 공정과 평등의 흠결로 인해 이 사건에서는 제10조가 위반되었다(§ 95).

δ. 항변

213. 표현의 자유 행사에는 고유의 "의무와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제10조가 공익 문제에 대한 보도와 관련하여 언론에 제공하는 보호는 언론이 선의를 가지고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행동하며, 언론윤리를 지켜 "신뢰할 수 있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Bergens Tidende and Others v. Norway*, § 53; *Goodwin v. the United Kingdom*, § 39; *Fressoz and Roire v. France* [GC], § 54).
214. 따라서 특히 언론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항변의 근거들이 명예훼손 소송에 적용된다.

• *진실의 항변(The defence of truth)*

215. 명예훼손 소송에서 피고를 위한 절차적 보호조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는 제10조에 따른 제한의 비례성 심사를 수행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 중 하나이다. 특히 피고가 충분한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주장했음을 입증할 실질적인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Morice v. France* [GC], § 155, 이 사건에 언급된 추가 판례 참조).
216. 재판소는 주장이 진실임을 입증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도록 한 것은 개인의 명예와 권리의 보호를 위해 요구되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Colombani and Others v. France*, § 66).
217. 사실에 관한 진술만이 입증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진실의 항변은 사실 문제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으며 의견과 가치판단에 대해서는 주장할 수 없다(예를 들어, *Castells v. Spain*, § 48 참조).
218. 진실의 항변은 특히 언론인에 대해 적용되지만,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언제나 모든 사실을 완전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느 정도 유연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재판소는 뉴스가 "수명이 짧은 상품"이며, 비록 짧은 기간이라 하더라도 출판이 지연될 경우 뉴스의 가치와 흥미가 모두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Observer and Guardian v. the United Kingdom*, § 60).

• *선의의(Good faith)*

219. 선의의 존재 또는 선의와 관련한 사항들은 사건의 사실관계와 정황 또는 직업상의 윤리강령을 고려하여 확인될 수 있다. 언론과 관련된 경우, 재판소는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쏟아지는 현대 사회에서 언론이 가진 영향력을 고려할 때 언론윤리의 준수에 대한 감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Stoll v. Switzerland* [GC], § 104).
220. 성형외과 의사의 명예훼손과 관련된 사건에서, 재판소는 의사에게 불만을 품은 환자가 발언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강경한 어휘로 표현되긴 했으나 본질적으로 정확한 내용을 말했으며, 신문사가 이를 정확히 보도했다고 판결했다. 재판소는 신문 기사를 전체적인 맥락에서 독해한 후, 환자의 진술이 과도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Bergens Tidende and Others v. Norway*, § 56; 또한 국내 법원이 관련 기준을 적절히 검토하지 않은 사건에 관해서는 *Reichman v. France*, § 71 참조).

ii. 맥락 관련 요소

α. *진술한 사람의 역할과 지위*

221. 특정인이 민주사회에서 맡은 역할과 지위를 고려하여 협약 제10조의 보호가 강화되기도 한다. 판사와 변호사의 "공공 감시자"로서의 역할과 그 구체적인 지위는 아래 별도의 절에서 자세히 다룬다.

222. 또한, 유권자들을 대표하여 그들의 문제에 관심을 갖게 하고 그들의 이익을 옹호하는 선출직 대표자에게 표현의 자유는 특히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재판소는 야당 의원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된 사건의 경우 특히 엄격한 심사기준에 따라 검토한다(*Karácsony and Others v. Hungary* [GC], § 137; *Selahattin Demirtaş v. Turkey (no. 2)* [GC], §§ 242-245; *Castells v. Spain*, § 42; *Piermont v. France*, § 76; *Jerusalem v. Austria*, § 36; *Otegi Mondragon v. Spain*, § 50; *Lacroix v. France*, § 40; *Szanyi v. Hungary*, § 30).
223. 마찬가지로, 재판소는 *Erbakan v. Turkey* 판결에서 모든 형태의 불관용에 맞서는 것이 인권 보호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정치인이 연설에서 불관용을 조장할 수 있는 발언을 삼가는 것이 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64).

β. 진술의 대상

224. 재판소는 명예훼손 사건을 심사할 때 명예훼손 발언의 대상이 된 개인의 지위를 고려한다. 재판소는 공적 지위를 담당하는 개인의 경우 "용인할 수 있는 비판의 한계"가 사인보다 훨씬 더 넓다는 견해이다(*Palomo Sánchez and Others v. Spain* [GC], § 71).

• 정치인 및 공인

225. 재판소는 *Lingens v. Austria* 사건에서 정치인은 불가피하게 그리고 그것을 알면서도 스스로가 자신의 모든 말과 행동을 언론인과 일반 대중의 엄격한 감시 하에 놓이게 하였으므로, 정치인은 비판에 훨씬 더 관용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원칙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42; 또한 *Nadtoka v. Russia*, § 42 참조).
226. 이 관용의 요건은 정치인들이 비판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공개적인 발언과 특히 관련성이 크다(*Mladina d.d. Ljubljana v. Slovenia*, § 40; *Pakdemirli v. Turkey*, § 45). 따라서, 예컨대 *Oberschlick v. Austria (no. 2)* 사건에서 재판소는 의도적으로 자극적인 발언을 하여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킨 연설에 대한 보도에 포함된 논평은(§ 31)가 논쟁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인신공격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 33).
227. 일반적으로, 이러한 관용의 원칙은 총리(*Tuşalp v. Turkey*, § 45; *Axel Springer AG v. Germany (no. 2)*, § 67), 장관(*Turhan v. Turkey*, § 25), 시장(*Brasilier v. France*, § 41), 정치보좌관(*Morar v. Romania*), 의회 의원(*Mladina d.d. Ljubljana v. Slovenia*; *Monica Macovei v. Romania*) 또는 정당 대표(*Oberschlick v. Austria (no. 2)*)를 비롯한 모든 정치인에 게 적용된다.
228. 실제로 재판소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 원수와 정부 수반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 조치가 원칙적으로 협약의 정신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Otegi Mondragon v. Spain*, § 55; *Pakdemirli v. Turkey*, § 52; *Artun and Güvener v. Turkey*, § 31; 외국 정상에 관해서는, *Colombani and Others v. France*, § 67 참조). *Otegi Mondragon v. Spain* 사건에서, 재판소는 국왕이 정치적 논쟁에서 중립을 유지하고 중재자 역할과 국가 통합의 상징 역할을 한다는 사실만으로 국왕의 공무 집행에 대한 모든 비판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다(§ 56; 또한 *Stern Taulats and Roura Capellera v. Spain*, § 35 참조).

229. 재판소는 다양한 방식으로 공적 생활에 관여하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논리를 적용한다. *Kuliš v. Poland* 사건에서, 재판소는 공인의 경우 언행에 대해 일반 대중의 엄격한 감시를 받는 것이 불가피할 뿐 아니라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훨씬 더 관용적인 태도가 요구되기 때문에, 용인할 수 있는 비판의 범위가 더 넓다는 견해를 밝혔다(§ 47; 한 강사가 직업의 공적 성격을 넘어서서 자신의 사상이나 신념을 널리 알리기로 했으며, 이러한 결정에 따라 자신의 발언이 엄격하게 검증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던 사건에 관해서는 *Brunet-Lecomte and Lyon Mag' v. France*, § 46 참조; 또한 *Mahi v. Belgium* (dec.) 참조; 기관 차원의 문제와 그 직무의 중요성으로 인해 직무수행에 대해 비판을 받은 이슬람사원 책임자에 관해서는 *Chalabi v. France*, § 42 참조; 사업가에 관해서는 *Verlagsgruppe News GmbH v. Austria (no. 2)*, § 36 참조; 이와는 대조적으로 공공기관이 특정 사안을 심의하기 위해 임명한 전문가 지위와 유사한 자문위원회(Consultative Council) 위원에 관한 사건인 *Kaboğlu and Oran v. Turkey*, § 74).

230. 명예에 대한 보호는 정치인들이 개인 자격으로 행동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까지 확대되지만, 이 경우에도 명예 보호의 필요성과 정치적 사안의 공개적 논의에 대한 이익을 비교형량해야 한다(*Lingens v. Austria*, § 42; *Nadtoka v. Russia*, § 42).

• 정부,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

231. 재판소는 민주주의 체제의 경우 정부의 작위나 부작위가 입법부와 사법부뿐만 아니라 여론의 엄격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보면서, 정부에 대한 비판이 민간 시민이나 심지어 정치인에 대한 비판보다 더 폭넓게 허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했다(*Castells v. Spain*, § 46; *Tammer v. Estonia*, § 62; *Margulev v. Russia*, § 53). 재판소는 *Vides Aizsardzibas Klubs v. Latvia* 사건에서 이 원칙을 공공기관에 확대 적용하면서 민주사회의 공공기관이 공공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46; 또한 *Dyuldin and Kislov v. Russia*, § 83; *Radio Twist a.s. v. Slovakia*, § 53 참조).

232. 재판소는 국가기관과 공적 권한을 행사하는 공무원은 사인보다 더 광범위한 비판에 놓인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다(*Romanenko and Others v. Russia*, § 47; *Toranzo Gomez v. Spain*, § 65; 또한 공립 병원에 대한 비판은 *Frisk and Jensen v. Denmark*, § 56 및 지방 의회에 대한 비판은 *Lombardo and Others v. Malta*, § 54 참조).

233. 공공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 재판소는 대학의 권위에 대한 보호가 단지 기관의 이익에 불과하며, 제10조제2항에서 의도하는 타인의 명예나 권리에 대한 보호와 같은 정도의 강력한 보호가 적용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Kharlamov v. Russia*, § 29). 이에 따라, 대학에 대한 비판이 대학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더라도 대학에 대해 허용되는 비판의 범위는 더 넓다. 이것은 재판소가 볼 때, 대학이 몸담고 있는 기관이나 제도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명할 자유와 지식과 진실을 제약 없이 전달 수 있는 자유로 구성되는 학문의 자유의 일부이다(*Sorguç v. Turkey*, § 35; *Kula v. Turkey*, § 38).

• 공무원

234. 재판소는 공무원이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부당한 간섭이 없는 여건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하며 따라서 직무수행 중 공격적이고 모욕적인 언어적 공격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견해이지만(*Busuioc v. Moldova*, § 64; *Lešník v. Slovakia*, § 53), 공무원 또한, 정치인과 똑같은 수준은 아닐지라도 높은 수준의 관용이 요구된다고 본다. 재판소는 공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 또한 정치인과 마찬가지로 일반 시민에 비해 용인할 수 있는 비판의 범위가 더 넓다고 판결했다(*Mamère v. France*, § 27). 분명히, 일정한 상황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상대로 제기된 비판이 사인에 대한 비판보다 더 폭넓게 용인될 수 있다. 하지만, 공무원의 경우 자신의 모든 언행이 정치인과 같은 수준으로 엄격히 감시를 받을 것이라고 예상하지는 않을 것이며, 따라서 공무원의 행동에 대한 비판을 정치인에 대한 비판과 똑같이 취급해서는 안 된다(*Janowski v. Poland* [GC], § 33; *Mariapori v. Finland*, § 56; *Nikula v. Finland*, § 48; *Balaskas v. Greece*, § 48 및 특히 교사와 관련하여 §§ 50-51 참조).

235. 그 밖에도, 더 넓은 관용의 원칙은 국가 또는 국영기업에 고용된 모든 직원에게까지 확대되지 않는다(*Busuioc v. Moldova*, § 64). 예컨대 *Nilsen and Johnsen v. Norway* [GC] 사건에서, 재판소는 정부가 임명한 전문가가 정치인과 똑같은 수준의 관용을 용인해야 한다는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것은 그 전문가에게 더 많은 관용을 요구하는 것이 되었을 것이다. 재판소가 볼 때, 그 전문가에게 더 많은 관용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는 오히려 그가 관련된 직무의 범위를 넘어 사회적 논쟁에 참여하였기 때문이다(§ 52). 이러한 관점은 *De Carolis and France Télévisions v. France* 사건에서도 관련된다. 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국영기업 직원이 맡은 직책의 높고 낮음이 해당 직원에게 기대하는 관용의 정도를 평가하는 기준이라고 판결했다(§ 52).

• 판사, 감정인

236. *Morice v. France* [GC] 사건에서, 재판소는 판사가 중요한 국가기관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론적이고 일반적인 측면에서의 비판뿐 아니라 용인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개인적 비판을 받을 수 있음을 인정했다. 판사라는 공적인 권한을 행사할 경우 일반 시민보다 용인할 수 있는 비판의 범위가 더 넓을 것이다(§ 131; 또한 *July and SARL Libération v. France*, § 74; *Aurelian Oprea v. Romania*, § 74; *Do Carmo de Portugal e Castro Câmara v. Portugal*, § 40; *Radobuljac v. Croatia*, § 59; *Panioglu v. Romania*, § 113 참조).

237. 전혀 근거 없는 파괴적인 공격은 용인할 수 있는 비판의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Prager and Oberschlick v. Austria*, § 34). 따라서 국가는 근거 없는 비난으로부터 판사를 보호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Lešník v. Slovakia*, § 54; 피고인이 검사를 비난한 사건에 관해서는 *Čeferin v. Slovenia*, § 56 참조). 마찬가지로, 공적인 권한을 행사한다는 점과 그 의견이 형사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감정인 또한 직무수행에 대한 비판을 용인해야 한다(*ibid.*, § 58).

238. 다른 사람의 (특히 공권력을 행사하는 자)의 명예와 존엄의 보호에 대한 이익이 언제나 표현의 자유에 우선한다고 암묵적으로 가정한 러시아 법원의 사건에 대해 재판소는 필수적인 비교형량을 수행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Tolmachev v. Russia*, § 51).

• 피고인

239. 다른 형사소송의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에 대해 명예훼손 소송이 제기되었던 *Miljević v. Croatia* 사건에서, 재판소는 청구인의 발언이 특히 제3자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고발하는 내용이므로 이는 협약 제8조가 보호하는 권리의 제한에 요구되는 심각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한 후(§ 60-62), 피고인이 형사재판에서 항변하기 위해 진술한 내용이 더 폭넓게 보호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재판소는 타인의 범죄 의혹을 의도적으로 거짓으로 제기하는 것이 아닌 한, 형사소송의 피고인은 명예훼손 소송의 위협으로 인한 방해 받지 않고 자신의 형사재판에 관련된 문제를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82). 재판소는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심사할 때, 여러 요인 중에서도 해당 진술이 이루어진 맥락을 고려했으며, 특히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그 주장을 제기했는지 여부를 고려했다(§ 68).

• 법인(회사, 단체)

240. 국영기업이 생산한 와인을 비판한 언론 기사에 관한 사건에서, 재판소는 와인 생산업체가 명예훼손 주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권리가 분명히 있으며, 주주와 직원의 이익뿐만 아니라 더 광범위한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도 기업의 상업적 성공과 생존 가능성을 보호하는 것이 공익과 관련된 문제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소는 개인의 존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의 사회적 지위에 관한 명예와 도덕적 차원이 결여된 기업의 상업적 명성에는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Uj v. Hungary*, § 22; *OOO Regnum v. Russia*, § 66).

241. 재판소는 *Lingens v. Austria* 판결에서 명시한 원칙을 대기업과 같은 법인에 준용한다. 재판소는 *Steel and Morris v. the United Kingdom* 판결에서 대형 공기업들이 기업 행위에 대한 엄격한 감시를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이러한 기업과 해당 기업을 관리하는 경영자는 더 넓은 범위의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94; 또한 *Fayed v. the United Kingdom*, § 75 참조).

242. 재판소는 비례성 심사를 수행할 때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하는 기업의 규모와 성격 또한 추가적인 요소로 고려했다(*Timpul Info-Magazin and Anghel v. Moldova*, § 34). 재판소는 또한 민간기업이 상당한 공적자금이 투입된 거래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경우 여론의 엄격한 심사를 받게 된다고 언급했다(*ibid.*, § 34).

243. 실제로, 재판소는 사업 관행에 대한 공개적 토론이라는 공익 뿐 아니라, 주주와 직원의 이익은 물론 더 넓은 범위에서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기업의 상업적 성공과 생존능력을 보호해야 하는, 서로 충돌하는 이익도 있음을 강조했다(*Steel and Morris v. the United Kingdom*, § 94).

244. 대기업 소액주주의 진술과 관련하여, 재판소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 영리기업의 이사진이 기업의 장기적 이익을 고려하여 사업을 수행하도록 할 목적으로 이들 이사진의 책임을 강조한 진술이 높은 수준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Petro Carbo Chem S.E. v. Romania*, § 43). 재판소는 청구인 기업이 주주와 직원의 상업적 성공과 생존능력, 보다 일반적인 경제적 안녕을 저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주식을 보유 중인 기업의 경영 문제에 관한 토론을 촉발하기 위해 해당 진술을 발언했다고 판결했다. 재판소는 청구인 기업의 발언이 경영 관행을 개선하고 장기적인 가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그 회사에 대한 통제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았다(§ 52).

245. 단체와 기타 비정부기구에 대해 허용될 수 있는 비판의 한도는 해당 단체가 공적 토론에 어느 정도 참여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재판소가 밝힌 바와 같이, 단체는 공적 토론에 참여하는 순간 여론의 엄격한 심사를 받게 된다(*Jerusalem v. Austria*, § 38). 그 결과, 공공영역에서 활동하는 단체는 그들의 목적과 공적 토론에서 사용한 수단에 대한 반대 측의 비판에 대해 더 관용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Paturel v. France*, § 46).

iii. 명예훼손에 대응하는 조치와 제재의 성격

246. 부과되는 제재의 성격과 심각성은 제10조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에 대해 비례성 심사를 수행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요소이다(*Cumpănă and Mazăre v. Romania* [GC], § 111). 이러한 기준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247. 어떠한 선고를 내릴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문제이지만(*Cumpănă and Mazăre v. Romania* [GC], § 115), 재판소는 그것이 비례성을 갖추었는지 심사할 것이다.

α. 형사처벌

248. 협약 제10조가 회원국에 부여한 판단재량을 고려할 때, 명예훼손을 형사처벌한다고 해서 추구하는 목적에 비례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Radio France and Others v. France*, § 40; *Lindon, Otchakovsky-Laurens and July v. France* [GC], § 59).

249. 재판소는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을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인정하지만, 국가기관의 우월한 지위를 고려할 때 국가기관은 형사소송을 통해 명예훼손에 대응하지 않도록 자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Morice v. France* [GC], § 176; *De Carolis and France Télévisions v. France*, § 44; *Otegi Mondragon v. Spain*, § 58; *Incal v. Turkey*, § 54; *Öztürk v. Turkey* [GC], § 66). 재판소는 필요한 경우 민사적 조치나 징계 조치와 같은 다른 유형의 구제수단을 활용할 것을 권고한다(*Raichinov v. Bulgaria*, § 50; *Ceylan v. Turkey* [GC], § 34).

250. 재판소는 명예훼손 사건에서 부과되는 형사처벌이 얼마나 무거운지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며, 특히 공익과 관련된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이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언론인에 대한 징역형은 예외적인 상황, 특히 혐오표현이나 폭력 선동의 경우처럼 다른 기본권이 심각하게 훼손된 경우에만 협약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언론인의 표현의 자유와 양립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Cumpănă and Mazăre v. Romania* [GC], § 115; *Ruokanen and Others v. Finland*, § 50; *Balaskas v. Greece*, § 51; 또한 재판소가 청구인에게 선고된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극도로 과도하다"며 청구인을 즉시 석방할 것을 명한 사건으로는 *Fatullayev v. Azerbaijan*, §§ 129 및 177 참조).

251. 따라서, 재판소는 인종혐오표현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은 한 사업가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고 언론 및 출판 활동을 2년 동안 금지한 결정이 제10조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Atamanchuk v. Russia*, § 72).
252. *Bédat v. Switzerland* [GC] 사건에서, 재판소는 그 제재가 언론의 비판을 억제하려고 하는 일종의 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소는 또한 이러한 제재가 언론인들이 공동체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한 공개 토론에 기여하는 것을 억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79; 또한 *Toranzo Gomez v. Spain*, § 64; *Lewandowska-Malec v. Poland*, § 70; *Barthold v. Germany*, § 58; *Lingens v. Austria*, § 44; *Monnat v. Switzerland*, § 70 참조).
253. 재판소는 언론과 관련된 사건에서 부과되는 제재가 경미한 것이라 하더라도 제재의 경중보다는 그것에 내재된 형벌적 성격이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판결했다 (*Stoll v. Switzerland* [GC], § 154; *Haldimann and Others v. Switzerland*, § 67).
254. 이 논리는 *De Carolis and France Télévisions v. France* 사건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재판소는 피고인의 형의 집행을 면제하면서 그저 "상징적인 수준의 유로(euro)"를 배상명령을 한 유죄판결과 같이, 가능한 범위에서 가장 가벼운 형태의 제재라 하더라도 그 제재가 형벌에 해당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63; 또한 *Jersild v. Denmark*, § 35; *Brasilier v. France*, § 43; *Morice v. France* [GC], § 176 참조).
255. 반면, *Pedersen and Baadsgaard v. Denmark* [GC] 사건에서, 재판소는 언론인들이 심각한 범죄혐의에 관한 발언을 보도하면서 해당 발언의 사실 여부를 검증하고자 노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할 "중대한 사회적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소는 이 사건의 벌금이 과도하다거나, 언론의 자유를 행사하는 데 일종의 "위축효과"를 가진다고 보지 않았다(§§ 92-94). 게다가 덴마크 대법원은 민주사회에서 언론의 자유가 특히 중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인정했다(§ 71).
256.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을 통해 명예훼손에 대응하지 않도록 자제해야 한다는 원칙은 언론의 자유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개인에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재판소는 *Kanellopoulou v. Greece* 사건에서 외과의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청구인에게 선고된 징역형이 과도한 처벌이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의 경우 민법상의 조치를 활용했더라도 해당 외과의사의 명예를 보호하기에 충분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38; 또한 *Mătășaru v. the Republic of Moldova*, § 35 참조; 형사 변호사의 유죄판결에 관해서는 *Nikula v. Finland*, § 55 참조).

257. 이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유럽평의회 의원총회 결의 1577 (2007)([Resolution 1577 \(2007\)](#))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결의안은 명예훼손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는 법을 시행 중인 국가들에 대해 비록 실제로 징역형이 선고되지 않더라도 지체 없이 이러한 법을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Otegi Mondragon v. Spain](#); [Artun and Güvener v. Turkey](#); [Mariapori v. Finland](#), § 69; [Niskasaari and Others v. Finland](#), § 77; [Saaristo and Others v. Finland](#), § 69; [Ruokanen and Others v. Finland](#), § 50).

β. 민사상, 회복적 조치와 제재

• 손해배상

258. 재판소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을 규율하는 국내법이 한정되지 않은 다양한 사실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배심원단이 각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손해액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으려면 상당한 수준의 융통성이 요구될 수 있다 ([Tolstoy Miloslavsky v. the United Kingdom](#), § 41; [OOO Regnum v. Russia](#), § 78).

259. 재판소는 [Tolstoy Miloslavsky v. the United Kingdom](#) 사건에서 과도한 손해배상액이 산정되었다고 판결하면서, 이와 같이 과도한 손해배상이 산정될 수 있었던 이유가 당시에 과도한 배상을 제한하는 적절하고 실효적인 보호조치가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51; 유사한 취지의 판결에 관해서는 [Independent Newspapers \(Ireland\) Limited v. Ireland](#), § 105 참조).

260. 재판소는 손해배상액의 비례성을 심사할 때 해당 배상금액이 청구인의 경제적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수 있다(배상금액이 청구인의 경제적 상황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은 사건에 관해서는 [Delfi AS v. Estonia](#) [GC], § 161 참조; 청구인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과도한 배상액이 산정된 사건에 관해서는 [Kasabova v. Bulgaria](#), § 43 및 [Tolmachev v. Russia](#), §§ 53-55 참조). 재판소는 또한 해당 국가에서 시행 중인 최저 급여와 같은 기준 금액을 참고할 수 있다([Tolmachev v. Russia](#), § 54).

261. 배상금액의 비례성에 대한 심사는 법원이 명예훼손의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 부과하는 제재의 성격과 소송비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Ileana Constantinescu v. Romania](#), § 49).

262. 마지막으로, 손해배상명령의 "위축효과"는 명예훼손 발언에 대한 구제책의 비례성을 심사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언론인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언론사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언론사의 근본적인 재정상태를 위협할 정도로 과도하게 산정되지 않도록 보장하고자 노력한다([Błaja News Sp. z o. o. v. Poland](#), § 71). 따라서 재판소는 [Timpul Info-Magazin and Anghel v. Moldova](#) 사건에서 청구인 기업이 과도한 손해배상액으로 인해 폐업하게 되었다고 언급했다(§ 39).

263. 이와 동시에 재판소는 "상징적인 수준의 배상금인 1프랑"의 배상액이 결정된 사건에서 상대적으로 가벼운 제재일지라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를 강조했다([Brasilier v. France](#), § 43; [Paturel v. France](#), § 49; [Desjardin v. France](#), § 51).

• *반론권, 철회 또는 정정, 법원의 사과문 공표 명령*

264. 청구인의 저서를 비판한 기사가 실린 후 청구인이 해당 신문사에 반론보도를 요청했으나 신문사에서 이 요청을 거부한 것과 관련된 *Melnychuk v. Ukraine* (dec.) 사건에서, 재판소는 국가가 첫째, 청구인이 신문사에 반론을 제출하고 게재할 수 있도록 하여 반론권을 행사할 합리적인 기회를 보장하고, 둘째, 반론보도를 거절한 신문사의 결정에 대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보장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청구인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적극적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다. 재판소는 표현의 자유의 중요한 요소인 반론권이 사실과 다른 정보에 대해 반론을 제기할 필요성뿐 아니라 특히 문학적, 정치적 논쟁과 같은 공익적 사안에서 의견의 다양성을 보장할 필요성에서 파생되는 권리라는 견해이다(§ 2).

265. 따라서 협약 제10조제2항에 따른 제한과 한계는 반론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66. 마찬가지로, 재판소는 명예훼손 사건에서 발언의 철회, 사과, 심지어 법원의 결정까지 게재하도록 한 것은 사인이 제시한 기사와 논평을 게재할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신문사를 비롯한 언론이 누리는 편집에 관한 재량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Eker v. Turkey*, § 45; *Melnychuk v. Ukraine* (dec.)).

267. 위원회 결정인 *Ediciones Tiempo v. Spain* 사건에서, 청구인 언론사는 자신이 소유한 주간지에 게재되었던 기사에 대한 반론보도를 명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위원회에 청구를 제기했다. 특히 청구인 언론사는 해당 기사가 거짓임을 알고 있었다는 내용의 진술을 게재하도록 명령한 것을 문제삼았다. 위원회는 반론보도에 수록된 정보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을 유일한 근거로 삼아 반론권 행사를 거부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청구를 각하했다. 위원회의 견해에 따르면, 협약 제10조는 언론사가 진실한 내용이라고 판단한 정보만을 게재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며, 사인의 반론을 게재할 의무를 이행하기에 앞서 무엇이 진실인지 결정할 권한을 언론사에 부여한 것이라고는 더욱 해석할 수 없다. 반론권을 명시한 규정은 다양한 출처로부터 정보를 받는 대중의 이익을 보호함으로써 대중이 가능한 한 많은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또한 이 출판사가 기사 내용을 수정할 의무가 없으며, 비판 대상자의 반론보도를 게재할 때 출판사 측에서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함께 게재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Ediciones Tiempo v. Spain*, § 2).

268. 위원회는 반론이 실효적이기 위해서는 즉시 배포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반론에서 주장하는 사실의 진실성 여부를 발행 당시 자세히 확인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보았다.

• *철회, 정정 또는 사과 명령*

269. 역사학자에게 발언의 철회를 명한 *Karsai v. Hungary* 판결에서, 재판소는 법원이 역사학자에게 공개적으로 발언을 철회할 것을 명령함으로써 역사학자로서 청구인의 전문성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내렸고, 따라서 위축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36).

270. *Smolorz v. Poland* 사건에서, 재판소는 명예훼손 발언을 이유로 기자에게 공개사과문 게재를 명령한 것에 대해 비례성 심사를 한 후, 청구인에게 부과된 제재가 경미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청구인이 자신의 발언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해야만 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42).

• 기타 공표

271. 재판소는 청구인이 자비로 전국적으로 발행되는 신문에 판결문을 공표하도록 명령한 법원의 결정을 분석한 후, 청구인이 정당하게 참여하고자 했던 토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법원의 결정은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는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Giniewski v. France*, § 55).

272. 청구인 단체에 대해 그 인터넷 사이트에서 비판적인 내용의 기사를 삭제한 후 주(canton) 법원의 판결요지를 공표하고 소송비용과 경비를 지급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사건에서, 재판소는 이 명령이 대체로 상징적 수준의 배상이고, 과도하거나 비례성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Cicad v. Switzerland*, § 62).

• 잠정적 및 영구적 금지명령

273. 재판소는 일반적으로, 제10조가 공표에 대한 사전 제한(prior restraint)을 금지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재판소는 사전 제한에 내재한 위험으로 인해 가장 엄격한 심사가 요구된다는 견해이다. 뉴스는 수명이 짧은 상품이고 비록 짧은 기간이라도 출판이 지연될 경우 뉴스의 가치와 흥미가 모두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언론과 관련된 경우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는 논리이다(*Observer and Guardian v. the United Kingdom*, § 60; 또한 *Cumpănă and Mazăre v. Romania* [GC], § 118 참조).

따라서 이러한 제한은 금지범위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남용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사법심사를 보장하는 법 체계에 포함되어야 한다(*Ahmet Yildirim v. Turkey*, § 64, 이 사건에서 언급된 추가 판례 참조).

274. 이 원칙을 재확인한 *Cumhuriyet Vakfi and Others v. Turkey* 사건에서, 재판소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자의적인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그 제도에 포함된 절차적 보호장치에 대해서도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잠정적 금지명령의 범위와 기간, 금지명령의 논거 및 명령을 내리기 전에 그 조치를 다룰 수 있었는지 등을 검토했다(§§ 61-74).

275. 재판소는 출연자의 발언을 이유로 라디오 방송국에 180일의 방송금지명령을 내린 결정이 추구된 목적에 비례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Nur Radyo Ve Televizyon Yayıncılığı A.Ş. v. Turkey*, § 31).

276. 독일 법원이 특정 영화의 방영을 금지하면서 관련된 사정들이 변경될 경우 다시 심사할 수 있도록 한 사건에서, 재판소는 독일 법원이 청구인 단체의 표현의 자유와 문제된

기업의 명예 보호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한 것으로 보았다(*Tierbefreier e.V. v. Germany*, § 58).

277. 타인의 명예 보호와 사법부의 권위 유지를 목적으로 형사재판에 대한 공표를 일반적이고 절대적으로 금지한 것에 관한 사건에서, 재판소는 그 금지가 사인에 의한 소추로 개시된 형사재판에만 적용되고, 검찰의 공소제기로 개시된 재판 또는 사인소추에 의해 개시되지 않은 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법원이 제시한 이유는 형사재판의 공표금지를 정당화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재판소는 정보를 전파할 권리에 대한 차별취급에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반면에 사인소추에 의한 형사재판에 관련된 경우에도, 이 사건에서와 같이 공익에 관한 것일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대중에게 알릴 언론의 권리를 전적으로 침해한다고 판단했다(*Du Roy and Malarie v. France*, §§ 35-36).

V. "공공 감시자" 역할: 강화된 보호, 의무 및 책임

A. 공공 감시자 역할

278. 재판소는 민주사회에서 언론이 담당하는 "감시자"로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항상 강조했으며, 모든 공익적 사안에 관한 정보와 사상을 전달하는 언론의 역할과 일반 대중이 이러한 정보와 사상을 접할 권리를 서로 연결된 것으로 보았다(*Satakunnan Markkinapörssi Oy and Satamedia Oy v. Finland* [GC], § 126; *Bédat v. Switzerland* [GC], § 51; *Axel Springer AG v. Germany* [GC], § 79; *The Sunday Times v. the United Kingdom (no. 2)*, § 50; *Bladet Tromsø and Stensaas v. Norway* [GC], §§ 59 및 62; *Pedersen and Baadsgaard v. Denmark* [GC], § 71; *News Verlags GmbH & Co.KG v. Austria*, § 56; *Dupuis and Others v. France*, § 35; *Campos Dâmaso v. Portugal*, § 31).
279. "언론"의 자유가 문제되는 경우 국가기관은 "강력한 사회적 필요"의 존재 여부를 판단할 때 제한적인 판단재량만을 행사할 수 있다(*Stoll v. Switzerland* [GC], § 102).
280. 언론이 "공공 감시자" 개념의 중심을 차지하지만, 재판소는 NGO도 같은 역할을 한다고 인정한다(*Animal Defenders International v. the United Kingdom* [GC], § 103; *Medžlis Islamske Zajednice Brčko and Others v. Bosnia and Herzegovina* [GC], § 86; *Cangi v. Turkey*, § 35).
281. 마찬가지로, 학문 연구자와 공익 문제에 관한 문헌을 저술하는 저자들 또한 높은 수준의 보호를 받는다. 재판소는 뉴스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을 높이고 정보의 전파를 촉진하는 데 있어서 인터넷이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고려할 때, 소셜 미디어의 인기 사용자와 블로거의 기능 또한 제10조가 제공하는 보호에 관한 한 "공공 감시자"의 기능과 유사할 수 있다고 하였다(*Magyar Helsinki Bizottság v. Hungary* [GC], § 168).
282. 특히, 재판소는 NGO가 수행하는 공공 감시자 역할은 "언론과 유사한 중요성"을 지닌다고 보았다(*Animal Defenders International v. the United Kingdom* [GC], § 103; *Steel and Morris v. the United Kingdom*, § 89; *Magyar Helsinki Bizottság v. Hungary* [GC], § 166). 재판소의 견해에 따르면, 언론과 유사한 방식으로 공공 감시자 역할을 하는 NGO의 경우 공무원의 비리를 공표할 때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개인적으로 목격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는 개인적인 보도에 비해 훨씬 많은 수단들을 동원하여 비판의 진실성을 검증하고 입증할 가능성이 크다(*Medžlis Islamske Zajednice Brčko and Others v. Bosnia and Herzegovina* [GC], § 87).
283. 재판소는 또한 '유럽 비정부기구의 지위에 대한 기본 원칙(Fundamental Principles on the Status of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in Europe)'을 언급하면서(*Medžlis Islamske Zajednice Brčko and Others v. Bosnia and Herzegovina* [GC], §§ 45 및 87) 언론인의 표현의 자유에는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는 원칙이 사회의 감시자 기능을 담당하는 NGO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Magyar Helsinki Bizottság v. Hungary* [GC], §§ 159 및 166).

B. 언론인의 역할과 관련된 권리, 의무 및 책임

284. 제10조에 따라 "공공 감시자"와 특히 언론인에 제공되는 강력한 보호는 이들이 언론인의 역할과 관련된 의무와 책임을 준수하고 그에 따른 "책임있는 저널리즘"의 의무를 준수할 것을 전제로 한다.
285. 아래에서는 언론인에 대한 보호의 가장 중요한 측면과 협약 제10조제2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살펴본다.

1. 정보수집

a. 탐구 및 조사 활동

286. 재판소는 정보 수집이 저널리즘의 필수적인 준비단계로서 언론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이자, 보호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확립된 원칙이라고 판결해 왔다(*Satakunnan Markkinapörssi Oy and Satamedia Oy v. Finland* [GC], § 128; *Magyar Helsinki Bizottság v. Hungary* [GC], § 130; *Guseva v. Bulgaria*, § 37; *Shapovalov v. Ukraine*, § 68).
287. 재판소는 공표 전 준비단계에 관한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재판소의 통제를 받는 사안일 뿐 아니라, 언론인의 조사와 탐사보도 활동에 대한 제한은 매우 큰 위험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제한에 대해서는 재판소가 가장 엄격한 수준의 심사를 수행해야 한다는 견해이다(*Dammann v. Switzerland*, § 52; *The Sunday Times v. the United Kingdom (no. 2)*, § 51).
288. 재판소는 공익적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하기 위해 생성된 장애물로 인해 언론이나 관련 분야의 종사자들이 이러한 사안을 조사하고 보도하는 활동을 단념시킬 수 있다고 본다(*Magyar Helsinki Bizottság v. Hungary* [GC], § 167; *Társaság a Szabadságjogokért v. Hungary*, § 38; *Shapovalov v. Ukraine*, § 68).
289. 다른 사건에서 청구인(기자)은 과거 여러 사람이 유죄판결을 받은 사안을 조사하고 있었다. 청구인은 정보를 입수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교사한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았다. 재판소는 이 유죄판결이 일종의 검열에 해당한다고 보았는데, 특정 주제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는 기사를 작성하기 위한, 기자라는 직업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탐사 활동을 단념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발생한 것처럼 공표 전의 탐사 활동을 처벌할 경우 언론인들이 공동체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한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을 억제할 위험이 크다고 보았다(*Dammann v. Switzerland*, § 57).
290. 마찬가지로, 보험중개인의 상업적 관행을 몰래 카메라로 촬영한 뒤 방송을 통해 보도한 사건에서, 재판소는 정보입수 방법에 대해 판단하면서, 이는 언론인들인 청구인들이 계획적으로 직업윤리를 위반했다고 비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Haldimann and Others v. Switzerland*, § 61). 재판소는 또한 청구인들이 정보수집 과정에서 언론윤리규정을 지키지 않았는지에 대해 법원이 만장일치 의견을 채택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재판소는 의심스러운 경우 청구인들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보았다(*ibid.*, § 61).

b. 정보 수집을 위해 특정 현장이나 장소에 접근하고 머무는 것

291. 재판소는 경찰의 전반적인 금지 조치로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기간에 한 언론인이 회의장에 들어갈 수 없었던 사건에서 먼저 이 집단적 조치가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 행사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언급했다. 재판소는 이러한 결론을 내리면서 청구인이 특정 주제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취재하기 위해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회의장에 입장하고자 했다고 언급했다. 재판소는 이어 관할 당국이 폭력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과 평화적인 시위자를 구분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법령에는 관할 당국이 전반적인 치안 조치를 내릴 권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이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회의장에 입장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은 조치는 협약 제10조제2항의 목적상 "법이 정하는" 조치로 볼 수 없었다(*Gsell v. Switzerland*, §§ 49 및 61).
292. 의회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의회 연설이 높은 수준으로 보호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의회는 민주사회에서 매우 특별한 토론의 장으로서 본질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Karácsony and Others v. Hungary* [GC], § 138). 국회 의사진행 과정에서 언론인들을 기자석에서 내보낸 것과 관련하여, 재판소는 그 기자들이 선출직 대표자의 의회 활동 정보와 의회가 토론 과정에서 발생한 소란에 대처하는 과정에 관한 정보를 대중에게 전달하는 권리를 행사하고 있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의회 토론 현장에서 기자들을 내보내려는 모든 조치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가 적용되어야 한다(*Selmani and Others v.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 75; *Pentikäinen v. Finland* [GC] 판결의 §§ 89 및 107 참조). 재판소는 첫째, 기자들이 본회의장에서 공공 안전이나 질서를 위협하지 하지 않았으며(§ 80), 둘째, 기자들을 내보낸 것은 본회의장에서 사태가 일어나는 동안 직접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적인 정보를 입수하는 것을 제한하는 즉각적인 역효과를 미쳤다고 강조하면서, 이러한 직접적인 정보 입수는 청구인들이 언론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서 이는 국민을 위해서도 제한되어서는 안 되는 활동이라고 지적했다(§ 84).
293. 지정구역 밖에서 하원의원들과의 인터뷰 영상을 녹화했다는 이유로 기자들의 의회 출입을 중단한 결정을 다룬 *Mándli and Others v. Hungary* 판결에서, 재판소는 의회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녹화 가능한 구역을 지정하는 등 의회가 의회 건물 내에서의 활동을 규제하는 문제에서 어느 정도 존중을 받아야 한다고 보았다(§§ 68-70). 하지만, 재판소는 적절한 절차적 보호의 결여, 즉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없었다는 점, 영상녹화금지 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던 점, 그리고 논란이 된 결정에 대해 실효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방법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협약 제10조 위반으로 판결했다(§§ 72-78).
294. 재판소의 견해에 따르면, 언론은 국가기관이 공공질서 유지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위 대응과 무질서 방지를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언론의 "감시자" 역할은 이러한 맥락에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언론의 존재는 시위대를 통제하거나 해산하거나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

방법을 비롯해 국가기관이 대규모 집회에서 질서유지를 위해 시위대와 일반 대중을 상대로 수행한 활동에 대해 해당 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때문이다(*Pentikäinen v. Finland* [GC], § 89).

295. 특히 교도소 내 재소자와의 인터뷰 촬영을 전면 금지한 것과 관련된 사건에서, 재판소는 문제의 금지 조치를 시행할 강력한 사회적 필요를 전혀 확인할 수 없으며, 국가기관은 해당 결정을 내릴 때 상충하는 이익 사이에서 실질적인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Schweizerische Radio- und Fernsehgesellschaft SRG v. Switzerland*, §§ 22 및 65).
296. *Szurovecz v. Hungary* 사건에서는 탐사보도 기자인 청구인이 난민수용시설 내 생활여건에 관한 기사를 작성할 목적으로 수용자들과 인터뷰를 하기 위해 망명 신청자를 수용하는 난민수용시설 방문 허가를 신청했으나, 관련 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했다. 재판소는 특히 국가기관의 취약계층에 대한 대우와 관련된 경우 특정 장소에 대한 보도가 공익과 관련된 문제라고 판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언론이 특히 중요한 "감시자"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언론 보도가 관할 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보장해 주기 때문이다. 관련 사안이 공익과 관련된 문제였으므로 국가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었다(§§ 61-62). 재판소는 난민수용시설에서 직접 취재하는 방법 외에 다른 대안이 존재한다고 해서 청구인이 관련자를 직접 인터뷰하고 난민수용시설의 생활여건을 직접 파악하는 것에 대한 이익이 소멸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74).

c. 취재 활동의 합법성

297. "책임있는 저널리즘" 개념은 협약 제10조의 보호를 받는 전문활동으로서 언론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통해 수집되거나 전파되는 정보의 내용에 한정된 개념이 아니다. 그 개념은 무엇보다 언론의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가기관과의 공개적인 상호작용을 비롯한 언론인의 활동이 적법해야 한다는 것도 포함한다. 언론인이 취재 과정에서 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은 비록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더라도 그 언론인이 책임있게 활동했는지를 판단할 때 가장 관련성있는 고려사항이다(*Pentikäinen v. Finland* [GC], § 90).
298. 이와 관련해 재판소는 언론인이 면책되지 않는 일반적인 형사법 준수 의무와 언론이 공공 감시자로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전달에 대한 직업적 의무가 때때로 충돌할 수 있음을 인정했다. 이러한 이해관계 충돌 상황을 고려할 때, "책임있는 저널리즘"의 개념에서는 언론인뿐만 아니라 그 고용주가 두 의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경찰의 합법적인 명령을 따르지 않는 등 일반적인 형사법 준수 의무에 반하는 선택을 한다면, 해당 언론인은 형사처벌을 포함한 법적 제재를 받게 될 위험이 있음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요구된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Pentikäinen v. Finland* [GC], § 110). 재판소는 언론인이 제10조에 따라 보호받는다든 것만으로는 일반적인 형사법 준수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했다(*Stoll v. Switzerland* [GC], § 102).

299. 다시 말해, 언론인은 범죄가 언론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 벌어졌다는 이유만으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다른 개인들과 달리 형사책임으로부터 배타적인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Pentikäinen v. Finland* [GC], § 91 및 이 사건에서 언급된 추가 판례 참조).
300. 다만, 재판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되는 조치가 필요한 것이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사건의 이해관계(β), 법원의 조치에 대한 심사(γ), 청구인의 행동(δ), 언론인에 대한 제재가 비례적이었는지(ϵ)와 같은 다양한 사항을 고려했다(*Stoll v. Switzerland* [GC], § 112).
301. 따라서 재판소는 기밀문서로 분류된 외교 문서 공개(*Stoll v. Switzerland* [GC]), 시위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한 후 경찰의 해산 명령 불복종(*Pentikäinen v. Finland* [GC]), 무선 장비를 사용한 경찰의 통신 차단(*Brambilla and Others v. Italy*), 보안 시스템의 결함을 밝히고자 무기를 소지하고 비행기에 탑승한 사건(*Erdtmann v. Germany* (dec.)), 무기를 쉽게 소지할 수 있음을 입증하고자 불법 무기를 소지한 행위(*Salihu and Others v. Sweden* (dec.)), 금지된 폭죽의 구입과 불법 운송(*Mikkelsen and Christensen v. Denmark* (dec.)), 협박 및 조직범죄(*Man and Others v. Romania* (dec.)) 등의 사건에서 언론인의 불법행위에 대응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조치가 추구된 정당한 목적에 비례했다고 판결했다.
302. *Satakunnan Markkinapörssi Oy and Satamedia Oy v. Finland* [GC] 사건에서, 재판소는 언론기업인 청구인이 실제로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세무 정보를 입수하지는 않았으나 분명히 언론에 허용된 정상적인 경로를 우회하여 세무 정보에 접근하는 정책을 두고 있었으며 따라서 국가기관이 세무 정보에 대한 접근과 유포를 규제하기 위해 확립한 견제와 균형을 피했다고 판단했다(§ 185). 재판소는 특히 언론기업인 청구인은 세무 정보의 대량 수집과 대규모 유포가 단지 언론활동 목적을 위한 것으로만 간주되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야 했다고 언급했다(§ 151; 또한 기자가 제3자의 사생활을 존중하지 않은 결과로 기록물 보관소에서의 자료조사를 허용했던 인가를 취소한 조치에 관해서는 *Gafiuc v. Romania*, §§ 86-88 참조).
303. 기자들에게 내려진 추방명령과 입국금지 조치에 관한 *Zarubin and Others v. Lithuania* (dec.) 사건에서 재판소는, 리투아니아 법원은 그 기자들이 그들의 사상을 전파했기 때문이 아니라 고위 정치인들의 행사에서 공격적이고 도발적인 활동을 벌였기 때문에 이들이 국가안보를 위협했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언급했다(§§ 53, 57).

2. 편집 결정과 관련된 의무와 책임

304. 편집 결정과 관련된 의무와 책임은 언론 "윤리" 또는 언론 "윤리강령"과 같은 개념이나 "책임있는 저널리즘"의 개념에 따라 다뤄진다. 이러한 의무 및 책임과 관련된 요소는 재판소의 심리에서 사용되는 다른 기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 해설서의 다른 장에서도 논의되나 여기서 주요 내용을 요약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305. 언론의 자유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통치되는 국가에서 언론이 수행하는 주요한 역할을 항상 염두에 두고 편집 결정과 관련된 "의무와 책임"의 범위를 심사했다(*Thorgeir Thorgeirson v. Iceland*, § 63).
306. 민주사회에서 언론이 담당하는 필수적인 역할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2항은 중요한 공익에 관한 언론 보도라 할지라도 전적으로 무제한적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Bladet Tromsø and Stensaas v. Norway* [GC], § 65; *Monnat v. Switzerland*, § 66).
307. 재판소의 견해에 따르면, 제10조가 공익 문제에 대한 보도와 관련하여 언론에 제공하는 보호는 언론이 선의로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행동하며, 언론윤리에 따라 "신뢰할 수 있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Axel Springer AG v. Germany* [GC], § 93; *Bladet Tromsø and Stensaas v. Norway* [GC], § 65; *Pedersen and Baadsgaard v. Denmark* [GC], § 78; *Fressoz and Roire v. France* [GC], § 54; *Stoll v. Switzerland* [GC], § 103; *Kasabova v. Bulgaria*, §§ 61 및 63-68; *Sellami v. France*, §§ 52-54; 공개 토론에 참여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재판소가 언급한 것에 관해서는 *Steel and Morris v. the United Kingdom*, § 90 참조).
308. 이러한 전제 조건은 또한 "책임있는 저널리즘의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으로 표현된다(*Bédât v. Switzerland* [GC], § 50; *Pentikäinen v. Finland* [GC], § 90).
309. 이러한 고려사항은 현대 사회에서 언론이 가진 영향력을 감안할 때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대 사회의 언론은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을 통해 그 정보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제시하기 때문이다. 전통 매체와 전자 매체를 통해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쏟아지며, 관련 행위자가 끊임없이 증가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언론윤리 준수에 대한 감시가 한층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Stoll v. Switzerland* [GC], § 104).
- a. 신뢰성 있는 정확한 정보: 검증 및 전달에 대한 책임**
310. 일반적으로, 재판소는 기자들이 공식적인 자료에서 입수한 정보를 근거로 보도할 경우에는 그 정보의 사실 여부를 검증할 필요 없이 자유롭게 보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Selistö v. Finland*, § 60; *Axel Springer AG v. Germany* [GC], § 105; *Yordanova and Toshev v. Bulgaria*, § 51).
311. 청구인이 마약단속반 소속 특정 경찰관의 활동에 대한 조사와 약물 과다복용으로 인한 사망자 수를 나타낸 공식적인 진단서와 같은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한 사건에서, 재판소는 청구인이 기사를 게재한 것은 해당 보도에서 언급된 경찰관의 명예에 대한 무분별한 공격이라기보다는 공익 사안에 대한 공정한 논평이었다고 판결했다(*Godlevskiy v. Russia*, § 47).
312. 언론인인 청구인이 공식적인 재산신고를 참고하여 전 의회 의원의 재산상황에 관한 개요를 작성한 사건에서, 재판소는 청구인이 독자적인 조사를 수행하지 않고서도 공식 문서를 신뢰할 권리가 있다고 결론지었다(*Gorelishvili v. Georgia*, § 41).

313. 한 일간지가 다른 나라의 국가원수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을 보도한 후 일간지의 발행 책임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이 제기되었다. 문제의 발언에서는 그 국가원수가 국제 마약밀매와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일간지 발행 책임자는 그 국가원수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 보도에 민사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았다. 재판소는 첫째, 스페인 법원이 공개된 정보의 내용이 기본적으로 사실임을 부인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기사 작성 당시 진행 중에 있었던 소송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누락되었던 것에 관해서는, 재판소는 기사 작성 이용할 수 있었던 정보들을 참조한 것이라면서, 기사 작성자의 입장에서는 당시 진행 중이었지만 두 달이 지나서야 유죄판결이 내려질 형사소송의 결과에 대해 알 수 없었을 것이고, 열람이 제한되어 있던 경찰 및 법원의 문서를 조사할 수도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Gutiérrez Suárez v. Spain*, § 37).
314. 재판소는 법원이 문제된 보도에서 근거로 삼은 정보의 유형을 구별한 것은 적절한 판결이었다고 강조했다. 특정 개인이 마피아의 조직원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하여, 독일 법원은 청구인 출판사가 정부의 내부 보고서를 통해 전달된 의혹을 실제보다 과장하여 보도했으며, 매우 중대한 의혹을 제시했음에도 추가적인 사실을 통해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독일 법원은 언론이 추가 조사를 수행하지 않고도 정부의 공식 발표나 공식 보도자료를 신뢰할 수 있지만, 정부의 내부 자료는 그러한 자료들과는 구별된다고 보았다. 재판소는 무죄로 추정될 권리가 있는 범죄행위 혐의에 관한 보도의 경우 이러한 구별이 특히 더 타당하다고 보았다 (*Verlagsgruppe Droemer Knauer GmbH & Co. KG v. Germany*, § 48).
315. 뉴스 웹사이트의 자료를 출처를 명시하여 그대로 옮겨 실은 것과 관련된 사건에서, 재판소는 실제로 인쇄매체와 인터넷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인정한 후, 전문적인 언론 활동에서의 인터넷의 역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행사에서 인터넷이 지닌 일반적인 중요성을 고려할 때, 언론인들이 처벌의 걱정없이 인터넷에서 입수한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국내법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을 경우 언론이 "공공 감시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심각하게 저해될 수 있음을 인정했다(*Editorial Board of Pravoye Delo and Shtekel v. Ukraine*, § 64).
316. 재판소는 *Kaçki v. Poland* 사건에서 "책임있는 저널리즘"의 개념에는 언론이 대중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합리적인 범위에서 확인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언론이 인터뷰에서 언급된 모든 정보를 항상 확인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재판소는 기자가 자신의 진술을 기사화하는 것과 인터뷰 대상자의 발언을 그대로 옮겨 적어 인쇄매체의 기사로 보도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과, 기자가 보도에 앞서 그 인터뷰 대상자에게 인터뷰에서 자신이 발언한 내용이 기사에 정확히 인용되었는지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선의를 표시했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52).
317. 재판소는 언론인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도 있는 제3자의 발언을 보도하는 데 사용되는 기법이나 방법을 선택할 자유가 있음을 일관되게 인정했다. 재판소는 객관적이고 균형잡힌 보도 방법이 무엇인지는 매체에 따라 다양하게 달라질 수 있음을 인정했다(*Jersild v. Denmark*, § 31).

318. 재판소는 언론인에 대해 타인을 모욕 또는 자극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의 인용을 삼가도록 체계적이고 형식적인 방식으로 일반적인 의무로 부과하는 것은 시사, 의견, 사상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언론의 역할과 양립할 수 없다고 본다(*Thoma v. Luxembourg*, § 64; *Brunet-Lecomte and Others v. France*, § 47).
319. 한 언론인이 청년층의 인종차별 경향을 재확인하는 텔레비전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에서, 재판소는 청구인이 인종차별적 의견을 유포하려고 의도한 것이 아니라 "공공 감시자"라는 언론의 필수적인 역할을 촉진하는 가장 중요한 보도 방법의 하나인 인터뷰를 바탕으로 하는 뉴스 보도를 통해 공익 문제를 밝히려는 의도였다고 판결했다(*Jersild v. Denmark*, § 35).
320. 언론의 자유에는 또한 어느 정도의 과장이나 심지어 도발적인 방법을 허용하는 것이 포함된다(*Pedersen and Baadsgaard v. Denmark*, § 71). 어떤 경우에도 기자들이 채택해야 할 보도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언론기관의 견해를 재판소나 법원이 자신들의 견해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Jersild v. Denmark*, § 31; *Eerikäinen and Others v. Finland*, § 65). 기자들은 관심 있는 여러 뉴스 사안 가운데 특정 주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해당 주제 어떻게 다룰 것인지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Couderc and Hachette Filipacchi Associés v. France* [GC], §§ 31 및 139).
321. 이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한 일간지의 편집장인 청구인이 선거 출마자의 정견을 비판한 문제의 사실을 게재하면서 최근의 언론 기사들에서 수많은 발췌문들을 함께 게재한 사실을 매우 중요한 고려요소로 보았다. 재판소는 청구인이 이러한 보도 방법을 택함으로써 언론윤리규정을 준수했다고 판결했다. 재판소는 청구인이 최근의 언론 기사에 대응하는 문제의 사실을 해당 사실에 언급된 정치인의 발언과 나란히 배치함으로써 독자들이 각자 의견을 형성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Lopes Gomes da Silva v. Portugal*, § 35).
322. 이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를 대중에게 전달하는 수단의 공정성과 보도 대상에 대한 존중 또한 고려되어야 할 필수 기준이라는 견해이다. 따라서 실제 발언을 축소하거나 일부만을 발췌함으로써 독자가 오해하도록 만들 수 있는 기사의 경우 해당 기사가 공익에 관한 토론에 기여하는 중요도를 크게 떨어뜨릴 가능성이 크다(*Couderc and Hachette Filipacchi Associés v. France* [GC], § 132; *Travaglio v. Italy* (dec.), § 34).
323. 재판소는 여러 사건에서 해당 보도가 언론인 자신의 생각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발언을 인용한 것인지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Godlevskiy v. Russia*, § 45; *Pedersen and Baadsgaard v. Denmark* [GC], § 77; *Thorgeir Thorgeirson v. Iceland*, § 65; *Jersild v. Denmark*, § 35).
324. 언론인인 청구인이, 편집자가 특정 영상을 토론 시작 부분에 방송할 예정임을 알지 못한 채 생방송 TV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자신의 생각을 밝힌 사건에서, 재판소는 청구인이 직접 발언하지 않은 진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텔레비전 편집자이든 언론인이든 관계없이 타인의 진술이나 주장에 대해 책임지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Reznik v. Russia*, § 45).

325. 법원이 뇌물수수 의혹을 제기한 문제의 기사 내용을 유일한 근거로 판결을 내린 사건에서, 재판소는 문제의 기사는 맥락을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뇌물수수 의혹은 매우 심각한 문제였지만, 해당 기사 전문을 읽어보면 그 소문이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독자에게 분명히 경고했다. 재판소는 이 판결에서 다른 사람의 발언을 출처로 하는 "이야기"나 "소문" 또는 "여론"에 대한 언론의 보도 또한 전적으로 근거없는 경우가 아닌 한 보호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Timpul Info-Magazin and Anghel v. Moldova*, § 36).

b. 기타 책임: 신문의 편집자와 발행인, 독자, 기고자

326. 재판소는 발행인의 경우 저자가 자신의 사상을 표현할 매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저자의 표현의 자유 행사에 전적으로 참여할 뿐 아니라, 저자의 "의무와 책임"을 공유한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제2항의 요건을 준수하는 경우, 제10조는 저자가 그 "의무와 책임"을 무시하고 저술한 본문에 대해, 비록 발행인 자신의 의견과는 관련없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내용을 발행한 것에 대한 제재로부터 발행인을 배제하지 않는다(*Orban and Others v. France*, § 47, 이 사건에서 언급된 추가 판례 참조).

327. 소설의 저자와 발행인, 신문발행인은 극우 정당과 그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그 신문발행인은 앞의 두 사람의 유죄판결에 항의하는 기사와 감정을 상하게 하는 문구를 인용한 청원서를 발행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재판소는 앞의 두 건의 유죄판결과 신문발행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제10조와 양립할 수 있다고 판결했는데, 신문발행인이 명예훼손적인 문구를 그대로 옮겨 실음으로써 "도발"의 한도가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었다고 본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Lindon, Otchakovsky-Laurens and July v. France* [GC], § 66).

328. 판사 2명에 대한 명예훼손 기사를 게재한 신문사 발행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에서, 재판소는 신문사 발행인으로서 청구인은 정치적 논쟁이 모욕이나 인신공격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할 권한과 의무가 있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Belpietro v. Italy*, § 41).

329. 물론 "인터넷의 특수성 때문에, 제10조의 목적상 인터넷 뉴스 포털에 부과된 '의무와 책임'은 제3자 작성 콘텐츠와 관련하여 전통적인 출판사에 부과된 의무와 어느 정도 다를 수 있지만"(*Delfi AS v. Estonia* [GC], § 113; 또한 *Orlovskaya Iskra v. Russia*, § 109 참조), 대중이 인터넷에서 정보와 사상을 전달할 수 있도록 촉진함으로써 표현의 자유 행사의 장을 제공한다는 점은 언론에 대해 적용되는 원칙들을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한다(*Magyar Tartalomszolgáltatók Egyesülete and Index.hu Zrt v. Hungary*, § 61).

VI. 취재원 보호

A. 일반원칙

330. 취재원 보호는 언론자유 의 초석 가운데 하나이다. 취재원을 보호하지 않을 경우, 취재원은 대중에게 공익 사안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문제에서 언론을 돕기를 주저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언론이 필수적인 "공공 감시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이며,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없을 것이다(*Ressiot and Others v. France*, § 99; *Goodwin v. the United Kingdom*, § 39; *Roemen and Schmit v. Luxembourg*, § 57; *Ernst and Others v. Belgium*, § 91; *Tillack v. Belgium*, § 53).
331. 취재원 보호를 제한하는 정당한 근거로 가장 자주 언급되는 두 정당한 목적은 "국가안보"와 "비밀리에 얻은 정보의 공개 방지"이다. 이러한 성격의 사안에서는 "무질서 방지", "범죄 방지", "타인의 권리 보호" 등의 근거도 제시되었다.
332. 민주사회에서 언론의 자유를 위해 취재원 보호가 중요하며 취재원 공개 명령이 언론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취재원 보호에 대한 제한은 공익을 위해 더 우선하는 요건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는 한, 협약 제10조와 양립할 수 없다(*Goodwin v. the United Kingdom*, § 39; *Weber and Saravia v. Germany* (dec.), § 149; *Financial Times Ltd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 59; *Tillack v. Belgium*, § 53).
- 따라서, 취재원 비밀 유지를 제한하는 조치에 대해 재판소는 가장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한다(*Goodwin v. the United Kingdom*, §§ 39-40).
333. 취재원 비밀 유지는 두 가지 측면과 관련이 있다. 취재원 보호는 언론인과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대중에게 공익 사안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문제에서 언론을 돕는 취재원과도 특히 관련된 문제이다(*Stichting Ostade Blade* (dec.), § 64; *Nordisk Film & TV A/S v. Denmark* (dec.)).
334. 재판소는 취재원을 공개하지 않을 언론인의 권리가 그 출처의 합법성 여부에 따라 부여되거나 박탈될 수 있는 단순한 특권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되고, 정보에 대한 권리의 일부를 구성하는 권리로서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 보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Nagla v. Latvia*, § 97; *Tillack v. Belgium*, § 65).

B. 정의, 적용 분야

335. 재판소는 취재원 보호에 관한 사건들에서 취재원을 공개하지 않을 언론인의 권리에 관한 유럽평의회 각료위원회 권고(*Recommendation No. R (2000) 7*)를 자주 언급한다(여러 판례 중에서도 *Sanoma Uitgevers B.V. v. the Netherlands* [GC], § 44; *Telegraaf Media Nederland Landelijke Media B.V. and Others v. the Netherlands*, § 86 참조).

336. 따라서 재판소는 "취재원"의 개념을 "언론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으로 이해한다. 뿐만 아니라, 재판소는 "취재원 신원 확인 정보"라는 표현을 그 정보들로부터 취재원의 신원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면, "언론인이 취재원으로부터 정보를 입수하는 사실적 상황"과 "취재원이 언론인에게 제공한 정보 가운데 공개되지 않은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한다(*Görmüş and Others v. Turkey*, § 45; *Telegraaf Media Nederland Landelijke Media B.V. and Others v. the Netherlands*, § 86).
337. 한 텔레비전 방송사가 소아성애자 용의자와 관련된 미방송분 영상을 경찰에 제출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건에서, 재판소는 먼저 해당 영상을 촬영한 기자가 비밀리에 취재 활동을 벌였으며 대화 상대방들은 그가 기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러한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대중에게 공익 사안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언론을 도운 것은 아니었으므로 전통적인 의미에서 언론의 취재원으로 볼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소는 문제된 법원의 명령이 협약 제10조제1항에서 의미하는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소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에 협약 제10조가 적용될 수 있음을 인정했으며, 조사자료를 강제로 제출하도록 한 명령이 언론의 표현의 자유 행사에 위축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Nordisk Film & TV A/S v. Denmark* (dec.)).
338. 폭탄테러 공격을 자신이 했다고 주장하는 편지를 출판한 잡지사에 대해 수색이 실시되었던 사건에서, 재판소는 이 사건의 수색이 중범죄를 수사하고 다른 폭탄테러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 수행되었다고 언급했다. 재판소는 이 잡지의 정보원이 폭탄테러 공격을 홍보하려고 했기 때문에, "취재원"과 똑같은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결론지었다(*Stichting Oostade Blade v. the Netherlands* (dec.)).

C. 제한의 형식과 비례성

1. 취재원 공개 명령

339. 재판소는 취재원 공개 명령이 그 신원이 밝혀질 수 있는 취재원에게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명령의 상대상인 신문사나 출판사에 대해서는 취재원 공개로 인해 장래의 잠재적 취재원들에게 부정적인 평판을 갖게 할 수 있으며, 익명의 취재원을 통해 전달되는 정보를 받는 이익을 갖고 있는 일반 대중들에게도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Sanoma Uitgevers B.V. v. the Netherlands* [GC], § 89; *Financial Times Ltd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 70).
340. 무기밀매 범죄수사와 관련해 강제로 취재원의 신원을 파악하고자 기자를 구금한 사건에서 재판소는 국가기관이 취재원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그 정도의 조치까지 취할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 놀라움을 표시했다. 이러한 극단적인 조치는 위법행위에 관한 진실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향후 나서서 언론에 이러한 정보를 알리는 것을 단념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Voskuil v. the Netherlands*, § 71).

2. 수색

341. 재판소는 실제로 신원을 파악하지는 못했더라도 취재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수색이 실시된 여러 사건에서 이러한 수색이 취재원 공개 명령보다 더 강력한 조치라고 판결했다. 그 이유는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기자가 일하는 장소를 예고 없이 급습한 수사관은 분명 기자가 보유한 모든 문서에 접근할 수 있는 만큼 수사권한이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이다(*Roemen and Schmit v. Luxembourg*, § 57; *Ernst and Others v. Belgium*, § 103; *Görmüş and Others v. Turkey*, §§ 57-59).

342. *Görmüş and Others v. Turkey* 사건에서는 청구인들의 직장에서 실시된 수색, 기자 컴퓨터의 모든 자료가 담긴 외부 저장장치 복사, 외부 저장장치의 검찰 보관 등의 조치들에 대해 청구가 제기되었다. 재판소는 이러한 조치들이 정보원의 신원을 공개하라는 명령보다 정보원 보호를 더 크게 위협한다고 보았다. 소프트웨어의 모든 데이터를 제한 없이 검색한 결과, 국가기관들은 해당 행위와 관련이 없는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다.

재판소의 견해에 따르면, 이러한 제한은 청구인이 다른 모든 취재원과 맺고 있는 관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다른 언론인이나 국가에 고용된 내부고발자에 대해 심각한 위축효과를 미쳐 이들이 공권력의 위법행위나 논란이 되는 행위에 대해 고발하는 것을 단념시킬 수 있다(*Görmüş and Others v. Turkey*, §§ 73-74; *Roemen and Schmit v. Luxembourg*, § 57; *Nagla v. Latvia*, 언론인 자택에서 긴급 수색을 실시한 후 해당 언론인의 취재원이 포함된 데이터 저장장치를 압수한 사건).

3. 취재원 신원확인을 위한 언론인 표적 감시

343. 언론인들을 감시한 후 취재원 신원을 알 수 있는 문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린 사건에서, 재판소는 먼저 이 사건이 언론인들이 정보를 입수한 출처를 확인할 목적으로 언론인들을 표적 감시한 점에서 다른 사건과 구별된다고 지적했다(*Telegraaf Media Nederland Landelijke Media B.V. and Others v. the Netherlands*, § 97).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들이 언론인이라는 사실로부터 취재원 보호를 위한 적절한 보호장치가 요구되는지 여부였다. 재판소는 언론인에 대한 표적 감시가 특히 그것을 금지하거나 종료할 권한 있는 독립적인 기관에 의한 사전 심사 없이 허가되었다는 것을 강조했다. 재판소는 취재원의 신원이 밝혀지고 나면 다시는 취재원을 비밀로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사후적인 심사만으로는 충분한 보호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았다. 재판소는 제10조와 연계하여 해석한 협약 제8조 위반으로 판결했다(§ 98).

344. 다른 사건에서는 위협을 확인하고 방지하기 위한 감시조치가 있었지만, 취재원의 신원 공개는 불가피한 경우에 최소한으로만 이루어졌다. 재판소는 그 조치는 언론인을 감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국가기관은 언론인의 대화를 감청했더라도 그 감청 내용을 분석했을 때만 그 언론인의 대화가 감청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재판소가 볼 때, 그 감시조치는 취재원의 신원을 확인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고, 전략적인 감시활동에 의해 표현의 자유가 제한된 것으로 특별히 심각한 제한으로 볼 수 없었다(*Weber and Saravia v. Germany* (dec.), § 151).

4. 형사소송과 관련한 증거제출명령

345. *Becker v. Norway* 사건에서 한 언론인은 그에게 정보를 제공했던 취재원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재판소는 공익을 위해 이 명령이 필요하다는 정당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83). 재판소는 청구인을 시장 조작의 수단으로 이용한 취재원을 기소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는 비례성 심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하지만, 재판소는 증언 명령이 내려졌을 당시 취재원의 위법한 목적이 크게 중요하지 않은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77).
346. *Jecker v. Switzerland* 사건에서, 청구인 기자는 과거 보도했던 마약상에 대한 범죄수사와 관련해 증거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마약 관련 범죄는 언론의 취재원 보호권에 대한 법적 예외에 해당하지만, 재판소는 이 사건의 경우 그 예외 규정이 청구인에게 취재원의 신원을 공개할 의무를 부과하는 정당한 사유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41).

D. 절차보장

347. 언론의 자유를 위해 취재원과 그 신원확인 정보의 보호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취재원 보호권을 제한하는 모든 경우에는 취재원 보호 원칙의 중요성에 상응하는 절차적인 법적 보호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Sanoma Uitgevers B.V. v. the Netherlands* [GC], § 88).
348. 이러한 절차적 보호조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판사 기타 독립적이고 공정한 의사결정 기관에 의한 심사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필요적 심사는 경영진 기타 이해당사자와 관련이 없는 기관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기관은 취재원에 관한 정보 제출을 명하기 전에 취재원 보호 원칙에 우선하는 공익적 필요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권한과 만약 그러한 필요가 없는 경우라면 취재원의 신원을 공개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불필요한 접근을 방지할 권한이 있어야 한다(*Sanoma Uitgevers B.V. v. the Netherlands* [GC], § 90). 재판소의 견해에 따르면, 독립적인 심사는 적어도 정보에 대한 접근과 이용 이전에 수행되어야 하고, 기밀성 문제가 발생하는지, 발생한다면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수사기관이나 검찰이 주장하는 공익이 취재원 보호에 대한 일반적인 공익보다 우선하는지에 대해 충분히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재판소가 볼 때, 독립적인 심사가 취재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 이후에만 이루어진다면 취재원 보호권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ibid.*, § 91; 또한 *Telegraaf Media Nederland Landelijke Media B.V. and Others v. the Netherlands*, § 98 참조).
349. 재판소는 이러한 심사의 예방적 성격을 고려할 때, 판사나 기타 독립적이고 공정한 기관은 공개를 구하고 있는 국가기관의 주장을 적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들을 공개하기 이전에 공개를 구하는 자료와 관련된 잠재적 위험과 각각의 이해관계를 가늠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 결정은 명확한 기준에 따라야 하며, 여기에는 덜 제한적인 조치를 시행하더라도 우선적인 공익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지 여부도 포함된다. 판사나 기타 기관은 문제된 자료가 비공개로 지정된 자료인지와는

무관하게 그 자료를 제출할 경우 취재원의 신원이 공개될 심각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취재원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도록 공개 명령을 거부하거나 제한적 명령 또는 조건부 명령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긴급한 상황인 경우에도 국가기관이 자료를 활용하기 전에 취재원 보호를 위해 해당 정보로부터 취재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를 확인하고 제외시킬 수 있는 절차가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Sanoma Uitgevers B.V. v. the Netherlands* [GC], § 92).

VII. 비밀리에 얻은 정보의 공개 방지

A. 일반원칙

350. 비밀리에 얻은 정보의 공개를 방지하기 위하여 재판소에서 여러 유형의 내용들이 원용되어 왔는데, 여기에는 "공적" 정보와 "사적" 정보가 모두 포함되며, 군사 정보(*Hadjianastassiou v. Greece*, § 45; *Görmüş and Others v. Turkey*, § 62), 세금 관련 비밀 정보(*Fressoz and Roire v. France* [GC], § 52), 사법 기관의 조사를 통해 얻은 정보(*Bédât v. Switzerland* [GC], § 55), 외교 서신의 보호(*Stoll v. Switzerland* [GC]), 국가안보기관의 기밀 보고서(*Vereniging Weekblad Bluf! v. the Netherlands*), 의료 비밀 정보(*Éditions Plon v. France*) 또는 특정 분야의 사업관행에 대한 논의를 위한 정보(*Herbai v. Hungary*, §§ 41-43) 등이 있다.
351. 재판소는 협약 제10조제2항에 명시된 "비밀리에 얻은 정보의 공개를 방지하기 위해"라는 문구를 해석할 때 비밀유지 의무 대상자, 제3자 및 특히 언론인에 의해 공개되는 비밀정보를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이다(*Stoll v. Switzerland* [GC], § 61).
352. 언론의 자유는 국가의 활동과 결정이 기밀성이나 비밀성을 지니고 있어 이에 대해 민주적 또는 사법적 심사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가 보관 중인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시민사회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정부에 위임한 사항을 통제하도록 해주기 때문에 민주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Görmüş and Others v. Turkey*, § 48; *Stoll v. Switzerland* [GC], § 110).
353. 이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문서의 공개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비밀분류를 예외로 한다는 유럽평의회가 채택한 원칙과 간첩 또는 국가기밀누설과 관련된 형사사건의 공정한 재판에 관한 유럽평의회 의원총회 결의(*Resolution 1551 (2007)*)를 참고했다(*Stoll v. Switzerland* [GC], §§ 40-41).
354. 재판소는 특정 민감정보의 기밀성 또는 비밀성을 보존하기 위한 규정과 그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기소하기 위한 규정이 회원국 사이에 상당히 다르다고 언급했다. 재판소는 이에 따라 회원국 정부들이 이 분야에서 일정 수준의 판단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Stoll v. Switzerland* [GC], § 107).
355. 기밀이나 비밀로 간주되는 정보를 공개한 언론인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릴 경우 언론 종사자는 공익 사안에 관한 정보를 대중에게 알리기를 주저할 수 있다. 그 결과 언론이 "공공 감시자"라는 핵심적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될 수 있고,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어려워질 수 있다(*Stoll v. Switzerland* [GC], § 110).
356. 재판소의 광범위한 판례에 따르면, 정보가 이미 공개되었거나(*Weber v. Switzerland*, § 49) 더는 비밀스럽지 않은 정보인 경우(*Observer and Guardian v. the United Kingdom*, §§ 66-70; *The Sunday Times v. the United Kingdom (no. 2)*, §§ 52-56) 정보 공개를 방지할 필요가 없게 된다.

357. 재판소는 언론윤리와 관련된 사안의 경우 언론인의 행위를 평가함에 있어 두 가지 측면, 즉 언론인이 비밀 정보를 입수한 방법과 문제된 기사의 형식을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이다(*Stoll v. Switzerland* [GC], § 140).

B. 심사기준

358. 언론인이 비밀 정보나 국가안보 관련 정보를 공개한 것이 쟁점이 된 여러 사건에서, 재판소는 국가의 조치가 언론인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Gîrleanu v. Romania*, §§ 71- 72; *Schweizerische Radio- und Fernsehgesellschaft SRG v. Switzerland*, § 22; *Dammann v. Switzerland*, § 28).

359. 재판소는 표현의 자유 행사에 대한 특정한 제한의 필요성을 심사할 때, 상충하는 이익들에 대한 평가, 청구인의 행동, 법원의 심사 및 부과된 제재의 비례성 등 몇 가지 기준을 고려한다(*Stoll v. Switzerland* [GC], § 112).

360. 관련 이익을 심사할 때, 재판소는 가장 먼저 문제된 문서의 내용이 공익에 관한 토론에 기여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Stoll v. Switzerland* [GC], §§ 118-124). 해당 문서의 내용이 공익에 관한 토론에 기여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재판소는 그 문서를 공개할 공익과 비교형량의 대상이 되는 이익의 성격(공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을 고려한다(*ibid.*, § 115-116). 이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관련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유지와 같은 공익을 언급한 바 있다(*Görmüş and Others v. Turkey*, § 63).

361. 그 밖에도, 재판소는 문제된 문서의 내용이 대중에게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인지도 중요하게 고려한다(*Stoll v. Switzerland* [GC], § 113).

1. 공익 사안에 관한 공적 토론에 대한 기여

362. 비밀리에 얻은 정보의 공개를 방지하는 것과 관련된 사건에서, 재판소가 공익과 관련되는 쟁점들이라고 본 것으로는, 권력분립과 같은 쟁점에 관한 서신의 공개, 고위 정치인의 부적절한 행동과 경찰의 만행에 대응하는 정부의 태도(*Guja v. Moldova* [GC], § 88), 군대와 정치의 유착관계(*Görmüş and Others v. Turkey*, § 56), 형사소송 및 전반적인 사법제도의 기능에 관한 간행물(*Bédât v. Switzerland* [GC], § 63; *A.B. v. Switzerland*, § 47; *Dupuis and Others v. France*, § 42), B형 간염 예방접종 후 이 질병에 걸린 피해자들이 제기한 과실치사 소송에 관한 진술(*Mor v. France*, § 53), 스위스 은행 계좌에 예치된 휴면자산에 대한 홀로코스트(Holocaust) 피해자 보상 문제(*Stoll v. Switzerland* [GC], § 118) 등이 있다.

363. 그 밖에도, 재판소는 직장과 관련한 표현의 자유가 공공의 문제에 대한 토론에 명백히 기여하는 발언만을 보호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업무와 관련된 토론을 유도하고자 특정 직업군에서 온라인상으로 유포된 전문직 관련 정보는 제10조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Herbai v. Hungary*, § 43).

2. 공개에 대한 책임이 있는 당사자의 행동

364. 재판소는 언론윤리와 관련된 사안의 경우 언론인이 비밀 정보를 입수한 방법과 문제된 기사의 형식,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결했다(*Stoll v. Switzerland* [GC], § 140)
365. 일반적으로, 재판소는 기밀 또는 비밀로 간주되는 정보를 입수하는 방법이 제10조제2항의 맥락에서 수행되는 이익형량 심사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견해이다(*Stoll v. Switzerland* [GC], § 141).
366. 탐사보도 중 군사기밀을 공개한 청구인이 제재를 받은 사건에서, 재판소는 청구인이 구체적인 "의무"와 "책임"이 있는 군 구성원이 아니라고 언급했다(*Gîrleanu v. Romania*, § 90). 재판소는 또한 언론인인 청구인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해당 정보를 입수하지 않았으며, 적극적으로 정보를 입수하려 한 것도 아니었다고 언급했다(*ibid.*, § 91).
367. 청구인이 경찰의 통신을 비롯해 자신과 관련 없는 대화를 도청한 사건에서, 재판소는 책임있는 저널리즘 개념에 따라 언론인에게 요구되는 사항을 설명하면서, 일반적인 형사법 준수 의무에 반하는 행동을 할 경우 형사처벌을 포함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언론인이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Brambilla and Others v. Italy*, § 64).
368. 이는 언론인이 원하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타인을 압박하기 위해 속임수, 위협 또는 기타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Dammann v. Switzerland*, § 55).
369.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언론인의 의무와 책임 준수를 판단할 때 반드시 결정적인 요인으로 고려되는 것은 아니다(*Stoll v. Switzerland* [GC], § 144; *Fressoz and Roire v. France* [GC], § 52).

3. 국내 법원의 심사

370. 재판소는 전통적으로 국가주권의 핵심 영역인 국가의 이익을 규정하는 문제에서 협약 당사국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은 재판소의 직무가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제10조상의 권리 행사에 대한 제한이 쟁점이 된 사건을 심사할 때 절차적 공정성을 고려해야 할 수 있다(*Görmüş and Others v. Turkey*, § 64; *Stoll v. Switzerland* [GC], § 137).

예를 들어, "비밀유지" 개념을 순전히 형식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법원이 관련되는 이익들을 형량하는 과정에서 비밀문서의 실제적인 내용을 고려하는 것도 금지된다면, 법원은 협약 제10조에서 보호하는 권리에 대한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없게 될 것이다(*Görmüş and Others v. Turkey*, §§ 64-66).

마찬가지로, 부과된 조치에 대한 사법적 심사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재판소는 루마니아 법원의 심리에서 청구인의 행동에 관한 특정 요소가 고려되지 않은 사실에 주목했는데, 루마니아 법원은 또한 그 정보가 실제로 군에 위협이 될 수 있었는지 여부도 검증하지 않았다. 따라서, 법원은 해당 문서를 비밀로 유지하는 것에 대한 이익을 탐사보도의 이익, 그리고 그 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사실과 나아가 그 정보의

실체적 내용에 대해 대중이 알게 되는 이익들과 비교형량하지 않았다(*Gîrleanu v. Romania*, § 95).

4. 부과된 조치의 비례성

371. 재판소는 국가기관이 군사기밀정보 공개에 대한 형사처벌과 국가안보 문제에서 일정한 판단재량을 행사할 수 있음을 거듭 강조했다(*Hadjianastassiou v. Greece*, § 47).

372. 그러나 탐사보도를 수행한 언론에 제재를 가한 사건에서, 벌금이 비교적 크지 않다고 해서 재판소가 협약 제10조 위반 판결을 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특히 재판소는 일부 사건에서 처벌이 경미하다는 것보다 유죄판결 자체가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청구인에게 부과한 제재는 비밀정보의 공개 및 공유를 방지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재판소는, 해당 문서의 기밀성이 해제된 이후에는 제재를 부과할 지 여부에 대해 보다 철저한 심사가 필요했었다고 보았다(*Gîrleanu v. Romania*, § 98).

VIII. 내부고발자와 공무원비리신고에 대한 특별한 보호

373. 협약 제10조는 불법적이거나 도덕적으로 비난할 만한 행위에 관심을 집중시키려는 진술에 적용되며, 재판소의 판례법은 이러한 진술을 특별히 보호한다. 이와 관련하여 내부고발자와 공무원의 비리 신고라는 두 가지 범주가 존재한다(*Medžlis Islamske Zajednice Brčko and Others v. Bosnia and Herzegovina* [GC], §§ 80-84). 이러한 두 가지 범주를 통해 협약 제10조에 따른 특별한 보호 기준이 확립될 수 있었다.

첫 번째 범주의 경우, 비밀리에 얻은 정보의 공개 방지나 타인의 권리 보호가 추구된 정당한 목적으로 특히 자주 언급되며, 두 번째 범주의 경우에는 타인의 명예와 권리의 보호가 정당한 목적으로 더 자주 언급된다.

두 범주를 구분하는 기본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374. 첫째, 내부고발자의 지위는 반드시 업무에 기초한 관계와 관련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지위로 인해 고용주에 대한 직원의 충실의무, 자제의무, 신중의무 등의 문제가 제기되지만 (*Guja v. Moldova* [GC], § 70), 이러한 유형의 관계가 비리신고의 필요조건인 것은 아니다.

375. 둘째, 모든 신고는 공무원에 관련된 것이지만(*Medžlis Islamske Zajednice Brčko and Others v. Bosnia and Herzegovina* [GC], § 80; *Zakharov v. Russia*; *Siryk v. Ukraine*; *Sofranschi v. Moldova*), 내부고발이 꼭 공무원의 행위와 관련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재판소는 민간부문 직원과 공공부문 직원 모두 내부고발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음을 인정했다(*Guja v. Moldova* [GC], § 8; *Bucur and Toma v. Romania*, § 7; *Langner v. Germany*, § 6). 예를 들어, 베를린 랜드(*Berlin Land*)가 과반수 지분을 소유한 유한책임회사에서 간호사로 일하던 직원이 이 회사가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결함을 폭로한 형사 고발장을 제출한 후 해고당한 사건에서, 재판소는 이 사건에서처럼 사법(私法)에 의해 규율되는 고용주-직원 관계에 대해서도 내부고발자 보호가 적용된다고 명시했다(*Heinisch v. Germany*, § 44).

376. 이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유럽평의회 의원총회 결의 1729 (2010)(*Resolution 1729 (2010)*)를 참고했는데, 이 결의에는 "내부고발", 즉 동료 시민을 위협한 상황에 처하게 하는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경종을 울리는 개인의 행위가 갖는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에서 책임성을 높이고 부패 및 부실관리와의 투쟁을 강화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이 결의는 모든 회원국이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입법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Heinisch v. Germany*, § 37).

A. 내부고발자 보호

377. 재판소는 직원이 고용주에 충실의무, 자제의무, 신중의무를 진다고 보는데, 특히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의 본질적인 성격상 충실의무와 신중의무에 기속되므로 더욱 그러하다고 본다(*Ahmed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 56; *De Diego Nafria v. Spain*, § 37).

378. 민주사회에서 언론인이 담당하는 역할, 즉 정보와 사상을 전달하는 것이 언론인의 핵심 기능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언론인이 재량 행사와 관련해 고용주에 진 의무는 동등한 중요성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Wojtas-Kaleta v. Poland*, § 46; *Matúz v. Hungary*, § 39). 뿐만 아니라, 언론인이 공영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사에 고용된 경우, 이러한 언론인의 충실의무와 자제의무는 방송사의 공공적 성격과 비교하여 평가되어야 한다(*ibid.*, § 39; *Wojtas-Kaleta v. Poland*, § 47).
379. 하지만, 재판소는 일부 공무원의 경우 업무 과정에서 비밀정보를 포함한 내부정보를 알게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정보를 폭로하거나 공개하는 것이 강력한 공익에 부합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재판소는 따라서 직장 내 불법행위나 부정행위에 대한 공무원 또는 공공부문 직원의 신고가 특정한 상황에서는 보호받아야 한다고 본다. 해당 직원이나 공무원이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고 있는 유일한 또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으로서 공익을 위해 고용주나 일반 대중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기에 가장 적합한 상황에 있는 경우에 이러한 보호가 필요할 것이다(*Guja v. Moldova* [GC], § 72; *Marchenko v. Ukraine*, § 46; *Heinisch v. Germany*, § 63; *Goryaynova v. Ukraine*, § 50). 다시 말해, 재판소는 고용주의 불법행위에 대한 청구인의 내부고발을 협약 제10조에 따라 특별히 보호해야 한다는 견해이다(*Langner v. Germany*, § 47; *Heinisch v. Germany*, § 43).
380. *Guja v. Moldova* [GC] 사건에서, 재판소는 내부고발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의 비례성 심사를 위한 6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74-78).
381. 첫째, 재판소는 문제의 정보를 당사자의 상급자나 그 밖의 관할 기관에 가장 먼저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이 방법이 명백히 失行불가능할 경우에만 최후의 수단으로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Guja v. Moldova* [GC], § 73; *Haseldine v. the United Kingdom*, 위원회 결정). 따라서 재판소는 청구인이 밝히고자 하는 부정행위를 시정할 수 있는 다른 효과적인 방법이 있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Bucur and Toma v. Romania* 사건에서, 재판소는 이 분야에 관해 공식적인 절차를 예상할 수 없었고, 청구인이 상급자에게 이 문제를 전달했으며, 심지어 청구인이 속한 기관에 대한 감독을 책임지는 의회의 위원회 소속 의원에게도 이 문제를 전달했다는 점에서,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한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95-100). 마찬가지로, *Matúz v. Hungary* 사건에서, 재판소는 청구인이 회사(방송사)의 검열 문제에 대해 고용주를 상대로 문제제기를 했지만 해결되지 않은 이후에 문제된 정보를 공개한 책을 출판하였다고 언급했다(§ 47). 이와 대조적으로, 청구인인 군 장교가 육군 내무행정조사단에 잘못된 자금 사용 관행을 비판하는 이메일을 보낸 사건에서, 재판소는 여러 사실 중에서도 청구인이 지휘 계통을 따르지 않았고 따라서 그의 직속 상관이 해당 혐의의 진실 여부를 조사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에 주목했다(*Soares v. Portugal*, § 48).
382. 둘째, 공개된 정보와 관련이 있는 공익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Guja v. Moldova* [GC], § 74). 여기에는 민간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미흡(*Heinisch v. Germany*, § 3), 공공 횡령(*Marchenko v. Ukraine*, § 10), 국가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고위 공직자의

부적절한 행위나 정부가 경찰의 만행에 대응하는 방식과 같은 예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이러한 사항이 민주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국민이 그 문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정당한 이익을 가진다는 견해이다(*Bucur and Toma v. Romania*, § 103; *Guja v. Moldova* [GC], § 88).

마찬가지로,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관한 몇몇 사건에서는 정보공개가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소는 이러한 사안이 권력분립과 관련되며, 따라서 "권력분립과 관련된 사안은 국민이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정당한 이익을 가지며 정치적 논쟁의 범위에 속하는, 민주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과 관련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Baka v. Hungary* [GC], § 165; *Guja v. Moldova* [GC], § 88). 예를 들어, *Kudeshkina v. Russia* 사건에서, 청구인이 여러 공무원의 행동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법정에서 판사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고 언급하면서, 재판소는 청구인이 민주사회에서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공익 문제를 제기했다고 판결했다(§ 94).

383. 세 번째 관련 요소는 공개된 정보의 확실성이다(*Guja v. Moldova* [GC], § 75). 표현의 자유에는 의무와 책임이 따르며,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해당 상황에서 가능한 한도 내에서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신중하게 확인해야 한다(*Bladet Tromsø and Stensaas v. Norway* [GC], § 65; *Morissens v. Belgium*, 위원회 결정).

384. 넷째, 문제된 정보의 공개로 기관에 발생한 피해의 경중을 가리고, 그 피해가 정보 공개의 공익보다 더 큰지 평가해야 한다(*Guja v. Moldova* [GC], § 76; *Hadjianastassiou v. Greece*, § 45). 예를 들어, 국가안보기관의 부정행위나 군대에서의 논란이 되는 관행에 관한 정보 공개의 공익은 민주사회에서 너무나도 중요하므로 이러한 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유지에 대한 이익보다 더 크다(*Bucur and Toma v. Romania*, § 115; *Görmüş and Others v. Turkey*, § 63). 마찬가지로 검찰이 부당한 압력을 받았다는 의혹은 검찰의 독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 공개의 공익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Guja v. Moldova* [GC], §§ 90-91).

385. 다섯 번째 결정요소는 신고 당사자의 동기이다(*Guja v. Moldova* [GC], § 77). 재판소가 유럽평의회 의원총회 결의 1729 (2010)(*Resolution 1729 (2010)*)에 명시된 표현을 그대로 차용했던 *Heinisch v. Germany* 판결에 따르면, 원칙상 "나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더라도 그 정보가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고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목적을 추구하지 않는 경우, 내부고발자는 선의로 행동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80). 그러나 개인적 불만이나 개인적 반감 또는 금전적 이익을 포함한 개인적 이익에 대한 기대에서 비롯된 행위는 특별히 강력한 보호가 요구되는 정당한 근거가 되지 않을 것이다(*Guja v. Moldova* [GC], § 77; *Haseldine v. the United Kingdom*, 위원회 결정). 재판소는 사건을 심리할 때 직원이 고용주 또는 그 공개로 영향을 받게 될 수 있는 타인에 대해 개인적인 불만이 있는지 여부를 특히 중요하게 고려한다(*Guja v. Moldova* [GC], § 93). 이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노동쟁의 또는 고용주와 직원 간의 이해충돌 상황에서 문제된 비판이 제기된 몇몇 사건들에서 내부고발자에게 일반적으로 부여되는 특별한 보호를 인정하지 않았다(*Rubins v. Latvia*, § 87; *Langner v. Germany*, §

47; *Aurelian Oprea v. Romania*, §§ 69-70). 회원국 내부의 절차에서 청구인의 선의가 한 번도 문제되지 않은 경우, 재판소는 이러한 사정 또한 고려한다(*Wojtas-Kaleta v. Poland*, § 51; *Matúz v. Hungary*, § 44).

386. 마지막으로, 제한의 비례성 심사에서의 여섯 번째 기준은 청구인에게 부과되는 제재와 그 결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다(*Guja v. Moldova* [GC], § 78). 이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법령에 규정된 가장 강력한 제재(보상없는 고용계약 해지)가 청구인에게 부과된 사건에서, 특히 청구인의 연령과 해당 기업에서 근무한 기간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제재가 매우 가혹한 것이었으며 더 관대하고 더 적절한 다른 징계를 내릴 수 있었다고 판결했다(*Fuentes Bobo v. Spain*, § 49). 또한, 부과된 제재가 다른 문제의 신고를 억제할 정도로 심각한 경우, 제재가 해당 기업의 다른 직원뿐 아니라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다른 직원에 미치는 위축효과까지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 (*Heinisch v. Germany*, § 91).

또 다른 사건에서, 재판소는 징역 1년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았는데,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고 해서 유죄판결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결론을 바꾸지 못한다고 하였다(*Marchenko v. Ukraine*, §§ 52-53).

387. 재판소는 공공부문 직원과 관련된 사건인 *Guja v. Moldova* [GC] 사건에서 실시했던 위에서 본 원칙과 기준은 사법(私法)상의 고용관계에도 적용되며, 고용주의 불법행위나 부정행위 신고에 대한 직원의 권리를 고용주의 명예와 상업적 이익의 보호에 대한 권리와 비교형량할 때에도 적용된다고 하였다(*Heinisch v. Germany*, § 64).

B. 공무원 비리 신고에 대한 보호

388. *Medžlis Islamske Zajednice Brčko and Others v. Bosnia and Herzegovina* [GC] 사건에서, 재판소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를 인정하지 않은 후, 제10조에 따른 보호 여부는 공무원의 비리 의혹을 신고할 청구인의 권리에 비추어 평가해야 한다고 판결했던 일련의 유사한 사건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Zakharov v. Russia*, § 23; *Siryk v. Ukraine*, § 42; *Sofranschi v. Moldova*, § 29; *Bezmyanny v. Russia*, § 41; *Kazakov v. Russia*, § 28; *Lešník v. Slovakia*).

389. 재판소는 국민이 부정을 저지르거나 불법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공무원의 행위를 관할 국가기관에 신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규율 중 하나"이고(*Medžlis Islamske Zajednice Brčko and Others v. Bosnia and Herzegovina* [GC], § 82; *Zakharov v. Russia*, § 26; *Kazakov v. Russia*, § 28; *Siryk v. Ukraine*, § 42), 이를 통해 국가행정에 대한 신뢰를 유지한다고 하였다(*Shahanov and Palfreeman v. Bulgaria*, § 63). 이처럼 비리를 신고할 권리는 공권력의 통제 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한층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예컨대, 비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교도소장의 권위를 훼손할 가능성이 크더라도 재소자에게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ibid.*, § 64).

390. 재판소는 공적 권한을 행사하는 공무원은 일반 시민보다 더 넓은 범위의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는 견해이다(*Medžlis Islamske Zajednice Brčko and Others v. Bosnia and*

Herzegovina [GC], § 98; *Morice v. France* [GC], § 131). 그렇지만, 공무원이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부당한 동요 없이 국민의 신뢰를 누려야 하며, 따라서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공격적이고 모욕적인 언어폭력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Janowski v. Poland* [GC], § 33). 재판소는 검사와 관련된 특정 사건에 대해, 판사와 마찬가지로 검사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는 것은 공익에 해당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국가는 근거 없는 비난으로부터 검사를 보호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Lešník v. Slovakia*, § 54; *Chernysheva v. Russia* (dec.)).

391. 재판소는 청구인들이 개인적인 서신을 통해 문제를 제기한 사실을 "매우 중요한" 요소로 판단했으며(*Zakharov v. Russia*, § 26; *Sofranschi v. Moldova*, § 33; *Kazakov v. Russia*, § 29; *Raichinov v. Bulgaria*, § 48), 해당 의혹의 진실성을 어느 정도까지 확인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청구인에게 비교적 가벼운 부담만을 부과하고 있다(예를 들어, 청구인이 자신의 사건을 판결한 판사의 불법행위 의혹을 신고한 사건인 *Bezymyanny v. Russia*, §§ 40-41, 청구인이 제기한 제3자에 대한 형사 고발을 기각한 검사에 대해 직권남용 및 부패 혐의를 제기한 사건인 *Lešník v. Slovakia*, § 60, 두 사람이 읽은 편지를 통해 청구인이 행정상의 과오를 신고한 사건인 *Boykanov v. Bulgaria*, § 42 참조).
392. 서신을 통해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청구인이 얼마나 선의로 행동했으며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해 어느 정도까지 노력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른 유형의 사건보다 더 주관적이고 관대한 접근법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Medžlis Islamske Zajednice Brčko and Others v. Bosnia and Herzegovina* [GC], § 98 및 이 사건에서 언급된 추가 판례 참조).
393. 신고 당사자의 유형과 관련하여, 재판소는 언론과 비슷한 방식으로 공공 감시자 역할을 수행하는 NGO의 경우 공무원의 비리를 신고할 때 더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며, 개인적으로 목격된 것을 바탕으로 작성하는 개인의 신고보다 더 다양한 수단을 통해 비판의 진실성을 검증하고 확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Medžlis Islamske Zajednice Brčko and Others v. Bosnia and Herzegovina* [GC], § 87). 이에 따라, 비리를 신고한 당사자가 NGO인 경우, 언론이 공공 감시자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명예훼손 발언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준, 즉 관련 당사자가 입은 명예훼손의 정도, 뉴스 보도의 주제, 공개된 정보의 내용, 형식 및 영향력뿐 아니라 정보를 얻은 방법, 정보의 진실성, 부과된 제재의 경중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ibid.*, § 88; *Von Hannover v. Germany (no. 2)* [GC], §§ 108-113; *Axel Springer AG v. Germany* [GC], § 83).

IX. 표현의 자유와 국가기관이 가진 정보에 접근할 권리

394. 국가기관이 가진 정보에 접근할 권리가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는 위원회와 재판소가 형성한 판례를 통해 그 의미가 조금씩 밝혀져 온 주제이다.
395. 재판소는 *Magyar Helsinki Bizottság v. Hungary* [GC] 사건에서, 이 문제에 대한 원칙을 확립했다. 청구인 비정부기구는 국선번호인 제도 개혁안을 지지하는 설문조사를 위해 변호사 선임과 법원에서 임명한 변호인의 이름 등이 포함된 경찰서자료 열람을 요청했다. 대다수의 경찰서가 요청받은 정보를 공개했지만, 경찰서 두 곳이 이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청구인 비정부기구는 이 정보를 열람하기 위해 법원에 제소했으나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후, 재판소에 청구를 제기하면서 정보공개 명령 거부가 협약 제10조에 따른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A. 일반원칙

396. 재판소는 "정보를 받을 자유에 대한 권리에 따라 기본적으로 정부는 타인이 전달하고자 하거나 전달할 의사가 있는 정보를 개인이 받는 것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또한 "정보를 받을 권리는 국가기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정보를 수집하고 배포해야 할 적극적 의무를 국가에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재판소는 또한 제10조가 공공기관이 가진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개인에게 부여하거나 개인에게 이러한 정보를 전달할 의무를 국가에 부여하지 않는다고 본다. 그러나 그러한 권리나 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첫째, 법적 강제력이 있는 사법부의 결정에 따라 정보공개 명령이 내려진 경우, 둘째, 특히 "정보를 주고받을 자유"를 포함해 개인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정보에 대한 접근이 중요한 경우와 정보에 대한 접근을 거부하는 것이 정보를 주고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이다(*Magyar Helsinki Bizottság v. Hungary* [GC], § 156; *Cangi v. Turkey*).

B. 제10조의 적용가능성과 제한의 존재에 대한 판단 기준

397. 국가기관이 가진 정보에 대한 접근과 관련된 사안에서 제10조의 적용가능성과 제한이 존재하는지에 관한 문제는 보통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데, 제한이 존재하는지의 문제는 청구의 실질적인 내용을 구성한다(*Magyar Helsinki Bizottság v. Hungary* [GC], §§ 71 및 117; *Center for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v. Ukraine* (dec.), § 55).
398. 재판소는 정보에 대한 접근 거부가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지, 어느 정도로 제한하는지를 판단하려면, 각 사건 별로 구체적인 사정들에 비추어, 그 권리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판례법이 예시하는 아래의 관련 기준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이다(*Magyar Helsinki Bizottság v. Hungary* [GC], § 157).

1. 정보 요청의 목적
2. 요청된 정보의 특성

3. 청구인의 역할
4. 정보의 이용 가능성

4가지 기준 중 하나인 "정보 요청의 목적"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협약상 조항들에 대한 물질적 관할(*ratione materiae*)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정보의 접근에 관한 청구를 각하함으로써, 재판소는 위 네 가지 요건들은 누적적으로 심사되어야 한다는 것을 묵시적으로 인정했다(*Center for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v. Ukraine*, §§ 49, 54-59).

1. 정보 요청의 목적

399. 재판소는 협약 제10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가진 정보를 요청한 당사자가 정보와 사상을 타인과 주고받을 자유를 행사하는 데 이러한 정보가 필요하다는 목적을 추구해야 한다고 판결했다(*Magyar Helsinki Bizottság v. Hungary* [GC], § 158).
400. 따라서 요청된 정보에 대한 접근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인지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재판소는 정보 수집이 언론 활동 또는 공적 토론의 장을 형성하거나 공적 토론의 필수 요소를 구성하는 다른 활동을 위한 준비 단계인지를 중요하게 고려한다(NGO의 경우 *Társaság a Szabadságjogokért v. Hungary*, §§ 27-28 참조; 언론인의 경우 *Österreichische Vereinigung zur Erhaltung, Stärkung und Schaffung v. Austria*, § 36; *Roşianu v. Romania*, § 63 참조).
401. 재판소는 소송 당사자가 아님에도 판결문 사본을 요청한 개인에 관한 사건에서, 청구인이 정보와 사상을 받을 자유를 행사하는 데 판결문 사본이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했다(*Sioutis v. Greece* (dec.), §§ 26-27). 또한 같은 취지의 사건으로 *Tokarev v. Ukraine* (dec.) 사건(§ 21)과 탐사보도 활동을 벌인 NGO 소속 전직 변호사가 제3자의 형사재판 판결문 사본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사건인 *Studio Monitori and Others v. Georgia* 사건을 참조한다. 재판소는 청구인이 정보 요청 목적을 관련 법원 사무국에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요청된 정보가 청구인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40-42).
402. *Center for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v. Ukraine* 사건에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그 결정에서 언급하였고 사건기록에 포함되어 있던, 헌법적 쟁점의 해석에 관한 법적 의견의 발급을 헌법재판소에 요청했으나 거부되었다. 청구인은 관련 분야에 대한 특정한 경험이 있다거나 청구인이 쟁점이 된 해석 문제와 관련한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 대해 아무런 정보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요청한 자료에 대한 접근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로 고려될 수 없었다(§ 57).

2. 요청된 정보의 성격

403. 재판소는 접근하고자 하는 정보, 자료 또는 문서에 대해 협약에 근거한 공개의 필요성을 제기하려면 공익성 심사(public-interest test)를 충족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어떤 사항이 공익의 대상에 해당할 것인지에 관한 정의는 각 사건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공익은 대중이 당연히 관심을 가질 정도로 공공에 영향을 미치는 이익, 대중의 관심과 흥미가 상당히 큰 문제, 특히 시민의 행복이나 공동체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과 관련된다. 상당한 논란이 제기되는 것이거나 중요한 사회적 문제에 관한 것, 대중들이 그 문제를 알아야 할 이익이 큰 문제들 또한 공익에 해당한다. 공익은 타인의 사생활 정보에 대한 대중의 갈증이나 선정주의 또는 관음증에 대한 욕구까지 격하되어서는 안 된다(*Magyar Helsinki Bizottság v. Hungary* [GC], §§ 161-162).

404. 재판소는 정치연설과 공익문제에 관한 토론에 대해 판례가 부여한 특권적 지위는 정보에 대한 접근과도 관련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표현들에 대해 협약 제10조제2항에 의한 제한을 거의 허용하지 않는 논거는 공공기관이 가진 정보에 대해 제10조제1항에 의한 접근권을 인정하는 문제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Magyar Helsinki Bizottság v. Hungary* [GC], § 163).

405.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정보들은 공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범주에 속한다.

- "전자감시조치 시행에 관한 사실 정보"(*Youth Initiative for Human Rights v. Serbia*, § 24)
- "헌법소원에 관한 정보" 및 "중요한 공적 사안"(*Társaság a Szabadságjogokért v. Hungary*, §§ 37-38)
- "정당한 역사연구를 위한 문서의 원본 자료"(*Kenedi v. Hungary*, § 43)
- 부동산 거래 수수료 관련 결정(*Österreichische Vereinigung zur Erhaltung, Stärkung und Schaffung v. Austria*, § 42)

406. 이와는 반대로, 재판소는 두 정당 모두 그 활동이 일반 대중에 공개되는 정당이지만, 의회 의원과 기업인의 소송과 관련하여 요청된 정보의 성격은 공개 필요성을 제기하는 데 필요한 공익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Sioutis v. Greece* (dec.), § 30).

407. 이러한 판단은 변호사가 의뢰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위법행위나 일반적인 수사관행, 반복된 위법행위 등과 같이 공론화할 가치가 있는 것을 공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의뢰인을 상대로 제기된 혐의를 반박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요청한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Tokarev v. Ukraine* (dec.), §§ 22-23).

408. 마찬가지로, 재판소는 전직 고위 공직자가 부패범죄 혐의로 기소된 것을 유일한 근거로 제시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를 때 공공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문서를 포함하여 진행 중인 형사소송에 관련된 법원의 명령 전체에 대한 사본을 요청한 것에 대해 공익성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데, 공익성을 대중의 호기심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Studio Monitori and Others v. Georgia*, § 42).

3. 정보 요청자의 역할

409. 재판소는 위에서 살펴본 두 심사기준(정보 요청의 목적과 요청된 정보의 성격에 관한 심사기준)의 논리적 결론은 대중과 정보를 "주고받는" 데 있어서 정보 요청자가 담당하는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판결했다(*Magyar Helsinki Bizottság v. Hungary* [GC], § 164).
410. 재판소는 언론인(*Roșianu v. Romania*, § 61) 및 공익적 사안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NGO(*Társaság a Szabadságjogokért v. Hungary*; *Österreichische Vereinigung zur Erhaltung, Stärkung und Schaffung v. Austria*; *Youth Initiative for Human Rights v. Serbia*) 또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411. 뿐만 아니라, 재판소는 정보 접근권이 NGO와 언론에만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밝혔다. 재판소는 높은 수준의 보호가 학술 연구자(*Başkaya and Okçuoğlu v. Turkey* [GC], §§ 61-67; *Kenedi v. Hungary*, § 42; *Gillberg v. Sweden* [GC], § 93) 및 공적 관심사에 관한 문헌을 저술하는 저자(*Chauvy and Others v. France*, § 68; *Lindon, Otchakovsky-Laurens and July v. France* [GC], § 48)에 대해서도 확대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412. 이와 달리, 청구인은 개인으로서 자신이 소송 당사자가 아닌 사건의 판결문 사본을 요청하였으나, 자신이 그 정보에 대한 대중의 이용가능성을 높이거나 그 정보의 확산을 촉진하는 데 어떠한 기여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주장도 없었던 경우, 재판소는 청구인이 심사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어떠한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Sioutis v. Greece* (dec.), § 31).

4. 정보의 즉시 이용가능성

413. 재판소는 정보 제공 요청을 거부한 것이 협약 조항에서 보호하는 "정보를 주고받을"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심사할 때 요청된 정보를 즉시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요한 기준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Magyar Helsinki Bizottság v. Hungary* [GC], § 170).
414. 따라서, 한 사건에서 재판소는 청구된 정보를 "즉시 이용할 수 있었고" 정부가 어떠한 자료도 수집할 필요가 없었다는 사실을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했다(*Társaság a Szabadságjogokért v. Hungary*, § 36; 이와 대조하여 *Guerra and Others v. Italy* [GC], § 53 요약 부분 참조).
415. 또 다른 사건에서 청구인 단체는 농지와 임야의 소유권 이전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관련 법률 초안에 의견을 제시할 목적으로 특정 문서에 국한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내려진 일련의 결정들에 관한 정보를 요청했다. 재판소는 국가기관이 청구인의 정보 요청을 거부한 이유가 "적절하고 충분한" 것인지를 심사한 후, 관찰 기관이 제기한 관련 자료 수집의 어려움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해당 기관이 언급한 예상되는 어려움의 상당 부분은 스스로 초래한 것으로 해당 기관의 결정들을 공표하지 않기로 한 선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고 판결하였다(*Österreichische*

Vereinigung zur Erhaltung, Stärkung und Schaffung v. Austria, § 46).

416. *Bubon v. Russia* 사건의 청구인은 각종 법학저널과 온라인 법률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네트워크에 여러 논문을 투고한 변호사였다. 이 청구인은 행정기관에서 성매매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결정을 내린 사람의 수, 관련 형사사건의 수,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수 등에 관한 정보를 관련 기관에 신청했다. 재판소는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가 "즉시 이용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었고 청구인이 원하는 형태로 작성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협약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44). 형법의 특정 조항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선고받은 형량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청구인이 이러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이 방법을 활용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47; 유사한 취지의 판례로, *Center for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dec.), § 58 참조).

C. 제한의 필요성에 대한 심사기준(제한이 추구된 정당한 목적에 비례하는지 또는 다른 권리 및 이익과 적절한 균형을 이루었는지 여부)

417. 국가기관이 가진 정보에 대한 접근과 관련된 대부분 사건에서는 타인의 권리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청구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근거로 제시된다(*Magyar Helsinki Bizottság v. Hungary* [GC], § 186; *Társaság a Szabadságjogokért v. Hungary*, § 34).

418. 재판소는 첫째, 문제된 제한의 목적으로 제기된 권리와 이익이 협약 제8조를 적용하여 제10조제1항에서 보호하는 청구인의 권리와 비교형량 심사를 수행할 정도의 성격과 정도인지를 판단한다. 이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문제된 정보가 수집된 상황과 정보의 공개가 예측가능했었는지를 고려한다. 재판소는 (정보공개로 사생활 제한이 문제되는) 사람들이 공개적인 방식으로 기록되거나 보고될 수 있는 활동임을 인식하면서 또는 의도하면서 관여하는 경우가 있다고 언급했다. 재판소는 사생활을 존중받을 것이라는 개인의 합리적인 기대가 반드시 결정적인 요인으로 고려되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다는 견해이다(*Magyar Helsinki Bizottság v. Hungary* [GC], § 57).

419. 제8조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에도, 재판소는 문제의 제한이 정당한 목적에 비례했는지 심사한다(*Magyar Helsinki Bizottság v. Hungary* [GC], § 196). 재판소는 특히 국내 법원이 협약 제10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존중되었는지에 대해 실질적인 심사를 수행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이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공익 사안에 관한 토론에 기여하고자 하는 정보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가장 엄격한 수준의 심사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ibid.*, § 199; 또한 정부가 청구인의 권리에 대한 제한이 법이 정하는 제한임을 입증하거나 하나 이상의 정당한 목적을 추구했음을 입증하는 주장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Roşianu v. Romania*, § 67 참조).

X. 사법제도의 권위와 공정성 및 표현의 자유 보호: 사법절차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법관의 공적 토론 참여

420. 이 장에서 검토한 범주의 사건들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정당한 이익뿐만 아니라 협약에 따라 보장된 다른 권리와도 충돌할 수 있다. 이는 특히 협약 제6조가 보호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그 논리적 귀결인 무죄추정, 그리고 협약 제8조가 보호하는 사생활의 권리를 의미한다.

421. 따라서 이 장에서는 사법절차에서 국가 사법제도의 구성원, 변호사,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행동과 법정 밖에서의 발언, 특히 언론에 대한 발언에 대한 표현의 자유에 관한 사건들을 검토한다.

이 장에서는 사법절차의 언론보도와 관련된 원칙과 그 적용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사법절차와 관계없이 공적 토론이라는 더 일반적인 맥락에서 사법부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재판소의 판례를 살펴본다.

A. 사법제도 관계자들의 특수한 지위와 사법절차에서의 표현의 자유

1. 사법부 구성원

422. 판사의 표현의 자유에 적용되는 일반원칙은 *Baka v. Hungary* [GC] 판결 162~167 단락에 요약되어 있다.

423. 사회에서 사법부가 수행하는 역할의 특성상 판사는 신중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Morice v. France* [GC], § 128). 그러나 신중의무는 특정한 목적을 추구한다. 즉, 판사의 발언은 변호사의 발언과 달리, 자신의 의견을 나타내는 것일 뿐 아니라 이를 통해 전체 사법제도가 표현하는 객관적인 판단을 나타내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ibid.*, § 168).

424. 재판소는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가 쟁점이 된 사건을 심리할 때 제10조제2항에 언급된 "의무와 책임"이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점을 항상 유념하는데, 이는 문제된 제한이 앞서 언급한 목적에 비례하는지를 판단할 때 국가기관에 일정 수준의 판단재량을 부여하는 정당한 근거가 된다(*Baka v. Hungary* [GC], § 162; *Vogt v. Germany*, § 53; *Guja v. Moldova* [GC], § 70; *Albayrak v. Turkey*, § 41).

425. 민주사회의 여러 국가기관 중에서도 사법부가 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사법부가 일반적인 공무에 속하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접근법은 판사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Albayrak v. Turkey*, § 42; *Pitkevich v. Russia* (dec.)).

426. 사법작용을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 재판소는 사법부의 권위와 중립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모든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 행사를 자제하는 것이 요구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Wille v. Liechtenstein* [GC], § 64; *Kayasu v. Turkey*, § 92).
427. 재판소의 견해에 따르면, 범죄의 방지와 기소 및 시민의 보호를 위한 권한을 법에 의해 직접 위임받은 검사의 지위로 인해 검사는 사법적 정의를 적정하게 집행하여 국민의 신뢰를 높임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법치주의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Kayasu v. Turkey*, § 91).
428. 사법기관은 사법작용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정한 심판자라는 인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자신이 다루는 사건에서 최대한 신중해야 하고(*Olujić v. Croatia*, § 59), 동료 공무원들, 특히 다른 판사들에 대한 비판을 표명할 때에도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Di Giovanni v. Italy*).
429. 재판소는 공무원이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특히 적절한 법집행을 보장하기 위한 공식적인 비밀유지 규정이 적용되는 정보에 관한 수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Poyraz v. Turkey*, §§ 76-78).
430. 진행 중인 범죄수사에 관한 수사기관의 발언과 관련해, 재판소는 제6조제2항으로 인해 수사기관이 대중들에게 수사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것이 금지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수사기관이 수사에 관한 사항을 알릴 때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신중함과 세심함을 갖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Fatullayev v. Azerbaijan*, §§ 159-162; *Garycki v. Poland*, § 69; *Lavents v. Latvia*, §§ 126-127; *Slavov and Others v. Bulgaria*, §§ 128-130).
431. 재판소는 재판을 통해 구체적인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있기 전에는 공무원이 그 사건을 언급할 때 적절한 단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Daktaras v. Lithuania*, § 41; 또한 국영 언론과의 인터뷰 맥락에서 *Butkevičius v. Lithuania*, § 50; *Gutsanovi v. Bulgaria*, §§ 197 및 202-203 참조)
432. 법치주의 국가와 민주사회에서 사법부의 권위를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재판소는 판사와 변호사로 대표되는 사법제도의 다양한 주체들이 배려와 상호 존중에 기초한 관계를 맺지 못할 경우 법원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다(*Morice v. France* [GC], § 170).

2. 변호사

433. 변호사는 사법적 집행에서 일반 대중과 법원의 중개자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특별한 지위를 부여받는다. 따라서 변호사는 법치주의 국가의 토대가 되는 임무를 맡은 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Morice v. France* [GC], §§ 132-139; *Schöpfer v. Switzerland*, §§ 29-30; *Nikula v. Finland*, § 45; *Amihalachioaie v. Moldova*, § 27; *Kyprianou v. Cyprus* [GC], § 173; *André and Another v.*

France, § 42; *Mor v. France*, § 42; and *Bagirov v. Azerbaijan*, §§ 78 및 99).

434. 국민들이 사법적 집행에 대해 신뢰를 갖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들이 효과적으로 변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국민이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Morice v. France* [GC], § 132; *Kyprianou v. Cyprus* [GC], § 175).
435. 변호사는 사법적 집행에서 독립적인 법률전문가로서 특별한 역할을 담당하므로 특히 직무행위와 관련하여 여러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Morice v. France* [GC], § 133; *Van der Musselle v. Belgium*; *Casado Coca v. Spain*, § 46; *Steur v. the Netherlands*, § 38; *Veraart v. the Netherlands*, § 51; *Coutant v. France* (dec.)).
436. 변호사는 직무행위에서 신중하고 정직하며 품위를 지켜야 한다는 제한을 받지만, 배타적 권리와 특권 또한 향유하는데, 그 내용들은 나라마다 다를 수 있지만, 보통은 법정에서의 주장에 대한 폭넓은 자유가 포함된다(*Morice v. France* [GC], § 133; *Steur v. the Netherlands*, § 38).
437. 뿐만 아니라, 변호사의 특별한 지위와 사법적 집행에서 변호사가 맡은 역할을 고려할 때, 재판소는 변호사를 언론인과 똑같이 취급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사법절차에서 변호사와 언론인 각각의 입장과 역할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언론인은 자신의 의무와 책임에 따라 사법적 집행을 비롯한 모든 공익 문제에 대한 정보와 사상을 전달할 임무를 담당한다. 변호사는 사법제도의 주체로 사법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데 직접 관여하며 소송 당사자를 직접 방어한다(*Morice v. France* [GC], §§ 148 및 168).

B. 사법절차에 관한 언론보도

1. 방법론

438. 대중들에게 정보를 전파할 권리와 대중이 정보를 접할 권리는 범죄수사의 밀행성이 적용되는 정보의 공개 금지를 통해 보호되는, 똑같이 중요한 공적, 사적 이익들과 충돌한다. 이러한 이익들은 사법부의 권위와 중립성, 범죄수사의 실효성, 피고인의 무죄추정을 받을 권리 및 사생활 보호권이다(*Bédât v. Switzerland* [GC], § 55).

따라서 일반적으로 협약 제6조제2항에서 보장하는 권리와(*Bladet Tromsø and Stensaas v. Norway* [GC], § 65; *Axel Springer SE and RTL Television GmbH v. Germany*, §§ 40-42; *Eerikäinen and Others v. Finland*, § 60) 협약 제8조에서 보장하는 권리가(*Bédât v. Switzerland* [GC], §§ 72 이하; *Axel Springer SE and RTL Television GmbH v. Germany*, § 40) 쟁점이 된다.

439. 협약에 따라 동등한 보호를 받는 두 권리가 충돌하는 상황에 대해 청구가 제기된 경우, 재판소는 쟁점이 된 이익들을 형량하여야 한다. 판단의 결과는 원칙적으로, 문제된 언론 기사의 대상이 제기한 청구인지 아니면 언론 기사의 작성자가 제기한 청구인지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Bédât v. Switzerland* [GC], §§ 52-53; *Egeland and Hanseid v. Norway*, §§ 53 및 63).

440. 따라서 국내 법원이 재판소 판례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두 권리에 대해 비교형량 심사를 수행한 경우, 재판소가 자신의 견해로 국내 법원의 견해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Haldimann and Others v. Switzerland*, § 55).

441. 재판소의 감독적 역할이, 동등하게 보호받는 두 권리에 대한 형량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재판소는 비례성 심사를 수행한다. 재판소는 청구인의 발언 취지와 맥락을 포함한 사건 전체의 상황을 고려하여 문제된 제한을 검토한 후, 해당 제한이 "강력한 사회적 필요에 해당하는지", "추구된 정당한 목적에 비례하는지", 그리고 그 제한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가 제시한 이유가 "적절하고 충분한지"를 결정한다(*Amihalachioaie v. Moldova*, § 30).

2. 일반원칙

442. 재판소의 견해에 따르면, "사법부의 권위"라는 말은 법원이 법적 분쟁의 해결과 범죄혐의에 대한 유죄 여부를 결정하기에 적절한 장소로서 대중들도 그와 같이 생각하고 있으며, 법원이 그러한 기능을 수행할 능력을 갖추었다고 대중들이 일반적으로 믿고 법원을 존중한다는 뜻을 포함한다(*Morice v. France* [GC], § 129; *Di Giovanni v. Italy*, § 71).

443. 여기서 문제는 신뢰이며, 형사소송에 관한 한 민주사회의 법원은 피고인의 신뢰를 얻어야 할 뿐만 아니라(*Kyprianou v. Cyprus* [GC], § 172), 일반 대중의 신뢰도 얻어야 한다(*Morice v. France* [GC], § 130; *Kudeshkina v. Russia*, § 86).

444. 재판소는 여러 판결을 통해 사법제도가 특별한 역할을 담당하는 민주사회의 필수 제도임을 강조했다(*Di Giovanni v. Italy*, § 71; *Prager and Oberschlick v. Austria*, § 34).

445. 그 결과, 법치국가의 근본적인 가치인 정의의 보장자 역할을 하는 법원이 자신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따라서 전혀 근거 없이 심각한 피해를 주는 공격으로부터 법원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는 공격의 대상이 된 판사는 신중의무로 인해 그 공격에 답변할 수 없다는 점에서 특히 그러하다(*Morice v. France* [GC], § 128; *Di Giovanni v. Italy*, § 71; *Kudeshkina v. Russia*, § 86).

446. 하지만, "사법부의 권위와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10조제2항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법원에 계속중인 사안과 관련해 모든 형태의 공적 토론을 제한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Worm v. Austria*, § 50).

447. 사실, 재판소는 전문 저널, 일반 언론 또는 일반 대중이 재판 주제에 관해 사전에 혹은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토론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고 본다. 언론은 그러한 정보와 사상을 전달해야 할 임무가 있으며, 일반 대중 또한 그 정보와 사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448. 적절한 사법적 집행의 이익을 위해 부과된 한계를 넘지 않는 한, 법원의 절차에 대한 의견을 포함한 언론보도는 법원의 활동을 국민에게 알리는 데 기여하며, 따라서 협약 제6조 제1항의 공개재판 요건과 완벽히 부합한다. 언론은 이처럼 정보와 사상을 전달해야 할 임무가 있으며, 일반 대중 또한 이러한 정보와 사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Worm v. Austria*, § 50).
449. 재판소는 이와 관련하여 각료위원회가 2003년 7월 10일 회원국에 권고하기 위해 채택한 "언론을 통한 정보제공에 관한 유럽평의회 권고 Rec (2003) 13(*Recommendation Rec (2003) 13*)"을 자주 언급한다(예를 들어, *Dupuis and Others v. France*, § 42 참조).
450. 재판소는 현재 진행 중인 형사소송을 보도하는 언론인의 경우 적절한 사법적 집행의 이익을 위해 부과된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무죄로 추정받는 피고인의 권리를 존중해야 하는데(*Du Roy and Malaurie v. France*, § 34), 이는 해당 재판이 공인에 대한 재판인지 여부와 무관하다고 명시했다(*Worm v. Austria*, § 50).
451. 재판소는 나아가, 협약 제6조제1항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보장된 공정한 심리를 받을 권리가 고려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형사사건의 경우 공정한 법원을 통해 재판받을 권리가 포함되는데, 이 점에서, 고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회를 방해하거나 형사법적 정의를 집행하는 법원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진술에 대해서까지 논평의 허용 범위를 확장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Tourancheau and July v. France*, § 66).

3. 적용기준

452. 아래의 적용 기준은 망라적인 것은 아니며, 문제된 정보 공개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익들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추가적인 고려사항은 아래 제4절에서 설명한다.
- a. 공익적 사안에 관한 공적 토론에 대한 기여
453. 민주사회의 필수 제도인 사법제도의 기능에 관한 문제는 공익에 속하는 문제이므로 (*Morice v. France* [GC], § 128; *July and SARL Libération v. France*, § 67), 표현의 자유에 대한 높은 수준의 보호가 요구되며, 따라서 국가기관에 부여된 판단재량의 범위가 특히 좁다(*Morice v. France* [GC], §§ 125 and 153; *July and SARL Libération v. France*, § 67).
454. 사법부 기능에 대한 발언의 "공익"적 성격은 다른 피고인에 대한 소송이 아직 진행 중인 경우 계속 유지된다(*Morice v. France* [GC], § 125; *Roland Dumas v. France*).
455. 적대행위의 정도(*E.K. v. Turkey*, §§ 79-80)와 특정 발언의 잠재적 심각성(*Thoma v. Luxembourg*, § 57)은 공익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높은 수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배제하지 않는다(*Paturel v. France*, § 42).

456. 문제된 발언에서 언급된 사건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는 것은 해당 발언이 공익에 관한 토론에 기여하는 정도를 의미할 수 있다(*Bédat v. Switzerland* [GC], § 64; *Morice v. France* [GC], § 151).

b. 문제된 발언의 성격이나 내용

457. 재판소는 사건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문제된 발언의 성격을 검토하며, 특히 협약 제10조가 보호하는 정보를 주고받을 권리와 충돌하는 정당한 이익(예를 들어, 사법적 수사의 밀행성과 무죄추정원칙에 관해서는 *Bédat v. Switzerland* [GC], §§ 58 이하 참조; 판사의 평판에 대한 보호에 관해서는 *Morice v. France* [GC], §§ 154 이하 참조).

c. 문제된 정보의 입수 방법

458. 문제된 정보를 입수한 방법은 특히 해당 정보가 사법적 수사의 밀행성을 위반한 공표와 관련하여 적절한 기준이 된다(*Bédat v. Switzerland* [GC], § 56).

459. *Bédat v. Switzerland* [GC] 사건에서, 재판소는 청구인이 직업적 언론인으로서 공개하려는 정보가 비밀 정보임을 몰랐을 수 없다는 점에서 청구인이 그 정보를 입수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 정보를 공개할 때 청구인의 의무와 책임을 준수한 것인지를 판단할 때 반드시 결정적인 요인으로 고려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 57; 또한 법원 심리 기록의 무단 사용에 관해서는 *Pinto Coelho v. Portugal (no. 2)* 참조; 진행 중인 수사에서 발췌한 내용을 책에서 인용 및 복제한 것에 관해서는 *Dupuis and Others v. France* 참조).

d. 공표금지 또는 제재가 비례적인지 여부

460. 사인에 의해 소추된 형사소송에만 적용되고, 검찰의 공소제기에 의해 개시되었거나 사인 소추에 의하지 않고 개시된 형사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 일반적이고 절대적인 금지조치를 검토할 때, 재판소는 정보를 전달할 권리에 대한 위와 같은 차별취급은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사인에 의해 소추된 형사소송에 관한 것이라도 공익에 관한 것일 수 있는 정보를 대중에게 보도할 언론의 권리를 전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Du Roy and Malaurie v. France*, § 35).

461. 이와 반대로, 재판소는 절차적 문제에 관한 서류가 공개 법정에서 낭독될 때까지 단지 원문 그대로 복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제한은 절차적 문제에 관한 서류의 분석이나 논평을 금지하거나 소송 자체에서 얻어진 정보의 공개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어서, 언론이 대중에게 정보를 전달할 권리를 완전히 제한한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다(*Tourancheau and July v. France*, § 73).

462. 판사가 연루된 사건 및 그에 관한 법원의 절차에 대한 언론의 보도를 금지한 잠정적 금지명령이 문제된 사건에서, 재판소는 문제의 조치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법원 절차의 투명성을 약화시키고 법원의 공정성을 의심하도록 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

조치가 사법부의 권위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다(*Obukhova v. Russia*, § 27).

463. 재판소의 견해에 따르면, 표현의 자유에 관한 문제는 공정한 사법적 집행의 실효적인 기능을 위해 필수적인, 변호사들의 독립성과 관련된 문제이다(*Morice v. France* [GC], § 135; *Siałkowska v. Poland*, § 111). 피고인 측 변호사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것이 가벼운 형사제재라 하더라도 오직 예외적인 경우에만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제한으로 인정될 수 있다(*Nikula v. Finland*, § 55; *Kyprianou v. Cyprus* [GC], § 174; *Mor v. France*, § 44).
464. 재판소는 변호사에게 부과하는 제재가 변호사에 대한 일반 대중과 의뢰인의 인식이나 신뢰 등의 측면에 직접적으로(징계 절차)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Mor v. France*, § 176; 또한 *Dupuis and Others v. France*, § 48; *Mor v. France*, § 61 참조), 일반적으로 변호사 전체에 위축효과를 미칠 수 있다고 언급했다(*Pais Pires de Lima v. Portugal*, § 67).
465. 재판소는 국가기관의 우월한 지위를 고려할 때 국가기관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 사안을 형사소송을 통해 대응하지 않도록 자제해야 하며, 특히 징역형 대신 다른 제재가 가능한 경우 이러한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결했다.
466. 재판에서 지나치게 흥분하는 등 부적절하게 행동한 변호사가 "법정모욕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에서, 재판소는 변호사의 특정한 행동에 제재를 가하는 것이 사법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법기관과 징계기관의 임무이기는 하지만, 이들 기관은 이러한 심사로 인해 의뢰인의 이익 보호를 저해할 수 있는 위축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Bono v. France*, § 55; *Kyprianou v. Cyprus* [GC], § 181; *Rodriguez Ravelo v. Spain*, § 49).
467. 재판소는 한 변호사가 유죄판결을 받은 "법정모욕"에 대한 재판이 약식이고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어 비례성 위반을 더 악화시켰다고 판결했다(*Kyprianou v. Cyprus* [GC], §§ 171 및 181).
468. 한 학생이 지역 야구팀의 파티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의혹을 한 잡지사에서 표지 기사로 실어 공개한 것과 관련된 사건에서, 재판소는 야구팀 팀원들의 무죄추정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고, 반면 이 사건의 (언론인에 대한) 형사제재는 예외적으로 제10조에 부합하여 과도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위와 같은 매우 심각한 혐의를 사실인 것처럼 제시하였고, 청구인들은 그 혐의의 근거가 되는 사실들을 검증하지 않았으며, 또한 범죄수사가 공개되기 전에 해당 의혹을 공표했다(*Ruokanen and Others v. Finland*, § 48).
469. 정치인이자 변호사인 청구인이 재판 내용을 기술한 책을 출간한 후 검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에서, 재판소는 명예훼손을 했다는 발언의 내용이 2년 전 당시 재판에서 청구인이 한 발언과 동일하다고 언급했다. 재판소는 징계기관이 형법상 모욕죄 또는 청구인의 변호사신분에 근거한 징계절차를 개시한 바 없었다고 지적하였다. 재판소는 또한 청구인이 과거 재판에서 해당 발언을 하고 무죄판결을 받고서 2년 후 문제된 발언을 다시 자신의 저서에 수록할 때, 적절한

문맥에 따라 이 발언을 수록하고 설명하고자 주의했다고 언급했다. 재판소는 문제의 조치에 대한 비례성 심사에서 프랑스 법원이 이러한 관련 요인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소 중요하게 고려했다(*Roland Dumas v. France*, §§ 47-49).

4. 공표로 인해 침해될 수 있는 이익들과 관련한 상황별 고려사항

a. 사법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표 및 진술

470. 재판소는 문제된 공표로 사법절차의 진행에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해 사건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다. 공표 시기, 그 내용의 성격(도발 여부), 사건을 판단하는 심판자의 지위(전문성 여부) 등은 재판소가 가장 자주 검토하는 사항이다.

471. 공표 시기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재판소는 문제된 기사가 형사소송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순간인 검찰의 최종의견 제출시, 그리고 피고인의 무죄추정원칙에 대한 존중이 특히 중요한 때에 발표되었다고 지적했다(*Campos Dâmaso v. Portugal*, § 35; 순회법원 심리 전 공표와 관련하여 *Tourancheau and July v. France*, § 75 참조; 또한 *Dupuis and Others v. France*, § 44 참조).

472. 피고인의 유죄 여부를 판결해야 하는 일반인 배심원의 비전문적 신분은 언론 기사가 사법절차의 진행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판단할 때 재판소가 추가로 고려하는 사항이다(*Tourancheau and July v. France*, § 75).

473. 국가의 판단재량을 고려할 때, 국내 법원은 참심원(lay judge)이 문제의 기사를 읽을 가능성과 그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The Sunday Times v. the United Kingdom (no. 1)*, § 63; *Worm v. Austria*, § 54).

474. 재판소의 견해에 따르면, 사건을 결정하도록 요청받은 참심원이 없다는 사실은 정보의 공표가 사법절차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을 완화한다(*Campos Dâmaso v. Portugal*, § 35; *A.B. v. Switzerland*, § 55).

475. 문제의 기사가 피고인의 성격 중 일부 불안정한 측면을 강조하고, 피고인 스스로가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고 있다고 결론내리는 등 피고인을 매우 부정적인 모습으로 묘사한 경우, 그 기사의 발행이 사법부 내부의 의견형성 및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다(*Bédat v. Switzerland* [GC], § 69).

476. 이와 반대로, 재판소는 언론인인 청구인이 특정 피고인의 유죄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는 점이 그 기사가 사법절차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결국 감소시켰다고 판단했다(*Campos Dâmaso v. Portugal*, § 35).

b. 공표로 인한 수사의 밀행성 및 무죄추정원칙 위반 가능성

477. 재판소는 수사의 밀행성이 한편으로는 공모의 위험과 증거의 조작이나 인멸의 위험을

예상함으로써 형사소송의 이익을 보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무죄추정의 원칙의 관점에서, 그리고 보다 일반적으로는 피고인의 사적인 관계들과 이익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강조한다. 이러한 밀행성은 사법기관 내부의 의견형성과 의사결정 과정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 측면에서도 정당화된다(*Bédat v. Switzerland* [GC], § 68; *Brisic v. Romania*, § 109; *Tourancheau and July v. France*, § 63; *Dupuis and Others v. France*, § 44).

478. 어떤 사건이 사실의 심각성과 그 사건에 연루된 관련자들로 인해 언론에 의해 대대적으로 보도된 상황에서, 변호사의 논평과는 무관하게 이미 기자들이 입수하여 보도하려고 준비 중인 정보에 대해 변호사가 단순히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한 경우에는, 사법적 수사의 밀행성 위반을 들어 그 변호사에게 제재를 가할 수 없다.

그렇지만, 변호사가 공개 발언을 할 때 현재 진행 중인 수사의 비밀과 관련하여 신중을 기해야 할 의무를 면제받는 것은 아니다(*Morice v. France* [GC], § 138; *Mor v. France*, §§ 55-56).

479. 재판소는 현재 진행 중인 권력남용 수사 관련 정보를 언론에 제공한 혐의로 검사장이 해임된 사건에서, 재판소는 해당 검사장이 기소된 사건에 관한 간략한 설명을 사건 초기부터 제공했다고 언급했다. 청구인은 사법적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관련 당사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고, 수사 파일에서 어떠한 비밀 정보나 문서도 공개하지 않았다. 재판소는 루마니아 법원이 범죄수사의 밀행성 위반 결정을 뒷받침할 "적절하고 충분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Brisic v. Romania*, §§ 110-115).

480. 한 기자가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법원의 심리를 녹음한 내용을 방송한 것과 관련된 사건에서, 재판소는 일반 대중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 대한 이익이 청구인 기자의 "의무와 책임"보다 더 크다는 결론을 내렸다. 청구인은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중 한 명에 대해 내려졌다고 생각되는 오심을 폭로하기 위해 이와 같은 행동을 했다. 재판소는 두 가지 사항을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했다. 첫째, 문제의 녹음을 방송했을 당시 법원에서 이미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 방송이 적절한 사법적 집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이다. 둘째, 재판소는 법원 심리 참석자들의 목소리가 변조되어 신원이 확인되지 않도록 한 점도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했다(*Pinto Coelho v. Portugal (no. 2)*, §§ 49-50).

481. 노르웨이 국가기관이 중요한 형사재판에 대한 언론보도를 제한했던 사건에서, 재판소는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법정 영상과 음성을 생방송으로 내보낼 경우 상황에 따라 법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다르게 비칠 수 있고 재판 관계자에게 추가적인 압력이 가해질 수 있으며 심지어 이들의 행동에 부당한 영향을 미쳐 공정한 사법적 집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재판소는 라디오이든 텔레비전이든 법원 심리의 생중계가 언론이 사법절차에 관한 정보와 사상을 전달하는 데 필수적인 방법인지에 관한 문제를 검토한 후 회원국들의 국내 제도들에 이 문제와 관련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P4 Radio Hele Norge ASA v. Norway* (dec.)).

c. 소송 당사자의 사생활 관련 정보의 공표

482. 범죄수사의 밀행성이 적용되는 정보, 특히 피고인이 예심판사에게 작성한 서신과 의료 정보를 공표한 언론인이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에서 재판소는, 국가기관은 제8조의 보호를 받는 정보를 고의로 공표하지 않을 소극적 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통신을 존중받을 권리를 포함한 피고인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판결했다(*Bédat v. Switzerland* [GC], § 76; 또한 *Craxi v. Italy (no. 2)*, § 73 참조).
483. 재판소는 이러한 유형의 정보가 제8조에 따라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본다. 대중이 피고인에 대해 잘 모르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유형의 정보 공표가 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논리이다. 피고인이 매우 심각한 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신을 자발적으로 대중에 공개하는 공인과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정당한 근거가 없다고 보았다(또한 유사한 맥락에서, *Fressoz and Roire v. France* [GC], § 50; *Egeland and Hanseid v. Norway*, § 62 참조; 피해자의 신원을 보호해야 할 의무에 관해서는 *Kurier Zeitungsverlag und Druckerei GmbH v. Austria* 참조).

d. 법정모욕죄

484. 재판소는, 판사는 중요한 국가기관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본적인 근거도 없이 심각한 피해를 주는 공격은 제외하더라도, 이론적이고 일반적인 측면에서의 비판뿐만 아니라 용인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개인적 비판도 받을 수 있음을 인정했다. 따라서 공적 권한을 행사하는 판사는 일반 시민보다 더 넓은 범위의 비판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Morice v. France* [GC], § 131; *July and SARL Libération v. France*, § 74; *Aurelian Oprea v. Romania*, § 74; *Do Carmo de Portugal e Castro Câmara v. Portugal*, § 40).
485. 그러나 기본적인 근거도 없이 심각한 피해를 주는 공격으로부터 사법부를 보호할 필요성이 제시될 수 있다(*Prager and Oberschlick v. Austria*, § 34; *Lešník v. Slovakia*, § 54; 피고인이 검사를 비판한 사건에 관해서는 *Čeferin v. Slovenia*, §§ 56 및 58 참조).
486. 변호사는 사법적 집행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표명할 권리가 있다. 단, 그 비판은 일정한 한계를 넘어서는 안 된다(*Amihalachioaie v. Moldova*, §§ 27-28; *Foglia v. Switzerland*, § 86; *Mor v. France*, § 43). 이러한 한계는 변호사의 직무행위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제한과 일치한다(*Kyprianou v. Cyprus* [GC], § 173).
487. 이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유럽 변호사 협회(Council of Bars and Law Societies of Europe)가 열거한 10가지 기본원칙을 언급하며, 특히 "품위(dignity), 명예(honour), 청렴(integrity)"과 "공정한 사법적 집행에 대한 존중"을 강조했다(*Morice v. France* [GC], §§ 58 및 134). 재판소가 볼 때, 이러한 규정들은 무분별하고 근거 없는 공격들, 예컨대 오로지 사법적 논쟁을 언론에서 다루게 하려는 전략 혹은 특정 사건을 담당할 법관에 대한 보복적 의도에서 나온 공격들로부터 사법부를 보호하는 데 기여한다.

488. 또한, 변호사의 의견 표명이 법정에서 한 것인지 다른 장소에서 한 것인지도 구별되어야 한다. 첫째, "법정에서의 행동"인 경우, 변호사의 표현의 자유는 그 의뢰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관련된 문제일 수 있으므로, 공정성의 원칙도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논증, 심지어는 강제적인 논쟁까지도 촉진한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익을 열심히 변호할" 의무가 있는데, 이는 때에 따라서는 법원의 결정에 반대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음을 의미한다. 그 밖에, 재판소는 법정 밖에서는 문제된 발언을 다시 언급하지 않은 사실도 고려한다 (*Morice v. France* [GC], §§ 136-137).
489. 법정 밖에서 한 발언과 관련하여, 재판소는 변호사가 의뢰인을 방어하기 위해 텔레비전 뉴스에 출연하거나 언론과 인터뷰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공판전 절차를 약화시킬 수 있는 문제점들을 일반 대중에게 알릴 수 있다고 거듭 강조한다(*Morice v. France* [GC], § 138). 예를 들어, 재판소는 변호사가 법정을 빠져나가는 기자들에게 한 발언은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에 대해 담당검사가 항소하도록 하기 위해 가능한 방법들 중 하나를 선택한 것으로, 따라서 의뢰인(문제된 살인사건 피해자의 아버지)을 변호하기 위한 임무에서 나온 발언이었다고 언급했다(*Ottan v. France*, § 58).
490. 마찬가지로, 재판소는 관련된 사람에 따라 달리 판단하는데, 따라서, 소송절차의 "당사자"인 검사는 "피고인 측 변호사의 매우 강한(very considerable)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Morice v. France* [GC], § 137; *Nikula v. Finland*, §§ 51-52; *Foglia v. Switzerland*, § 95; *Roland Dumas v. France*, § 48).
491. 따라서, 재판 중에 이의를 제기하고 검사를 비난하는 쪽지를 큰 소리로 읽은 변호사를 상대로 검사가 명예훼손을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재판소는 언론을 통해서가 아니라 법정 안에서 변호사가 발언한 비판은 소송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따라서 인신공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Nikula v. Finland*, § 52; see also *Lešník v. Slovakia*).
492. 뿐만 아니라, 변호사는 타당한 사실적 근거 없이 허용가능한 의견표명의 한도를 넘을 정도로 심각한 발언을 해서는 안 되며 모욕적인 발언도 해서는 된다. 재판소는 전반적인 맥락에서 발언을 판단하며, 특히 해당 발언이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무분별한 인신공격으로 여겨질 수 있는지, 그리고 해당 발언에서 사용된 표현이 사건의 사실과 충분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확인한다(*Morice v. France* [GC], § 139 및 이 사건에 언급된 추가 판례 참조).
493. 재판소는 구금된 청구인이 지방법원에 보낸 서신과 관련된 사건에서 비판과 모욕을 명확히 구별했다. 재판소는 법원이나 판사를 모욕하는 것이 유일한 의도일 경우, 적절한 처벌이 내려졌다면 원칙적으로 제10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이다. 하지만, 특히 청구인이 유사한 전과가 없고, 대중은 그 서신에 대해 알지 못했음을 고려할 때, 재판소는 무거운 징역형을 내린 것이 범죄의 심각성을 넘어서는 과도한 처벌이라고 판단했다(*Skafka v. Poland*, §§ 39-42).

494. 청구인이 기소된 후 판사에게 경멸적인 내용을 담은 서신을 보낸 것을 이유로 구금되었다가 35일 동안 정신병원에 감금된 사건에서, 재판소는 청구인이 몇몇 사법부 구성원에 대해 특히 신랄하고 독설적이며 모욕적인 발언을 했으나, 해당 발언이 해당 서신에만 수록되었고 공개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므로 발언이 사법적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재판소는 또한 청구인을 구금하려고 한 검찰이 청구인의 후견인 임명 절차에 참여했고, 따라서 구금을 신청할 당시 검찰은 청구인의 정신 상태가 적어도 의심스러운 상태였고, 이것이 청구인이 그렇게 행동한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언급했다(*Ümit Bilgiç v. Turkey*, §§ 133-136).
495. 자신의 의뢰인 중 한 명의 민사소송을 재판한 판사에 대해 비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최고사법위원회에 고발했으나, 이로 인해 그 판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그 판사에게 5만 유로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은 변호사에 관한 사건에서, 재판소는 이 사건의 배상금이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었고 요구되는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재판소는 특히 판사에 대한 고발이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사법부 내부에서 논의되었다고 한 법원 판결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청구인은 비밀로 유지되어야 할 소송 내용을 누설한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Pais Pires de Lima v. Portugal*, § 66).

C. 판사의 공적 토론 참여

496. 토론 중인 사안이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판사가 해당 사안에 대해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는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없다(*Wille v. Liechtenstein* [GC], § 67).
497. 재판소는 대법원장이 사법부 판사의 일원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의회를 겨냥하여 사법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헌법 개혁과 입법 개혁에 관한 의견과 비판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임기를 마치기 전에 해임된 사건에서 이 원칙을 적용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대법원장으로서 국가사법위원회 의장직도 함께 수행하고 있었는데, 재판소는 그 직책의 역할과 책임에는 사법부와 그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입법 개혁에 대한 의견표명도 포함된다는 점을 특히 중요하게 고려했다(*Baka v. Hungary* [GC], § 168).
498. 재판소는 이와 관련하여 유럽평의회 문서에 수록된 문구를 언급했다. 이 문서에 따르면, 모든 판사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증진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판사와 사법부는 자신과 관련된 법령과 더 일반적으로 사법제도의 기능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전달하고 이에 참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유럽판사자문회의 의견 제3호(*Opinion no. 3 (2002) of the CCJE*) 제34항 및 판사 대헌장(*Magna Carta of Judges*) 제3항 및 제9항 참조)(*Baka v. Hungary* [GC], §§ 80-81).
499. 한 사건에서 청구인은 자신이 법관직에서 해임된 이유가 선거운동 중 언론에 특정 발언을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재판소는 이 사건의 청구인이 징계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절차적 보장을 받지 못했고, 청구인에게 부과된 제재가 지나치게

가혹했으며, 사법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공적 토론에 참여하고자 하는 판사에 대해 "위축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보았다(*Kudeshkina v. Russia*, § 97-99; 또한, 사법 개혁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후 임기를 마치기 전에 해임된 검사에 관해서는 *Kövesi v. Romania*, §§ 205-208 참조).

500. *Previti v. Italy* (dec.) 사건에서, 재판소는 판사들이 법률전문가 자격으로 정부가 발의한 법령 개정안에 대한 비판을 비롯해 각종 견해를 표명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판사가 적절한 방식으로 입장을 표명할 경우, 사법부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특정 사건의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는다. 재판소가 명시한 바와 같이, 민주주의와 다원주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일부 판사나 판사 집단이 법률전문가 자격으로 정부의 법령 개정안에 대해 의구심이나 비판을 표명할 수 있다고 해서 그 개정안이 적용될 사법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는다(§ 253).
501. 반면, 헌법재판관이 공개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표명했다는 이유로(고위 공직자들에게 보낸 편지와 언론 인터뷰, 그리고 승인받지 않은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업무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부패 혐의를 제기) 해임된 것에 대해 청구를 제기한 사건에서, 재판소는 해임 결정이 청구인의 공정성과 독립성, 그리고 판사의 역할과 양립할 수 없는 행동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청구인이 제10조를 들어 제기한 청구는 청구의 근거가 없음이 명백하다고 결론내렸다(*Simić v. Bosnia and Herzegovina* (dec., §§ 35-36)).

XI. 표현의 자유와 국가안보, 영토보전 또는 공공의 안전, 무질서와 범죄 방지의 정당한 목적

502. 이 장에서 언급하는 정당한 목적은 종종 여러 목적이 결합하여 그리고 때로는 비밀리에 얻은 정보의 공개(*Stoll v. Switzerland* [GC], § 53) 또는 타인의 권리 보호와 같은 다른 정당한 목적과 동시에 제기된다(*Brambilla and Others v. Italy*, § 50). 이른바 "분리주의(separatist)" 담론에 직면하여 "영토보전의 보장"이 언급되는 것과 같이, 제기된 여러 정당한 목적 중 하나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도 있다(*Sürek and Özdemir v. Turkey* [GC], § 50).
503. 테러와의 전쟁은 이 범주에 속하는 사건에서 중요한 상황으로서 매우 자주 언급되는 목적이다.
504. 이러한 정당한 목적은 매우 다양한 국내법 조항에서 언급되는데, 대개 형법이나 테러방지법에 언급되며, 때로는 헌법에도 언급되기도 한다.

A. 일반원칙

505. 일반원칙의 문제로서 표현의 자유 행사에 대한 모든 제한은 설득력 있는 이유를 통해 그 "필요성"을 입증해야 한다(*Sürek and Özdemir v. Turkey* [GC], § 57; *Dilipak v. Turkey*, § 63). 재판소는 국가기관이 제한을 정당화하기 위해 제시한 이유가 "적절하고 충분한"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Barthold v. Germany*, § 55; *Lingens v. Austria*, § 40).
506. 특히 비밀리에 얻은 정보의 공개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국가안보"와 "공공의 안전" 개념을 적용하는 것을 자제해야 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안보와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 공개를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Stoll v. Switzerland* [GC], § 54; *Görmüş and Others v. Turkey*, § 37).
507. 반면, 재판소는 정치적 발언이나 공익 문제에 대한 토론의 경우 협약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한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고 일관되게 판결했다(*Sürek v. Turkey (no. 1)* [GC], § 61; *Lindon, Otchakovsky-Laurens and July v. France* [GC], § 46; *Wingrove v. the United Kingdom*, § 58).
508. 표현의 자유는 정당과 활동 중인 정당원에게 특히 중요하며, 특히 야당 정치인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 재판소는 이러한 제한에 대해 가장 엄격한 수준의 심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 대한 비판은 민간 시민이나 심지어 정치인에 대한 비판보다 더 폭넓게 허용되어야 한다(*Faruk Temel v. Turkey*, § 55; *Incal v. Turkey*, § 54; *Han v. Turkey*, § 29; *Yalçiner v. Turkey*, § 43).
508. 재판소에 따르면, 법치주의에 기초한 민주사회에서, 기존 질서에 도전하고 평화적 수단을 통해 주장하는 정치 사상은 적절히 표현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Eğitim ve Bilim Emekçileri Sendikası v. Turkey*, § 70).

510. 한편, 재판소는 테러 방지와 관련된 문제들을 고려한다(*Gözel and Özer v. Turkey*, § 55; *Karataş v. Turkey*, § 51). 재판소는 이와 관련하여 폭력을 조장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국가기관이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점, 즉 제10조제2항에서 의미하는 공공의 안전 보호 및 무질서와 범죄 방지의 필요성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인다(*Leroy v. France*, § 36).
511. 재판소는 테러와의 전쟁에서 발생하는 어려움 그 자체로는 협약 제10조에 따른 국가기관의 의무를 면제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본다(*Döner and Others v. Turkey*, § 102). 다시 말해, 제10조와 관련하여 재판소의 판례로부터 도출된 원칙은 국가기관이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가안보와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도 적용된다(*Faruk Temel v. Turkey*, § 58).
512. 재판소는 개별 사건의 사정들과 국가의 판단재량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개인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와 테러리스트 조직의 활동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민주사회의 정당한 권한 사이에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Zana v. Turkey*, § 55; *Karataş v. Turkey*, § 51; *Yalçın Küçük v. Turkey*, § 39; *İbrahim Aksoy v. Turkey*, § 60).
513.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특히 민감한 상황에서 교사가 언급한 공개 발언과 관련된 사건에서, 재판소는 교사들의 경우 교육 분야에서 학생에게 있어 권위를 상징하는 집단이므로, 학교 바깥에서의 활동에서도 교사의 특별한 의무와 책임이 어느 정도 적용된다고 판단했다(*Mahi v. Belgium* (dec.), §§ 31-32, 및 이 사건에서 언급된 추가 판례 참조). 따라서 재판소는 2015년 1월 파리에서 발생한 테러 공격의 여파로 학교 분위기가 특히 긴장된 것을 고려할 때, 비록 교사의 발언이 반드시 형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져서는 안 되지만(증오와 외국인 혐오 또는 차별을 선동하지 않을 경우), 해당 발언이 신중의무와 양립할 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한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판결했다(§ 34).

B. 제한의 정당성에 관한 심사 기준

1. 공익에 관한 토론에 대한 기여

514. 재판소는 공익 사안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했다. 보통 공익은 대중이 당연히 관심을 가질 정도로 공공에 영향을 미치는 이익이며, 대중의 관심과 흥미가 상당히 큰 문제, 특히 시민의 안녕이나 공동체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 상당한 논란이 일고 있거나 중요한 사회적 문제에 관한 것이거나 대중이 관련 정보에 관해 관심이 큰 문제 또한 공익에 해당한다(*Satakunnan Markkinapörssi Oy and Satamedia Oy v. Finland* [GC], § 171; *Sürek and Özdemir v. Turkey* [GC], § 61).
515. 국가안보와 관련된 특정 정보의 비밀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공개와 관련된 여러 사건에서, 재판소는 이러한 정보의 공개가 공익에 관한 토론에 기여한 부분을 강조했다. 재판소는 이러한 정보 공개가 국가안보 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공개 요구와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정당화된다고 보았다(*Observer and Guardian v. the United Kingdom*, § 69; *The Sunday Times v. the United Kingdom (no. 2)*, §§ 54-55).

516. 테러와의 전쟁에 참여한 국가 요원들에 대한 폭력 의혹을 담은 보고서를 발행한 잡지 소유주가 유죄판결을 받았던 사건에서, 재판소는 위법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일반 대중은 군 장교의 위법행위뿐만 아니라 신원 공개에 대해서도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뉴스 보도에서 근거로 삼은 정보가 이미 다른 신문에 보도되었고, 이들 신문사는 기소되지 않았었다고 지적했다(*Sürek v. Turkey (no. 2)* [GC], §§ 39-40).

2. 발언의 성격과 내용 및 잠재적 영향력: 맥락에 따른 텍스트 분석

517. 이러한 유형의 사건이 제기하는 본질적인 문제는 해당 발언이 폭력, 증오 또는 불관용을 악화시키거나 정당화할 수 있는나 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사건들 가운데 다수 사건에서 재판소는 협약 제10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했다.

518. 재판소는 문제의 발언이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폭력을 선동한 것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발언에서 사용된 단어와 문맥 및 잠재적 영향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이다(예를 들어, *Özgür Gündem v. Turkey*, § 63; *Gözel and Özer v. Turkey*, § 52 참조).

519. 재판소의 심사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는 문제의 진술이 이루어진 정치적·사회적 배경이다(*Perinçek v. Switzerland* [GC], § 205). 이러한 요인의 예로는, 긴장이 고조된 정치적·사회적 배경(*Mariya Alekhina and Others v. Russia*, § 218; *Zana v. Turkey*, §§ 57-60; *Sürek v. Turkey (no. 3)* [GC], § 40), 인명 사고가 발생한 교도소 폭동이 진행되는 상황(*Saygılı and Falakaoğlu (no. 2) v. Turkey*, § 28), 프랑스의 비유럽 출신 이민자, 특히 이슬람 문화권 출신 이민자 통합 관련 문제(*Soulas and Others v. France*, §§ 38-39; *Le Pen v. France* (dec.)), 1990년 리투아니아 독립 직후 소수민족과의 관계(*Balsytė-Lideikienė v. Lithuania*, § 78)) 등이 있다.

520. 또 다른 요소는 목전의 상황 또는 보다 광범위한 맥락에서 정당하게 해석했을 때 그 진술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폭력을 촉구하거나 폭력, 증오 또는 불관용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지에 여부였다(*Perinçek v. Switzerland* [GC], § 206; see, *inter alia*, *Incal v. Turkey*, § 50; *Sürek v. Turkey (no. 1)* [GC], § 62; *Özgür Gündem v. Turkey*, § 64; *Gündüz v. Turkey*, §§ 48 및 51; *Soulas and Others v. France*, §§ 39-41 및 43; *Balsytė-Lideikienė v. Lithuania*, §§ 79-80; *Féret v. Belgium*, §§ 69-73 and 78; *Hizb ut-Tahrir and Others v. Germany* (dec.), § 73; *Kasymakhunov and Saybatalov v. Russia*, §§ 107-112; *Fáber v. Hungary*, §§ 52 and 56-58; *Vona v. Hungary*, §§ 64-67; *Lilliendal v. Iceland* (dec.), §§ 36-39).

521. 재판소는 사건의 결론을 판단할 때, 위에서 언급한 요소들을 각자 개별적으로 고려하는 대신 그 요소들의 상호 작용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erinçek v. Switzerland* [GC], § 208).

522. *Savva Terentyev v. Russia* 사건에서, 재판소는 국가기관이 문제된 진술에 대해 관련 논의가 이루어진 맥락에서 분석하지 않고 그 진술의 형식과 대략적인 의미에만 초점을 맞추었으며, 진술이 이루어진 정치적·사회적 배경과 진술이 미칠 영향력의 범위를 적절하게 고려했을 때 그 진술이 초래할 해로운 결과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판단조차 시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소는 국가기관이 모든 사실관계와 관련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기관이 제시한 이유는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정당화하기에 "적절하고 충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82-84).
523. 의견 표명이 폭력 선동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즉 폭력 행위나 피의 복수에 나서는 것을 지지하거나, 지지자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테러 범죄를 정당화하거나, 특정인들을 상대로 뿌리 깊고 비이성적인 증오를 표명함으로써 폭력을 조장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원국은 제10조제2항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서라도, 즉 영토보전과 국가안보의 보호 및 무질서와 범죄의 방지를 위해서라도 언론을 형벌조항으로 압박하여 일반 대중의 알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Sürek v. Turkey (no. 4)* [GC], § 60; *Gözel and Özer v. Turkey*, § 56; *Nedim Şener v. Turkey*, § 116; *Dilipak v. Turkey*, § 62).
524. 하지만, 문제의 발언이 개인이나 공무원, 일부 인구집단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도록 선동하는 경우, 국가기관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필요성을 검토할 때 더 폭넓은 판단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Sürek v. Turkey (no. 3)* [GC], § 37). 무력 사용을 촉구하는 발언이 이 경우에 해당하며(*ibid.*, § 40; *Taşdemir v. Turkey* (dec.)), 발언 당사자가 공개적으로 무력에 의지하여 행동할 것을 촉구하지는 않았으나 폭력 사용과 거리를 두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사회 안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발언을 하는 상황 또한 이 경우에 해당한다 (*Yalçiner v. Turkey*, § 46; *Zana v. Turkey*, § 58).
525. 재판소는 *Zana v. Turkey* 사건에서 문제된 진술이 미치는 잠재적 영향력의 개념에 관해 첫째, 진술을 하는 사람의 역할과 기능, 둘째, 진술의 주제를 둘러싼 사회적 상황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강조했다(§§ 49-50; 또한 *Yalçiner v. Turkey*, §§ 46-49 참조).
526. 인터넷상에서 경찰을 모욕한 발언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블로거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Savva Terentyev v. Russia* 사건에서, 재판소는 청구인의 발언에서 불쾌하고 모욕적이며 독설적인 표현이 사용된 점에 주목했다. 그러나 재판소는 이러한 진술이 경찰관에 대한 증오를 선동하거나 폭력을 조장하려는 시도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청구인에 대해 반드시 유죄판결을 내려야 할 명백하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소는 특히 청구인이 유명 블로거도 아니었고 소셜미디어의 인기 사용자도 아니었으므로 영향력 있는 인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81).
527. 무엇보다도, 재판소는 억압이나 불평등을 당한 역사가 있는 취약한 소수집단이 모욕적이거나 차별적 담론으로부터 더 강력히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Savva Terentyev v. Russia*, § 76; *Soulas and Others v. France*, §§ 38-39; *Le Pen v. France* (dec.)). 재판소는 *Savva Terentyev v. Russia* 사건에서 이름이 명시되지 않은 경찰관들을 왜 취약집단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러시아 법원이 적절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75-76).

528. 발언의 전달 수단 또한 담론의 잠재적 영향력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에 따라, 재판소는 은유적인 문구가 사용된 시집(*anthology of poetry*)이라는 표현 형식과 제한적인 독자층을 고려할 때 시집 출판에 대한 유죄판결은 과도한 것이었다고 판결했다(*Karataş v. Turkey*, § 52; see also *Polat v. Turkey* [GC], § 47).
529. 이용된 매체가 중요할 수 있는데, 특히 선거운동에서 정당의 소책자 배포나(*Féret v. Belgium*, § 76) 또는 인터넷을 통해 그 진술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는 경우에는 특히 그렇다. 재판소가 볼 때, 혐오표현이나 폭력을 선동하는 발언을 비롯하여 명예훼손적이고 명백히 불법적인 발언들이 과거와 달리 몇 초 만에 전 세계로 전파될 수 있고, 때로는 온라인상에 계속 남아있다(*Delfi AS v. Estonia* [GC], § 110). 이는 인터넷상의 콘텐츠와 통신이 자유와 권리의 행사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피해가 인쇄매체보다 확실히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온라인 게시물의 잠재적 영향력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게시물이 대중들에게 도달하는 범위에 대한 판단이 필수적이다(*Savva Terentyev v. Russia*, § 79; *Delfi AS v. Estonia* [GC], § 133).
530. 담론의 내용과 그 담론이 정당한 목적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재판소의 판례에서 담론의 종류를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이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 종류들과 각각의 종류별로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 그 종류를 나누어 설명한다.

a. 분리주의 담론과 불법 단체의 간행물

531. 일반적으로, 재판소는 민주주의 자체에 위해(危害)를 가하지 않는 한, 국가의 현행 제도에 의문을 제기하는 다양한 정치 프로그램을 제기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이라는 견해이다(*Socialist Party and Others v. Turkey*, § 47).
532. 재판소는 제한의 비례성을 심사할 때, 소위 평화적 또는 민주적 분리주의 담론과 폭력을 영구화하는 행위나 범죄의 실행과 연계된 분리주의 담론을 구분한다. 재판소는 프랑스의 바스크(*Basque*) 분리주의 운동의 정치 지도자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조치가 비례적이었다고 판결했다. 청구인에 대해 가석방 기간 동안 그가 유죄판결 받은 범죄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언하거나 저작물을 유포하는 것을 금지한 조치는, 그 특정 범죄를 언급하지만 않으면 청구인은 여전히 바스크 문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표명할 권리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비례성 요건은 충족되었다는 것이다(*Bidart v. France*, § 42).
533. 재판소는 특히 특정 지역에 대한 분리주의 주장이 무력충돌을 유발하는 경우, 분리주의 담론이 제기된 배경을 고려한다. 따라서, 국가안보와 공공의 안전이라는 개념이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판소는 체첸 공화국에서의 분쟁과 관련된 사안이 매우 민감한 성격의 사안이기 때문에 당국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결했다(*Stomakhin v. Russia*, §§ 85-86; *Dmitriyevskiy v. Russia*, § 87).

534. 재판소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분리주의 담론(특히 구호의 형태로)이 국가안보와 공공의 질서에 영향을 미쳐야 하고 이러한 정당한 목적과 관련하여 명백하고 급박한 위험을 제기해야 한다고 판결했다(*Gül and Others v. Turkey*, § 42; *Kılıç and Eren v. Turkey*, §§ 29-30; *Bülent Kaya v. Turkey*, § 42).
535. 한 지역 신문사의 편집인이 중범죄혐의로 징역수배된 분리주의 운동 지도자들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사를 게재한 죄목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에서, 재판소는 추정된 저자들의 활동 이력만을 유일한 근거로 유죄판결이 내려진 것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Dmitriyevskiy v. Russia*, §§ 104 and 114; 또한 유사한 취지의 판결에 관해서는 *Ceylan v. Turkey* [GC], § 36; *Sürek and Özdemir v. Turkey* [GC], § 61; *Erdoğan and İnce v. Turkey* [GC], §§ 52 및 55; *Faruk Temel v. Turkey*, §§ 62 및 64; *Polat v. Turkey* [GC], § 47 참조).
536. 금지 단체로 지정된 테러조직의 발언을 기사화하는 것이 공개적으로 테러범죄를 선동하거나 테러를 정당화할 위험이 있는지에 대해 심사할 때는, 그 기사의 작성자와 메시지의 상대방의 특성뿐 아니라 기사의 내용과 배경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기관이 상충하는 이익들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고자 할 경우, 분쟁상황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들에 대해, 그것이 국가기관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받아들이기 어려운 견해라 하더라도, 분쟁 당사자의 관점에서 일반 대중이 알 권리가 있음을 충분히 유념해야 한다(*Gözel and Özer v. Turkey*, § 56).
537. 따라서, 재판소는 국내법상 "테러조직"으로 분류된 단체의 성명 또는 소책자를 출판한 정기간행물의 소유주, 발행인 또는 편집인에 대해 내려진 유죄판결과 관련하여 터키를 상대로 제기된 수많은 사건에서 협약 제10조 위반 판결을 내렸다(*Gözel and Özer v. Turkey*; *Karakoyun and Turan v. Turkey*; *Çapan v. Turkey*; *İmza v. Turkey*; *Kanat and Bozan v. Turkey*; *Demirel and Ateş v. Turkey*; *Özer v. Turkey (no. 3)*). 재판소의 견해에 따르면, 이러한 제한 조치는 관련 언론 종사자들을 일정 부분 검열하는 효과가 있었고, 이들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테러범죄의 실행을 옹호하지 않았다면, 공적인 토론의 일부로서 의견을 공개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었다(특히, *Ali Gürbüz v. Turkey*, § 77, *Özgür Gündem v. Turkey*, §§ 62-64 및 *Yıldız and Taş v. Turkey judgments (no. 1, no. 2, no. 3 and no. 4)* 참조; 사망한 테러 조직원들의 장례식에 참석한 사실을 유일한 근거로 하여 테러조직을 옹호하는 선전을 유포한 혐의로 개인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린 사건에 관해서는 *Nejdet Atalay v. Turkey*, §§ 20-23 참조).
538. 반면, 스위스 세관 당국이 쿠르드노동자당(Kurdish Workers' Party)으로부터 대량의 선전물을 압수하여 파괴한 것과 관련된 사건에서, 재판소는 압수 자료가 폭력을 옹호하고 미화했으며 가능한 많은 사람을 터키 국가기관에 대항한 무장투쟁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고 판결하면서, 세관 당국의 활동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목적을 추구했다고 결론지었다(*Kaptan v. Switzerland (dec.)*).
539. 테러조직 홍보 프로그램을 방송한 텔레비전 방송사에 대해 유죄판결이 내려진 사건에서, 재판소는 청구인 방송사가 제기한 청구에 대해 제17조 규정을 근거로 제10조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재판소는 방송 프로그램의 내용,

방식과 관련성을 검토하였고, 다음과 같은 사항들, 즉 투쟁에 참여하고 행동에 나설 것을 반복적으로 선동하고, 조직 또는 무장투쟁에 동참할 것을 선동하면서, 사망한 조직원을 영웅으로 묘사하는 등 사건을 일방적으로 보도한 것을 고려하였다. 재판소는 당시 청구인 방송사가 해당 테러조직으로부터 상당한 자금을 지원받은 사실을 법원이 확인했다는 것도 지적했다(*Roj TV A/S v. Denmark* (dec.)).

b. 범죄나 테러행위의 미화 및 묵인

540. 테러리즘을 옹호하는 담론에 대한 제한이 정당했는지 심사하는 경우, 재판소는 문제된 진술의 내용과 해당 진술이 이루어진 맥락(*Erdoğdu and İnce v. Turkey* [GC], § 47) 및 문제의 진술을 발언한 사람의 성격과 역할(*Demirel and Ateş v. Turkey*, § 37)을 포함하여 사건의 전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제한의 정당성을 검토한다.
541. 주간 평론지 소유주에 대해 내려진 유죄판결과 관련된 사건에서, 재판소는 기사의 내용이 해당 지역에서 더 많은 폭력을 선동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소는 해당 기사가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하고 가해자에 맞서기 위해 필요한 정당방어 수단이라는 인상을 독자에게 심어줄 수 있다고 판단했으며, 이 사건에서는 폭력 선동이 핵심 쟁점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청구인이 뉴스 논평에 담긴 견해와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었지만, 청구인은 뉴스 작성자에게 폭력을 조장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 것이었다(*Leroy v. France*, §§ 45-46).
542. 또 다른 사건에서는 만화가인 청구인이 2001년 9월 11일 세계무역센터 트윈 타워에 대한 공격 발생 이틀 후에 출판한 캐리커처로 인해 테러의 묵인을 공모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재판소는 세계무역센터 공격 소식에 전 세계가 여전히 충격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문제된 문구가 작성된 시간적 측면과 어휘의 선택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다. 재판부는 또한 해당 캐리커처의 출판이 폭력을 선동할 수도 있었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하면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지역에서 출판됨으로써 그 지역의 공공 질서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재판소는 청구인에 대한 비교적 가벼운 제재가 적절하고 충분한 근거에 따라 내려진 것이라고 판결했다(*Leroy v. France*, §§ 45-46).
543. 전쟁범죄로부터 일반 대중을 보호하는 사안의 경우, 재판소는 해당 발언이 공익에 관한 토론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한다. 프랑스군에 소속되어 있는 저자가 알제리 전쟁 당시 자행된 고문을 묘사한 저서를 출판한 것과 관련된 사건에서, 재판소는 문제된 저서의 본문이 과거 알제리 전쟁에서 고문이 자행된 사실이 있었음을 프랑스 정부 기관의 동의 하에 대중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집단기억의 관점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판결했다(*Orban and Others v. France*, § 49).
544. 재판소는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려는 노력이 표현의 자유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전쟁범죄나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의 원인에 대한 토론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Dmitriyevskiy v. Russia*, § 106).

c. 무질서 및 범죄 방지를 근거로 제한되는 기타 유형의 발언

545. 제10조제2항에 명시되어 있는 정당한 목적 중 하나인 무질서 방지는 회원국이 병역 거부 또는 비무장화 옹호와 관련된 사건에서 특히 자주 언급된다(*Arrowsmith v. the United Kingdom*, 위원회 보고서; *Chorherr v. Austria*, § 32). 재판소는 *Ergin v. Turkey (no. 6)* 사건에서 불쾌감을 주는 문제의 기사에 사용된 표현이 비록 병역에 적대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해당 표현이 폭력행사를 촉구하거나 무장저항이나 반란을 선동하거나 혐오표현에 해당하지 않는 한, 무질서 방지라는 정당한 목적을 내세워 해당 제한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재판소는 불쾌감을 주는 기사가 일반 대중에게 판매되는 신문에 실린 것을 지적하면서, 기사의 형식이나 내용을 고려할 때, 그 기사가 즉각적인 병역 거부를 유발하려는 의도로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34).
546. 자발적인 임신중절의 비범죄화 캠페인을 위해 정보를 전파하고 회의를 열고자 하는 청구인 단체가 포르투갈에 입국하고자 하였으나 포르투갈 형법에 따라 영해의 진입이 거부되었던 사건에서, 재판소는 그 금지가 무엇보다 무질서 방지라는 정당한 목적을 추구한다는 점을 인정했다(*Women On Waves and Others v. Portugal*, § 35). 하지만, 재판소는 극단적인 진입금지조치가 청구인 단체뿐 아니라 기존 질서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상과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다른 당사자들에게도 틀림없이 억제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547. 마찬가지로, 재판소는 게시자의 부도덕한 행위와 인터넷의 종교개종 사이트 홍보를 이유로 포스터 홍보 활동을 금지한 조치가 여러 정당한 목적 중에서도 특히 범죄 방지를 추구한 사실을 인정했다(*Mouvement raëlien suisse v. Switzerland [GC]*, § 54). 재판소는 라엘리안 운동의 인간복제 촉진, "지능에 따른 정치(geniocarcy)" 옹호, 관련 문헌과 사상이 일부 추종자에 의한 아동 성학대를 초래할 가능성 등을 포함하여 판결의 구체적인 이유들을 제시한 스위스 법원의 사법심사의 실효성에 대해 아무런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였다.
548. 위험적인 상징(나치 상징)이 표시된 블로그 게시물과 관련된 사건에서, 재판소는 역사적 맥락을 고려할 때, 나치의 참상을 겪은 국가들이 과거 자행된 대규모 잔혹행위를 엄중하게 처리해야 할 특별한 도덕적 책임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나치 상징에 익숙해지는 것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 모든 통신 수단에서 나치 상징의 사용을 금지한 조치가 무질서 방지라는 정당한 목적을 추구했다고 판결했다(*Nix v. Germany (dec.)*).
549. 최근 대선이 부정선거였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한 고위 외교관에 대해 해임 결정이 내려진 사건에서, 재판소는 그 제한이 국가안보와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고 무질서 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재판소는 외교관이 충실의무를 진다는 점과 피청구국이 자국 외교관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Karapetyan and Others v. Armenia*, §§ 49- 50).
550. 언론 활동을 이유로 형벌조항을 위반한 언론인에 대해 제재가 부과된 사건에서도 무질서 또는 범죄 방지라는 정당한 목적이 해당 제재의 근거로 언급되었다.

3. 제재의 심각성

551. 민주적 제도에서, 정부가 우월한 지위를 점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정부는 특히 반대 세력의 부당한 공격과 비판에 대응할 다른 수단이 있는 경우 형사소송을 통해 대응하지 않도록 자제해야 한다. 그렇지만, 관할 국가기관은 공공의 질서를 보호하는 보장자의 자격으로 이러한 발언에 대해 형벌적 성격의 조치를 포함해 적절하고 과도하지 않은 조치를 채택할 재량이 있다(*Incal v. Turkey*, § 54; 이와 관련해 형사 제재가 부과된 사례로는 *Arslan v. Turkey* [GC], §§ 49-50; *Stomakhin v. Russia*, §§ 128 및 132 참조).
552. 한 사건에서, 재판소는 무엇보다도 청구인이 선고된 형량 가운데 일부 기간만 복역했기 때문에 그 형량이 추구된 정당한 목적에 비례적이었다고 판결했다(*Zana v. Turkey*, § 61).
553. 재판소는 문제의 정보가 이미 공개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정보공개를 금지한 조치가 비례적이지 않았다고 판결했다(*Vereniging Weekblad Bluf! v. the Netherlands*, §§ 44-46).
554. 특히 언론의 자유와 관련된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가벼운 처벌이 내려졌다는 사실 아니라 유죄판결이 내려졌다는 사실인데, 이는 이러한 유죄판결로 인해 공동체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한 공적 토론에 기여하려는 언론인들의 활동이 억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Dammann v. Switzerland*, § 57). 이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특히 청구인이 유사한 전과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했으며, 만약 청구인이 과거 유사한 전과가 있었다면 가혹한 형량이 더 설득력을 지녔을 것이라고 언급했다(*Stomakhin v. Russia*, § 130).
555. 언론인의 구금과 관련된 사건에서, 재판소는 중대한 혐의가 제기된 경우에도 공판전 구금은 다른 모든 조치가 적절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완전히 보장할 수 없음이 입증된 경우에 한해 최후수단을 강구하는 예외적인 조치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소는 비판적 견해를 표명하는 모든 사람이 재판도 받기 전에 구금될 경우, 구금된 사람 자신과 사회 전반에 걸쳐 여러가지 나쁜 영향을 미치며, 시민사회를 위협하고 반대 목소리를 잠재워 표현의 자유에 위축효과를 유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Şahin Alpay v. Turkey*, §§ 181-182).
556. 그 밖에도, 재판소는 제한의 비례성을 심사할 때 문제된 논의를 제기한 자에 대한 유죄판결이 내려지기까지의 형사소송 기간을 고려할 수 있다(*Gül and Others v. Turkey*, § 43).

XII. 표현의 자유와 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557. 회원국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때 흔히 보건이나 도덕의 보호를 정당한 목적으로 제시하며, 이 경우 보건과 도덕 모두를 정당한 목적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Mouvement raëlien suisse v. Switzerland* [GC], § 54; *Bayev and Others v. Russia*, § 45). 뿐만 아니라, 도덕이나 보건의 보호는 때때로 다른 정당한 목적, 특히 타인의 권리(*Müller and Others v. Switzerland*, § 30; *Aydın Tatlav v. Turkey*, § 20; *Sekmadienis Ltd. v. Lithuania*, § 69), 범죄 방지(*Open Door and Dublin Well Woman v. Ireland*, § 61; *Mouvement raëlien suisse v. Switzerland* [GC], § 54) 또는 무질서 방지(*Akdaş v. Turkey*, § 23)와 함께 제시되기도 한다.
558. 이 장에서는 국내 절차나 재판소의 심판절차에서 보건이나 도덕의 보호가 보충적으로라도 고려되었다면, "타인의 권리 보호"가 가장 중요한 정당한 목적으로 고려되었던 사건들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Vejdeland and Others v. Sweden*, § 49; *Mamère v. France*, § 18; *Hertel v. Switzerland*, § 42).
559. 재판소는 피청구국이 제한의 근거로 제시한 목적의 정당성을 판단할 권한이 있다. 따라서 재판소는 미성년자 동성애를 금지한 법령에 관한 사건에서, 오명과 편견을 악화하고 동성애 혐오를 조장하는 문제의 법령은 협약 제10조제2항에 따라 보장된 어떠한 목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Bayev and Others v. Russia*, § 83). 피청구국은 동성간 관계에 관한 정보의 제한이 인구 목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소는 그 제한은 공중보건의 보호라는 목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았다(*ibid.*, § 73).
560. 이러한 정당한 목적의 추구와 관련하여 제한을 허용하는 국내법 조항은 매우 다양하다. 문제된 이익은 특히 묘비의 신성모독(*Sinkova v. Ukraine*, § 44) 음란물 공표(*Perrin v. the United Kingdom* (dec.); *Akdaş v. Turkey*, § 19) 또는 공공장소의 포스터 관리(*Mouvement raëlien suisse v. Switzerland* [GC], § 25) 등과 같은 민형사 법령에 의해 보호된다.

A. 일반원칙

1. 보건의 보호

561. 보건 보호라는 정당한 목적은 특히 공중보건(특히, 담배광고의 제한에 관한 *Société de conception de presse et d'édition and Ponson v. France*, § 53), 생명윤리(인간 복제와 양심의 주입을 주장하는 담론에 관한 *Mouvement raëlien suisse v. Switzerland* [GC], § 54), 검증되지 않은 의료 정보에 노출되지 않을 환자의 권리(*Vérités Santé Pratique SARL v. France* (dec.) 및 약물 사용을 조장하는 담론(*Palusinski v. Poland* (dec.))을 비롯한 여러 유형의 사건에서 제한의 근거로 제시된 바 있다.
562. 재판소는 문제의 발언이 보건 보호 문제에 관한 의견인 경우, 표현의 자유가 높은 수준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러한 사건에서, 재판소는 보건 보호에 관한

발언을 공익에 영향을 미치는 토론에 대한 참여로 규정하며(*Hertel v. Switzerland*, § 47), 따라서 문제의 조치가 추구된 목적에 비례하는지 주의깊게 심사한다.

563. 재판소는 환경 재해와 관련해 국가기관으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받지 못한 사실을 비판한 발언이 극히 중요한 공적 토론 과정에서 제기된 것으로 본다(*Mamère v. France*, § 20; 또한 전자레인지로 조리한 식품 섭취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 논문과 관련된 사건에 관해서는 *Hertel v. Switzerland*, § 47 참조). 재판소는 문제된 조치의 "필요성"을 규명하는 문제에서는 국가기관이 행사할 수 있는 판단재량이 특히 제한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564. 재판소는 공익에 관한 토론과 관련된 쟁점을 심리할 때, 표명된 의견이 소수 의견이고 큰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를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사상에만 한정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는 견해이다(*Hertel v. Switzerland*, § 50). 그렇지만, 재판소는 어떠한 확실성도 존재하기 어려운 영역에서는 불쾌감을 주거나 충격적이고 불안감을 주는 정보의 유포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정보는 미묘한 의미 차이에도 주의하는 방식에 의해서만 유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Vérités Santé Pratique SARL v. France* (dec.)).
565. 재판소는 공중보건 보호에 대한 제한의 비례성을 심사할 때 유럽 차원의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중요한 요소로 고려한다. 실제로, 재판소는 담배광고를 엄격히 규제할 필요성에 대한 유럽 차원의 합의가 존재한다고 인정한 후, 프랑스와 유럽연합에서 제정된 법령이 근거하고 있는 공중보건에 대한 근본적인 고려가 경제적 필요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표현의 자유와 같은 특정한 기본권보다 더 우선할 수 있다고 보았다(*Société de conception de presse et d'édition and Ponson v. France*, § 56).

2. 도덕의 보호

566. 재판소 판례에서 도덕의 보호는 다음과 같은 유형의 표현의 제한을 정당화하는 목적으로 제시되었다.
- 예술 공연을 포함한 정치적인 표현(*Sinkova v. Ukraine*, § 107; *Mariya Alekhina and Others v. Russia*, § 203)
 - 문학(*Akdaş v. Turkey*, § 30)
 - 철학적 또는 종교적 표현(*J.A. v. Turkey*, § 20; *Aydın Tatlav v. Turkey*, § 25)
 - 교육(*Handyside v. the United Kingdom*)
 - 또는 상업 등기와 유사한 것(*Mouvement raëlien suisse v. Switzerland* [GC], § 62)
567. 일반적으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정당한 목적으로 도덕의 보호라는 목적이 제시된 사건에서 재판소는 국가기관이 폭넓은 판단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Mouvement raëlien suisse v. Switzerland* [GC], § 76). 그렇지만, 이러한 판단재량의 폭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문제된 발언의 유형이 특히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된다(*ibid.*, § 61). 재판소는 정치적 발언의 경우 협약에 따라 제한될 여지가 거의 없다고 보지만(*Ceylan v. Turkey* [GC], § 34), 회원국은 상업적 문제와 광고관련 문제에 관한 발언(*Sekmadienis Ltd. v. Lithuania*, § 73; *markt intern Verlag GmbH and Klaus Beermann v. Germany*, § 33), 도덕의 영역 또는 특히 종교 영역에서의 내밀하고 개인적인 신념을 침해하기 쉬운 문제(*Sekmadienis Ltd. v. Lithuania*, § 73; *Murphy v. Ireland*, § 67)에 대해서는 폭넓은 판단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각국 법원이 폭넓은 판단재량을 행사하는 "성도덕"에 관한 사안에서도 마찬가지이다(*Müller and Others v. Switzerland*, § 36).

568. 재판소는 여러 회원국들의 국내법에서 유럽 차원의 통일적인 도덕 관념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도덕 요건에 대해 각 국내법이 채택한 견해는 시대와 장소마다 다르며, 대개 한 국가 내에서도 다양한 문화적, 종교적, 시민적, 철학적 공동체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Kaos GL v. Turkey*, § 49). 그 결과, 각 국가의 역동적인 세력들과 직접적이고 지속적으로 접촉한다는 점에서 국가기관은 도덕의 정확한 내용뿐 아니라 그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제한" 또는 "제재"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에 국제기구의 재판관보다 원칙적으로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 재판소의 견해이다(*Handyside v. the United Kingdom*, § 48, *Otto-Preminger-Institut v. Austria*, § 56).
569.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소는 도덕의 보호와 관련한 국가의 판단재량은 제한이 없고 심사할 수 없다는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Open Door and Dublin Well Woman v. Ireland*, § 68). 다시 말해, 재판소는 도덕의 보호와 관련하여 회원국이 일정한 판단재량을 누리지만 이러한 재량이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이다(예를 들어, *Norris v. Ireland*, § 45 참조). 따라서, 민주사회에서 국가기관의 제한 조치가 필요한 것인지 심사할 때, 재판소는 판례를 통해 확립된 전통적인 원칙에 따라 제한에 대한 강력한 사회적 필요가 존재하는지, 제한이 추구된 정당한 목적에 비례하는지, 그리고 국가기관이 제한을 정당화하기 위해 제시한 이유가 적절하고 충분한지 판단해야 한다(*Open Door and Dublin Well Woman v. Ireland*, § 70).
570. 각 회원국의 고유한 상황에 따라 도덕의 보호를 위한 정당한 목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종교적 신념을 보호할 필요성이 발생할 수 있다(*Sekmadienis Ltd. v. Lithuania*, § 69). 이 점에 있어, 재판소는 종교적 신념에 대한 공격과 관련하여 타인의 권리에 대한 보호 요건에 대해 유럽 차원의 통일적인 관념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회원국이 도덕이나 종교의 영역에서 내밀한 개인적 신념을 침해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표현의 자유를 규율할 때 더 폭넓은 판단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Aydin Tatlav v. Turkey*, § 24).
571. 이와는 반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판단재량을 인정하더라도, 즉 유럽평의회 회원국들의 문화적, 역사적, 종교적 특수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유럽의 문학 유산에 속하는 작품을 대중이 특정 언어로 접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도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재판소의 견해이다(*Akdaş v. Turkey*, § 30). 이 사건은 상관계 장면과 가학피학증, 흡혈귀, 소아성애증 등 다양한 행위를 생생하게 묘사한 소설에 대해 그 발행인의 유죄판결과 그 소설의 모든 발행본의 압수 및 폐기에 관한 사건인데, 재판소는 이러한 영역에서 국가가 일정한 판단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 프랑스에서 책이 처음 출판된 후 1세기 이상이 지났다는 사실, 많은 국가에서 여러 언어로 출판되었다는 사실, 터키에서 압수되기 전 약 10년 동안 권위 있는 "플래야드(*La Pléiade*)" 시리즈로 발간됨으로써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 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Akdaş v. Turkey*, §§ 28- 29).

572. 마지막으로, 재판소는 "조건(conditions)", "제한(restrictions)", "방지(prevent, prevention)"와 같은 협약상의 문언에서 명확히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제10조가 의견 표명이나 서면 진술의 공개에 대한 모든 사전 제한을 금지하지는 않는다고 본다. 그렇지만, 뉴스는 수명이 짧은 상품이고 비록 짧은 기간이라도 공표가 지연될 경우 뉴스의 가치와 흥미가 모두 사라질 수 있으므로(*Ahmet Yildirim v. Turkey*, § 47), 재판소는 사전 제한에 내재된 위협에 대해서는 가장 주의깊게 심사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Kaos GL v. Turkey*, § 50).

B. 제한의 정당성에 관한 심사 기준

1. 발언의 성격, 내용 및 잠재적 영향력

a. 발언의 성격과 내용

573. 문제의 진술이 공익에 관한 토론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비례성 심사에서 가장 먼저 적용하는 기준으로, 이는 추구된 정당한 목적과 무관하다. 일반적으로, 진술이 공익에 관한 토론에 기여하는 경우, 국가가 행사할 수 있는 판단재량이 줄어든다. 재판소의 견해에 따르면, 진술이 부도덕한 내용인지 판단할 때 대다수 대중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Alekseyev v. Russia*, § 81).

574. 종교에 관한 진술과 관련하여, 재판소는 해당 발언이 모욕적인 어조로 종교 신자를 직접 겨냥했는지, 혹은 성스러운 상징에 대한 공격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이다. 따라서 자신의 신앙을 표명할 자유를 행사하기로 선택한 개인은 어떠한 비판도 받지 않아야 한다고 기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으며, 자신의 신앙을 다른 사람들이 부인하거나 나아가 자신의 신앙에 적대적인 교리를 전파하는 행위까지도 용인하고 받아들여야 한다(*Otto-Preminger-Institut v. Austria*, § 47).

575. 재판소는 협약 제10조제2항에 언급된 의무와 책임 중에서 종교적 신념과 관련하여, 종교적 신념을 가진 사람에게 제9조가 보호하는 권리의 평화적 향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요건을 언급하는데, 여기에는 숭배 대상에 대해 근거 없는 모욕적 표현이나 신성모독적인 표현은 가능한 한 자제해야 할 의무도 포함된다고 한다(*Sekmadienis Ltd. v. Lithuania*, § 74; *Giniewski v. France*, § 43; *Murphy v. Ireland*, § 65).

종교적 숭배 대상에 대한 부적절한 공격을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국가가 판단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타당성을 인정될 수 있다고 재판소는 판결했다(*I.A. v. Turkey*, § 24). 재판소는 종교적 숭배의 대상에 대해 신자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는 도발적인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은 민주사회의 기초 중 하나인 관용 정신을 악의적으로 위반한 것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E.S. v. Austria*, § 53). 예를 들어 재판소는 이슬람교의 예언자를 소아성애자라고 비난한 사람에 대해, 모욕적인 언어적 공격이 편견을 조장하고 종교적 평화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이 선고된 사건에서 협약 제10조가 위반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ibid.*, §§ 57-58).

576. 이와 반대로, 청구인이 책에서 "정치사회 분야에서의 종교에 대한 비신앙인의 비판적 관점"에 의해 진술한 내용을 검토했을 때, 재판소는 이슬람 교도들이 그 책을 읽었을 때 신랄한 논평 때문에 기분이 상할 수는 있더라도, 그 논평이 특히 이슬람 교도들을 직접 겨냥한 모욕적인 어조로 느껴진다거나 성스러운 상징에 대한 모욕적인 공격으로 여겨지지 않는다고 보았다. 재판소는 이 사건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비례적이지 않았다고 판결했다(*Aydin Tatlav v. Turkey*, §§ 26-31; 개종 담론의 사례로는 *Kutlular v. Turkey*, § 48 참조).

577. 종교인을 묘사한 의류광고를 한 기업에 벌금이 부과된 사건에서, 재판소는 해당 광고가 불필요하게 모욕적, 신성모독적이라거나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증오를 선동한다거나, 또는 부당하거나 과도한 방식으로 종교를 공격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Sekmadienis Ltd. v. Lithuania*, § 77).

578. 재판소는 또한 도덕이나 공중보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서, 저자가 선택할 수 있었던 다른 표현방식들과 그 저자가 선택한 표현방식에 대해 검토했다. 이 원칙은 청구인이 도덕이나 공중보건의 보호에 나쁜 영향을 덜 미치는 대안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사례로는, 특정한 표현방식이 형벌조항에 위반되고 전투에서 사망한 군인에 대한 추모를 모욕한 경우이다(*Sinkova v. Ukraine*, § 110).

579. 마지막으로, 한창 토론 중에 나온 진술이라 하더라도, (마호메트가 소아성애자였다는 취지의) 범죄자로 몰아세우는 주장을 허용되는 의견표명의 외관으로 포장하고, 이로써 표현의 자유에서 허용되는 한계를 넘은 진술을 통용될 수 있는 진술로 추론하는 것은 협약의 제10조와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 재판소의 견해이다(*E.S. v. Austria*, § 55).

b. 발언의 영향력: 전파 수단과 대상

580. 도덕이나 공중보건 보호라는 목적을 추구하는 제한이 정당한 조치인지 심사하는 경우, 문제된 텍스트에 접하는 사람들의 취약성의 정도는 그 텍스트가 사회에 미칠 영향을 측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Handyside v. the United Kingdom* 사건에서 문제가 되었던 책은 특히 12세에서 18세 사이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재였다. 재판소는 영국에서의 윤리관이나 도덕관이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더라도, 권한 있는 영국의 법관들은 재량의 행사를 통해 그 교재가 당시 그것을 읽은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도덕성에 해로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판단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판결했다(§ 52).

581. 마찬가지로, 청구인들이 일반 고등학교의 학교 사물함에 동성애 혐오 전단을 놓아둔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에서, 재판소는 청구인들의 목적(스웨덴 학교 교육의 객관성 결여에 관한 토론 활성화)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전단 문구에 신중을 기해야 했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의 전단은 동성애를 사회에 "도덕적으로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고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와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의 확산을 유발하는 "일탈적인 성적 성향"이라고 표현했다. 재판소는 특히 학생들의 나이가 쉽게 외부의 영향에 휘둘리는 예민한 연령대였다고 언급했다(*Vejdeland and Others v. Sweden*, § 56).
582. 이는 진술을 자유롭게 접할 수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즉, 취약집단을 구체적으로 겨냥하지는 않았지만, 해당 진술을 찾아볼 수 있는 일반 대중의 모든 계층에 적합하지는 않은 경우이다(*Kaos GL v. Turkey*, §§ 61 및 63). 그러므로, 재판소는 특히 두 남성 간의 성관계를 묘사한 그림이 수록된 잡지가 일반 대중의 모든 계층에 적합하지는 않으며, 비전문화된 계층의 감정을 상하게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ibid.*, §§ 59-60). 이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그 잡지의 모든 발행본을 압수한 조치는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 18세 미만에 판매를 금지하거나 미성년자에 대한 경고문을 담아 특별히 포장된 형태로 판매하거나 신문 판매대 진열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명시했다(*ibid.*, §§ 61 및 63; 또한, 특히 인간과 동물 간의 성관계를 표현한 미술품의 전시와 관련하여 비슷한 접근법을 채택한 사건에 관해서는 *Müller and Others v. Switzerland*, § 36 참조).
583. 이러한 결정 논리는 보건의 보호와 관련된 사안에도 적용할 수 있다. 재판소는 잡지의 기본 독자층이 더 쉽게 영향을 받는 청년층이라는 점에서 메시지가 청년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재판소는 한 사건에서 문제의 출판물이 특히 청년층의 담배소비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제한을 정당화하기에 적절하고 충분한 이유라고 판결했다(*Société de conception de presse et d'édition and Ponson v. France*, §§ 58-60).
584. 이와 반대로, 메시지가 공격적이거나 외설적이거나 특정한 성적 행동을 옹호하고 있지 않으며 해당 미성년자 계층이 다양성, 평등, 관용 사상에 노출되어 있는 한, 어린이와 같이 특히 취약한 독자층이 메시지를 접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국가의 제한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다(*Bayev and Others v. Russia*, § 82).

2. 양형 또는 조치의 심각성

585. 제한의 비례성은 문제된 진술을 제한하거나 금지한 범위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재판소는 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이 기본권을 제한하기로 한 경우 제한되는 권리를 최소한으로 침해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Women On Waves and Others v. Portugal*, § 41).
586. 재판소는 외국 낙태 시설에 대한 정보를 연령이나 건강 상태 또는 임신중절 상담을 요청하는 이유와 관계없이 계속해서 제한하는 조치는 너무 광범위하여 추구하는

목적과 비례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Open Door and Dublin Well Woman v. Ireland*, §§ 73-80).

587. 마찬가지로, 재판소는 국가기관이 적절한 대안을 택할 수 있었음에도 잡지의 모든 발행본을 압수한 조치가 비례적이지 않았다고 판결했다(*Kaos GL v. Turkey*, §§ 61 및 63; 또한 벌금형에 대해 비례성 요건을 충족했다는 판결에 관해서는 *E.S. v. Austria*, § 56 참조).
588. 재판소는 원칙적으로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인 표현 형식이 구금형으로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는 견해이다(*Murat Vural v. Turkey*, § 66). 정치적 발언과 관련하여, 선고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문제이지만, 정치적 발언에 대한 징역형은 예외적인 상황, 특히 혐오표현처럼 다른 기본권이 심각하게 훼손된 경우에만 협약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양립할 수 있을 것이다(*Otegi Mondragon v. Spain*, § 59). 이 원칙은 문제된 내용이 순전히 상업적인 것이고 공익 문제 관한 토론에 기여하고자 작성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Perrin v. the United Kingdom* (dec.)).
589. 전쟁기념관에서 시위를 벌인 것에 대한 유죄판결과 관련된 사건에서, 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음을 지적하면서, 징역형에 따라 실제로 복역한 기간이 얼마인지를 검토하였다(*Sinkova v. Ukraine*, § 111).
590. 이는 징역 2년형이 "경미한" 벌금으로 감형된 사건에도 똑같이 적용된다(*I.A. v. Turkey*, § 32).
591. 웹사이트의 무료 미리보기 페이지에 심각한 음란물을 게시한 것에 대한 유죄판결과 관련된 사건에서, 재판소는 청구인이 3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15개월 후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재판소는 국가기관이 벌금형만 부과할 경우 처벌이나 억지력이 충분하지 않으리라 판단한 결정이 합리적이었다고 판결했다(*Perrin v. the United Kingdom* (dec.)).
592. 부과된 제재가 경미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중요한 것은 순전히 민사적 성격의 판결도 포함하여 관련 당사자에게 불리한 판결이 내려졌다는 사실 그 자체이다 (*Société de conception de presse et d'édition v. France*, § 49). 그 밖에도, 자유전문직(사안은 의사)에 종사한다는 점과 가능한 제재의 범위를 고려할 때, 재판소는 과징금의 부과를 가벼운 징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Stambuk v. Germany*, § 51).
593. 또한, 벌금형이나 손해배상금 지급 명령의 비례성을 평가할 때, 문제의 발언을 한 당사자의 개별 상황, 특히 해당 금액을 납부할 능력이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 문제된 간행물의 발행인에게 벌금형 및 손해배상금으로 "꽤 많은" 금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사건에서, 재판소는 해당 처벌의 심각성을 판단할 때, 발행 부수가 많은 잡지의 수입과 비교해야 한다고 판결했다(*Société de conception de presse et d'édition and Ponson v. France*, § 62).
594. 재판소는 제한이나 제재에 대한 정당성 역시 문제의 자료를 작성한 저자의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에 따라, 재판소는 단체 자체를 금지하거나 단체의 웹사이트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것일 수 있었지만, 제한의 범위를 단지 공공장소에서의 포스터 게시 금지로 한정하는 것은 청구인 단체의 권리에 대한 침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방법이었다고 보았다(*Mouvement raëlien suisse v. Switzerland* [GC], § 75).

XIII.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A.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인터넷의 특성

1. 인터넷의 혁신적 성격

595. 재판소는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사용자 제작의(user-generated) 표현활동이 표현의 자유 행사를 위한 전례없는 장을 제공한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Delfi AS v. Estonia* [GC], § 110; *Cengiz and Others v. Turkey*, § 52). 재판소는 또한 인터넷이 방대한 양의 정보를 저장하고 통신할 수 있는 능력과 접근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일반 대중이 뉴스를 접하고 전반적인 정보의 보급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Delfi AS v. Estonia* [GC], § 133; *Times Newspapers Ltd v. the United Kingdom (no. 1 및 no. 2)*, § 27).
596. 이에 따라, 재판소는 인터넷접속 차단이 제10조제1항에서 명시된 권리가 "국경에 관계없이" 보장된다고 규정한 협약 조항의 문언에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다고 본다(*Ahmet Yildirim v. Turkey*, § 67).
597. 그 밖에도, 재판소는 인터넷을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와 정보가 갈수록 늘고 있으며(*Jankovskis v. Lithuania*, § 49; *Kalda v. Estonia*, § 52), 전통적인 매체가 간과하는 정치적 내용이 흔히 인터넷(이 경우, 특히 유튜브)을 통해 공유되고, 따라서 시민 저널리즘의 출현을 촉진한다는 의견을 밝혔다(*Cengiz and Others v. Turkey*, § 52).
598. 협약 제10조의 물적 범위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전달되는 메시지 유형과 관계없이, 나아가 그 목적이 영리추구에 있는 경우에도 제10조는 인터넷상의 통신에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했다(*Ashby Donald and Others v. France*, § 34).
599. 특히, 재판소는 다음의 영역들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행사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인터넷 사이트가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인터넷 아카이브(기록보관소) 운영(*Times Newspapers Ltd v. the United Kingdom (no. 1 and no. 2)*, § 27; *M.L. and W.W. v. Germany*; *Węgrzynowski and Smolczewski v. Poland*)
 - 패션 전문 인터넷 사이트에 사진을 게시하고 무료 또는 유료로 패션쇼의 사진과 동영상 제공(*Ashby Donald and Others v. France*, § 34)
 - (국민투표에 반대하는) 정당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여 유권자들로 하여금 무효표가 되도록 기표한 투표용지 사진을 익명으로 게시하고 그러한 방식의 투표 이유에 대한 의견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 것(*Magyar Kétfarkú Kutya Párt v. Hungary* [GC], § 91)

-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특정 사이트의 이용, 특히 사용자가 동영상을 업로드, 시청, 공유할 수 있는 동영상 호스팅 웹사이트인 유튜브(*Cengiz and Others v. Turkey*, § 52)와 단체 내부에서 쉽게 웹사이트를 만들고 공유하도록 제공하는 서비스인 구글 사이트(*Ahmet Yildirim v. Turkey*, § 49)

600. 재판소는 전문적인 언론 활동에서의 인터넷의 역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행사에서 인터넷이 지닌 일반적인 중요성을 고려할 때, 언론인들이 처벌받을 것을 염려하지 않고 인터넷에서 입수한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국내법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을 경우 언론이 "공공 감시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심각히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재판소는 언론인의 자유에 대해 법적 보장을 적용하는 영역에서 인터넷정보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그 자체로 협약 제10조의 언론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제한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Editorial Board of Pravoye Delo and Shtekel v. Ukraine*, § 64; *Magyar Jeti Zrt v. Hungary*, § 60).

2. 인터넷과 다른 매체

601. 재판소는 인터넷의 혜택을 인정하면서도, 명예훼손 발언, 혐오표현, 폭력선동 발언을 비롯해 명백한 불법 표현이 과거와 달리 몇 초 만에 전 세계로 전파될 수 있으며, 때로는 온라인에서 계속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터넷이 혜택과 함께 여러 위험도 동반한다는 점 또한 인정했다(*Delfi AS v. Estonia* [GC], § 110; *Annen v. Germany*, § 67).

602.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재판소는 인터넷 사이트가 정보를 저장하고 전송할 수 있는 용량 면에서 인쇄매체와 확연히 구별되는 정보 및 통신 도구임을 인정했다. 재판소는 전 세계 수십억의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 네트워크에 동일한 규제와 통제가 적용될 수 없고 앞으로도 동일한 규제와 통제를 적용할 수 없으리라는 점을 인정했으며, 인쇄매체와 인터넷에서의 자료 복제를 규율하는 정책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했다. 인터넷에서의 자료 복제를 규율하는 규칙은 관련된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인터넷 기술의 특성에 따라 반드시 조정되어야 한다(*Editorial Board of Pravoye Delo and Shtekel v. Ukraine*, § 63).

603. 마찬가지로, 재판소는 인터넷과 소셜미디어가 강력한 의사소통 도구이지만,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사용에 내재하는 선택의 문제는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서 생성되는 정보가 방송정보와 같은 정도의 동시성이나 영향력을 갖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Animal Defenders International v. the United Kingdom* [GC], § 119), 인터넷 프로그램 방송에서의 전화 인터뷰가 시청자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은 텔레비전 프로그램보다 더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Schweizerische Radio- und Fernsehgesellschaft SRG v. Switzerland*, § 64).

B. 인터넷과 관련한 타인의 권리 보호

1. 총론

604. 인터넷상에서 표현의 자유 행사라는 측면에 관해, 재판소는 표현의 자유와 그 밖의 권리 및 의무 사이에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졌는지 심사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특히 사생활 존중권을 비롯한 인권의 향유와 자유의 행사에 대해 인터넷 콘텐츠와 통신이 제기하는 위험이 인쇄매체에 의해 제기되는 위험보다 분명히 크다고 판단한다(*Delfi AS v. Estonia* [GC], § 133; *Editorial Board of Pravoye Delo and Shtetel v. Ukraine*, § 63; *Węgrzynowski and Smolczewski v. Poland*, § 98).

그러므로 표현의 자유 행사와 관련하여 인터넷에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혜택을 인정하는 한편,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이나 기타의 불법적인 발언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묻고 인격권 침해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를 마련해야 한다(*Delfi AS v. Estonia* [GC], § 110).

605. 인터넷의 특성은 개인의 명예에 대한 공격이 제8조의 적용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심각성의 정도에 대한 심사에서 고려될 수 있다(*Arnarson v. Iceland*, § 37).

606. 인터넷의 증폭 효과(amplifying effect)의 영향력은 한 개인에 대해 반유대주의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서 매우 분명하게 나타난다. 한 단체의 웹사이트에 반유대주의 내용을 수록한 기사가 게시되었고, 그 단체는 문제의 기사를 삭제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재판소는 많은 사람들이 반유대주의 내용을 포함한 문제의 기사를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반유대주의 의혹의 잠재적 영향력이 적지 않았고, 그 영향력은 그것이 게시된 뉴스레터의 일반 독자층에 국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색엔진에 개인의 이름을 입력하기만 하면 문제의 기사를 접할 수 있었다. 따라서 청구인 단체 사이트에 게시된 기사는 관련 당사자의 명예와 권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Cicad v. Switzerland*, § 60).

607. 회원국이 행사할 수 있는 판단재량과 관련하여, 재판소는 명예훼손에 대한 유죄판결과 관련된 사건에서, 그 분쟁이 오직 사인 간의 분쟁이라는 점, 명예훼손이라고 주장된 진술이 반공개적인(semi-public) 방식, 즉 보안이 설정된 인터넷 포럼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회원국이 행사할 수 있는 판단재량의 폭이 더 넓다고 인정했다(*Wrona v. Poland* (dec.) [위원회], § 21; 또한, 변호사의 사생활 존중권과 사실 인터넷 포털에 그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게시한 개인의 표현의 자유 사이의 이익형량에 관해서는 *Kucharczyk v. Poland* (dec.) [위원회], § 21 참조).

608. 오프라인 출판물에 적용되는 일반원칙은 온라인으로도 적용된다. 다음과 같은 사건을 예로 들 수 있다.

- 재판소는 개인의 이름이나 인적사항과 같은 사적이고 개인적인 정보가 인터넷에 게시된 경우, 해당 정보의 비밀성이 사라지고 공공영역에 속하는 정보가 된다는 점에서 비밀 유지의 필요성이 더 이상 우선적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고 본다. 이 경우 가족생활과 명예에 대한 보호가 대두되고 보호되어야 한다(*Aleksey*

Ovchinnikov v. Russia, §§ 49-50).

- 재판소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단체의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내용이 시장을 공개적으로 모욕한 것에 대해 그 사이트의 웹마스터에게 신고한 유죄판결이 과도한 조치라고 보았는데, 재판소는 특히 문제된 의견이 그 단체의 대표기관의 의견 표명과 관련되었는데, 그 대의기관은 시의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과 같은 공익적 사안에 대한 회원들의 주장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을 지적했다(*Renaud v. France*, § 40).
 - 마찬가지로, 재판소는 한 NGO가 정치인의 발언을 "인종차별 발언"으로 묘사한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게 된 사건에서 협약 위반이 있었다고 판결했다(*GRA Stiftung gegen Rassismus und Antisemitismus v. Switzerland*).
 - 이와 반대로, 동물 보호와 환경 보호가 분명히 공익에 속하는 사안임에도, 재판소는 한 동물보호단체가 집약적인 목축 환경에서 사육되는 동물의 사진을 강제수용소 수용자 사진과 나란히 담은 포스터를 인터넷에 게시하지 못하도록 한 금지명령이 비례적인 조치였다고 판결했다(*PETA Deutschland v. Germany*).
 - 또한, 사용된 매체와 관계없이 인종차별과 증오를 선동하는 진술은 제10조제2항에서 제공하는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재판소는 외국인 혐오표현을 유포한 웹사이트 소유자이자 정치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이민자 공동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사회적 필요성과 부합한다고 판결했다(*Féret v. Belgium*, § 78;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웹사이트에서 차별 선동 발언을 반복해서 게시한 선출직 대표에 대해 유죄판결이 내려진 사건에 관해서는 *Willem v. France* 참조).
 - 마찬가지로, 정당한 사상의 대결을 넘어서는 인신공격성 온라인 게시물은 제10조제2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Tierbefreier e.V. v. Germany*, § 56).
609. *Tamiz v. the United Kingdom* (dec.) 사건에서, 정치인인 청구인은 구글 블로거 플랫폼에 게시된 내용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생각하고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구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국가 관할권 외부에서 명예훼손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실질적이고 상당한" 불법행위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재판소는 이 최소기준 심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실제로 수많은 인터넷 사용자가 매일 온라인 댓글을 달며, 이들 중 다수가 모욕적이거나 심지어 명예훼손으로 여겨질 수 있는 방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다고 명시했다. 재판소는 청구인이 제소한 대다수의 댓글이 모욕적인 내용인 것은 분명하나, 상당수 댓글은 "저속한 욕설"에 지나지 않으며 이러한 유형의 댓글은 수많은 인터넷 포털의 의사소통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 정치인인 청구인은 이를 감수할 것을 요구받는다고 한 영국 법원의 판단을 수용했다. 그 밖에도, 재판소는 더 구체적인 주장을 담은 댓글 가운데 다수는 해당 댓글이 작성된 상황을 고려할 때 추측에 불과하며 독자들은 이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81).

2. 취약계층 보호

610. 취약계층, 특히 어린 연령층에 대한 보호는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에 여러 영향을 미친다.
611. 이에 따라, 웹사이트 무료 미리보기 페이지에 음란물을 게시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청구인의 사건에서 재판소는 특히 문제의 자료가 국가기관이 보호하고자 하는 어린 연령층이 찾으려는 유형의 자료라며 청구를 각하했다(*Perrin v. the United Kingdom* (dec.)).
612. 또한, 성적인 내용에 관한 사건에서, 재판소는 폭력사건에 연루된 미성년자의 신원을 언론이 반복해서 보도한 것이 해당 미성년자의 도덕적·심리적 발달과 사생활을 저해한다고 보았다. 재판소는 이러한 이유로 비록 해당 미성년자의 개인정보가 이미 인터넷에 유포되어 공공영역에 속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부과한 조치가 정당했다고 판결했다(*Aleksey Ovchinnikov v. Russia*, §§ 51-52).
613. 비밀보호를 강화한 입법으로 인해, 인터넷에서 소아성애에 의한 위협에 직면한 상황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인 내용의 광고물을 게시한 자의 신원을 인터넷서비스 제공자로부터 확보하는 효과적인 수사가 불가능한 경우, 그러한 입법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 재판소의 견해이다. 따라서 재판소는 인터넷 데이트 사이트에 미성년자와 관련된 외설적인 광고를 게시하여 수배를 받고 있는 자의 신원을 인터넷서비스 제공자가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지 않은 것은 협약 제8조와 양립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청구인(광고의 피해 아동)에게 초래된 상황이 청구인의 신체적·정신적 안녕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협과 청구인의 어린 나이로 인한 취약성에 주목하면서(*K.U. v. Finland*, § 41), 인터넷의 성격, 정확히는 인터넷의 익명성 때문에 인터넷이 범죄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ibid.*, § 48).

3. 인터넷 뉴스 포털의 "의무와 책임"

614. 제3자 콘텐츠와 관련하여, 인터넷의 특성상 제10조에서 의미하는 인터넷뉴스포털의 "의무와 책임"은 전통적인 출판사와 어느 정도 다를 수 있지만(*Delfi AS v. Estonia* [GC], § 113; 또한 *Orlovskaya Iskra v. Russia*, § 109 참조), 대중이 정보와 사상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표현의 자유 행사의 포럼을 제공하는 것에 관해서는 언론에 적용되는 원칙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한다(*Magyar Tartalomszolgáltatók Egyesülete and Index.hu Zrt v. Hungary*, § 61).
615. 인터넷포털운영자가 제3자에 의해 게시된 댓글을 삭제할 의무가 있는지 판단할 때, 재판소는 이러한 댓글에 언급된 개인이나 기업의 명예에 대한 권리와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이루기 위한 네 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1. 댓글의 맥락과 내용
2. 댓글 작성자의 책임

3. 청구인이 취한 조치와 피해자의 행동

4. 피해자와 청구인에 대해 미친 영향

616. 재판소는 이 기준에 근거하여, 인터넷뉴스포털 사이트에 게시된 모욕적인 익명 댓글에 관하여, 그 댓글의 내용이 지나치고 혐오표현 또는 폭력의 선동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할 때, 그 뉴스포털 운영자에게 손해배상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은 협약 제10조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판결했다(*Delfi AS v. Estonia* [GC]).

617. 이와 반대로, 재판소는 해당 사용자 댓글에서 혐오표현이나 신체적 온전성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없었던 사실을 고려할 때, 제3자의 댓글에 대한 인터넷포털의 객관적 책임이 협약 제10조와 양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소는 특히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실효적인 절차와 함께 통지 및 삭제(notice-and-take-down) 시스템이 이 사건에서 문제된 부동산관리 웹사이트의 상업적 명성을 보호하는 적절한 수단으로 기능하였다고 판단했다(*Magyar Tartalomszolgáltatók Egyesülete and Index.hu Zrt v. Hungary*, § 91; 또한 콘텐츠의 불법성을 신고한 이후의 신속한 대응조치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Pihl v. Sweden*, § 32; *Tamiz v. the United Kingdom* (dec.), § 84; *Høiness v. Norway*, §§ 73-74 참조).

4. 하이퍼링크의 게시에 따른 책임

618. *Magyar Jeti Zrt v. Hungary* 사건에서 하이퍼링크가 포함된 인터뷰를 유튜브에 게시한 청구인 기업은 하이퍼링크를 포함시킨 것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았으며, 이후 인터뷰에 내용에서도 명예훼손 발언이 포함되었다는 판결을 받았다.

재판소는 대중이 뉴스와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증진하는 인터넷의 역할을 고려하여, 하이퍼링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엄청난 양의 정보를 인터넷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특징을 지닌 네트워크에서 사용자가 자료를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다른 페이지와 웹리소스로 연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이퍼링크는 정보를 서로 연결하여 사용자가 정보에 접근하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인터넷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한다 (*Magyar Jeti Zrt v. Hungary*, § 73).

619. 일종의 보도기법인 하이퍼링크는 일반적으로 인터넷상의 다른 위치에서 제공되는 콘텐츠에 사용자를 연결시켜 준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정보공개 행위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하이퍼링크는 사용자에게 해당 하이퍼링크가 연결시켜주는 진술을 제시하거나 그 내용을 전달하지 않으며, 단지 다른 웹사이트에 자료가 존재한다는 점을 알려주는 역할만을 한다(*Magyar Jeti Zrt v. Hungary*, § 74).

620. 정보의 전파행위와 비교했을 때, 하이퍼링크의 또 다른 특징은 하이퍼링크를 통해 정보를 언급하는 사람이 하이퍼링크를 통해 접속할 수 있는 웹사이트의 콘텐츠를 관리하지 않으며 이 콘텐츠가 링크 작성 후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 밖에도,

하이퍼링크로 연결되는 콘텐츠가 불법적인 것이라도 그 콘텐츠는 이미 최초 게시자가 그 웹사이트에서 게시해 놓은 것으로 일반 대중이 아무런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Magyar Jeti Zrt v. Hungary*, § 75).

621. 재판소는 하이퍼링크 게시가 명예훼손 발언의 전파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를 고려한다. 명예훼손 발언의 전파인 경우 법원은 각 사건을 개별적으로 심사한 후 적절하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하이퍼링크 작성자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관련 사건에서, 헝가리 법원이 청구인 기업에 대해 불리한 판결을 내리면서 검토하지 않은 몇 가지 관련 사항을 열거했는데, (i) 청구인이 문제된 콘텐츠의 내용을 지지했는지 여부, (ii) 청구인이 (지지하지 않은 채) 문제의 콘텐츠를 반복해서 제공했는지 여부, (iii) (지지하거나 반복하지 않은 채) 문제의 콘텐츠에 단순히 하이퍼링크를 포함한 것인지 여부, (iv) 문제의 콘텐츠가 명예훼손 내용이나 기타 불법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을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알 수 있었는지 여부, (v) 선의로 행동했고, 언론윤리를 지켰으며, 책임있는 저널리즘에 기대되는 사실 검증 작업을 수행했는지 여부를 제시했다 (*Magyar Jeti Zrt v. Hungary*, § 77).

622. *Magyar Jeti Zrt v. Hungary* 사건에서, 재판소는 국내법에 따라 하이퍼링크가 정보의 전파로 간주된다는 점과 하이퍼링크를 포함시키는 당사자에게 무과실 책임이 적용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재판소는 이러한 국내법 조항이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전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기사 작성자와 게시자는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고 제3자가 변경할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해 하이퍼링크를 다는 것을 꺼리도록 할 수 있으며, 결국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에 직간접적으로 위축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보았다(§§ 83-84).

5. "의무, 책임" 및 인터넷에서의 언론

623. 언론윤리를 지켜 신뢰성 있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언론이 인터넷에서 공표할 때 언론의 책임이 한층 더 높아진다는 원칙을 언급하면서, 전통 매체와 전자 매체를 통해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쏟아지고, 관련 행위자가 끊임없이 증가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언론윤리 준수에 대한 감시가 한층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했다(*Stoll v. Switzerland* [GC], § 104). 언론인의 "의무와 책임"을 고려할 때, 매체의 잠재적 영향력은 중요한 고려사항이며,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보도 방법은 무엇보다 매체가 무엇인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Delfi AS v. Estonia* [GC], § 134).

624. 마찬가지로, 쉽게 사라지는 정보가 아니라 역사적 정확성을 보장하는 책임있는 저널리즘 원칙에 따라 요구되는 언론의 의무는 해당 자료를 긴급히 공개할 필요가 없는 한 더 엄격해질 것이다(*Times Newspapers Ltd v. the United Kingdom (no. 1 and no. 2)*, § 45).

625. 따라서 재판소는 인쇄매체로 발행된 기사에 대해 신문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이 제기된 경우, 신문사의 인터넷 아카이브에 보관되어 있는 동일한 내용의 기사에 대해서도 그 기사의 게시에 관한 적절한 조건을 두도록 요구한 것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Times Newspapers Ltd v. the United Kingdom (no. 1 and no. 2)*, § 47).
626. 이와 반대로, 책임있는 저널리즘 원칙은 언론이 과거 법원의 최종판결에 따라 명예훼손 자료로 확인된 모든 출판물을 인터넷 아카이브에서 삭제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Węgrzynowski and Smolczewski v. Poland*, §§ 60-68, 신문사의 인터넷 아카이브에서 제8조에 따라 명예훼손으로 확인된 언론 기사를 보관하는 것의 적합성에 관한 사건; 또한 재판 및 유죄판결에 관한 온라인 자료를 익명으로 보관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해서는 *M.L. and W.W. v. Germany* 참조).
627. 마찬가지로, 인터넷 사이트의 편집자는 선거 후보자의 아동 성학대 의혹에 관한 기사를 게시하면서 그 기사가 의혹을 검증할 언론의 의무를 준수하여 작성된 것으로 확인했으므로 법적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Ólafsson v. Iceland*). 마지막으로, 언론인의 "의무와 책임"에는 보도의 대상이 된 사람이 해당 기사의 보도를 막기 위한 잠정적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보도 계획을 미리 통지할 의무가 포함되지 않는다(*Mosley v. the United Kingdom*, §§ 125-129).
628. 언론인의 표현의 자유 행사에 대한 의무와 책임에는 자신이 속한 신문사 웹사이트가 아닌 다른 웹사이트(특히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포럼) 등에 자신의 이름으로 인터넷에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이러한 취지의 판결에 관해서는 *Fatullayev v. Azerbaijan*, §§ 94-95 참조).

C. 인터넷 접속 차단

629. 재판소는 여러 사건에서 특정 인터넷 사이트 접속을 차단한 국가기관의 조치가 제10조와 양립할 수 있는지에 관해 판결을 내렸다. 청구인들은 무엇보다도 차단 조치의 부수적 효과에 대해 제소했다.
630. 재판소는 동영상 호스팅 사이트인 유튜브 차단과 관련해, 청구인들은 유튜브 접속 차단 결정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라 단순한 사용자였지만, 청구인들이 유튜브를 활발히 이용하는 사용자였고, 유튜브의 특성상 접근성과 무엇보다 잠재적인 영향력 측면에서 독특한 플랫폼이며, 청구인들이 유튜브 대신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웹사이트가 없었음을 고려할 때, 청구인들은 그 조치로 인해 정보나 사상을 주고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하였다(*Cengiz and Others v. Turkey*, §§ 52, 53, 55; 또한, 개인이 구글 서비스를 통해 호스팅되는 자신의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었던 사례에 관해서는 *Ahmet Yildirim v. Turkey*, §§ 49 및 55 참조).
631. 이와 반대로, 재판소는 청구인이 음악 공유 웹사이트 두 곳에 대한 차단 조치로 인해 문제된 웹사이트의 다른 터키인 사용자처럼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피해자" 지위를 주장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Akdeniz v. Turkey* (dec.), § 24).

632. 차단 조치의 정당성 여부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웹사이트 차단과 같은 사전 제한은 원칙적으로 협약과 양립할 수 없지만, 사전 제한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면 금지 범위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남용 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사법심사를 보장하는 법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수행되는 사법심사는 서로 충돌하는 관련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전 제한을 적용하는 문제에 관해 정확하고 구체적인 규칙을 수립한 법 절차가 없다면 이러한 사법심사를 적절히 수행할 수 없을 것이다(*Ahmet Yildirim v. Turkey*, § 64; 정보와 사상을 주고받을 자유와 관련하여 *Cengiz and Others v. Turkey*, § 62 참조; 또한 *OOO Flavus and Others v. Russia*, §§ 40-43 참조).
633. 특히 재판소는 관련된 여러 이익들에 대해 형량이 필요하다는 점과 특히 특정 사이트에 대한 모든 접속을 차단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심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고(*Ahmet Yildirim v. Turkey*, § 66), 국가기관이 무엇보다 해당 조치가 방대한 양의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한다는 점에서 인터넷 사용자의 권리를 크게 제한하고 심각한 부수적 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했어야 했다고 언급했다(*ibid.*; *Cengiz and Others v. Turkey*, §64).
634. 동일한 IP 주소를 가진 다른 사이트에 대한 차단 명령에 따라 한 인터넷 사이트가 자동으로 차단되었던 *Vladimir Kharitonov v. Russia* 사건에서, 재판소는 이 조치가 방대한 양의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부수적 효과를 미쳤고 따라서 인터넷 사용자의 권리를 크게 제한했다고 밝혔다. 재판소는 관할 기관이 결정 근거로 제시한 법 절차가 협약 제10조의 목적상 충분히 예측할 수 없었다고 판결했다(§§ 45-47).
635. *Kablis v. Russia* 사건에서, 재판소는 허가받지 않은 집회의 참여를 권유하는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사전 제한이 협약 제10조와 양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 판결했다. 재판소는 문제된 행사가 개최되기 전에 차단 조치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사법심사가 수행되었어야 했다고 판결했다. 게시물에 포함된 정보는 행사일 이후에는 모든 가치와 이익이 사라지며, 따라서 행사일이 지난 후 사법심사에 따라 차단 조치를 취소하는 것은 무의미할 것이다(§ 96). 마찬가지로, 이 사건과 *Elvira Dmitriyeva v. Russia* 사건에서, 재판소는 청구인들이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고 집회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올림으로써 법적 금지사항을 위반했다는 것만으로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의 정당성을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다(각각 §§ 103 및 84).
636. 재판소는 여러 사건에서 웹사이트에 대한 전면적인 차단 명령이 극단적 조치라고 판결했으며, 유엔인권위원회와 다른 국제 기구는 이러한 조치가 신문사나 방송사의 언론 활동을 금지하는 것과 같다고 보았다(*OOO Flavus and Others v. Russia*, § 37; *Bulgakov v. Russia*, § 34).
637. 야권 온라인 매체의 부당한 전면 차단과 관련된 *OOO Flavus and Others v. Russia* 사건에서, 재판소는 불법적인 것과 불법 정보의 구별을 고의적으로 무시한 이 조치가

자의적이고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판결했다(§ 34).

638. 금지된 자료가 있다는 이유로 법원의 명령에 따라 웹사이트를 전면 차단하고, 해당 자료가 삭제된 후에도 웹사이트 차단 조치를 계속 유지한 *Bulgakov v. Russia* 사건에서, 재판소는 차단 명령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고 판결했다. 재판소의 설명에 따르면, 차단 명령의 근거가 되었던 법령은 국가기관이 인터넷 사이트를 전면 차단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34). 재판소는 또한 금지된 자료가 제거된 후에도 웹사이트 차단 조치를 계속 유지한 것은 한층 더 불법적인 조치였다고 판결했다(§ 38). 마지막으로 재판소는 제10조의 절차적 요건이 실체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존중 보장이라는 광범위한 목적을 뒷받침하며, 실효적인 구제에 대한 권리를 통해 절차적 보호가 확보된다고 설명했다(§ 46). 이러한 관점에서, 재판소는 청구인이 문제의 법원 결정에 정식으로 항소하고 심리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항소법원이 청구인의 항소에 대해 본안을 심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협약 제13조에서 의미하는 "실효적인(effective) 구제절차를 거치지 못했다고 보았다(§ 48; 또한 *Engels v. Russia*, §§ 41-44 참조).

639. 마지막으로, 웹사이트 전체가 차단되지 않으려면 법원이 금지한 정보인 필터우회수단(filter-bypass tool)에 관한 정보를 제거할 의무를 웹사이트 소유주에게 부과한 사건에서, 재판소는 이러한 명령의 근거가 된 법령은 법원이나 인터넷 사이트 소유주에게 금지될 수 있는 콘텐츠의 성격이나 종류에 대해 어떠한 지침도 주고 있지 않으므로 예측가능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Engels v. Russia*, §§ 27-28).

D. 인터넷 접속과 재소자

640. 재판소는 재소자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는 특정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에 접근하도록 허용해달라고 요청한 사건들에서 타인의 권리 보호와 무질서 및 범죄 방지를 이유로 해당 요청을 거부하는 판결을 내렸다.

641. 재판소는 제10조가 재소자의 인터넷 또는 특정 인터넷 사이트 접속을 허용해야 하는 일반적인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도(*Jankovskis v. Lithuania*, § 55; *Kalda v. Estonia*, § 45), 이 사건들에서는 청구인들의 정보를 접할 권리가 제한되었고, 따라서 제10조가 위반되었다고 판결했다. 재판소는 특히 관련 정보의 성격과 출처, 그리고 국가기관이 재소자의 개별 상황에 대해 충분히 자세한 조사를 수행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위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소는 청구인들이 국내 법원 절차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으며(*Kalda v. Estonia*, § 50), 문제된 그 정보가 교육에 관한 청구인의 이익과 직접 관련된다는 주장이 불합리하지 않다면서, 교육은 결국 청구인의 재활 및 이후의 재사회화에도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Jankovskis v. Lithuania*, § 59).

XIV. 다원주의와 표현의 자유

642. 재판소는 다원주의 없이는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다고 본다(*Centro Europa 7 S.r.l. and Di Stefano v. Italy* [GC], § 129). 민주주의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폭력에 의존하지 않고 대화를 통해 국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Manole and Others v. Moldova*, § 95). 재판소의 견해에 따르면, 국가비상사태에서도 민주주의는 기본권을 보장하여 정상적인 체제로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체제이므로 회원국은 민주적 질서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하며, 다원주의, 관용주의, 포용력과 같은 민주사회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Sahin Alp v. Turkey*, § 180).
643. 민주주의는 표현의 자유를 바탕으로 번성한다. 민주주의 자체에 위해를 가하지 않는 한, 국가의 현행 제도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더라도 다양한 정치 프로그램을 제기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이다(*Centro Europa 7 S.r.l. and Di Stefano v. Italy* [GC], § 129; *Manole and Others v. Moldova*, § 95; *Socialist Party and Others v. Turkey*, §§ 41, 45 및 47).
644. 제10조에서 제기되는 문제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국가는 다원주의의 궁극적인 보장자이다(*Animal Defenders International v. the United Kingdom* [GC], § 101; *Manole and Others v. Moldova*, § 99; *Informationsverein Lentia and Others v. Austria*, § 38).
645. 재판소는 시청각 방송 분야와 관련하여 위의 원칙에 따라 국가는 첫째, 대중이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통해 국내의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반영하는 공정하고 정확한 정보와 다양한 의견 및 논평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언론인과 시청각 매체 종사자들이 이러한 정보와 의견을 전달함에 있어 방해받지 않도록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본다(*Manole and Others v. Moldova*, § 100).
646. 특히 아래 제시된 판례들을 포함한 협약 제10조에 관한 재판소 판례에서는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가치로서 다원주의가 가진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A. 시청각 매체의 다원주의에 관한 일반원칙

647. 제10조제1항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필수적인 토대이자 민주사회의 진보를 위한 기본 조건 중 하나이다(*Lingens v. Austria*, § 41). 언론과 기타 뉴스 매체의 자유는 정치지도자의 사상과 입장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형성하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를 대중에게 제공한다. 언론은 정치적 사안과 기타 공익적 주제에 대한 정보와 사상을 전달할 의무가 있다. 언론은 이처럼 정보와 사상을 전달해야 할 임무가 있으며, 일반 대중 또한 이러한 정보와 사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예를 들어, *Handyside v. the United Kingdom*, § 49 및 *Lingens v. Austria*, §§ 41-42 참조).
648. 이런 점에서 라디오와 텔레비전과 같은 시청각 매체는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시청각 매체는 음향과 영상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인쇄매체보다 더

즉각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Animal Defenders International v. the United Kingdom* [GC]; § 119; *Pedersen and Baadsgaard v. Denmark* [GC], § 79; *Jersild v. Denmark*, § 31). 시청자나 청취자가 가정이라는 친밀한 환경 속에서 방송을 통해 즐거움을 얻는다는 점에서 시청각 매체는 한층 더 강력한 영향력을 미친다(*Manole and Others v. Moldova*, § 97; *Murphy v. Ireland*, § 74). 뿐만 아니라, 특히 외딴 지역에서는 다른 매체보다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더 쉽게 접할 수 있다(*Manole and Others v. Moldova*, § 97).

649. 재판소는 또한 시청각 방송 분야에서 다원주의 원칙에 대한 존중이라는 개념이 무엇보다도 대중이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통해 국내의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반영하는 공정하고 정확한 정보와 다양한 의견 및 논평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포함한다는 견해이다(*Manole and Others v. Moldova*, § 20).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문제는 지역의 여건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국가의 판단재량에 속하는 문제이다.
650. 국가가 공영방송제를 채택하는 경우, 위에서 본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제에서 다원적인 방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과 관행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민영방송사가 아직 진정한 대안 역할을 담당할 능력이 없어 공영방송사나 국영방송사가 국가 또는 지역 내에서 유일한 또는 지배적인 방송사인 상황에서는, 민주주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방송사에서 공정하고 독립적이며 균형 잡힌 뉴스, 정보, 의견을 전달하고, 이와 더불어 가능한 한 폭넓은 견해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공적 토론의 장을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다(*Manole and Others v. Moldova*, § 101).
651. *Manole and Others v. Moldova* 사건의 청구인들은 당시 언론인, 편집자 또는 제작자였는데,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입법의 미비를 이유로 청구를 제기했는데, 공영방송은 몰도바에서 사실상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었다. 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제10조제2항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정보를 전달할 권리가 언론인에게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제10조의 보호는 언론인과 그 밖의 언론 종사자에 대해 확대된다. 고용된 언론인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고용주가 적용하는 일반적인 규칙이나 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할 수 있다. 소속 언론인에 대한 고용주의 제재나 기타 조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해당할 수 있다(§§ 103 및 111; 또한 *Fuentes Bobo v. Spain*, § 38 참조).
652. 공영라디오방송사가 기자를 징계해고한 사건에서, 재판소는 시청각 매체의 다원주의에 관한 일반원칙, 공익에 부합하는 편집 방침을 수립할 공영방송사의 권한, 방송에서 이루어지는 발언에 대한 공영방송사의 책임을 고려했다. 재판소는 청구인이 언론인이라고 해서 곧바로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고용주의 방침과 충돌하는 정책을 추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며, 그것은 경영진이 내린 합법적인 편집 결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하였다(*Nenkova-Lalova v. Bulgaria*, §§ 59-60).

B. 언론 다원주의와 선거

653. 자유로운 선거와 표현의 자유, 특히 정치적 토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주요한 토대이다.

이 두 권리는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서로를 강화한다. 선거를 앞둔 기간에 모든 유형의 의견과 정보가 자유롭게 유포되도록 허용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Orlovskaya Iskra v. Russia*, § 110; *Cheltsova v. Russia*, § 96; *Długołęcki v. Poland*, § 40; *Bowman v. the United Kingdom* [GC], § 42). 이 원칙은 전국선거와 지방선거 모두에 적용된다(*Cheltsova v. Russia*, § 96; *Kwiecień v. Poland*, § 48).

654. 그러므로 선거 기간에 언론이 감시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 또한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재판소는 공익과 관련된 정보와 사상의 전달을 목표로 자유롭게 기사를 편집하는 것에 바탕을 둔 독립적인 언론의 자유 행사가 이러한 언론의 감시자 역할에 포함된다는 견해이다. 특히 후보와 정견에 대한 논의는 대중의 알 권리에 기여하고,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공직 선거에 출마한 여러 후보 가운데 적절한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권자의 능력을 강화한다(*Orlovskaya Iskra v. Russia*, § 130).
655. 재판소는 공익 문제에 관한 정치적 토론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좁게 해석해야 하는 분야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Lopes Gomes da Silva v. Portugal*, § 33).
656. 재판소는 선거토론과 관련해 후보자가 제약 없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고 언급했다(*Kudeshkina v. Russia*, § 87).
657. 재판소는 제1의정서 제3조에 관한 준비문서(*travaux préparatoires*)를 참고한 후 "입법부의 선출에 있어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할 수 있는 조건"이라는 문구가 본질적으로 (이미 협약 제10조에 따라 보호받는) 표현의 자유 외에도 투표권의 행사와 피선거권 행사에서 모든 국민을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Mathieu-Mohin and Clerfayt v. Belgium*, § 54).
658. 특정 상황에서는 두 권리가 충돌할 수 있으며, "입법부의 선출에 있어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기 위해 통상적으로는 허용될 수 없는 유형의 일정한 제한이 선거를 앞둔 기간 또는 선거기간 동안에는 필요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재판소는 회원국이 선거제도 문제 전반에 걸쳐 판단재량을 행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두 권리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문제에서도 판단재량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Animal Defenders International v. the United Kingdom* [GC], § 123; *Oran v. Turkey*, § 52; *Bowman v. the United Kingdom* [GC], § 43).

C. 유료 광고 규제

659. 재판소는 막강한 재력을 가진 단체가 상업광고 분야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고, 이러한 우위를 바탕으로 압력을 행사하여 결국 광고를 방송하는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재판소는 이러한 상황이 협약 제10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가 민주사회에서 담당하는 근본적인 역할을 저해한다고 판단한다(*VgT Verein gegen Tierfabriken v. Switzerland*, § 73).
660. 재판소는 광고를 위한 방송시간 구매가 명백히 편파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다른 집단보다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한 집단이 훨씬 더 많은 광고를

방송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판결했다(*Murphy v. Ireland*, § 74). 문제의 광고가 정치적 성격의 광고이거나(*Animal Defenders International v. the United Kingdom* [GC]) 종교적 성격의 광고인 경우(*Murphy v. Ireland*), 광고 분야의 언론 다원주의가 특히 훼손될 수 있다.

661. 재판소는 유료 정치광고 방송을 규제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유럽 차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언급했다(*Animal Defenders International v. the United Kingdom* [GC], § 123). 일반적으로 공익 문제에 관한 의견 표현을 제한하는 문제의 경우 국가가 행사할 수 있는 판단재량이 좁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가가 행사할 수 있는 판단재량의 폭이 넓어진다(*ibid.*, § 123; *TV Vest AS & Rogaland Pensjonistparti v. Norway*, § 67; *Société de conception de presse et d'édition and Ponson v. France*, §§ 57 및 63). 재판소는 *Animal Defenders International v. the United Kingdom* [GC] 사건에서, 정치광고와 관련하여 비교형량해야 할 이익에 대해, 하나는 일반 대중이 접할 권리가 있는 공익에 관한 정보와 사상을 전달할 청구인 NGO의 권리이고, 다른 하나는 영향력 있는 언론에 유리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막강한 재력을 가진 단체에 의한 왜곡으로부터 민주적인 토론과 절차를 보호하는 것에 대한 국가의 이익이라고 하였다. 재판소는 막강한 재력을 가진 단체가 유료 광고 분야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여 국가가 궁극적인 보증인 역할을 하는 분야인 자유롭고 다원적인 토론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112).
662. 주요 정당이 많은 정치광고를 방송하는 데 비해 소수 정당은 거의 광고를 내지 못하는 상황인 경우 특히 정치광고 분야에서 언론 다원주의를 보호할 필요성이 커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판소는, 법이 금지하고는 있지만, 소규모 정당이 텔레비전을 통해 대중에게 정견을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텔레비전의 유료 광고라고 판결했다(*TV Vest AS & Rogaland Pensjonistparti v. Norway*, § 73). 다른 매체에 대한 이용가능성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의 토론 프로그램, 인쇄매체 및 소셜미디어와 같이 유용할 수 있는 매체들에 대한 이용을 제한하는 조처의 비례성을 평가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Animal Defenders International v. the United Kingdom* [GC], § 124).
663. 재판소는 또한 방송의 독립성을 증진하고 모든 종교를 위한 공정한 경쟁의 장을 보장한다는 목적을 보호하기 위해 종교광고에서 언론의 다원주의를 보호한다(*Murphy v. Ireland*, § 78). 이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한 종교에 대해 광고를 허용하고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광고를 허용하지 않는 조항의 경우 그 정당성이 입증되기 어렵고, 정부 또는 정부가 정하는 기관이 개별 사안별로 허용될 수 없거나 지나친 종교광고를 심의하여 걸러 낼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일관성있게 적용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다(*ibid.*, § 77). 다만, 이 사건에서 국가는 제한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광고의 자유조차도 훨씬 적은 신자와 자원을 가진 종교보다는 대다수 사람들이 믿는 종교에 더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보았으며, 재판소는 이러한 국가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았다(*ibid.*, § 78).

D. 시청각 자료의 배포

664. 제10조제1항의 세 번째 문장에 따라, 국가는 자국 영토 내에서 이루어지는 방송 편성 방식을 허가 제도를 통해 규제할 수 있으며, 특히 기술적 측면에서 방송 편성 방식을 규제할 수 있다(*Centro Europa 7 S.r.l. and Di Stefano v. Italy* [GC], § 139). 방송 허가는 허가를 신청한 채널의 성격과 목적, 국가·지역·지방 수준의 시청 또는 청취 대상, 특정한 시청 또는 청취 대상의 권리와 필요, 국제법 문서에서 파생되는 의무와 같은 여러 고려사항에 따라 조건부 승인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Demuth v. Switzerland*, § 33; *Centro Europa 7 S.r.l. and Di Stefano v. Italy* [GC], § 139).
665. 이 경우 제10조제2항에 명시된 목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제10조제1항의 세 번째 문장에 따라 정당한 목적을 추구하는 제한 조치가 시행될 수 있으나, 이러한 조치가 협약과 양립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제2항의 다른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Demuth v. Switzerland*, § 33; *Tele 1 Privatfernsehgesellschaft mbH v. Austria*, § 25; *Informationsverein Lentia and Others v. Austria*, § 32).
666. 재판소는 많은 사건에서 방송 면허에 대한 허가 거부(여러 사례 중에서도 *Informationsverein Lentia and Others v. Austria*, § 27; *Radio ABC v. Austria*, § 27; *United Christian Broadcasters Ltd v. the United Kingdom* (dec.); *Glas Nadezhda EOOD and Elenkov v. Bulgaria*, § 42 참조)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방송에 대한 승인 거부(*Leveque v. France* (dec.); *Demuth v. Switzerland*, § 30) 등의 조치가 협약 제10조제1항에서 보장하는 권리의 행사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667. 재판소는 지난 수십 년간 이루어진 기술적 발전의 결과로 가용 주파수와 채널이 증가했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더 이상 이러한 제한이 정당한 목적을 추구하지 않으며, 무엇보다도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면서 덜 제한적인 해결책이 없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Informationsverein Lentia and Others v. Austria*, § 39).
668. 국가에 부여된 판단재량과 관련하여, 재판소는 상업방송 분야와 같이 변동성이 큰 분야에서는 국가에 일정한 판단재량을 부여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따라서 덜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Demuth v. Switzerland*, § 42; *Markt intern Verlag GmbH and Klaus Beermann v. Germany*, § 33).
669. 국가기관이 행사할 수 있는 판단재량의 범위를 검토하는 경우, 회원국의 특수한 정치 구조와 문화적·언어적 다원주의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 면허의 허가에서는 방송에서의 다원주의를 증진하는 위와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는 것은 정당하다(*Demuth v. Switzerland*, § 44).
670.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를 이유로 방송 면허 허가를 거부하고 그러한 결정의 사유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도 절차의 공정성 원칙과 절차적 보장이 적용된다(*Aydoğan and Dara Radyo Televizyon Yayınılık Anonim Şirketi v. Turkey*, § 43).

E. 매체 소유에 관한 투명성

671. 재판소는 민주사회의 시청각 부문에서 진정한 다원주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몇 개의 채널 또는 잠재적 방송사업자가 방송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이론적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하였다. 재판소는 프로그램 내용 전반에 걸쳐 다양성을 보장하고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는 방송공급자가 방송시장에 실효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Centro Europa 7 S.r.l. and Di Stefano v. Italy* [GC], § 130).
672. 한 사회의 강력한 경제 또는 정치 집단이 시청각 매체에 대한 지배적 지위를 확보하여 방송사에 대한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결국 편집의 자유를 제한하는 상황에서는 협약 제10조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가 민주사회에서 담당하는 근본적인 역할이 제대로 기능할 수 없으며, 특히 대중들이 더욱 알아야 하는 공익적 사안에 대한 정보와 사상의 전달 역할이 약화될 것이다(*Manole and Others v. Moldova*, § 98).
673. 재판소는 시청각 매체와 같은 민감한 부문의 경우, 국가는 제한하지 않을 소극적 의무뿐 아니라 다원주의를 실효적으로 보장하는 적절한 입법 및 행정 절차를 수립할 적극적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Centro Europa 7 S.r.l. and Di Stefano v. Italy* [GC], § 134).
674. 재판소는 국가의 시청각 제도가 복점(duopoly) 형태(*Centro Europa 7 S.r.l. and Di Stefano v. Italy* [GC], § 134) 심지어 독점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다원주의를 실효적으로 보장하는 적절한 입법 및 행정 절차를 수립할 적극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고 판결했다. 국가의 시청각 제도가 독점으로 운영되는 경우, 재판소는 긴급한 필요성이 입증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공영방송사가 가용주파수를 독점하도록 허용하는 면허제도는 그 제한적인 성격으로 인해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Manole and Others v. Moldova*, § 98; *Informationsverein Lentia and Others v. Austria*, § 39).
675. 재판소는 판례에서 언론 다원주의와 미디어 콘텐츠의 다양성에 관한 유럽평의회 각료위원회 권고 CM/Rec(2007)2(*Recommandation CM/Rec(2007)2*)를 언급한다(*Centro Europa 7 S.r.l. and Di Stefano v. Italy* [GC], § 134). 공영 언론과 관련하여, 재판소는 회원국들이 유럽평의회 각료위원회를 통해 합의한 공영방송에 대한 기준 또한 언급하는데, 이 문서는 공영방송 분야에서 제10조를 해석할 때 기준으로 삼아야 할 접근법에 관한 지침을 제시한다(*Manole and Others v. Moldova*, §§ 102 및 51-54).

F. 다원주의와 소수집단의 표현의 자유

676. 재판소는 소수집단이 협약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다수집단에 의해 받아들여지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면, 이러한 조건은 협약의 근본적인 가치와 양립할 수 없다고 본다(*Alekseyev v. Russia*, § 81). 이러한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 종교, 표현, 집회의 자유에 대한 소수집단의 권리는 협약에서 요구하는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권리가 아니라 단지 이론적인 권리에 불과할 것이다(*ibid.*, § 81; *Barankevich v. Russia*, § 31).

677. 재판소는 대중들의 뜻에 따라 협약의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것과 대중들이 지지한다는 이유로 실질적인 보호범위를 축소하는 것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고 본다(*Bayev and Others v. Russia*, §§ 70-71).
678. 종교적 인물을 묘사한 의류광고를 한 것에 대해 청구인 기업이 벌금을 부과받은 *Sekmadienis Ltd. v. Lithuania* 사건에서, 재판소는 리투아니아에 여러 다양한 기독교 종교공동체와 비기독교 종교공동체가 있었음에도 리투아니아 정부는 그 분쟁절차에서 단지 로마가톨릭교회에만 자문을 구했다고 지적했다(§ 82). 재판소는 기독교를 믿는 리투아니아 인구 대다수가 그 광고를 불쾌하게 여겼을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이 옳다고 가정하더라도, 소수집단이 협약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다수집단에 의해 받아들여지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면 협약의 근본적인 가치와 양립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결했다(§ 82).

XV. 제10조 및 협약의 다른 조항과의 관계: 상호의존성, 중첩성

679. 동일한 사건이 제10조와 협약의 다른 조항의 적용 범위에 모두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사건을 심사하는 경우 재판소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과 가장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특별조항(*lex specialis*)에 해당하는 조항에 따라 심사하거나, 하나의 조항으로 심사하되 다른 조항에 "비추어" 심사하거나, 혹은 두 조항 모두로 사건을 심사한다.

1. 협약 제6조제1항

680. 검사가 입법 개혁에 관해 비판을 제기한 후 해임된 *Kövesi v. Romania* 사건에서, 재판소는 루마니아 법원이 해임을 다루는 심사절차에 대해 부당한 제한이 협약 제6조제1항을 위반한다고 보았다(§§ 157-158). 재판소는 동일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협약 제10조에 따라 사건을 심리한 후,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 제한에 대해 그 남용을 방지할 실효적이고 적절한 보호조치가 제공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210).

2. 협약 제8조

681. 언론인들을 감시하고 언론인들에게 취재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제출을 명령한 사건에서, 재판소는 문제된 법령이 취재원의 신원을 확인할 목적으로 청구인을 감시할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이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고, 동일한 사실에 근거하여 제8조와 제10조 위반으로 판결했다(*Telegraaf Media Nederland Landelijke Media B.V. and Others v. the Netherlands*, § 102; 또한 비슷한 상황에서 재판소가 심리한 내용에 관해서는 *Saint-Paul Luxembourg S.A. v. Luxembourg*, § 44; *Ernst and Others v. Belgium*, § 116; *Nagla v. Latvia*, § 101 참조).

3. 협약 제9조

682. 청구인들이 협약 제9조와 제10조 두 조항을 근거로 청구를 제기한 여러 사건들에서, 재판소는 제10조에 따른 청구만을 심리하기로 결정했고, 이에 따라 제9조 위반 주장은 목적이 상실되었다(예를 들어, 사실 라디오 방송국에 대해 종교적 사안에 대한 유료 광고를 금지한 관할 기관의 조치에 관해서는 *Murphy v. Ireland*, § 71 참조; 관할 기관이 기독교 라디오 방송국에 방송 면허를 발급하는 것을 거부한 사건에 관해서는 *Glas Nadezhda EOOD and Elenkov v. Bulgaria*, § 59 참조; "신도가 아닌 사람들"을 겨냥한 공격적인 발언으로 대중에 대해 범죄를 선동한 혐의로 유죄판결이 내려진 사건에 관해서는 *Kutlular v. Turkey*, §§ 35 및 48 참조.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제10조에 따라 심사하되, 제9조에 비추어 해석한 사건으로는 *Religious Community of Jehovah's Witnesses v. Azerbaijan*, § 24 참조).

683. 또한 재판소는 간혹 동일한 청구를 제9조에 의해서만 심사하고 제10조에 의한 심사는 거부하기도 한다(*Kokkinakis v. Greece*, § 55; *Members of the Gldani Congregation of*

Jehovah's Witnesses and Others v. Georgia, § 144; *Nasirov and Others v. Azerbaijan*, § 77).

4. 협약 제11조

684. 동료 노동자들을 불쾌하게 한 기사를 게재한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 대한 해고가 쟁점이 되었던 *Palomo Sánchez and Others v. Spain* [GC] 사건에서, 재판소는 먼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문제가 노동조합과 관련하여 결사의 자유에 대한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청구인들의 주된 주장이, 문제된 기사와 만평의 게재에 대해 청구인들이 노동조합의 집행위원 자격으로 인해 해고된 것에 대한 문제제기였음에도, 재판소는 청구인들이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해고되었다는 사실은 입증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제10조에 따라 사실관계를 심사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보았는데, 그러면서도 제11조에 비추어 제10조를 해석하였다(§ 52).

685. *Women On Waves and Others v. Portugal* 사건에서 재판소는 먼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문제를 집회의 자유에 대한 문제와 별도로 다루기 어렵다고 언급하면서 제10조가 보장하는 개인적 의견에 대한 보호가 협약 제11조에 명시되어 있는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에서 추구되는 목적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28). 재판소는 문제된 상황을 제10조만으로 심사하는 것이 더 용이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법을 취한다고해서 재판소가 제10조를 검토하고 해석할 때 필요한 경우 제11조를 고려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Schwabe and M.G. v. Germany*, § 101; *Ezelin v. France*, § 37; *Karademirci and Others v. Turkey*, § 26; *Novikova and Others v. Russia*, § 91; 또한 협약 제10조와 제11조의 관계에 관해서는 *Öllinger v. Austria*, § 38; *Djavit An v. Turkey*, § 39 참조; 재판소가 협약 제10조를 제11조에 대한 일반조항(*lex generalis*)으로 보고 정반대의 접근법을 택했던 사건에 관해서는 *Hakim Aydın v. Turkey*, § 41 참조).

5. 제1의정서 제2조

686. 대학 당국에 쿠르드어 선택 과목을 개설해 달라고 요청한 학생들이 정학 처분을 받은 *İrfan Temel and Others v. Turkey* 사건에서 협약 제10조와 제1의정서 제2조가 모두 근거 조항으로 원용되었는데, 재판소는 협약 제10조에 비추어 제1의정서 제2조를 해석하기로 결정했다(또한 *Çölgeçen and Others v. Turkey* 참조).

687. 이와 달리, 재소자들이 고등교육을 계속하기 위해 교정당국이 특별히 지정하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고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청을 교정당국이 거부한 사건에서, 재판소는 제1의정서 제2조 제1문에 따라 사건을 심리했다(*Mehmet Reşit Arslan and Orhan Bingöl v. Turkey*, § 42).

6. 제1의정서 제3조

688. 재판소는 민주사회에서 표현의 자유와 자유로운 선거에 대한 권리가 서로 의존적인 관계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재판소는 *Orlovskaya Iskra v. Russia* 사건에서

법치주의에 따라 규율되는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민주주의의 토대를 확립하고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권리이자 의정서 제1조 제3항에 따라 보호받는 자유로운 선거에 대한 권리에 비추어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110; 또한 *Hirst v. the United Kingdom (no. 2)* [GC], § 58 참조).

689. 표현의 자유는 "입법부의 선출에 있어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할 수 있는 조건"의 하나이다(*Mathieu-Mohin and Clerfayt v. Belgium*, §§ 42 및 54). 이러한 이유로 재판소는 선거를 앞둔 기간에 모든 유형의 의견과 정보가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고 본다. 재판소는 또한 특정 상황에서는 두 권리가 충돌할 수 있으며, 입법부의 선출에 있어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기 위해 통상적으로는 허용될 수 없는 유형의 일정한 제한이 선거를 앞둔 기간 또는 선거기간 동안에는 필요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밝혔다(*Bowman v. the United Kingdom* [GC], §§ 41-43). 재판소는 회원국이 선거제도 문제 전반에 걸쳐 판단재량을 행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두 권리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문제에서도 판단재량을 행사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Animal Defenders International v. the United Kingdom*, § 111; *Mathieu-Mohin and Clerfayt v. Belgium*, § 54; *TV Vest AS & Rogaland Pensjonistparti v. Norway*, § 62; *Orlovskaya Iskra v. Russia*, § 134).

인용 판례 목록

이 해설서에 인용된 판례는 재판소가 내린 판결 또는 결정과 유럽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결정 또는 보고서를 의미합니다.

달리 명시되지 않은 경우, 모든 참조는 유럽인권재판소 재판부가 본안에 대해 내린 판결에 대한 것입니다. 약칭 "(dec.)"은 재판소의 결정을 인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GC]"는 해당 사건이 대재판부에서 심리된 것임을 나타냅니다.

소재판부의 판단 중 이 개정판 발간 당시 협약 제44조에서 의미하는 최종확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래 목록에 별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협약 제44조제2항에는 "(a) 당사자가 사건을 대재판부 회부를 요청하지 않기로 선언하는 경우, (b) 당사자가 대재판부 회부를 요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는 경우 또는 (c) 대재판부의 패널(panel)이 제43조에 따른 회부 요청을 거부한 경우 소재판부의 판결은 최종적으로 확정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재판부의 패널이 회부 요청을 수락한 경우, 소재판부의 판단이 아니라 이후 대재판부의 판단이 최종판단이 됩니다.

이 해설서의 전자판에 인용된 사건의 하이퍼링크는 재판소 판례(대재판부, 소재판부 및 위원회의 판결과 결정, 언급된 사건, 권고적 의견 및 판례정보노트(Case-Law Information Note)의 결정요지(legal summary), 위원회의 판례(결정 및 보고서), 그리고 각료위원회 결의에 접속할 수 있는 HUDOC 데이터베이스 (<http://hudoc.echr.coe.int>)로 연결합니다.

재판소는 두 공식 언어인 영어나 프랑스어 중 하나 또는 두 언어 모두로 판결과 결정을 내립니다. HUDOC는 또한 30개 이상의 비공식 언어로 번역된 많은 주요 판례의 번역본과 제3자가 작성한 약 100개의 온라인 판례집에 대한 연결을 제공합니다.

—A—

[A. v. Norway](#), no. 28070/06, 9 April 2009

[A.B. v. Switzerland](#), no. 56925/08, 1 July 2014

[Açık and Others v. Turkey](#), no. 31451/03, 13 January 2009

[Ahmed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2 September 1998,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8-VI

[Ahmet Yıldırım v. Turkey](#), no. 3111/10, ECHR 2012

[Akdaş v. Turkey](#), no. 41056/04, 16 February 2010

[Akdeniz v. Turkey](#) (dec.), no. 20877/10, 11 March 2014

[Aksu v. Turkey](#) [GC], nos. 4149/04 and 41029/04, ECHR 2012

[Albayrak v. Turkey](#), no. 38406/97, 31 January 2008

[Aleksey Ovchinnikov v. Russia](#), no. 24061/04, 16 December 2010

[Alekseyev v. Russia](#), nos. 4916/07 and 2 Others, 21 October 2010

[Ali Gürbüz v. Turkey](#), nos. 52497/08 and 6 Others, 12 March 2019

[Allenet de Ribemont](#), 10 February 1995, Series A no. 308

[Alpha Doryforiki Tileorasi Anonymi Etaireia v. Greece](#), no. 72562/10, 22 February 2018

Altıntaş v. Turkey, no. 50495/08, 10 March 2020
Altuğ Taner Akçam v. Turkey, no. 27520/07, 25 October 2011
Alves da Silva v. Portugal, no. 41665/07, 20 October 2009
Amihalachioaie v. Moldova, no. 60115/00, ECHR 2004-III
Amorim Giestas and Jesus Costa Bordalo v. Portugal, no. 37840/10, 3 April 2014
Amuur v. France, 25 June 1996,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6-III
André and Another v. France, no. 18603/03, 24 July 2008
Animal Defenders International v. the United Kingdom [GC], no. 48876/08, ECHR 2013 (extracts)
Annen v. Germany, no. 3690/10, 26 November 2015
Anthony France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dec.) [committee], nos. 25357/16 and 3 Others, 26 September 2017
Arnarson v. Iceland, no. 58781/13, 13 June 2017
Arrigo and Vella v. Malta (dec.), no. 6569/04, 10 May 2005
Arrowsmith v. the United Kingdom, no. 7050/75, Commission report of 12 October 1978, *Decisions and Reports* 19
Arslan v. Turkey [GC], no. 23462/94, 8 July 1999
Artun and Güvener v. Turkey, no. 75510/01, 26 June 2007
Ashby Donald and Others v. France, no. 36769/08, 10 January 2013
Aslı Güneş v. Turkey (dec.), no. 53916/00, 13 May 2004
Atamanchuk v. Russia, no. 4493/11, 11 February 2020
ATV Zrt v. Hungary, no. 61178/14, 28 April 2020
Aurelian Oprea v. Romania, no. 12138/08, 19 January 2016
Axel Springer AG v. Germany [GC], no. 39954/08, 7 February 2012
Axel Springer AG v. Germany (no. 2), no. 48311/10, 10 July 2014
Axel Springer SE and RTL Television GmbH v. Germany, no. 51405/12, 21 September 2017
Aydar v. Turkey (dec.), no. 32207/96, 1 July 2003
Aydın Tatlav v. Turkey, no. 50692/99, 2 May 2006
Aydoğan and Dara Radyo Televizyon Yayıncılık Anonim Şirketi v. Turkey, no. 12261/06, 13 February 2018

—B—

Bahçeci and Turan v. Turkey, no. 33340/03, 16 June 2009
Baka v. Hungary [GC], no. 20261/12, 23 June 2016
Bagirov v. Azerbaijan, nos. 81024/12 and 28198/15, 25 June 2020
Balaskas v. Greece, no. 73087/17, 5 November 2020
Balsytė-Lideikienė v. Lithuania, no. 72596/01, 4 November 2008
Baldassi and Others v. France, nos. 15271/16 and 6 Others, 11 June 2020
Bamber v. the United Kingdom, no. 33742/96, Commission decision of 11 September 1997
Barankevich v. Russia, no. 10519/03, 26 July 2007
Barata Monteiro da Costa Nogueira and Patrício Pereira v. Portugal, no. 4035/08, 11 January 2011
Barthold v. Germany, 25 March 1985, Series A no. 9
Bartnik v. Poland (dec.) [committee], no. 53628/10, 11 March 2014
Başkaya and Okçuoğlu v. Turkey [GC], nos. 23536/94 and 24408/94, ECHR 1999-IV
Bayev and Others v. Russia, nos. 67667/09 and 2 Others, 20 June 2017

[Becker v. Norway](#), no. 21272/12, 5 October 2017
[Bédat v. Switzerland](#) [GC], no. 56925/08, 29 March 2016
[Belpietro v. Italy](#), no. 43612/10, 24 September 2013
[Bergens Tidende and Others v. Norway](#), no. 26132/95, ECHR 2000-IV
[Bezmyanny v. Russia](#), no. 10941/03, 8 April 2010
[Bidart v. France](#), no. 52363/11, 12 November 2015
[Bladet Tromsø and Stensaas v. Norway](#) [GC], no. 21980/93, ECHR 1999-III
[Błaja News Sp. z o. o. v. Poland](#), no. 59545/10, 26 November 2013
[Bohlen v. Germany](#), no. 53495/09, 19 February 2015
[Boldea v. Romania](#), no. 19997/02, 15 February 2007
[Bono v. France](#), no. 29024/11, 15 December 2015
[Boudelal v. France](#) (dec.), no. 14894/14, 13 June 2017
[Bowman v. the United Kingdom](#), 19 February 1998,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8-I
[Boykanov v. Bulgaria](#), no. 18288/06, 10 November 2016
[Bozhkov v. Bulgaria](#), no. 3316/04, 19 April 2011
[Brambilla and Others v. Italy](#), no. 22567/09, 23 June 2016
[Brasilier v. France](#), no. 71343/01, 11 April 2006
[Brisic v. Romania](#), no. 26238/10, 11 December 2018
[Brosa v. Germany](#), no. 5709/09, 17 April 2014
[Brunet-Lecomte and Others v. France](#), no. 42117/04, 5 February 2009
[Brunet-Lecomte and Lyon Mag' v. France](#), no. 17265/05, 6 May 2010
[Bucur and Toma v. Romania](#), no. 40238/02, 8 January 2013
[Bülent Kaya v. Turkey](#), no. 52056/08, 22 October 2013
[Bulgakov v. Russia](#), no. 20159/15, 23 June 2020
[Burden v. the United Kingdom](#) [GC], no. 13378/05, ECHR 2008
[Busuioc v. Moldova](#), no. 61513/00, 21 December 2004
[Butkevičius v. Lithuania](#), no. 48297/99, ECHR 2002-II (extracts)

—C—

[Cangi v. Turkey](#), no. 24973/15, 29 January 2019
[Campos Dâmaso v. Portugal](#), no. 17107/05, 24 April 2008
[Çapan v. Turkey](#), no. 71978/01, 25 July 2006
[Cârlan v. Romania](#), no. 34828/02, 20 April 2010
[Casado Coca v. Spain](#), 24 February 1994, Series A no. 285-A
[Castells v. Spain](#), 23 April 1992, Series A no. 236
[Čeferin v. Slovenia](#), no. 40975/08, 16 January 2018
[Cengiz and Others v. Turkey](#), nos. 48226/10 and 14027/11, ECHR 2015 (extracts)
[Center for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v. Ukraine](#) (dec.), no. 75865/11, 3 March 2020
[Centro Europa 7 S.r.l. and Di Stefano v. Italy](#) [GC], no. 38433/09, ECHR 2012
[Ceylan v. Turkey](#) [GC], no. 23556/94, ECHR 1999-IV
[Chalabi v. France](#), no. 35916/04, 18 September 2008
[Chauvy and Others v. France](#), no. 64915/01, ECHR 2004-VI
[Cheltsova v. Russia](#), no. 44294/06, 13 June 2017
[Chernysheva v. Russia](#) (dec.), no. 77062/01, 10 June 2004
[Chorherr v. Austria](#), 25 August 1993, Series A no. 266-B
[Cicad v. Switzerland](#), no. 17676/09, 7 June 2016

Cimperšek v. Slovenia, no. 58512/16, 30 June 2020
Clavel v. Switzerland, no. 11854/85, Commission decision of 15 October 1987, Decisions and Reports 54
Colaço Mestre and SIC – Sociedade Independente de Comunicação, S.A. v. Portugal, nos. 11182/03 and 11319/03, 26 April 2007
Çölgeçen and Others v. Turkey, no. 50124/07 and 7 other applications, 12 December 2017
Colombani and Others v. France, no. 51279/99, ECHR 2002-V
Editorial Board of Pravoye Delo and Shtekel v. Ukraine, no. 33014/05, ECHR 2011 (extracts)
Couderc and Hachette Filipacchi Associés v. France [GC], no. 40454/07, ECHR 2015 (extracts)
Coutant v. France (dec.), no. 17155/03, 24 January 2008
Craxi v. Italy (no. 1), no. 34896/97, 5 December 2002
Craxi v. Italy (no. 2), no. 25337/94, 17 July 2003
Cumhuriyet Vakfı and Others v. Turkey, no. 28255/07, 8 October 2013
Cumpănă and Mazăre v. Romania [GC], no. 33348/96, ECHR 2004-XI

—D—

Daktaras v. Lithuania, no. 42095/98, ECHR 2000-X
Dalban v. Romania [GC], no. 28114/95, ECHR 1999-VI
Dammann v. Switzerland, no. 77551/01, 25 April 2006
De Carolis and France Télévisions v. France, no. 29313/10, 21 January 2016
De Diego Nafría v. Spain, no. 46833/99, 14 March 2002
De Haes and Gijssels v. Belgium, 24 February 1997,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7-I*
De Lesquen du Plessis-Casso v. France, no. 54216/09, 12 April 2012
Delfi AS v. Estonia [GC], no. 64569/09, ECHR 2015
Demirel et Ateş v. Turkey, nos. 10037/03 and 14813/03, 12 April 2007
Demuth v. Switzerland, no. 38743/97, ECHR 2002-IX
Desjardin v. France, no. 22567/03, 22 November 2007
Di Giovanni v. Italy, no. 51160/06, 9 July 2013
Dilipak v. Turkey, no. 29680/05, 15 September 2015
Dimitras and Others v. Greece (dec.), nos. 59573/09 and 65211/09, 4 July 2017
Dink v. Turkey, nos. 2668/07 and 4 Others, 14 September 2010
Djavit An v. Turkey, no. 20652/92, ECHR 2003-III
Długołęcki v. Poland, no. 23806/03, 24 February 2009
Dmitriyevskiy v. Russia, no. 42168/06, 3 October 2017
Do Carmo de Portugal e Castro Câmara v. Portugal, no. 53139/11, 4 October 2016
Donaldson v. the United Kingdom, no. 56975/09, 25 January 2011
Döner and Others v. Turkey, no. 29994/02, 7 March 2017
Du Roy and Malaurie v. France, no. 34000/96, ECHR 2000-X
Dupuis and Others v. France, no. 1914/02, 7 June 2007
Dyuldin and Kislov v. Russia, no. 25968/02, 31 July 2007
Dzhugashvili v. Russia (dec.), no. 41123/10, 9 December 2014

—E—

E.K. v. Turkey, no. 28496/95, 7 February 2002
E.S. v. Austria, no. 38450/12, 25 October 2018

Ediciones Tiempo v. Spain, no. 13010/87, Commission decision of 12 July 1989, Decisions and Reports 62

Éditions Plon v. France, no. 58148/00, ECHR 2004-IV

Eerikäinen and Others v. Finland, no. 3514/02, 10 February 2009

Egeland and Hanseid v. Norway, no. 34438/04, 16 April 2009

Egill Einarsson v. Iceland, no. 24703/15, 7 November 2017

Eğitim ve Bilim Emekçileri Sendikası v. Turkey, no. 20641/05, ECHR 2012 (extracts)

Eker v. Turkey, no. 24016/05, 24 October 2017

Elvira Dmitriyeva v. Russia, nos. 60921/17 and 7202/18, 30 April 2019

Engels v. Russia, no. 61919/16, 23 June 2020

Eon v. France, no. 26118/10, 14 March 2013

Erdoğdu and İnce v. Turkey [GC], nos. 25067/94 and 25068/94, ECHR 1999-IV

Erdtmann v. Germany (dec.), no. 56328/10, 5 January 2016

Ergin v. Turkey (no. 6), no. 47533/99, ECHR 2006-VI (extracts)

Ergündoğan v. Turkey, no. 48979/10, 17 April 2018

Ernst and Others v. Belgium, no. 33400/96, 15 July 2003

Ezelin v. France, 26 April 1991, Series A no. 202

—F—

Fáber v. Hungary, no. 40721/08, 24 July 2012

Falzon v. Malta, no. 45791/13, 20 March 2018

Faruk Temel v. Turkey, no. 16853/05, 1 February 2011

Fatullayev v. Azerbaijan, no. 40984/07, 22 April 2010

Fayed v. the United Kingdom, 21 September 1994, Series A no. 294-B

Fedchenko v. Russia, no. 33333/04, 11 February 2010

Fedchenko v. Russia (no. 3), no. 7972/09, 2 October 2018

Feldek v. Slovakia, no. 29032/95, ECHR 2001-VIII

Féret v. Belgium, no. 15615/07, 16 July 2009

Financial Times Ltd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no. 821/03, 15 December 2009

Fleury v. France, no. 29784/06, 11 May 2010

Foglia v. Switzerland, no. 35865/04, 13 December 2007

Folea v. Romania, no. 34434/02, 14 October 2008

Flux v. Moldova (no. 4), no. 17294/04, 12 February 2008

Frankowicz v. Poland, no. 53025/99, 16 December 2008

Fressoz and Roire v. France [GC], no. 29183/95, ECHR 1999-I

Frisk and Jensen v. Denmark, no. 19657/12, 5 December 2017

Fuchsmann v. Germany, no. 71233/13, 19 October 2017

Fuentes Bobo v. Spain, no. 39293/98, 29 February 2000

—G—

Gafiuc v. Romania, no. 59174/13, 13 October 2020

Garycki v. Poland, no. 14348/02, 6 February 2007

Genner v. Austria, no. 55495/08, 12 January 2016

Gillberg v. Sweden [GC], no. 41723/06, 3 April 2012

Giniewski v. France, no. 64016/00, ECHR 2006-I

Gîrleanu v. Romania, no. 50376/09, 26 June 2018
Glas Nadezhda EOOD and Elenkov v. Bulgaria, no. 14134/02, 11 October 2007
Glaser v. Germany, 28 August 1986, Series A no. 104
Glor v. Switzerland, no. 13444/04, ECHR 2009
Godlevskiy v. Russia, no. 14888/03, 23 October 2008
Goodwin v. the United Kingdom, 27 March 1996,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6-II
Gorelishvili v. Georgia, no. 12979/04, 5 June 2007
Görmüş and Others v. Turkey, no. 49085/07, 19 January 2016
Goryaynova v. Ukraine, no. 41752/09, 8 October 2020
Gozelik and Others v. Poland [GC], no. 44158/98, ECHR 2004-I
Gurgenidze v. Georgia, no. 71678/01, 17 October 2006
Goussev and Marenk v. Finland, no. 35083/97, 17 January 2006
Gözel and Özer v. Turkey, nos. 43453/04 and 31098/05, 6 July 2010
GRA Stiftung gegen Rassismus und Antisemitismus v. Switzerland, no. 18597/13, 9 January 2018
Grebneva and Alisimchik v. Russia, no. 8918/05, 22 November 2011
Grigoriades v. Greece, 25 November 1997,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7-VII
Grinberg v. Russia, no. 23472/03, 21 July 2005
Grupo Interpres SA v. Spain, no. 32849/96, Commission decision of 7 April 1997, *Decisions and Reports* 89
Gsell v. Switzerland, no. 12675/05, 8 October 2009
Guerra and Others v. Italy, 19 February 1998,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8-I
Guja v. Moldova [GC], no. 14277/04, ECHR 2008
Gül and Others v. Turkey, no. 4870/02, 8 June 2010
Gündüz v. Turkey, no. 35071/97, ECHR 2003-XI
Guseva v. Bulgaria, no. 6987/07, 17 February 2015
Gutiérrez Suárez v. Spain, no. 16023/07, 1 June 2010
Gutsanovi v. Bulgaria, no. 34529/10, ECHR 2013 (extracts)



Hachette Filipacchi Associés v. France, no. 71111/01, 14 June 2007
Hachette Filipacchi Associés (ICI PARIS) v. France, no. 12268/03, 23 July 2009
Hadjianastassiou v. Greece, 16 December 1992, Series A no. 252
Hakim Aydın v. Turkey, no. 4048/09, 26 May 2020
Haldimann and Others v. Switzerland, no. 21830/09, ECHR 2015
Han v. Turkey, no. 50997/99, 13 September 2005
Handyside v. the United Kingdom, 7 December 1976, Series A no. 24
Harabin v. Slovakia, no. 58688/11, 20 November 2012
Haseldine v. the United Kingdom, no. 18957/91, Commission decision of 13 May 1992, *Decisions and Reports* 73
Heinisch v. Germany, no. 28274/08, ECHR 2011 (extracts)
Herbai v. Hungary, no. 11608/15, 5 November 2019
Hertel v. Switzerland, 25 August 1998,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8-VI
Hirst v. the United Kingdom (no. 2) [GC], no. 74025/01, ECHR 2005-IX
Hizb ut-Tahrir and Others v. Germany (dec.), no. 31098/08, 12 June 2012
Høiness v. Norway, no. 43624/14, 19 March 2019

Hrico v. Slovakia, no. 49418/99, 20 July 2004

— I —

İ.A. v. Turkey, no. 42571/98, ECHR 2005-VIII
Ibragim Ibragimov and Others v. Russia, nos. 1413/08 and 28621/11, 28 August 2018
İbrahim Aksoy v. Turkey, nos. 28635/95 and 2 Others, 10 October 2000
Ibrahimov and Mammadov v. Azerbaijan, nos. 63571/16 and 5 Others, 13 February 2020
Ileana Constantinescu v. Romania, no. 32563/04, 11 December 2012
İmza v. Turkey, no. 24748/03, 20 January 2009
Incal v. Turkey, 9 June 1998,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8-IV
Independent Newspapers (Ireland) Limited v. Ireland, no. 28199/15, 15 June 2017
Informationsverein Lentia and Others v. Austria, 24 November 1993, Series A no. 276
İrfan Temel and Others v. Turkey, no. 36458/02, 3 March 2009

— J —

Janowski v. Poland [GC], no. 25716/94, ECHR 1999-I
Jankovskis v. Lithuania, no. 21575/08, 17 January 2017
Jecker v. Switzerland, no. 35449/14, 6 October 2020
Jelševar and Others v. Slovenia (dec.), no. 47318/07, 11 March 2014
Jersild v. Denmark, 23 September 1994, Series A no. 298
Jerusalem v. Austria, no. 26958/95, ECHR 2001-II
Jobe v. the United Kingdom (dec.), no. 48278/09, 14 June 2011
Jokitaipale and Others v. Finland, no. 43349/05, 6 April 2010
July and SARL Libération v. France, no. 20893/03, ECHR 2008 (extracts)

— K —

K.U. v. Finland, no. 2872/02, ECHR 2008
Kaboğlu and Oran v. Turkey, nos. 1759/08 and 2 Others, 30 October 2018
Kablis v. Russia, nos. 48310/16 and 59663/17, 30 April 2019
Kaçki v. Poland, no. 10947/11, 4 July 2017
Kalda v. Estonia, no. 17429/10, 19 January 2016
Kalfagiannis and Prospert v. Greece (dec.), no. 74435/14
Kanat and Bozan v. Turkey, no. 13799/04, 21 October 2008
Kanellopoulou v. Greece, no. 28504/05, 11 October 2007
Kaos GL v. Turkey, no. 4982/07, 22 November 2016
Kapsis and Danikas v. Greece, no. 52137/12, 19 January 2017
Kaptan v. Switzerland (dec.), no. 55641/00, 12 April 2001
Karácsony and Others v. Hungary [GC], nos. 42461/13 and 44357/13, 17 May 2016
Karademirci and Others v. Turkey, nos. 37096/97 and 37101/97, ECHR 2005-I
Karakó v. Hungary, no. 39311/05, 28 April 2009
Karakoyun and Turan v. Turkey, no. 18482/03, 11 December 2007
Karapetyan and Others v. Armenia, no. 59001/08, 17 November 2016
Karastelev and Others v. Russia, no. 16435/10, 6 October 2020
Karataş v. Turkey, no. 23168/94, ECHR 1999-IV
Karhuvaara and Iltalehti v. Finland, no. 53678/00, ECHR 2004-X

[Karsai v. Hungary](#), no. 5380/07, 1 December 2009
[Kasabova v. Bulgaria](#), no. 22385/03, 19 April 2011
[Kasymakhunov and Saybatalov v. Russia](#), nos. 26261/05 and 26377/06, 14 March 2013
[Kayasu v. Turkey](#), nos. 64119/00 and 76292/01, 13 November 2008
[Kazakov v. Russia](#), no. 1758/02, 18 December 2008
[Kenedi v. Hungary](#), no. 31475/05, 26 May 2009
[Khadija Ismayilova v. Azerbaijan](#), nos. 65286/13 and 57270/14, 10 January 2019
[Kharlamov v. Russia](#), no. 27447/07, 8 October 2015
[Khurshid Mustafa and Tarzibachi v. Sweden](#), no. 23883/06, 16 December 2008
[Khuzhin and Others v. Russia](#), no. 13470/02, 23 October 2008
[Kılıç and Eren v. Turkey](#), no. 43807/07, 29 November 2011
[Klein v. Slovakia](#), no. 72208/01, 31 October 2006
[Kokkinakis v. Greece](#), 25 May 1993, Series A no. 260-A
[Kövesi v. Romania](#), no. 3594/19, 5 May 2020
[Krasulya v. Russia](#), no. 12365/03, 22 February 2007
[Kucharczyk v. Poland](#) (dec.) [committee], no. 72966/13, 24 November 2015
[Kudeshkina v. Russia](#), no. 29492/05, 26 February 2009
[Kula v. Turkey](#), no. 20233/06, 19 June 2018
[Kuliś v. Poland](#), no. 15601/02, 18 March 2008
[Kuliś and Różycki v. Poland](#), no. 27209/03, 6 October 2009
[Kurier Zeitungsverlag und Druckerei GmbH v. Austria](#), no. 3401/07, 17 January 2012
[Kutlular v. Turkey](#), no. 73715/01, 29 April 2008
[Kwiecień v. Poland](#), no. 51744/99, 9 January 2007
[Kyprianou v. Cyprus](#) [GC], no. 73797/01, ECHR 2005-XIII



[Lacroix v. France](#), no. 41519/12, 7 September 2017
[Langner v. Germany](#), no. 14464/11, 17 September 2015
[Laranjeira Marques da Silva v. Portugal](#), no. 16983/06, 19 January 2010
[Lavents v. Latvia](#), no. 58442/00, 28 November 2002
[Le Pen v. France](#) (dec.), no. 18788/09, 20 April 2010
[Leander v. Sweden](#), 26 March 1987, Series A no. 116
[Leempoel & S.A. ED. Ciné Revue v. Belgium](#), no. 64772/01, 9 November 2006
[Leroy v. France](#), no. 36109/03, 2 October 2008
[Lešník v. Slovakia](#), no. 35640/97, ECHR 2003-IV
[Leveque v. France](#) (dec.), no. 35591/97, 23 November 1999
[Lewandowska-Malec v. Poland](#), no. 39660/07, 18 September 2012
[Lilliendal v. Iceland](#) (dec.), no. 29297/18, 12 May 2020
[Lindon, Otchakovsky-Laurens and July v. France](#) [GC], nos. 21279/02 and 36448/02, ECHR 2007-IV
[Lingens v. Austria](#), 8 July 1986, Series A no. 103
[Loersch and Nouvelle Association du Courrier v. Switzerland](#), nos. 23868/94 and 23869/94, Commission decision of 24 February 1995, Decisions and Reports 80
[Loiseau v. France](#) (dec.), no. 46809/99, ECHR 2003 XII (extracts)
[Lombardi Vallauri v. Italy](#), no. 39128/05, 20 October 2009
[Lombardo and Others v. Malta](#), no. 7333/06, 24 April 2007

Lopes Gomes da Silva v. Portugal, no. 37698/97, ECHR 2000-X

—M—

M.L. and W.W. v. Germany, nos. 60798/10 and 65599/10, 28 June 2018
Magyar Helsinki Bizottság v. Hungary [GC], no. 18030/11, 8 November 2016
Magyar Jeti Zrt v. Hungary, no. 11257/16, 4 December 2018
Magyar Kétfarkú Kutya Párt v. Hungary [GC], no. 201/17, 20 January 2020
Magyar Tartalomszolgáltatók Egyesülete and Index.hu Zrt v. Hungary, no. 22947/13, 2 February 2016
Mahi v. Belgium (dec.), no. 57462/19, 7 July 2020
Mamère v. France, no. 12697/03, ECHR 2006-XIII
Man and Others v. Romania (dec.), no. 39273/07, 19 November 2019
Mándli and Others v. Hungary, no. 63164/16, 26 May 2020
Manole and Others v. Moldova, no. 13936/02, ECHR 2009 (extracts)
Marchenko v. Ukraine, no. 4063/04, 19 February 2009
Margulev v. Russia, no. 15449/09, 8 October 2019
Mariapori v. Finland, no. 37751/07, 6 July 2010
Marinova and Others v. Bulgaria, nos. 33502/07, 30599/10 and 2 Others, 12 July 2016
Mariya Alekhina and Others v. Russia, no. 38004/12, 17 July 2018
Markt intern Verlag GmbH and Klaus Beermann v. Germany, 20 November 1989, Series A no. 165
Mătășaru v. the Republic of Moldova, nos. 69714/16 and 71685/16, 15 January 2019
Mater v. Turkey, no. 54997/08, 16 July 2013
Mathieu-Mohin and Clerfayt v. Belgium, 2 March 1987, Series A no. 113
Matúz v. Hungary, no. 73571/10, 21 October 2014
McVicar v. the United Kingdom, no. 46311/99, ECHR 2002-III
Medžlis Islamske Zajednice Brčko and Others v. Bosnia and Herzegovina [GC], no. 17224/11, 27 June 2017
Mehmet Reşit Arslan and Orhan Bingöl v. Turkey, nos. 47121/06 and 2 Others, 18 June 2019
Melnychuk v. Ukraine (dec.), no. 28743/03, ECHR 2005-IX
Members of the Gldani Congregation of Jehovah's Witnesses and Others v. Georgia, no. 71156/01, 3 May 2007
Metis Yayıncılık Limited Şirketi and Sökmen v. Turkey (dec.), no. 4751/07, 20 June 2017
MGN Limited v. the United Kingdom, no. 39401/04, 18 January 2011
Mikkelsen and Christensen v. Denmark (dec.), no. 22918/08, 24 May 2011
Mikolajová v. Slovakia, no. 4479/03, 18 January 2011
Miljević v. Croatia, no. 68317/13, 25 June 2020
Minelli v. Switzerland (dec.), no. 14991/02, 14 June 2005
Mladina d.d. Ljubljana v. Slovenia, no. 20981/10, 17 April 2014
Monica Macovei v. Romania, no. 53028/14, 28 July 2020
Monnat v. Switzerland, no. 73604/01, ECHR 2006-X
Moohan and Gillon v. the United Kingdom (dec.), nos. 22962/15 and 23345/15, 13 June 2017
Mor v. France, no. 28198/09, 15 December 2011
Morar v. Romania, no. 25217/06, 7 July 2015
Morice v. France [GC], no. 29369/10, ECHR 2015
Morissens v. Belgium, no. 11389/85, Commission decision of 3 May 1988, Decisions and Reports 56

Mosley v. the United Kingdom, no. 48009/08, 10 May 2011
Mouvement raélien suisse v. Switzerland [GC], no. 16354/06, ECHR 2012 (extracts)
Müller and Others v. Switzerland, 24 May 1988, Series A no. 133
Murat Vural v. Turkey, no. 9540/07, 21 October 2014
Murphy v. Ireland, no. 44179/98, ECHR 2003 IX (extracts)

—N—

Nagla v. Latvia, no. 73469/10, 16 July 2013
Nadtoka v. Russia, no. 38010/05, 31 May 2016
Nasirov and Others v. Azerbaijan, no. 58717/10, 20 February 2020
Nedim Şener v. Turkey, no. 38270/11, 8 July 2014
Neij and Sunde Kolmisoppi v. Sweden (dec.), no. 40397/12, 19 February 2013
Nejdet Atalay v. Turkey, no. 76224/12, 19 November 2019
Nenkova-Lalova v. Bulgaria, no. 35745/05, 11 December 2012
News Verlags GmbH & Co.KG v. Austria, no. 31457/96, ECHR 2000-I
Nikowitz and Verlagsgruppe News GmbH v. Austria, no. 5266/03, 22 February 2007
Nikula v. Finland, no. 31611/96, ECHR 2002-II
Nilsen v. the United Kingdom (dec.), no. 36882/05, 9 March 2010
Nilsen and Johnsen v. Norway [GC], no. 23118/93, ECHR 1999-VIII
Niskasaari and Others v. Finland, no. 37520/07, 6 July 2010
Nix v. Germany (dec.), no. 35285/16, 13 March 2018
Nordisk Film & TV A/S v. Denmark (dec.), no. 40485/02, ECHR 2005-XIII
Norris v. Ireland, 26 October 1988, Series A no. 142
Novikova and Others v. Russia, nos. 25501/07 and 4 others, 26 April 2016
N.Š. v. Croatia, no. 36908/13, 10 September 2020
Nur Radyo Ve Televizyon Yayıncılığı A.Ş. v. Turkey, no. 6587/03, 27 November 2007
Nurminen and Others v. Finland, no. 27881/95, Commission decision of 26 February 1997

—O—

Oberschlick v. Austria (no. 1), 23 May 1991, Series A no. 204
Oberschlick v. Austria (no. 2), 1 July 1997,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7-IV
Observer and Guardian v. the United Kingdom, 26 November 1991, Series A no. 216
Obukhova v. Russia, no. 34736/03, 8 January 2009
Ólafsson v. Iceland, no. 58493/13, 16 March 2017
Öllinger v. Austria, no. 76900/01, ECHR 2006-IX
Olujić v. Croatia, no. 22330/05, 5 February 2009
OOO Flavus and Others v. Russia, nos. 12468/15 and 2 Others, 23 June 2020
OOO Izdatelskiy Tsentri Kvartirnyy Ryad v. Russia, no. 39748/05, 25 April 2017
OOO Regnum v. Russia, no. 22649/08, 8 September 2020
Open Door and Dublin Well Woman v. Ireland, 29 October 1992, Series A no. 246-A
Oran v. Turkey, nos. 28881/07 and 37920/07, 15 April 2014
Orban and Others v. France, nos. 20985/05, 15 January 2009
Orlovskaya Iskra v. Russia, no. 42911/08, 21 February 2017
Österreichische Vereinigung zur Erhaltung, Stärkung und Schaffung v. Austria, no. 39534/07, 28 November 2013

Otegi Mondragon v. Spain, no. 2034/07, ECHR 2011
Ottan v. France, no. 41841/12, 19 April 2018
Otto-Preminger-Institut v. Austria, 20 September 1994, Series A no. 295-A
Özgür Gündem v. Turkey, no. 23144/93, ECHR 2000-III
Özer v. Turkey (no. 3), no. 69270/12, 11 February 2020
Öztürk v. Turkey [GC], no. 22479/93, ECHR 1999-VI

—P—

P4 Radio Hele Norge ASA v. Norway (dec.), no. 76682/01, ECHR 2003-VI
Pais Pires de Lima v. Portugal, no. 70465/12, 12 February 2019
Pakdemirli v. Turkey, no. 35839/97, 22 February 2005
Palusinski v. Poland (dec.), no. 62414/00, ECHR 2006-XIV
Panioglu v. Romania, no. 33794/14, December 2020
Socialist Party and Others v. Turkey, 25 May 1998,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8-III
Paturel v. France, no. 54968/00, 22 December 2005
Peck v. the United Kingdom, no. 44647/98, ECHR 2003-I
Pedersen and Baadsgaard v. Denmark [GC], no. 49017/99, ECHR 2004-XI
Pentikäinen v. Finland [GC], no. 11882/10, ECHR 2015
Perinçek v. Switzerland [GC], no. 27510/08, ECHR 2015 (extracts)
Perrin v. the United Kingdom (dec.), no. 5446/03, ECHR 2005-XI
Peruzzi v. Italy, no. 39294/09, 30 June 2015
PETA Deutschland v. Germany, no. 43481/09, 8 November 2012
Petro Carbo Chem S.E. v. Romania, no. 21768/12, 30 June 2020
Piermont v. France, 27 April 1995, Series A no. 314
Pihl v. Sweden, no. 74742/14, 7 February 2017
Pinto Coelho v. Portugal (no. 2), no. 48718/11, 22 March 2016
Pinto Pinheiro Marques v. Portugal, no. 26671/09, 22 January 2015
Pitkevich v. Russia (dec.), no. 47936/99, 8 February 2001
Polanco Torres and Movilla Polanco v. Spain, no. 34147/06, 21 September 2010
Polat v. Turkey [GC], no. 23500/94, 8 July 1999
Poyraz v. Turkey, no. 15966/06, 7 December 2010
Prager and Oberschlick v. Austria, 26 April 1995, Series A no. 313
Previti v. Italy (dec.), no. 45291/06, 8 December 2009
Prunea v. Romania, no. 47881/11, 8 January 2019
Purcell and Others v. Ireland, no. 15404/89, Commission decision of 16 April 1991, *Decisions and Reports* 70
Putistin v. Ukraine, no. 16882/03, 21 November 2013

—R—

Radio ABC v. Austria, 20 October 1997,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7-VI
Radio France and Others v. France, no. 53984/00, ECHR 2004-II
Radio Twist a.s. v. Slovakia, no. 62202/00, ECHR 2006-XV
Radobuljac v. Croatia, no. 51000/11, 28 June 2016
Ragıp Zarakolu v. Turkey, no. 15064/12, 15 September 2020
Raichinov v. Bulgaria, no. 47579/99, 20 April 2006

Reichman v. France, no. 50147/11, 12 July 2016
Reklos and Davourlis v. Greece, no. 1234/05, 15 January 2009
Religious Community of Jehovah's Witnesses v. Azerbaijan, no. 52884/09, 20 February 2020
Renaud v. France, no. 13290/07, 25 February 2010
Ressiot and Others v. France, nos. 15054/07 and 15066/07, 28 June 2012
Reznik v. Russia, no. 4977/05, 4 April 2013
Roche v. the United Kingdom [GC], no. 32555/96, ECHR 2005-X
Rodina v. Latvia, nos. 48534/10 and 19532/15, 14 May 2020
Rodionov v. Russia, no. 9106/09, 11 December 2018
Rodriguez Ravelo v. Spain, no. 48074/10, 12 January 2016
Roemen and Schmit v. Luxembourg, no. 51772/99, ECHR 2003-IV
Roj TV A/S v. Denmark (dec.), no. 24683/14, 17 April 2018
Roland Dumas v. France, no. 34875/07, 15 July 2010
Romanenko and Others v. Russia, no. 11751/03, 8 October 2009
Rommelfanger v. Germany, no. 12242/86, Commission decision of 6 September 1989, Decisions and Reports 62
Roşianu v. Romania, no. 27329/06, 24 June 2014
Rotaru v. Romania [GC], no. 28341/95, ECHR 2000-V
Rumyana Ivanova v. Bulgaria, no. 36207/03, 14 February 2008
RTBF v. Belgium, no. 50084/06, ECHR 2011 (extracts)
Rubins v. Latvia, no. 79040/12, 13 January 2015
Rubio Dosamantes v. Spain, no. 20996/10, 21 February 2017
Ruokanen and Others v. Finland, no. 45130/06, 6 April 2010

—S—

Saaristo and Others v. Finland, no. 184/06, 12 October 2010
Sabuncu and Others v. Turkey, no. 23199/17, 10 November 2020
Şahin Alpay v. Turkey, no. 16538/17, 20 March 2018
Saint-Paul Luxembourg S.A. v. Luxembourg, no. 26419/10, 18 April 2013
Salabiaku v. France, 7 October 1988, Series A no. 141-A
Salihu and Others v. Sweden (dec.), no. 33628/15, 10 May 2016
Sanoma Uitgevers B.V. v. the Netherlands [GC], no. 38224/03, 14 September 2010
Sapan v. Turkey, no. 44102/04, 8 June 2010
Satakunnan Markkinapörssi Oy and Satamedia Oy v. Finland [GC], no. 931/13, 27 June 2017
Savitchi v. Moldova, no. 11039/02, 11 October 2005
Savva Terentyev v. Russia, no. 10692/09, 28 August 2018
Saygili and Falakaoğlu (no. 2) v. Turkey, no. 38991/02, 17 February 2009
Scharsach and News Verlagsgesellschaft v. Austria, no. 39394/98, ECHR 2003-XI
Schöpfer v. Switzerland, 20 May 1998,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8-III
Schwabe and M.G. v. Germany, nos. 8080/08 and 8577/08, ECHR 2011 (extracts)
Schweizerische Radio- und Fernsehgesellschaft SRG v. Switzerland, no. 34124/06, 21 June 2012
Schweizerische Radio- und Fernsehgesellschaft and Others v. Switzerland (dec.), no. 68995/13, 12 November 2019
Sdružení Jihočeské Matky v. the Czech Republic (dec.), no. 19101/03, 10 July 2006
Sekmadienis Ltd. v. Lithuania, no. 69317/14, 30 January 2018
Selahattin Demirtaş v. Turkey (no. 2) [GC], no. 14305/17, 22 December 2020

[Selistö v. Finland](#), no. 56767/00, 16 November 2004
[Sellami v. France](#), no. 61470/15, 17 December 2020
[Selmani and Others v.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no. 67259/14, 9 February 2017
[Semir Güzel v. Turkey](#), no. 29483/09, 13 September 2016
[Şener v. Turkey](#), no. 26680/95, 18 July 2000
[Shahanov and Palfreeman v. Bulgaria](#), nos. 35365/12 and 69125/12, 21 July 2016
[Shapovalov v. Ukraine](#), no. 45835/05, 31 July 2012
[Shvydika v. Ukraine](#), no. 17888/12, 30 October 2014
[Siałkowska v. Poland](#), no. 8932/05, 22 March 2007
[Sidabras and Džiautas v. Lithuania](#), nos. 55480/00 and 59330/00, ECHR 2004-VIII
[Simić v. Bosnia and Herzegovina](#) (dec.), no. 75255/10, 15 November 2016
[Sinkova v. Ukraine](#), no. 39496/11, 27 February 2018
[Sioutis v. Greece](#) (dec.), no. 16393/14, 29 August 2017
[Siryk v. Ukraine](#), no. 6428/07, 31 March 2011
[Skalka v. Poland](#), no. 43425/98, 27 May 2003
[Slavov and Others v. Bulgaria](#), no. 58500/10, 10 November 2015
[Smolorz v. Poland](#), no. 17446/07, 16 October 2012
[Soares v. Portugal](#), no. 79972/12, 21 June 2016
[Société de conception de presse et d'édition v. France](#), no. 4683/11, 25 February 2016
[Société de conception de presse et d'édition and Ponson v. France](#), no. 26935/05, 5 March 2009
[Société Prisma Presse v. France \(no. 1\)](#) (dec.), no. 66910/01, 1 July 2003
[Société Prisma Presse v. France \(no. 2\)](#) (dec.), no. 71612/01, 1 July 2003
[Sofranschi v. Moldova](#), no. 34690/05, 21 December 2010
[Sorguç v. Turkey](#), no. 17089/03, 23 June 2009
[Soulas and Others v. France](#), no. 15948/03, 10 July 2008
[Sousa Goucha v. Portugal](#), no. 70434/12, 22 March 2016
[Stambuk v. Germany](#), no. 37928/97, 17 October 2002
[Standard Verlags GmbH v. Austria](#), no. 13071/03, 2 November 2006
[Standard Verlags GmbH and Krawagna-Pfeifer v. Austria](#), no. 19710/02, 2 November 2006
[Steel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23 September 1998,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8-VII
[Steel and Morris v. the United Kingdom](#), no. 68416/01, ECHR 2005-II
[Stern Taulats and Roura Capellera v. Spain](#), nos. 51168/15 and 51186/15, 13 March 2018
[Steur v. the Netherlands](#), no. 39657/98, ECHR 2003-XI
[Stevens v. the United Kingdom](#), no. 11674/85, Commission decision of 3 March 1986, *Decisions and Reports* 46
[Stichting Ostade Blade v. the Netherlands](#) (dec.), no. 8406/06, 27 May 2014
[Stojanović v. Croatia](#), no. 23160/09, 19 September 2013
[Stoll v. Switzerland](#) [GC], no. 69698/01, ECHR 2007-V
[Stomakhin v. Russia](#), no. 52273/07, 9 May 2018
[Studio Monitori and Others v. Georgia](#), nos. 44920/09 and 8942/10, 30 January 2020
[Sürek v. Turkey \(no. 1\)](#) [GC], no. 26682/95, ECHR 1999-IV
[Sürek v. Turkey \(no. 2\)](#) [GC], no. 24122/94, 8 July 1999
[Sürek v. Turkey \(no. 3\)](#) [GC], no. 24735/94, 8 July 1999
[Sürek v. Turkey \(no. 4\)](#) [GC], no. 24762/94, 8 July 1999
[Sürek and Özdemir v. Turkey](#) [GC], nos. 23927/94 and 24277/94, 8 July 1999

Sylka v. Poland (dec.), no. 19219/07, 3 June 2014
Szanyi v. Hungary, no. 35493/13, 8 November 2016
Szurovecz v. Hungary, no. 15428/16, 8 October 2019

—T—

The Sunday Times v. the United Kingdom (no. 1), 26 April 1979, Series A no. 30
The Sunday Times v. the United Kingdom (no. 2), 26 November 1991, Series A no. 217
Tagiyev and Huseynov v. Azerbaijan, no. 13274/08, 5 December 2019
Tamiz v. the United Kingdom (dec.), no. 3877/14, 19 September 2017
Tammer v. Estonia, no. 41205/98, ECHR 2001-I
Tănăsoaica v. Romania, no. 3490/03, 19 June 2012
Társaság a Szabadságjogokért v. Hungary, no. 37374/05, ECHR 2009
Taşdemir v. Turkey (dec.), no. 38841/07, 23 February 2010
Tatár and Fáber v. Hungary, nos. 26005/08 and 26160/08, 12 June 2012
Tele 1 Privatfernsehgesellschaft mbH v. Austria, no. 32240/96, 21 September 2000
Telegraaf Media Nederland Landelijke Media B.V. and Others v. the Netherlands, no. 39315/06, 22 November 2012
Tête v. France, no. 59636/16, 26 March 2020
Thoma v. Luxembourg, no. 38432/97, ECHR 2001-III
Tillack v. Belgium, no. 20477/05, 27 November 2007
Times Newspapers Ltd v. the United Kingdom (no. 1 and no. 2), nos. 3002/03 and 23676/03, ECHR 2009
Timpul Info-Magazin and Anghel v. Moldova, no. 42864/05, 27 November 2007
Thorgeir Thorgeirson v. Iceland, 25 June 1992, Series A no. 239
Tierbefreier e.V. v. Germany, no. 45192/09, 16 January 2014
Tokarev v. Ukraine (dec.), no. 44252/13, 21 January 2020
Tolmachev v. Russia, no. 42182/11, 2 June 2020
Tolstoy Miloslavsky v. the United Kingdom, 13 July 1995, Series A no. 316-B
Toranzo Gomez v. Spain, no. 26922/14, 20 November 2018
Tourancheau and July v. France, no. 53886/00, 24 November 2005
Travaglio v. Italy (dec.), no. 64746/14, 24 January 2017
Turhan v. Turkey, no. 48176/99, 19 May 2005
Tuşalp v. Turkey, nos. 32131/08 and 41617/08, 21 February 2012
TV Vest AS & Rogaland Pensjonistparti v. Norway, no. 21132/05, ECHR 2008 (extracts)

—U—

Uj v. Hungary, no. 23954/10, 19 July 2011
Ulusoy and Others v. Turkey, no. 34797/03, 3 May 2007
Ümit Bilgiç v. Turkey, no. 22398/05, 3 September 2013
Unabhängige Initiative Informationsvielfalt v. Austria, no. 28525/95, ECHR 2002-I
United Christian Broadcasters Ltd v. the United Kingdom (dec.), no. 44802/98, 7 November 2000
Ürper and Others v. Turkey, nos. 14526/07 and 8 Others, 20 October 2009

—V—

Vajnai v. Hungary, no. 33629/06, ECHR 2008

Van der Musselle v. Belgium, 23 November 1983, Series A no. 70
Vejdeland and Others v. Sweden, no. 1813/07, 9 February 2012
Veraart v. the Netherlands, no. 10807/04, 30 November 2006
Vereinigung Bildender Künstler v. Austria, no. 68354/01, 25 January 2007
Vereniging Weekblad Bluf! v. the Netherlands, 9 February 1995, Series A no. 306-A
Vérités Santé Pratique SARL v. France (dec.), no. 74766/01, 1 December 2005
Verlagsgruppe Droemer Knaur GmbH & Co. KG v. Germany, no. 35030/13, 19 October 2017
Verlagsgruppe News GmbH v. Austria (no. 2), no. 10520/02, 14 December 2006
VgT Verein gegen Tierfabriken v. Switzerland, no. 24699/94, ECHR 2001-VI
Vides Aizsardzības Klubs v. Latvia, no. 57829/00, 27 May 2004
Viorel Burzo v. Romania, nos. 75109/01 and 12639/02, 30 June 2009
Vladimir Kharitonov v. Russia, no. 10795/14, 23 June 2020
Vogt v. Germany, 26 September 1995, Series A no. 323
Volkmer v. Germany (dec.), no. 39799/98, 22 November 2001
Von Hannover v. Germany, no. 59320/00, ECHR 2004-VI
Von Hannover v. Germany (no. 2) [GC], nos. 40660/08 and 60641/08, ECHR 2012
Von Hannover v. Germany (no. 3), no. 8772/10, 19 September 2013
Vona v. Hungary, no. 35943/10, ECHR 2013
Voskuil v. the Netherlands, no. 64752/01, 22 November 2007

—W—

Wall Street Journal Europe Sprl and Others v. the United Kingdom (dec.), no. 28577/05, 10 February 2009
Wanner v. Germany (dec.), no. 26892/12, 23 October 2018
Weber v. Switzerland, 22 May 1990, Series A no. 177
Weber and Saravia v. Germany (dec.), no. 54934/00, ECHR 2006-XI
Węgrzynowski and Smolczewski v. Poland, no. 33846/07, 16 July 2013
Welsh and Silva Canha v. Portugal, no. 16812/11, 17 September 2013
White v. Sweden, no. 42435/02, 19 September 2006
Wille v. Liechtenstein [GC], no. 28396/95, ECHR 1999-VII
Willem v. France, no. 10883/05, 16 July 2009
Wingrove v. the United Kingdom, 25 November 1996,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6-V
Wirtschafts-Trend Zeitschriften-Verlagsgesellschaft mbH v. Austria (no. 3), nos. 66298/01 and 15653/02, 13 December 2005
Wojtas-Kaleta v. Poland, no. 20436/02, 16 July 2009
Women On Waves and Others v. Portugal, no. 31276/05, 3 February 2009
Worm v. Austria, 29 August 1997,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7-V
Wrona v. Poland (dec.) [committee], no. 68561/13, 12 December 2017

—Y—

Yalçın Küçük v. Turkey, no. 28493/95, 5 December 2002
Yalçiner v. Turkey, no. 64116/00, 21 February 2008
Yarushkevych v. Ukraine (dec.), no. 38320/05, 31 May 2016
Yaşar Kaplan v. Turkey, no. 56566/00, 24 January 2006
Yıldız and Taş v. Turkey (no 1), no. 77641/01, 19 December 2006

Yıldız and Taş v. Turkey (no 2), no. 77642/01, 19 December 2006
Yıldız and Taş v. Turkey (no 3), no. 477/02, 19 December 2006
Yıldız and Taş v. Turkey (no 4), no. 3847/02, 19 December 2006
Yılmaz and Kılıç v. Turkey, no. 68514/01, 17 July 2008
Yordanova and Toshev v. Bulgaria, no. 5126/05, 2 October 2012
Youth Initiative for Human Rights v. Serbia, no. 48135/06, 25 June 2013

—Z—

Zakharov v. Russia, no. 14881/03, 5 October 2006
Zana v. Turkey, 25 November 1997, *Reports of Judgments and Decisions* 1997-VII
Zarubin and Others v. Lithuania (dec.), no. 69111/17 and 3 Others, 26 November 2019
Ziemiński v. Poland (no. 2), no. 1799/07, 5 July 2016